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1년도 정기총회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3시 -

◎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Associations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11년도 정기총회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3시 -

◎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

2011년도 국교련 정기총회 일정

-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3시
- ◆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실

일자	시 간	내용
2월 17일 (목)	14:00-14:20	국교련 회장단 경북대학교 교수회 방문
	14:20-15:00	국교련 회장단 경북대학교 총장/부총장 면담
	14:30-15:00	등록
	15:00 - 16:00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국교련 정기총회 사회: 최백렬 (국교련 사무총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원보고 ◆ 개회사: 국교련 상임회장 ◆ 축 사: 경북대학교 총장 ◆ 환영사: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 2010년도 국교련 사업 및 회계보고 ◆ 감사보고
	16:00 - 16:15	휴 식
	16:15 - 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토의 1. 성과연봉제, 학장임명제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 - 기금 모금, 위헌소송 제기 2.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추진 3. 상임회장과 공동회장단 선출 4. 기타
	18:00 -	저녁식사 및 간담회
2월 18일 (금)	08:30 - 10:00	조식 후 해산

- 목 차 -

I. 2010년도 국교련 사업보고	1
가. 2010년도 국교련 사업계획	1
나. 2010년도 국교련 주요활동일지	6
다. 2010년도 국교련 활동	10
1. 회장단 회의	10
2. 비상확대회장단회의	21
3. 임시총회	23
4. 국립대공투위	35
5. 의원면담	51
6. 공동기자회견	53
7. 행정안전부 항의 방문	55
8.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	57
II. 정책자료	60
1. 국립대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	60
2.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관련 자료	71
III. 주요 수신·발신 공문	75
IV. 성명서/청원서/신문기고 등	147

별첨자료

【별첨자료 1】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 현황 및 서명교수 명단	229
【별첨자료 2】 국교련 회원교 총장선거 (교원 외 지분) 자료	250
【별첨자료 3】 국회 교과위 의원 및 보좌관/비서 명단 및 이메일	251
【별첨자료 4】 국교련 회칙	253
【별첨자료 5】 2010년도 국교련 회장단 명단	256
【별첨자료 6】 국교련 고문, 자문위원, 사무처, 정책위원회 명단	257
【별첨자료 7】 국교련 회원교 회장/의장 명단	258
【별첨자료 8】 국교련 회원교 임원 명부	259
【별첨자료 9】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273
【별첨자료 10】 안건 토의 관련 자료	323

I. 2010년도 국교련 사업보고

가. 2010년도 국교련 사업계획

1. 사업기조와 방향

1. 대학 자율화와 민주화

- (1) 대학 운영 및 의사결정구조의 민주화
- (2) 고등교육정책 수립에 국교련 등 교수단체 참여 요구 및 확보
- (3) 교육의 공공성을 방기한 시장주의적 교육정책 저지 및 대안 마련

2. 대외 활동 강화

- (1) 국립대학 법인화 폐지 및 교육의 공공성 사수를 위한 교육관련 단체와의 연대 활동
- (2) 국회의원(특히 국회교육과학위원회 소속), 교과부 항의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3) 정책 개발과 여론 형성을 위한 대외 홍보

3. 교권 수호 및 교수복지 향상

- (1) 성과연봉제에 의한 사실상의 교수직 비정규직화 저지 활동
- (2) 교수 처우 및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료 작성·배포
- (3) 급여 체계·수준 등과 관련 회원교 상호간에 정보 공유 및 교환

4. 내부 역량 강화

- (1) 조직 확대 : 한예중, 카이스트, 노동부 소속 한국기술대학 가입 권유(?)
- (2) 자기 혁신과 주체 역량 강화 : 연수회, 토론회 등
- (3) 상근 전문위원 적극 활용으로 업무의 전문화

II. 주요 사업내용

1. 핵심 중점 사업

1) 국립대학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계획 철회

- (1) 국립대학 법인화 계획 철회를 위한 활동
 - ① 서명 작업 진행(국교련 차원) - 상황에 따라 농성, 집회 등 (국립대 공투위 차원)
 - ② 필요시 교수단체와의 연대 활동: 사교련,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

③ 필요시 교육관련 시민 단체와 연대 활동

(2)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 연봉제의 문제점 연구와 홍보 활동

① 각 회원교 대학신문, 교수신문, 일간지 등에 기고

(명망 있는 교수 활용, 회원교 할당, 정책위원회 정책 대안 개발)

② 신문 광고 (국립대학 법인화의 문제점 부각, 철회 요구의 불가피성, 당위성)

*** 광고 비용은 회원교 분담 (또는 서명교수의 찬조금)

③ 각 회원교 동시다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④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연봉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한 리플렛 제작, 배포

⑤ 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와대, 교과부 홈페이지에 반대의견 확산 등 사이버 투쟁

(3) 자체 대학개혁 방안 마련

① 외부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대학개혁안 마련

② 개별 대학과 지역 등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대학간 통합 논의

③ 교과부의 강제적인 구조 조정이나 대학 경쟁력 강화 논리에 사전 대응

(4) 국회 교과위원, 청와대 교문수석, 교과부 장관 (항의) 방문/설득

① 지역 의원 등을 활용하여 지방대학지원특별법 제정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활동

②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진동섭)

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차관 및 대학교육정책관련 국장 항의 방문 및 면담

④ 청와대 광장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정책토론), 자유게시판 활용한 선전전

(5)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 국면을 활용한 정치권에 대한 압박 및 협조 요청

① 지자체장 선거 공약으로 지역의 국립대학 발전 방안 채택 요구

② 지역 방송토론회에 각 지역 회원교 교수 패널로 참여하여 지방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공약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하도록 압박

(6) 지역 순회 대토론회 - 국립대 공투위와 연계 또는 독자 사업(임시 총회 활용)

2) 대학 의사결정구조 개편

(1) 교수(협의)회 또는 평의(원)회의 학칙기구화

① 대학별 상황에 따라 심의의결 기구화 추진(자료 수집 및 배포 병행)

- 교수(협의)회/평의(원)회를 학칙기구(심의의결 기능)로 만들기 위한 준비로서 회원교 전체의 교수(협의)회/평의(원)회 규정/회칙 취합 및 몇 가지 모델 개발

1.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는 대학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대학 개혁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 현안이다.

2. 교과부가 주장하는 대학자율화 신장 취지와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3. 회원교는 특히 총장선거 국면을 활용하여 각 대학 총장 후보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의 심의·의결기구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일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요구한다.

② 각 회원교 정보 공유

* 예컨대 주요 보직자 임명동의, 예결산 심의·의결, 대학운영에 대한 조사권 등

③ 고등교육법 및 학칙 개정 운동

④ 총장 견제 기구로서의 역할: 총장 중간평가, 총장 소환제 등

(2) 총장 직선제 유지, 발전을 위해 직선제의 제도적 보완

① 불법 선거 및 과열 선거 감시 활동

② 타락 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연구

③ 교수 이외의 학내구성원 문제 - 대학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④ 대학 차원의 자정 노력을 통해 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1위 당선자 대통령의 임명(요식적인 절차) - 교과부의 심의 및 추천권 배제 노력
총장직선제를 쟁취할 당시처럼 1위 당선자 임명 관례화

2. 교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대외 홍보 및 활동

(1) 교수 처우 조사 및 분석 활동

① 사립대학, 다른 전문 직종과 급여 수준 비교 연구 및 대정부 인상 요구

② 장기간의 급여 동결에 대한 문제 및 국가 차원의 급여 인상 요구

③ 기성회계의 성격 확인

(2) 성과 연봉제 시행 계획에 대한 대응

① 대학 내부 구성원의 의견 수렴

② 대학별 자율적 규정의 변경 및 현황 파악

③ 연봉제를 시행하는 외국 및 국내 대학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 교육관련 단체와 연대 활동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를 위한 교수·시민·사회 단체 연대 전선 구축

(2) 국립대학법인화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교육단체 연대

4. 정책 개발 및 자기 혁신을 위한 위원회 활성화와 연수회 강화

(1) 정책위원회의 활성화

- ①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정책 및 한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
 - ②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반대 논리 및 대안 생산
- (2) 자기 혁신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회 및 세미나 개최

5. 각 회원교의 개별회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심 촉발 방법 강구

- (1)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이메일 소식지 발간
- (2) 지역 순회 토론회, 설명회 개최
- (3)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벽보, 팸플릿, 현수막 제작·배포
 - ① 성명서, 선언문 작성시 발표 시기의 문제
 - ② 국교련의 기조에 반하지 않으면 집행부 또는 회장단회의에 일임하는 문제

III. 연간 회의 일정 및 장소 계획

회의개최 일시/장소 원칙

1. 일시 - 회장단 회의: 12시(또는 12시 30분) 임시총회: 오후 3시-
2. 장소 1) 회원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
2) 회장단 회의: 유성
3) 임시총회: 회장단 소속 대학(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광주교대, 목포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3. 긴급 또는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시와 장소의 변경 또는 별도의 회의/활동

년월	2010년	2009년	기타 주요사업	비 고
3월 (시행)	제1차 회장단 회의 유성 만나식당 3.19(금)	제1차 회장단회의 충북대 3.27(금)	총회 준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검토	
4월 (확정)	제1차 임시총회 부산대 인덕관 4. 9(금) 오후3시	제1차 임시총회 충북대 4.10(금)	사업계획/예산안 확정 교과부 방문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회장단/전체 회원교 정책위원회 1차 회의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성과연봉제 관련 교과부 방문. 공문 발송. 서명 결정 4월 임시국회
5월 (확정)	제2차 회장단회의 공주대 5.14(금)	제2차 회장단회의 유성 만나식당 5.22(금)	정책위원회 2차 회의 대국회 활동	지방선거 국면 활용 (특히 해당지역 국회의 의원 등 정치권 인사)
6월	제2차 임시총회 충남대 6.18(금)	제2차 임시총회 전북대 6.19(금) 제3차 회장단회의(긴급) 충북대 6.26(금)	임시총회 겸 워크숍 1차 지역순회 토론회	지방선거(6.2) 경북대 총장 선거 (총장후보자 공약-법 인화/성과연봉제)
7월	제3차 회장단회의 유성 만나식당 7.16(금)	제4차 회장단회의) 제주대학 7.9(목)	정책위원회 3차 회의	여름방학 지역 순회 토론회
8월 (거의 확정)	제3차 임시총회 제주대 8월 (비성수기)	제3차 임시총회 제주도 8.17(월)	임시총회 겸 워크숍 (국교련 지원금 증액)	2009 하계연수회(국교 련500만원 지원(참석자 개인/회원교 부담-1인 당 10만+항공권 요금)
9월	제4차 회장단 회의 유성 만나식당/ 서울대 9.17(금)	제5차 회장단회의 서울대 호암관 9.22(화)	정기총회 국면에서 서 울대법인화반대교수모 임과 연대 사업 모색	정기국회 전북대 총장선거 추석연휴(21-23)
10월	제4차 임시총회 제2차 정책위원회 강원대 10.15(금)	제4차 임시총회 안동대학 10.16(금)	임시총회 겸 워크숍/ 2차 지역순회 토론회	
11월	제5차 회장단 회의 유성 만나식당 11.19(금)	제6차 회장단회의 유성 만나식당11.20(금)	정책위원회 4차 회의	
12월	제5차 임시총회 전북대/전남대 12. 17(금)	제5차 임시총회 경북대학 12.18(금)	3차 지역순회 토론회	
2011년 1월	제6차 회장단회의 유성 만나식당 1. 21(금)	제7차 회장단회의 충남대 1.15(금)	정책위원회 5차 회의	평가 및 백서 발간 인수인계 준비
2월 (거의 확정)	정기총회 경북대 2.17(목)-18(금)	정기총회 충북대학 2.5(금)	신구회장단 인수인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3월 즉시 사업시작	설 연휴(2.2 - 2.4) 선언문 작성 (3월 출범식)

* 국립대 공투위, 서울대 법인화 공대위와의 연대, 공조

나. 2010년도 국교련 주요활동일지

2010년

2. 19(금) 국교련 인수인계(충북대학교)
2. 27(토) 성과연봉제 관련 교수신문 인터뷰- (3. 2 기사)
3. 1(월) 국회 이종걸 교과위상임위원장 출판기념회(안양 대림대학)
3. 2(화) 한국교육신문(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관지)에 성과연봉제 관련 글 기고
3. 4(목) 한밭대 이종원 회장 취임식 참석
3. 11(목) 경북대 김형기 의장 취임식
3. 12(금)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방문- 국립대 법인화 대응 건
 - 국립대 공투위 회의
 -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김정훈 의원 면담
 - 민노당 권영길 대표 면담
 - 한국방송통신대학 토론회 참석
3. 18(목) 교과부 성과연봉제 설명회 참석 -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 지적과 항의 발언
3. 19(금) 2010년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유성)
4. 9(금) 국교련 1차 임시총회(부산대학교 인덕관)
4. 12(월) 교수신문 창간 18주년 축하 (상임회장)
4. 15(목)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 시작
4. 16(금) 국립대 공투위 워크숍
4. 19(월) 상임회장 한국대학신문 기고: 국립대 법인화 계획 재고해야
4. 22(목) 상임회장 경상대 토론회 - 국립대 법인화와 바람직한 대학 개혁 방향(발제)
4. 29(목) 교과부 주최 성과연봉제 관련 토론회(서울교대)
5. 7(금) 국교련 비상 확대회장단 회의
5. 14(금) 국교련 제2차 회장단 회의
5. 18(화) 성과연봉제 관련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
 - 성과연봉제 철회 협조 요청 공문 발송(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체)
5. 20(목)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국립대학인사운영체계 개선방안) 토론 (상임회장)
5. 24(월) 한 송 강릉원주대 총장(국립대총장협의회장)과 통화(6월 2일부터 열흘 정도 외국 출장 등의 일정상 6월 12일 이후 간담회 가능 통보해 옴)
5. 27(목) 국립대 공투위 회의
6. 1(화) 국교련 회장단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이기봉)과의 간담회 - 교원성과연봉제 관련

- 6. 14(월) 성과연봉제 설명회(서울 방통대) 참석.
- 6. 16(수)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설명회(전북대)
- 6. 17(목) 서울시립대학 정책세미나 발제(상임회장- 국가 대학 정책의 방향과 국공립대학의 대응실태 및 전략 (국립대학 법인화를 중심으로)
- 6. 18(금) 국교련 임시총회(전남대학)
- 6. 21(월) 한국교총 회장, 사무총장, 정책실장 면담(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청)
KBS 라디오 생방송 오늘 인터뷰(성과연봉제 관련)
- 6. 22(화)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면담(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청)
- 6. 24(목) 국립대 공투위(서울 교수노조 사무실)
- 6. 28(월) 국회 방문
- 6. 29(화) 한국방송통신대학(민교협 총회)
- 7. 3(토) 대구 정책위원회 회의(자율형 국립대학안 논의)
- 7. 8(목) 사교련 (성과연봉제 반대 성명서 협조 요청 관련)
교과부로부터 장차관 면담 어려우니 정책실장 면담 제의 연락 - 거절함
- 7. 9(금) 연합뉴스 인터뷰(성과연봉제 관련)
- 7. 13(화) 교과부 연락: 장차관 면담 개각 문제로 어려움
교원 성과연봉제 201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을 2011년 상반기로 연기 긍정 검토중
- 교수 단체의 반발, 총장협의회 의 입장 표명
- 7. 14(수) 변호사 면담(성과연봉제 법률 대응 검토)
- 7. 16(금) 국교련 회장단 회의
- 7. 19(월) 교과부 방문
- 7. 22(목) 국회 교과위원장 면담(김용조 공동회장)
- 7.23(금) - 8. 6(금) 국교련 2010년 하계 세미나 및 3차 임시총회 준비 작업
- 8. 14(토) 정책위원회 회의
- 8월 19일(목) 강릉원주대 한 송 총장과 통화
 - 1. 시설예산 5300억(2010년)- 3600억(2011년)-1600억(2012년)
4대강, 무료급식 등 예산(기획재정부)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 면담시 발언 요청
 - 2. 성과연봉제 관련- 독소조항(최저 기준 책정 - 절대 기준으로 아무리 노력했다라도 상대평가할 경우 최하위등급은 존재하게 되어 있는 문제점 보완의 필요성)
 - 3. 2013년 전면시행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줄 것 요청 등
 - 4. 입법예고 기간 또는 교과부 장관 확정된 후 총장협의회 대표와 국교련 대표 공동으로 교과부 장관 면담 등 공조 당부
- 8.23(월)-24(화) 국교련 하계 세미나 및 제3차 임시총회
- 8. 25(수) 국회 변재일 교과위원장 면담-(국립대 법인화, 재정회계법, 성과연봉제 등 관련

협조 요청)

- 국립대 공투위 회의

- 9.17(금) 제4차 국교련 회장단회의
- 9. 26(일) 교과위 유성엽 의원- 성과연봉제 관련 자료 요청해옴 - 통화
- 9. 27(월) 교과위 유성엽 의원에게 성과연봉제 관련 자료 송부 및 저지 요청
- 9. 28(화) 교과위 유성엽 의원에게 국립대 법인화 관련 자료 송부 및 저지 요청
정책위원장에게 회원교 총장선거 관련(교원외 지분) 송부
전체 회원교에 제4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록 발송(회의자료 첨부)
고등교육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10월 8일)공문 발송
강원대 임시총회(10월 15일) 공문 발송
- 9. 30(목) 국립대 공투위 회의
- 10.1(금) 교과위 유성엽 의원 면담(성과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저지 요청)
- 10. 4(월) 한국대학신문 창간 22주년 축하
- 10. 7(목) 국립대 공투위 1인 시위(국회 방문)
- 10. 8(금) 국교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 10. 9(토)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저지 당부 모임
- 10.10(일)-11(월)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 준비 작업
- 10. 12(화) 국교련 임시총회 성명서 초안 작성
전북 CBS 생방송 사람과 사람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인터뷰)
- 10. 15(금) 국교련 임시총회(강원대)
- 10. 16(토) 성과연봉제 대응 관련 변호사 면담
- 10. 18(월) 법인화 반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충남대)
- 10. 19(화) 전체 회원교에 4차 임시총회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 송부(성과연봉제 입법 예고에 대해 회원교별, 회원교의 각 교수님들이 행정안전부에 반대 입장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포함)
- 10. 20(수) 거점국립대 총장(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에게 드리는 긴급 제안 공문 발송
- 10. 25(월) 성과연봉제 시행 반대 의견 제출(반대서명 명부 포함) 및 행안부 항의 방문 (국교련 전체 회원교 회장/의장)
- 10. 26(화) 한국교총 전문가 협의회(학장 직선제 폐지, 법인화 추진, 성과연봉제 시행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10. 29(금) 순천대 총장 면담(성과연봉제 도입, 법인화 추진 등에 대한 저지 협조 요청)
- 11. 1(월) 국회 서상기 의원(교과위 한나라당 간사) 비서관 면담(상임회장, 정책위원장)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실 임준희 행정관 면담(상임회장, 정책위원장)
- 11. 4(목) 국회 손학규 민주당 대표 면담(안민석 교과위 간사, 전병헌 정책위의장 배석)
국립대 공투위 회의(첨부참조)
- 11. 5(금) 국립대 법인화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
- 11. 8(월) 충남대 교수회 방문
- 11. 9(화)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
- 11. 10(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진동섭)에게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
- 11. 11(목) 서울시립대 대학발전포럼 참석

- 11. 12(금) 교수노조 창립기념식 참석
- 11. 15(월) 충북대 교수회 방문
- 11. 19(금) 국교련 회장단 회의, 고등교육법 개정 운영위원회
- 11. 25(목) 국교련 긴급임시총회, 서울대공대위+ 국립대 공투위 연합집회
- 11. 26(금) 사회경제학계 연합학술대회 토론(대학교육개혁)
- 12. 6(월) 이재오 의원(특임장관) 면담 추진
- 12. 9(목) 순천대학 성과연봉제 강연회(상임회장)
서울대법인화법 직권 상정 및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사무총장)
- 12. 10(금)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규탄 성명서 작성
- 12. 13(월)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규탄 성명서 발표 (보도자료)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및 국립대 법인화 관련 평화방송 인터뷰
- 12. 14(화) 서울대학 방문
- 12. 15(수) 국립대 공투위 회의
서울대법인화법 직권 상정 및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사무총장)
- 12. 17(금) 국교련 제6차 임시총회
- 12. 20(월) 제주대학 성과연봉제 관련 공청회
- 12. 25(토) 서울대법인화법 저지 농성장 격려 방문(박병덕 상임회장, 이은성 전문위원)
- 12. 27(월) 서울대공대위 문화제 집들이(박병덕 상임회장, 김필동 감사, 이준원 자문위원,
이은성 전문위원)
- 12. 29(수) 서울대 공대위 격려 방문
- 12. 31(금) 서울대 공대위 격려 방문

2011년

- 1. 4(화) 국회 방문, 교육방송 인터뷰
- 1. 5(수) 국립대 공투위 2011년 제 1차 회의
- 1. 6(목) 교육방송 민진기 기자 - 성과연봉제 관련 자료 송부
- 1. 11(화) 교육방송 인터뷰(민진기 기자)
- 1. 11(화)- 1. 12(수)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장 모임(강원대)
- 1. 12(수) 성과연봉제 및 고등교육법 입법청원 (서명) 기금 모금 중간 상황 점검을 위한
공문 발송
- 1. 19(수) 한국방송통신대학 성과연봉제 공청회 발제
- 1. 21(금) 국교련 회장단 회의(한국해양대학교)
- 2. 7(월) 국립대 공투위 회의(서울대 공대위 천막 농성장)

다. 2010년도 국교련 활동

1. 회장단 회의

2010년 제 1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10년 3월 19일(12:30 - 15:00)

장 소 : 대전 유성 만나식당

참석자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김세환(강원대, 공동회장) 김형기(경북대, 공동회장)
송재일(공주대, 공동회장), 전덕영(전남대, 문희 공동회장 대리), 고경표(제주대,
공동회장), 정차근(창원대,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호문혁(서울대, 감사), 김필동(충남대,
감사), 김광렬(충북대, 고문 내정자), 이준원(안동대, 자문 내정자), 김형래(경북대,
정책위원장), 최백렬(전북대, 사무총장 내정자), 이은성(전문위원)

토의 안건 및 의결 사항

1) 201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 사업계획안

- ① 국립대학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응 활동 (3)항 참조)
- ②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훼손하는 현행 총장선출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촉구 활동
- ③ 회원교의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회칙/규정에 대한 자료 제공, 격려 방문 등을 통해 특히 아직 교수(협의)회/평의(원)회가 학칙기구화되지 않았거나 열악한 상황에 있는 회원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함.

- 예산편성안

- ①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회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회비가 원안대로 인상될 경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회원교를 고려하기로 함.
- ② 교수수가 500명 이상 되는 대학은 원안대로 회비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밖의 회원교의 경우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원안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행부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1차 임시총회에 제출하기로 함.
- ③ 교육대학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교협연 전체 책정액을 420만원으로 하기로 결정함.
- ④ 고문과 자문 회원교에 대한 회비 추가 부담은 하지 않기로 결정함.

2) 연간 회의 일정 및 장소

- ① 제1차 임시회의 개최일자는 4월 9일(금)에 하기로 결정함.
개최 장소는 총장이 법인화 추진 입장을 밝힌 부산대와 경북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두 대학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전남대와 전북대를 고려해 정하기로 함.
- ② 제2차 회장단 회의는 공주대학에서 하기로 결정함. (구체적인 일시는 공주대학 송재일 의장과 협의)
- ③ 방학을 제외한 기간에는 회장단 회의, 임시총회 개최일자는 **금요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모든 회의 장소는 **회원교 요청**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회장단 회의 장소는 회원교의 별도 요청이 없을 시에는 유성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함.

- ④ 하계 워크숍 장소는 제주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함. (교육대학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는 8월 17일 이후에 개최하기로 함).

하계 워크숍 장소를 국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국외 워크숍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경비지원은 국교련 차원에서는 불가하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음.

3) 정기총회에서 유보된 성명서와 선언문 처리 문제

- 2010년도 국교련 사업계획 중 중점사업인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과 연계하여 논의함

- ① 법인화 관련 ‘성명서’ 발표는 아직 때가 아니며, 법인화 추진중인 ‘서울대’, ‘인천대’ 등의 법인화 안을 보고 국교련 차원의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② 반면에 법인화에 더 강력하게, 더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이 경우 국립대 법인화와 성과연봉제를 연계하여 대응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세부 대응 방안

- ◆ 총장이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혔거나 밝힐 것으로 자주 지목되는 4개 대학(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중심으로 공동전선 구축하고 필요시 국교련 전체 회원교 차원에서 지원한다.
 - ◆ 기자회견 - 총장이 법인화 추진 의사를 표명한 부산대, 경북대 교수회와 협의하여 필요시 긴급 기자회견을 하되, 회견 내용, 일시(예컨대 임시총회 개최일), 장소, 참석 범위(회장단 또는 전체 회원교) 등에 대해서는 부산대, 경북대 교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 총장 면담 - 법인화의 출발은 대학이며 대학에서는 총장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일단은 대학 총장의 법인화 찬성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 면담이 필요하다. (면담 우선 대상: 부산대, 경북대 총장)
 - ◆ 지방선거 국면을 활용해야 한다(“지방국립대가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무너진다”)
 - ◆ 매스컴을 통한 여론형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매스컴의 속성상 현재 상황에서는 국교련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는다. 일단 매스컴이 국교련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예컨대 민감한 시국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등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국립대 공투위 차원(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에 의존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인 것 같다.
 - ◆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대 국회 활동(예컨대 국교련 회장단 또는 회원교 임원진 중심으로 해당지역 국회의원 또는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설득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 ③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국교련 차원의 대안(예컨대 ‘자율형 국립대학’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함.
- ④ 교과부가 졸속하게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일단 교과부에 공문 발송하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 성명서 발표, 교수들의 서명 등의 활동을 하기로 결정함.

4) 총장선거 관련

- 총장선출관련 현행 규정 중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 촉구 활동을 하기로 의결함.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님의 자문을 받기로 함)

5) 정책위원회 구성

- 원안대로 하기로 동의함.

6) 국립대학법 초안(전 명재진 정책위원장 작성)의 처리 또는 활용 방안

- 보완하여 필요시 활용하기로 의결함.

2010년 제 2차 회장단 회의

일시: 2010년 5월 14일 16:00-17:40

장소: 공주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

참석자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고경표(제주대, 공동회장), 김세환(강원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문희(전남대, 공동회장), 송재일(공주대,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필동 (충남대, 감사), 호문혁(서울대, 감사),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김형래(경북대, 정책위원장), 최백렬(전북대, 사무총장), 오상은(전남대 부회장), 전철균(목포대 부의장), 이수현(창원대 부의장), 이은성(전문위원)

회의결과

1) 국교련 주최 토론회 개최의 건

- ① 주제: “성과연봉제” 단일 주제를 중심으로 하기로 함.
- ② 일시: 가능하면 6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의 주중(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하되, 국회의 토론회 장소 및 토론자 확보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함.
- ③ 발제자: 김형래(국교련 정책위원장)
- ④ 토론자: 국회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 2인(여·야 각 1인), 교과부 이주호 차관, 주요 언론사 기자 1인, 교수 2인(국립대, 사립대 각 1인) 등

2)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의 건

- ①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 송 회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게 간담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도록 함.
- ② 교과위 소속 의원 전체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위해 애써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 ③ 간담회 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과 서명 교수 명단을 제시하기로 함.

3) 기타

- ① 각 회원교에서는 회장/의장이 총장을 면담하여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결과를 고지하고,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도 공동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②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에 국교련 차원에서 토론자(토론자를 구하기 힘들면 박병덕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로 참여하기로 함 - 회원교에 토론회 참석 요청하는 공

문 발송하기로 함.

- ③ 성과연봉제 관련 법적 대응 방안은 서울대 호문혁 회장님에게 위임함.
- ④ 국교련 사무처에서 워드 작업을 통해 서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서명자 성명을 알아볼 수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있음. 국교련 사무처가 각 회원교에 서명자 명단을 발송하면 회원교가 소지하고 있는 서명자 사본과 대조하여 정확한 서명자 명단을 작성하여 회신하도록 함. 그리고 아직 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회원교(한국방송통신대학)에는 재차 서명 작업을 요청하기로 함.

2010년 제 3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10년 7월 16일 12:00 - 15:00

장 소 : 대전 유성 만나식당

참석자 :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공동회장), 송재일(공주대, 공동회장), 문 희(전남대, 공동회장), 고경표(제주대,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김필동(충남대, 감사),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최백렬(전북대, 사무총장), 김형래(경북대, 정책위원장), 최복길(공주대, 차기 교수회장), 명재진(충남대), 이은성(전문위원) 총15명

회의결과

1) 자율형 국립대학(안)의 건

① 충남대 명재진 교수의 “자율형 국립대 방향제시 및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에서 사립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예컨대 지역국립대 특별지원)은 제외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제주 제 3차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발표·토론하기로 함.

② 경북대 김형래 교수의 “총장선출 개선 방안”은 전체가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회원교의 협조를 얻어 총장선거와 관련된 회원교별 교수수, 직원수, 1차, 2차, 3차 투표시 직원 지분 등에 대한 자료 취합 등 총장선출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2011년 2월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다루기로 함.

③ 경북대 채형복 교수의 “대학평의회 설치 방안”은 독일과 프랑스 이외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추가하여 보완하도록 함.

2)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의 건

- 충북대의 공문을 참조로 각 단위대학별로 대학본부에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결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함.(회의자료 36쪽 참조)

- 이를 통해 대학총장협의회 차원에서 교과부에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3) 제주 국교련 제3차 임시총회 개최 관련의 건

- 1인 1실 사용 및 가족 동반: 추가 부담을 전제로 허용하도록 함.

- 행사 명칭을 <2010년 제 3차 국교련 임시총회 및 세미나>로 하고 개최 장소를 네이버후드 세미나실에서 **제주대학**으로 변경함.

2010년 제 4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10년 9월 17일 12:00 - 14:30

장 소 : 대전 유성 만나식당

참석자 :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공동회장), 최복길(공주대, 공동회장), 문 희(전남대, 공동회장), 고경표(제주대,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김필동(충남대, 감사), 호문혁(서울대, 감사), 이시원(경상대, 자문위원),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김형래(경북대, 정책위원장), 이은성(전문위원) 총14명

회의결과

1)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의 건

- ①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이주호 장관에게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② 교과부가 주최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에서 성과연봉제 찬성론자들조차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최종안에 이런 지적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 규정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실무자 차원의 설명회를 강행하는 등의 태도에 대해 항의한다.
- ③ 근본적인 급여체계의 변화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위헌임을 지적한다.

<참고>

* 헌법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교원 지위 법정주의). 교원의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연봉제의 문제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이러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어 성과연봉제는 법률 개정 없이는 시행될 수 없다고 본다.

** 위헌 소송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안이 확정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

<관련 규정>

헌법 제31조

-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 공무원법 제 47조(보수에 관한 규정)

-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2)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후 진행 방안

- ① 국교련 정책연구팀에서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 회원교에 송부하여 그 내용을 회원교 전체 교수님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 ② 국교련 회장단 외에 서울대 최갑수 교수와 박정훈 교수, 충남대 명재진 교수, 경북대 채형복 교수 4인을 추가하여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8일(금) 낮 12시 대전 유성 만나식당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그 회의에서 추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10월 15일(금) 강원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전체 회원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 서명 작업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③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줄 국회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개 의원은 교과위 소속 의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교련 회원교의 교수님들 가운데 친분이 두터운 의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기타: 중앙일보 및 조선일보 평가에 반대하는 서울 8개 대학 성명서에 관한 건

서울대학 호문혁 교수협의회장님이 국교련 사무처에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기로 함. 강원대의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함.

2010년 제 5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10년 11월 19일 12:00 - 15:30

장 소 : 대전 유성 다다일식

참석자 :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김세환(강원대, 공동회장), 김형기(경북대, 공동회장), 최복길(공주대, 공동회장), 문 희(전남대, 공동회장), 양길현(제주대,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호문혁(서울대, 감사), 정용하(부산대, 고문), 김광렬(충북대, 고문), 이시원(경상대, 자문위원),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김형래(경북대, 정책위원장), 최백렬(전북대, 사무총장), 마대영(경상대, 회장), 이종원(한밭대, 회장), 안철진(창원대, 사무국장) 이은성(전문위원)/ 총20명

회의결과

1. 성과연봉제 대응방안의 건

- 1) 각 대학에 공문 발송하여 아직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은 대학들의 경우 릴레이식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함.
- 2) 상황에 따라 지역/권역별 대학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되, 그 성명서를 지역 일간지에 광고 형태로 게재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일임하기로 함.
- 3) 각 대학의 명망 있는 교수에게 일간지에 성과연봉제 반대 관련 기고문을 게재하도록 부탁하기로 함.
- 4) 법적 대응과 관련한 모금에 관한 건은 11월 25일 서울대에서 개최하는 긴급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 추후 일정의 건

-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과 교수들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은 공감하며, 개정 청원 서명 및 개정 작업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대해서는 11월 25일의 긴급임시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3. 서울대 공대위, 국립대 공투위 연합집회의 건

- 11월 25일 오후 2시 서울대(구체적 장소 미정)에서 국교련 긴급임시총회를 마치고 4시에 합류하기로 함

4. 기타

- 1)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서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므로,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

(원)회 소속 교수님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TFT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교련 명의의 공문을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발송하기로 함.

2) 각 대학 총장에게는, 국공립대학 대다수의 교수님들이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각 대학의 성과평가지표(안)을 제출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3) 위 두 공문의 시안을 22일(월)에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이메일로 보내 의견을 묻고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함.

4) 사태의 전개에 따라 국비 연구비의 반납 선언,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도 고려하기로 함.

2010년 제 6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일 시 : 2011년 1월 21일 14:00 - 17:00

장 소 :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한바다호 회의실

참석자 : 박병덕(전북대, 상임회장), 김형기(경북대, 공동회장), 최복길(공주대, 공동회장), 양길현(제주대, 공동회장), 정차근(창원대학, 공동회장), 이상태(한국해양대, 공동회장), 조현상(목포대, 공동회장), 김용조(광주교대, 공동회장), 김필동(충남대, 감사), 정용하(부산대, 고문), 이시원(경상대, 자문위원),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최백렬(전북대, 사무총장), 이은성(전문위원),

대리참석 : 박인철(강원대 사무총장), 양채열(전남대, 총무간사) 총16명 외 부산대학교 교수 4인 참석

축사: 오거돈(한국해양대학 총장)

회의결과

1. 서명운동 및 기금모금 중간상황 점검

- 1) 성과연봉제 법적 대응 시기,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주체 등
 - 서울대와 법전원이 있는 8개 거점국립대학(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에서 법학(가능하면 헌법학) 전공 교수 1인씩 2월 10일까지 추천받아 법률자문교수단을 구성하고 법률자문교수단 1차 회의에서 자문을 받은 후 변호사 선임, 소송 시기, 소송 주체, 비용 등을 결정하도록 함
 - 법률자문교수단 구성이 늦어지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상임회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하도록 함. 단, 상임회장 임기가 끝날 경우에는 후임 상임회장과 협의하여 대응하기로 함.

2)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 추후 진행 일정

- 법률자문교수단 구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2. 국교련 조직역량 강화 방안

- 추후 과제로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함

3. 기타

1) 서울대 공대위, 국립대 공투위와의 연계 투쟁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추후 메일로 통보하고, 필요시 회원교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함.

2) 국교련 회칙 일부 수정: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정기총회 6개월 후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내정) 선출 여부 등은 정기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3) 성과연봉제 재입법예고 이후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2011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데 대해 국교련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법적 대응 등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함. 이 성명서에는 '단과대학 학장을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는 교과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학장선출 및 임명 방식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17:00 폐회**

2. 확대회장단 회의

2010년도 제 1차 비상확대회장단 회의

일시 : 2010년 5월 7일 12:00 - 13:30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참석자: 경북대 부회장 이광호, 경상대 회장 마대영, 사무국장 차춘남, 공주대 회장 **송재일(공동회장)**, 광주교대 회장 **김용조(공동회장)**, 목포대 의장 **조현상(공동회장)**, 목포해양대 의장 최주열, 부산교대 회장 김판수, 순천대 의장 박오복, 부의장 박병희, 사무처장 최용석, 안동대 부의장 노석호, 전남대 의장 **문 희(공동회장)**, 부의장 전덕영, 전북대 사무처장 정동섭, 제주대 회장 **고경표(공동회장)**, 진주산업대 의장 송영민 부의장 양금석, 창원대 의장 **정차근(공동회장)**, 청주교대 회장 심영택, 충남대 회장 김필동, 충주대 회장 이정일, 부회장 박정석, 충북대 회장 오원태, 한국해양대 회장 **이상태(공동회장)**, 한밭대 의장 이종원
국교련 **박병덕(상임회장)**, 정책위원장 김형래, 사무총장 최백렬, 전문위원 이은성
(회장단 8명, 총 30명)

<회의 결과>

1) 서명작업 연장: 2010년 5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각 회원교에 남은 며칠 동안 서명 교수 수를 최대한 늘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로 함.

최종 서명 결과는 2010년 5월 14일 오후 공주대학에서 있을 회장단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함.

(5월 7일 오후 4시 현재 경북대 535명에서 578명으로, 충남대 360명에서 460명으로 총 7,764명에서 7,907명으로 늘어남)

2) 면담신청

① 각 대학별로 서명 결과를 본부에 통보하여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대응하도록 하고, 각 대학별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도 국교련의 서명문안을 참고하여 문안을 작성하고 회원교 서명 교수 수 등을 기재하여 교과부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함.

② 서명 결과는 국회 교과위 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도록 함

③ 국회 교과위원장에게 면담 신청 공문 발송하도록 함

④ 국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한 승 총장), 전국 교무처장 협의회 등과 긴밀한 관계

유지 및 공조 활동

3)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교련의 입장 정리: 플러스 섬 방식이라도 교과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식은 문제가 많으므로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함.

성과연봉제 시행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기타 대응 방안

① 법적대응 검토: 시간을 두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함

② 청와대 신문고, 교과부 정책 제안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교별로 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 개진 등의 사이버 투쟁

③ 여론형성을 위해 각 대학에서 저명 교수 등에게 언론에 투고하도록 요청하기로 함

④ 국교련 차원의 토론회 개최

장소 : 국회의사당

일시 : 회장단에 일임

발제자 및 토론자 : 국교련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교과부 이주호 차관, 주요 언론사 기자 등을 섭외하도록 함

6) 제2차 회장단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2010년 5월 14일 오후 4시

장소: 공주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

안건: 국교련 주최 토론회 개최 등

3. 임시총회

2010년 제 1차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4월 9일(금) 15:00 - 18:30

장 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성원보고 (사무총장 내정자): 18개 대학 참석, 11개 대학 위임으로 개회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28개 대학 58명 참석. 2개 대학은 회장(의장)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

1.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찬일 2. 강원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부의장 임학대,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3.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형기, 부의장 김형래, 부의장 이광호, 사무처장 전현수 4. 경상대학교 교수회장 마대영, 부회장 차영길, 정책국장 최근배, 사무국장 차춘남 5.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창원 6. 공주대학교 교수회장 송재일 7.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8.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최주열 9. 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최연욱, 부회장 김영일 1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판수 부회장 정지윤 11.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정용하, 부회장 강정윤, 총무기획간사 문채규, 학술연구간사 김희재, 국제정보간사 김한성 12.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동훈 13. 순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오복, 사무처장 최용석 14. 안동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김시주, 부의장 노석호, 사무국장 윤재형, 정책국장 김석규 15.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장 박보용 16. 전남대학교 평의회 의장 문희, 부의장 전덕영, 부회장 오상은 17. 전북대학교 박병덕 회장 18.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고경표 19. 창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정차근 20.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김필동 21.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오원태 22. 충주대학교 교수회장 이정일, 부회장 박정석, 부회장 이철원, 사무처장 백덕권 23.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천만영 24.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의장 양도원 25.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이상태 26.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이종원, 부의장 박덕용, 사무처장 우승한

대리: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부의장 전철균,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부회장 노은환

국교련: 김광렬(국교련 고문) 이준원(국교련 자문위원) 최백렬(국교련 사무총장) (총 58명)

위임장 제출: 공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불참 회원교 : 진주산업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안건토의 1

- 고문 (정용하 전 국교련 상임회장, 김광렬 전 국교련 상임회장),

- 자문위원 (이시원 전 국교련 공동회장, 이준원 전 국교련 공동회장)
 사무총장(최백렬 전북대학교)에 대한 인준안이 원안대로 통과
 - 2010년 국교련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원안대로 통과

안건토의 2 : 국교련 연간회의 일정

- 6월 임시총회 전남대 우선 고려(불가능할 경우 전북대, 전남대 12월로)
 8월 임시총회(워크숍 겸) 8월 20일 이후 제주대 개최 합의

안건토의 3 :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1)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응

- 중장기적으로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안 개발(정책위원장과 협력하여 경북대학에서 맡기로 함)
 - 경북대 안을 골격으로 추후 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국교련 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2)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대한 대응

- 성과연봉제에 대해 시급히 대처하기로 함.
 - 성과연봉제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강구: 상임회장이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 중단 가능성, 소송 제기시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회원교 분담금 각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후 회원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함.
 - 교과부에 항의 공문 발송, 항의 방문, 성명서 작성 및 국교련 회원교의 전체 교수 대상으로 서명받기로 함. 서명 문안은 상임회장과 정책위원장이 초안을 만들어 전체 회원교의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문안을 만들고, 가능한 많은 수의 서명을 받도록 결의함.
 - 중장기적으로 독소조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급여체계에 대한 대안 연구
 - 국교련 주최 토론회 빠른 시일 내(5월 중)에 국회 또는 그 인근에서 개최
 정책입안자뿐만 아니라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을 포함. 일시는 가능한 빨리. 주최는 국교련.
 발제자는 오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 교수님께서 맡아 주실 것을 부탁.
 - 교과부 주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공청회>에 회원교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교수가 참여하여 성과연봉제에 도입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밝히기로 함.

안건토의 4 : 총장선거 관련 사항

- 충북대 김광렬 회장, 한밭대 이종원 의장, 공주대 송재일 의장으로부터 최근 총장선거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사항 청취

긴급안건 : 성명서 발표(첨부 참고)

- “무책임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일부 문구 수정 후 채택)

18시 30분 폐회

2010년 제 2차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6월 18일(금) 16:00 - 18:20

장 소 : 전남대학교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

성원보고 : 16개 대학(27명) 참석, 17개 대학 위임으로 개회

참석 회원교 및 참석자: 20개 대학(33명) 참석

* 6개 대학은 회장(의장) 위임을 받아 대리 참석(6명)

** 1개 대학은 회장(의장) 위임 없이 참석(2명)

*** 국교련 자문위원, 사무총장(총 3명) 참석

1. 강원대 교수평의회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2. 경상대 교수회장 마대영, 정책국장 최근배 3. 경인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창원 4. 광주교대 교수협의회장 김용조 5.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조현상 6. 목포해양대 평의회 의장 최주열, 교수 박찬수 7. 부경대 교수회장 최연욱, 총무이사 최순권 8. 부산대 교수회장 정용하, 학술 연구간사 김희재 9. 서울시립대 교수협의회장 이동훈 10. 인천대 교협회장 박보용, 총무 송상화 11. 전남대 평의회 의장 문 희, 부의장 전덕영, 서기간사 양형식, 기획간사 최영수 12. 전북대 교수회장 박병덕 13.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회장 이용주 14. 제주대 교수회장 고경표 15. 진주교대 교협회장 황규완, 총무위원 임종은 16. 충남대 교수회장 김필동 17. 충북대 교수회장 오원태 18. 한경대 교수협의회장 천만영 19.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 의장 양도원 20. 한국해양대 교수회장 이상태, 기획간사 설동일

대리(위임장 제출): 21. 강릉원주대 교수회 수석부회장 구자혁 22. 경북대 교수회 부의장 김형래 23. 부산교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정지윤 24. 안동대 교수평의회 부의장 노석호 25. 진주산업대학교 부의장 양금석 26. 청주교대 교수협의회 부회장 양창모

위임장 제출 없이 참석: 27. 한밭대 부의장 박덕용, 사무처장 우승한

국교련: 이준원(국교련 자문위원), 이시원(국교련 자문위원), 최백렬(국교련 사무총장)
(총 44명)

위임장 제출회원교: 강릉원주대, 경북대, 공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주대, 한국방통대

불참 회원교 : 공주대, 서울산업대

안건토의 1 : 국교련 교원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 대국회 투쟁방안으로 한국교총과 공조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및 전문위원) 면담
-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립대 공투위(국립대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차원에서 대처
- 교과부 항의 방문 및 이주호 차관 간담회 요구

- 총장협의회 회장(강릉원주대 한 송 총장) 면담(또는 간담회)과 관련해서는 상임회장이 강원대 김세환 의장, 강릉원주대 박찬일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
- 7월 중에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전달 (가급적 서명 인원수를 늘리도록 독려)
- 각 회원교에서는 교수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 7월까지 노력
- 각 회원교가 보유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대응 자료의 활용: 국교련 전체 회원교의 정보공유 차원에서 국교련 사무처에 자료를 송부해주면 회원교에 배포하여 모든 대학이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함
- 성과연봉제는 교수 처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면 합법적인 '교수노조' 설립의 필요성 제기 및 교수노조 설립을 위한 노력
-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근본적으로 급여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졸속성을 중심으로 반대 논리를 전개할 것
- 현재 상황만 고려하지 말고 미래 대학사회에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논리적 접근이 바람직하고, 자체적인 대학 경쟁력강화 차원의 대응방안도 제시해야 함
- 교과부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안건토의 2 :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

- 국교련 정책위원장
중심으로 준비한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을 8월 23일에 제주도에서 열릴 국교련 제3차 임시총회에 제시하여 이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도록 함

기타 안건토의

1. 제3차 임시총회 장소와 날짜 : 제주도에서 8월23일(월)~24일(화)에 열기로 함
2.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 재산 공개요청과 관련해서는 국립대 전체교수의 서명을 받기는 곤란하므로 각 회원교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임원진 서명으로 대체하기로 하며, 사교련에도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에 대해 반대 성명 발표 협조 요청하도록 함.

18시 20분 폐회

2010년 제 3차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8월 23일(월) 16:00 - 18:20

장 소 : 제주대학교 경상대 대강당

성원보고 : 26개 대학 참석, 13개 대학 위임으로 개회(총 80명 참석)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1. 강릉원주대 회장 박찬일 2. 강원대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3. 경북대 회장 김형기, 부회장 김형래, 부회장 이광호, 사무처장 전현수, 사무부처장 정하명, 사무부처장 이원화 4. 경상대 회장 마대영, 부회장 김연웅, 부회장 김정균, 부회장 차영길, 사무국장 차춘남, 정책국장 최근배 5. 공주대 회장 송재일, 부회장 박승철, 사무국장 박영순, 차기회장 최복길 6. 광주교대 회장 김용조 7. 목포해양대 의장 최주열, 부의장 최조천 8. 부경대 교수회장 최연욱, 부회장 박종운, 총무이사 최순권, 기획이사 김창수 9. 부산대 교수회장 정용하, 부회장 강정운, 학술 연구간사 김희재, 문화홍보간사 이민한, 강재호 10. 부산교육대 회장 김판수, 11. 서울시립대 회장 이동훈, 총무 김진원 12. 순천대 의장 박오복, 부의장 박병희, 사무처장 최용석 13. 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문희, 부의장 전덕영, 총무간사 양채열, 부회장 오상은, 기획간사 최영수 14. 전북대 교수회장 박병덕 15. 제주대 교수회장 고경표, 부회장 손명철, 총무 김영춘, 총무 김정섭 16. 진주교대 교협회장 황규완, 총무위원 임종은 17. 창원대 의장 정차근, 부의장 이수현, 부의장 조종주 18. 충북대 교수회장 오원대 19. 충주대 회장 이정일, 수석부회장 박정석, 부회장 이철원, 20. 한경대 교수협의회장 태범석 21. 한국교원대 교수협의회 의장 양도원, 총무 김영훈, 신임의장 이민부, 신임총무 김종우 22. 한국 방통대 회장 류수노, 총무 김희태 23. 한국해양대 교수회장 이상태, 사무처장 정대 24. 한밭대 의장 이종원, 부의장 박덕용, 부의장 진영택, 사무처장 우승환

대리(위임장 제출): 25. 안동대 부회장 노석호, 부회장 이화진, 정책국장 김석규

위임장 제출 없이 참석: 26. 경인교대 부회장 이명규

국교련: 김광렬(국교련 고문), 이시원(국교련 자문위원), 최백렬(국교련 사무총장), 채형복(세미나 발제) 이은성(전문위원)(총 80명)

위임장 제출 회원교 : 공주교육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목포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전주교육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불참 회원교 : 인천대, 진주산업대

안건토의 1 : 국교련 교원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 기존 전략 계속 추진하기로 함
- 단위대학별 대응 방안 모색(독소조항 최소화 방안 모색)
- 법적 대응조치는 김세환 공동회장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안건토의 2 :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구성

- 국교련 회장단, 박정운 서울대교수, 명재진 충남대교수, 채형복 경북대교수, 김형래 국교련 정책위원장 외 법학전공 교수 2~3명 추가(지역별 안배)하여 구성하기로 함.

18시 20분 폐회

2010년 제 4차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10월 15일(금) 15:30 - 18:30

장 소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성원보고 : 23개 대학 참석, 17개 대학 위임(1개 대학 위임 후 대리참석)으로 개회
(총 54명 참석)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1. 강릉원주대 회장 박찬일, 수석부회장 구자혁, 부회장 김백기 2. 강원대 의장 김세환, 부의장 임학태, 부의장 남시병,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운영위원 유영호, 운영위원 우종춘, 운영위원 김종순, 운영위원 홍억기, 운영위원 최형진, 운영위원 박일수, 운영위원 박경희 3. 경상대 회장 마대영, 정책국장 최근배 4. 경인교육대 회장 김창원 5. 공주대 회장 최복길, 부회장 박 호, 부회장 김병수 6. 광주교육대 회장 김용조 7. 목포대 의장 조현상, 8. 목포해양대 의장 최주열, 총무간사 김현수 9. 부경대 회장 최연욱 10. 순천대 의장 박오복 11. 안동대 의장 김시주, 부의장 노석호, 사무국장 윤재형 12. 인천대 회장 김성중, 부회장 박창화, 소위원 황명환 13. 전북대 회장 박병덕 14. 제주대 회장 고경표 15. 진주산업대 의장 권진택, 부의장 주옥수, 학사위원장 김충희 16. 춘천교육대 회장 신준식 17. 충남대 회장 김필동 18. 충북대 회장 오원태, 부회장 윤혜미 19. 충주대 회장 이정일, 위원장 정순석 20. 한경대 의장 태범석, 총무 이득환 21. 한국교원대 의장 이민부, 부의장 조민식, 사무총장 김종우 22. 한국해양대 회장 이상태, 사무처장 정 대 23. 한밭대 의장 이종원

국교련 자문위원 이준원, 사무총장 최백렬

대리참석(위임장 제출) : 24. 경북대 부회장 김형래, 사무처장 전현수

위임장 제출 회원교 : 경북대, 공주교육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서울교육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창원대, 청주교육대, 한국방송통신대

안건토의 1 : <고등교육법 개정>관련 활동 방향 및 일정

-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확정하기 전에 내용을 추가, 보완한다.
- 개정 작업과 관련한 향후 일정, 개정안 보완, 의원입법 소개의원 접촉 등을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에 일임한다.

-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홍보기간이 필요하므로 서명운동 여부는 각 회원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다만, 서명운동을 할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대안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건토의 2 :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

-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2시에 전체 회원교 회장/의장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 행정안전부를 향의 방문하고, 국교련이 취합해 놓은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명단을 전달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국교련 사무국에서 추후 통보)

- 11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연봉제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교련 전체의 의견 제출뿐만 아니라 각 단위대학 교수회/평의원회, 그리고 회원교의 개별 교수 차원에서 의견제출 시한까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도록 한다.
- 의견 제출 이후에 교과부가 성과연봉제 시행을 계속 추진할 경우 개별 교수님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 의지를 갖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국교련이 법적 대응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교수 1인당 1,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는 건에 대해 각 회원교는 10월 중에 학내 여론 수렴을 한 후 국교련 사무국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 후 후원금 모금 여부를 결정한다.
- 선진화 방안 반대 성명서 채택: 성명서의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하고, 성명서 발표 명단에 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입장을 존중하여 인천대를 제외한 39개교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다.(성명서는 첨부).

18시 30분 폐회

2010년 제 5차 긴급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11월 26일(목) 14:00 - 18:00

장 소 : 1부(회의) 서울대학교 두레문예관(67동) 1층 다향만당
2부(서울대공대위와 연합집회)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사회: 김형래 정책위원장

성원보고 : 12개 대학 참석, 15개 대학 위임(2개 대학 위임 후 대리참석)으로 개회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1. 경상대 회장 마대영, 정책국장 최근배 2. 공주대 회장 최복길 3. 광주교육대 회장 김용조 4. 부산대 회장 정용하 5. 서울대 회장 호문혁, 총무이사 황인규 6. 서울시립대 회장 정병호 7. 순천대 의장 박오복 8. 전남대 의장 문희, 부의장 전덕영 9. 전북대 회장 박병덕 10. 제주대 회장 양길현 11. 충북대 회장 오원태 12. 한경대 의장 태범석

대리참석(위임장 제출) : 13. 경북대 부회장 김형래, 14. 목포대 부의장 전철균,

대리참석(위임장 미제출) : 목포해양대 부의장 최조천, 평의원 최익창

안동대 부의장 노석호, 한국교원대 부의장 조민식

위임장 제출 회원교: 강릉원주대, 경인교육대, 금오공과대, 대구교육대, 부경대, 전주교육대, 진주교육대, 창원대, 청주교육대, 춘천교육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국교련 : 고문 김광렬, 전문위원 이은성(총 23명 참석)

<안건 토의 및 의결사항>

안건토의 1. 성과연봉제 법적 대응과 관련한 모금에 관한 건

안건토의 2.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및 개정 작업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에 관한 건

안건토의 1 + 안건토의 2에 대한 의결

1.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작업을 시작한다.
2. 성과연봉제 법적 대응 기금과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 기금을 함께 모금한다.
 - 1) 모금 기한은 2011년 2월말로 한다.
 - 2) 회원교별로 통장을 개설하여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다.

3) 입금액은 가능한 한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안건토의 3.

- 1)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대학본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 불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 2) 각 대학 총장에게,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각 대학의 성과평가지표(안)을 제출하지 말 것을 부탁하는 공문

위 두 가지 공문을 사무처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발송한다.

기타 안건토의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입법예고한 학장임명제 시도에 대해 회원교별 (상황에 따라서는 회원교의 단과대학별)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도록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반대 의견을 보내도록 한다.
2. 차기 임시총회는 전북대학교에서 12월 17일에 개최한다.
3. 2014 수능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 작성 및 발표는 상임회장과 정책위원장에 게 일임한다.

◆ 폐회

18:00

2010년 제 6차 임시총회

일 시 : 2010년 12월 17일(금) 15:30 - 19:50

장 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15:30 - 17:40)

휴회 및 이동(17:40 - 18:10)

속개: 벽계가든(18:10 - 19:50)

사회: 최백렬 사무총장

성원보고 : 18개 대학 참석, 16개 대학 위임(1개 대학 위임 후 대리참석)으로 개최

참석회원교 및 참석자

1. 강릉원주대 회장 박찬일 2 강원대 의장 김세환, 부의장 남시병, 사무총장 박인철, 사무총장 신기동 3. 경북대 의장 김형기, 부의장 김형래, 부의장 이광호 4. 경상대 회장 마대영, 사무국장 차춘남 5. 광주교육대 회장 김용조 6. 목포대 의장 조현상 7. 목포해양대 의장 최주열, 총무간사 김현수 8. 부경대 회장 최연욱 9. 부산교육대 회장 김판수 10. 순천대 의장 박오복, 부의장 박병희 사무처장 최용석 11. 안동대 의장 김시주, 부의장 노석호 12. 전남대 의장 문 희, 부의장 전덕영 13. 전북대 회장 박병덕 부회장 박병건 감사(차기) 김성주 14. 제주대 회장 양길현 15. 충남대 회장 김필동 16. 충주대 회장 권 일 상임위원장 정순석 17. 한국교원대 의장 이민부 사무총장 김종우 18. 한국 해양대 회장 이상태(총 18개 대학)

위임장 제출: 1. 경인교육대 2. 군산대 3. 금오공과대 4. 대구교육대 5. 부산대 6. 서울교육대 7. 서울대. 8. 서울시립대 9. 인천대 10. 전주교육대 11. 진주교육대 12. 진주산업대 13. 창원대 14. 청주교육대 15. 한경대 16. 충북대(대리 참석) 부회장 서관모(총 16개 대학)

국교련: 고문 김광렬(충북대), 자문위원 이준원(안동대), 자문위원 이시원(경상대), 사무총장 최백렬(전북대), 전문위원 이은성, 간사 안상욱

<안건 토의 및 의결사항>

안건토의 1.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활동을 위한 모금 세부 활동방향 및 일정

안건토의 3.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 서명 세부 활동 계획

안건토의 1 + 안건토의 3에 대한 의결

1)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청원 서명 운동에 많은 교수님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교련 사무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전체 회원교에 다시

한 번 발송한다.

2)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국교련 차원에서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를 적극적으로 만나 반대 입장을 전하고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3) 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고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에 전권을 일임한다.

안건토의 2. 행정안전부의 성과연봉제 수정안 입법예고 대응방안

행정안전부의 성과연봉제(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이 12월 9일(목)-14일(화)까지로 너무 짧다는 점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입법예고에 단순히 요식적인 행위에 그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입법예고해 의견수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성 공문을 발송한다.

기타 안건 토의 및 결과 :

1) 성과연봉제, 단과대학 학장 총장 임명제를 비롯한 소위 “대학선진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교련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성과연봉제가 만약 도입될 경우 국교련 차원에서 위헌소송 등의 법적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회원교에 발송한다.

2) 국교련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직 확대 개편안(정책위원회 확대, 홍보위원회 신설 등)을 2011년 1월 회장단회의(1월 21일 한국해양대학교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통보)의 논의를 거쳐 2011년 2월 정기총회(2월 17일 경북대 예정, 세부사항은 추후 통보)에 제시하여 최종 확정한다.

3) 서울대 교수협의회, 서울대 공대위, 국립대 공투위 등과 연대하여 서울대법인화 법 날치기 처리 무효화 선언 및 폐기 운동을 전개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여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그리고 국교련 제6차 임시총회에서 그러한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와 함께 결의문을 언론사에 배포한다.

폐회 19:50

<임시총회 사진자료>



제 1차 국교련 임시총회(부산대학교, 2010년 4월 9일)



제 6차 국교련 임시총회(전북대학교, 2010년 12월 17일)

4. 국립대 공투위 회의

2010 - 1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3월12일(금) 12시30분
- ▶ 장소 : 영등포 '수라명가'
- ▶ 참석 :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안태근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수석부분부장,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정순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차장,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김규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수석부분부장, 성정림 한대련 정책실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서울대공대위> 김세균 상임대표, 최갑수 운영위원장, 최무영 서울대 민교협 대표,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연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오준규 서울대 단과대연석회의 의장 <참관> 백선기 대학노조 군산대지부장

0. 국립대공투위와 서울대공대위 간담회

- 참가자 인사(위 참조)
- 공투위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대표 인사
- 서울대공대위 김세균 상임대표 인사
- 3월12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면담 보고(최갑수 교수)
 - 참석자 : 정세균 대표, 이미경 사무총장, 최재성 의원(교과위), 당 전문위원
 - 서울대공대위 요구 : 서울대법인화법 국회 상정 반대 및 국립대법인화 반대 민주당 당론 요구.
- 서울대공대위 주최 국회 토론회(국립대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논의
- 폐회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운영 건

-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1) 2010년 공투위 조직 확정 건

: 아래의 표와 같이 공투위 조직을 확정하다.

가. 공투위 상임대표로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을 선임하다.

나. 공동대표는 교수노조, 민교협,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위원장(대표)이 맡고 학생단체는 한대련, 학생행진, 교대 학생 단체와 협의해 공동대표를 선임하는 것으로 하다.

구분	이름	직책	소속
상임대표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전북대
공동대표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	순천대
	우희중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서울대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경희대
		학생	
고문	류진춘	2007년 공투위 상임대표	
	김원식	2008년 공투위 상임대표	충남대
	김광렬	2009년 공투위 상임대표	충북대
집행위원		국교련 사무총장	부산대
		국교련 정책위원장	전북대
		국교련 전문위원	전북대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위원장	인천대
	김미경	교수노조 사무국장	교수노조
	허용	교수노조 사무부장	교수노조
	최갑수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서울대
	김보경	민교협 사무국장	민교협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장화위원장	경북대
	안태근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장	한말대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수석부분부장	전남대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군산대
	박정순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차장	대학본부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방송대
	김규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수석부분부장	전북대
	배경범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부분부장	부경대
	안병성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처장	충주대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국공립대본부
집행위원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대학노조

(2) 2010년 공투위 분담금 건

- 2010년 분담금은 각 조직별 2백만원으로 하고 3월말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2010년 분담금 내역			
단체	분담금	납부	미납
국교련	1,600,000		
교수노조	200,000		

민교협	200,000		
공무원노조	2,000,000		
대학노조	2,000,000		
계	6,000,000	0	
* 통장 : 예금주 김일곤 / 512602-01-217371 / 국민은행			

안건2. 서울대공대위 주최 ‘국립대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건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 국회 토론회는 서울대공대위에서 요청한 대로 공동주최하기로 하다.
- 토론회가 열리면 참가를 적극 조직하기로 하다.
- 토론회 예산은 공투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토론회 실무 경비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집행위원장이 서울대공대위와 논의하기로 하다.

안건3. 1만인 서명 건 건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 각 조직은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서명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한다.

안건4. 기타 안건

(1) 공투위 워크숍

- 기타 안건으로 제출된 공투위 각 단체 연석회의는 폐기하고 아래의 일정으로 공투위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다.
- 날짜 : 4월16일(금) ~ 17일(토)
- 장소 : 대전 (장소는 공무원노조 대학본부에서 섭외. 계룡산 부근)

(2) 차기회의

- 날짜 : 2010년 4월16일
- 장소 : 대전
- 시간 :

국립대 공투위 워크숍

- ▶ 일시 : 2010년 4월16일(금) ~ 17일(토)
- ▶ 장소 : 충남대
- ▶ 참석 :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최백렬 국교련 사무총장, 이은성 국교련 전문위원,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김규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수석부분부장, 안병성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처장, 김지수 대학노조 충남대지부장,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투쟁계획 건

-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 국립대법인화반대 일상홍보물 제작(선전물, 소책자, 부채)
- 울산과기대 법인 대학 운영 실태 조사하기로 함.
- 국립대법인화 대안 자료 수집하기로 함.
- 국교련에서 한송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 면담하기로 함.

안건2. 기타 안건

(1) 차기회의

- 날짜 : 2010년 5월27일
- 장소 : 전북대 교수회 사무실
- 시간 : 15시

2010 - 2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5월27일(목) 15시
- ▶ 장소 : 전북대 교수회 사무실
- ▶ 참석 :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최백렬 국교련 사무총장,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수석부분부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김규수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수석부분부장,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을 6월 초에 추진한다.
- 공투위 일상 선전물 제작은 집행위원장에게 일임한다.
- 차기 회의는 6월24일(목)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한다.
 - 이후 공투위 회의는 매월 4째주 목요일 16시로 한다.
- 2010년 국토대장정은 국교련이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밝힘에 따라, 공투위 차원이 아니라 대학노조와 공무원노조가 논의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2010 - 3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6월24일(목) 15시
- ▶ 장소 : 교수노조 사무실
- ▶ 참석 :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최갑수 민교협 비상임 공동의장, 허웅 교수노조 사무부장,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수석부분부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김일곤 대학노조 정책실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 국교련, 국교련 임시총회 및 성과연봉제 관련 활동을 보고 하다.
- 서울대 공대위, 상임대표 최갑수 교수, 운영위원장 박배규 교수로 조직 개편 내용을 보고 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 김일곤 집행위원장이 제안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에 들어감.

<논의결과>

- 국회 교과위원회에 국립대 법인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적극 투쟁한다.
-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변재일 교과위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 차기 회의는 7월은 교과위원장 면담일로 하며 8월은 25일(수) 16시 공무원노조 사무실로 한다.

2010 - 4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8월24일(목) 11시
- ▶ 장소 : 국회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최갑수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 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 손병학 공무원노조 노보 기자,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1. <보고사항> - 교과위원장 면담 결과

- 날짜 : 8월25일 11시
- 장소 : 국회 교과위원장실
- 참석 :

↳ 교과위원장실 : 변재일 교과위원장, 김지환 보좌관, 여성 보좌관 1명

↳ 공투위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최갑수 민교협 비상임공동의장,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공무원노조 노보 사진기자,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 결과

↳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의 법안 논의 원칙이 있음.

↳ 모든 법안은 합의처리한다.

↳ 민주당 반대 당론 법안은 논의하지 않는다.

↳ 한나라당 당론 법안도 논의하지 않는다.

↳ 여야 간사가 합의한 법안은 논의한다.

↳ 의원 개인이 반대하는 법안은 논의한다.

↳ 현재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법안은 민주당 당론이 반대임

↳ 따라서 민주당 중앙에서 논의하자고 하지 않는 한 상임위에서 논의 하지 않겠음.

↳ 그리고 현재 제출된 서울대법인화법은 문제가 있기에 서울대와 교과부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함.

↳ 답변이 오면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함.

↳ 결론은

↳ 서울대법인화법은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법이며
↳ 서울대를 법인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법은 단지 법인화를 위한, 목적은 없고 수단만 있는 법이기에 반대한다는 논리
↳ 즉 국립대를 법인화하려면 국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나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서울대법인화법에는 없다는 것.

↳ 그러나 재정회계법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함.
↳ 단, 현재 법안 그대로는 아니고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안이 보완되면 재정회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임.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논의결과>

1. 국회 교과위 위원장실에 재정회계법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출한다.
2. 모든 교과위 의원을 방문해 법인화 반대를 설명한다.
3. 안민석 교과위 민주당 간사 간담회를 추진한다.
4. 차기 회의는 9월30일 16시 공무원노조사무실에서 연다.

2010 - 5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9월30일(목) 16시
- ▶ 장소 : 공무원노조 회의실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이안태근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본부장, 정상춘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수석부분부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강미경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부분부장,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참관 : 김연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논의결과>

1. 국공립대 순회 투쟁을 원안을 일부 수정해 진행한다.
2.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10월5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
3. 국공립대학 중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10개 대학의 공투위 소속 단체는 국정감사 당일 법인화 반대 피켓팅을 진행한다.
4. 서울대법인화법 상정 시 상경투쟁을 진행한다.
5.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성명서를 만든다.
6. 10월12일 서울대 공대위 주최 '서울대 발전방향 토론회' 공투위 가 단체는 참여를 조직한다.
7. 차기 회의 : 10월28일 16시



사진: 국교련 상임회장 국회앞 1인시위

2010 - 6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11월4일(목) 16시
- ▶ 장소 : 교수노조 회의실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김철홍 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 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박정순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차장,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 안건2. 국립대 재정회계법 상임위 상건 건

<논의결과>

1. 국공립대 순회 선전은 희망하는 대학을 진행한다.
2. 11월25일 서울대 순회 선전은 집행위원장이 서울대공대위와 당일 세부 일정을 확정해 공지하면 공투위 각 조직은 최대한 조직한다.
3.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투위 소속 각 조직은 민주당(교과위원장, 교과위 민주당 간사)과 면담을 추진한다.
4. 공투위 각 조직 대표들의 민주당 면담을 추진한다.(집행위원장).
5. 공투위 각 조직은 재정회계법 관련 서명지를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한다.
6. 차기 회의 : 11월25일 15시30분 서울대.

2010 - 7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0년 12월15일(목) 17시
- ▶ 장소 : 대학노조 회의실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강동욱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조직국장, 백선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당선자,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안건2. 기타 안건

<논의결과>

1. 집행위원장은 12월24일까지 공투위 투쟁계획(안) 담긴 차기 회의 자료를 작성, 회람하도록 한다.
2. 차기 공투위 회의는 2011년 1월5일 16시 교수노조 사무실에서 연다.
3. 각 대학에 법인화 관련 자료를 보충 제작해 배포한다.
4. 공투위는 민주노총 등 제 사회 단체와 연대투쟁이 가능하도록 조직한다.
5. 국회 앞 1인 시위는 공투위 투쟁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한다.
6. 차기 회의 : 2011년 1월5일 16시 교수노조 회의실.

III. 2010년 국립대 공투위 송년회 참석 보고

- 참석 13명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강동욱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조직국장, 장백기 대학노조 위원장,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 백선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당선자, 김지혜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 사무차장, 정혜원 한대련 정책실원,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서울대공대위(김세균 교수, 최갑수 교수,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2011 - 1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1년 1월5일(수) 16시
- ▶ 장소 : 교수노조 회의실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서관모 교수노조 부위원장, 허웅 교수노조 사무국장, 문완식 공무원노조 대학본부 사무처장,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백선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 참관 서울대 학생(조영태)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II. 논의안건

안건1. 2010년 국립대공투위 하반기 투쟁 건

안건2. 기타 안건

<논의결과>

1.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농성 투쟁 건

↳ 서울대공대위가 설치한 농성장에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국립대 공투위 각 조직이 순번을 정해 결합한다.

↳ 공투위 순번 : 대학노조 - 공무원노조 - 국교련 한대련 - 교수노조/민교협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국립대공투위	
날짜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대학노조	
날짜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공무원노조	
날짜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국교련	
날짜	31일	1일	2일	3일	4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설 연휴			
날짜	7일	8일	9일	10일	11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한대련	
날짜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교수노조/민교	

					협	
날짜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2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서울대공대위	공투위 회의	

↳ 시간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 ~

↳ 농성장 프로그램은 서울대공대위와 협의해 선전전,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2. 공투위 1인 시위는 1월17일부터 시작한다.

↳ 장소 : 교과부/ 시간 : 11시30분 ~ 13시30분까지

↳ 1인 시위 당일 담당 조직은 국회 선전전을 병행한다.

↳ 1인 시위 피켓 내용은 국립대선진화 방안 내용을 포함해 집행위원장이 제작한다.

↳ 순번 : 서울대공대위도 주 1회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대학노조	서울대공대위	공무원노조	한대련	국교련/민교협/교수노조	

↳ 내용 - 내용 : (크기 : 60 * 900)

→ 앞면

<p>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은 원천 무효입니다!</p> <p>‘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날치기 주범 이주호 장관 퇴진!</p> <p>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교협,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민교협, 서울대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총학생회)</p>
--

→ 뒷면

<p>국립대를 사립화하는 ‘국립대법인화’ 반대한다!</p> <p>등록금 폭등법! 등록금 폭등법! 지역 국립대 몰락 법 서울대법인화 폐기하라!</p> <p>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교수노조, 민교협,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한국대학생연합)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민교협, 서울대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서울대총학생회)</p>
--

3. 각 대학에 현수막 달기

↳ 공투위 모든 조직은 해당 대학에 1월17일부터 현수막을 붙인다.

↳ 현수막은 해당 대학에 공투위가 조직되어 있으면 공투위 명의로 한다.

↳ 해당 대학에 공투위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각 조직 명칭으로 한다.

- 내용 : 예시 아래

↳ 대학노조 用

날치기 한나라당 해체!	공교육 몰락! 국립대학 사립대학화!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대학 기업화! 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 폐기하라! 국립대법인화시도 결사 반대한다! 전국대학노동조합 00지부	공교육 몰락 이명박 OUT!
--------------------	---	--------------------------

날치기 한나라당 해체!	공교육 몰락! 국립대학 사립대학화!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대학 기업화!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날치기 주범 박희태(국회의장)·이주호(교과부장관)·이명박 퇴진하라! 전국대학노동조합 00지부	공교육 몰락 이명박 OUT!
--------------------	--	--------------------------

↳ 다른 조직 用

공교육 몰락! 국립대학 사립대학화!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대학 기업화! 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 폐기하라! 국립대법인화시도 결사 반대한다! 00000000

공교육 몰락! 국립대학 사립대학화!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대학 기업화!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날치기 주범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하라! 00000000000000
--

↳ 각 조직은 현수막 붙착 현황을 파악해 집행위원장에게 보고한다.

4.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촉구 및 국립대법인화 반대 100만 서명건은 3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2월 공투위 회의 때 논의한다.
5. 서울대법인화법폐기, 국립대법인화 및 국립대선진화방안 저지를 위한 교육 주체 결의대회를 3월에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2월 공투위 회의 때 논의한다.
6. 공투위 소속 각 조직은 그동안 발표한 성명서를 집행위원장에게 발송, 공투위는 성명서 모음집을 발간한다.
7.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과 연대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회의 자료의 신문광고(안)은 폐기한다.
8.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공무원노조 고문 변호사를 통해 공투위의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 여부를 검토해 진행한다.
9. 차기 회의는 2011년 2월7일(월) 16시 서울대공대위 농성장에서 연다.

2011 - 2차 국립대 공투위 회의

- ▶ 일시 : 2011년 2월7일(월) 16시
- ▶ 장소 : 서울대공대위 천막 농성장
- ▶ 참석 : 박병덕 공투위 상임대표, 공무원노조 이태기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대학노조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 한대련 최동수 정책실원, 서울대공대위(최갑수 교수, 박배균 교수, 김연옥 대학노조 서울대지부장,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수진 서울대총학생회)

I. <보고사항>

- 서면으로 대체하다.
- 국교련 : 2월17일~18일 차기 상임대표 선거(경북대)
- 공무원노조 : 대학본부장 사퇴로 정상춘 수석본부장 직무대행, 2월17일 한국사회포럼(서강대 다산관) 때 법인화 관련 토론회 준비 중
- 대학노조 : 교과부 1인 시위 및 현수막 달기 진행 중
- 한대련 : 2월11일~12일 한대련 의장 선거 및 11일 국공립대학생 공동행동 집회(12시, 여의도 국민은행)
- 서울대공대위 : 2월15일 문화제 진행(16시), '동문' 총장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2.15 총장 면담예정), 서울대법인화 관련 25문25답 선전물 제작 중

II. 논의안건

- 안건1. 국립대법인화 반대 투쟁 건
- 안건2. 기타 안건

<논의결과>

1. 서울대공대위 농성장에 공투위 각 조직은 매주 금요일 순번을 정해 결합한다.
 - ↳ 공투위 순번 : 대학노조 - 공무원노조 - 국교련 한대련 - 교수노조/민교협
 - ↳ 시간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30분 ~
 - ↳ 농성장 프로그램은 서울대공대위와 협의해 선전전,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2. 공투위 1인 시위는 2월14일부터 국회 앞으로 옮겨 진행한다.
 - ↳ 장소 : 국회 앞/ 시간 : 11시30분 ~ 13시30분까지
 - ↳ 1인 시위 당일 담당 조직은 선전전을 병행한다.
 - ↳ 순번 : 서울대공대위도 주 1회 결합할 것을 제안한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대학노조	서울대공대위	공무원노조	한대련	국교련/민교협/교수노조	

3. 각 대학에 현수막 달기
 - ↳ 공투위 모든 조직은 해당 대학에 1월17일부터 현수막을 붙인다.
 - ↳ 현수막은 해당 대학에 공투위가 조직되어 있으면 공투위 명의로 한다.
 - ↳ 해당 대학에 공투위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각 조직 명칭으로 한다.

4.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촉구 및 국립대법인화 반대 서명 건

- ↳ 시기 : 2011년 3월1일 ~ 3월31일까지 1차 서명 진행
- ↳ 목표 : 최대치
- ↳ 서명지는 제목만 통일하고 조직별로 제작한다.
 - ↳ 서명제목 :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청원 및 국립대법인화·국립대선진화 방안 반대 서명지
 - ↳ 서명이 완료되면 공투위에서 일괄처리 한다.

5. 서울대법인화법폐기, 국립대법인화 및 국립대선진화방안 저지를 위한 교육 주체 결의대회

- ↳ 날짜 : 4월9일(토)
- ↳ 장소 : 국회 앞
- ↳ 시간 : 15시
- ↳ 내용 :
 - ↳ 서울대공대위, 공동행동 등과 협의해 차기 공투위 회의 때 집회 방식을 최종 확정한다.
 - ↳ 비용 또한 위 단체들과 분담금을 협의해 차기 공투위 회의 때 확정한다.

6. 공투위 소속 각 조직은 그동안 발표한 성명서를 집행위원장에게 발송, 공투위는 성명서 모음집을 발간한다.

7. 서울대법인화법 폐기 헌법 소원 건
- ↳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공무원노조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헌법소원 제기 당사자는 서울대 구성원이어야 함.
 - ↳ 헌법소원 소송비용은 500만원 가량 소요됨.
 - ↳ 이후 보충 자문 및 서울대공대위와 논의를 통해 헌법소원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한다.

8. 가칭 ‘국공립대법인화 저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

- ↳ 국립대 공투위 소속 각 단체별로 결함 여부를 결정한다.
- ↳ 공동행동과 국립대공투위는 최대한 협조해 서울대법인화법폐기 및 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에 공동 연대한다.

9. 차기 회의는 2011년 3월10일(목) 16시에 연다.
- ↳ 회의장소는 국교련 차기 회장과 논의해 결정한다.
 - ↳ 차기 회의는 집행위 + 공동대표자 연석회의로 한다.
 - ↳ 국교련 상임대표, 민교협 상임의장, 교수노조 위원장, 공무원노조 위원장, 대학노조 위원장, 한대련 의장 필참.

5. 의원 면담

변재일 국회 교과위원장 면담 결과

일 시 : 2010년 9월 10일(금) 16:30 - 17:20

장 소 : 충북 청원군 변재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참석자 1. 박병덕(국교련 상임회장), 2. 오원태(충북대 회장), 3. 윤혜미(충북대 부회장), 4. 김광렬(국교련 고문), 5. 이준원(국교련 자문위원), 6. 이민부(교원대 교협회장), 7. 김필동(국교련 감사), 8. 최복길(국교련 공동회장), 9. 최백렬(국교련 사무총장) / 변재일 의원, 조민형(변재일 의원 보좌관)

면담 내용 및 결과

안건 설명 1 :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참고 자료 제출)

안건 설명 2 : 국립대 법인화 문제점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참고 자료 제출) 의원 입법 요청
위 안건에 대해 박병덕 회장, 오원태 회장, 김광렬 고문, 김필동 의장, 이준원 자문위원 등이 줄속 시행과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면담 주선을 요청함

변재일 의원 답변

- ① 교원의 성과 측정이 힘들 것임
- ② 교수들의 반대는 당연함
- ③ 도입한다 해도 보완된 후에 해야 마땅함
- ④ Zero-Sum 게임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으로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
- ⑤ 교원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 대해 질문함 - 김필동 회장이 유럽,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지의 경우에 대해 설명함

17시 20분 폐회



사진: 변재일 위원장 면담(2010-09-10)

유성엽 의원(국회 교과위) 면담 결과 보고

일 시 : 2010년 10월 1일(금) 13:00 - 13:50

장 소 : 국회 유성엽의원 사무실

참석자

1. 박병덕 상임회장, 2. 최백렬 사무총장 3. 유성엽 의원(무소속)

면담 내용 및 결과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성과연봉제, 국립대 선진화방안의 문제점

위 안건에 대해 박병덕 회장이 자세히 설명하고 유성엽 의원이 문제점에 대해 질문

유성엽 의원 의견

- ① 국립대 법인화의 문제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결과(장단점)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실시해야 함
- ② 일본의 경우 성공적이라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됨
- ③ 각 대학에서는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교과위 소속)을 상대로 설득하고 압력을 가해야 할 것임
- ④ 공청회를 자주 개최하여 찬, 반, 중립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공론화 작업이 필요
- ⑤ 국회(교과위)차원에서 공청회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으니 국교련에서도 적극 참여 부탁

13시 50분 폐회



사진: 유성엽의원 면담(2010-10-01)

6. 공동기자회견 거점국립대교수회장단 공동기자회견

▲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 저지를 위한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단 공동기자회견이 17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려 제주대 고경표, 경상대 마대영, 전남대 문 희, 부산대 정용하, 전북대 박병덕, 충남대 김필동, 경북대 김형기, 충북대 오원태, 강원대 김세환 교수(왼쪽부터)가 회견을 하고 있다. 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



거점 국립대들이 법인화 전환여부를 둘러싸고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충남대 등 국립대 측이 장기적인 학교 발전과 경쟁력 확충을 위해 법인화 전환의 타당성을 역설하며 준비작업에 들어가면서 국립대 교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법인화 추진에 반대하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또 각 국립대별로 대학구성원 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총장선거 등 정치적인 목적과 연계된 파워게임 양상으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전국 거점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충남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국립대 총장들에게 법인화 추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남대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등 전국 9개 거점 국립대 교수회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는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국가가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장들은 "법인화 전환 시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거점국립대 총장님들에게 드리는 긴급제안'을 통해 "국립대 교원의 급여체계를 바꾸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관련 대다수 교수들의 뜻에 따라 교과부가 이 체도를 도입

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와 함께 '성과급적 연봉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은 당분간 법인화 전환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과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인화 논란이 학내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것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법인화 추진 여부가 총장선거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선거 판도까지 뒤흔든 것으로 알려질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립대 법인화 전환 논쟁은 대학의 경쟁력과 학문 발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학내 입지 강화와 정치적인 목적 등을 위한 매개체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l15@cctoday.co.kr

7. 행정안전부 방문

행안부 항의성 방문 및 성과연봉제 반대 의견 전달 결과보고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14:00 - 14:50

장 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1316호)

참석자 : 22명

1. 구자혁(강릉원주대, 수석부회장), 2. 박인철(강원대 사무총장), 3. 김형래(경북대, 부회장), 4. 마대영(경상대 회장) 5. 최근배(경상대, 정책국장), 6. 최복길(공주대 회장), 7. 김용조(광주교대, 회장), 8. 조현상(목포대, 의장), 9. 김현수(목포해양대, 총무), 10. 김관수(부산교대, 회장), 11. 박오복(순천대, 의장), 12. 노석호(안동대, 부의장), 13. 박병덕(전북대, 국교련 상임회장), 14. 고경표(제주대, 회장), 15. 김필동(충남대, 회장), 16. 오원태(충북대, 회장), 17. 태범석(한경대), 18. 이민부(한국교원대, 의장), 19. 이상태(한국해양대, 회장), 20. 이종원(한밭대, 의장), 21. 이준원(안동대, 국교련 자문위원), 22. 최백렬(전북대, 국교련 사무총장)

참관인: 한국교총: 김재철(한국교육정책연구소 사무국장, 정책개발국 선임팀장)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 이동주 기자

교수신문: 교육보도부 권형진 기자

연담자 : 김진수(행정안전부 성과급여기획과, 과장), 김두용(교육과학기술부, 선진화과 팀장)

반대서명 전달 결과보고

- 김진수 과장에게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 반대 성명서 및 서명자 명단(8,927명)을 전달
- 국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박병덕 상임회장이 자세히 설명
- 김필동 충남대 의장, 이준원 국교련 자문위원, 이상태 한국해양대 회장이 부연설명 및 문 제점 지적

14시 50분 폐회

14시 50분 - 15시30분 : 종합청사 1층 My⁰C 커피숍에서 이후 일정과 관련하여 좌담

1. 11월 19일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유성에서 개최하지 않고 회원교 전체가 참여하는 확대 회장단 회의 형식으로 서울대학(또는 서울지역)에서 개최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음. -

교과부 앞 1인 시위, 대중집회 등 다양한 형식의 대응 방식을 고민하기로 함.

2. 11월 1일까지는 우선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사이트에 들어가 성과연봉제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함.

15시 30분 산회



사진: 행정안전부 황의성 방문 및 성과연봉제 반대 의견 전달(2010. 10.25)



◇ <사진=민주당>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통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대, 국립대 교수 등이 9일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통과 규탄 대회를 갖고 있다.

8.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

박희태 국회 의장과 한나라당의 '서울대법인화법' 직권 상정 및 날치기 규탄 결의대회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일시 : 2010년 12월9일 13시30분

순서 :

- 사회 : 이태기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장화위원장
- 참가자 소개
- 각 단위 대표자 발언
 - 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②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 ③ 김영진 민주당 의원(교과위원)
 - ④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
 - ⑤ 최감수 서울대 공대위 대표
 - ⑥ 우희종 민교협 대표
 - ⑦ 양성운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⑧ 이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
 - ⑨ 안민석 민주당 의원(교과위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당 김상희 의원,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

<주요구호>

- 직권상정, 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 반대한다!
- 직권상정 날치기 국회의장 사퇴하라!(한나라당 해체하라!)
- 등록금 폭등, 지방대학 몰락, 서울대법인화법, 반대한다!
- MB 정부, 공교육 포기 선언, 서울대법인화법 폐기하라!
- 등록금 폭등, 서민경제 파탄, 서울대법인화법 폐기하자!
- 서울대 법인화 저지하고 공교육을 사수하자!
- 공교육을 말살하는 서울대 법인화 중단하라!

<참석자>

- 민주당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안민석 의원(민), 김영진 의원(민), 김상희 의원(민), 이낙연 의원(민), 이찬열 의원(민), 최재성 의원(민), 김우남 의원(민), 박기춘 의원(민), 박병석 의원(민), 최인기 의원(민), 오영민 의원(민), 유선호 의원(민),

최규성 의원(민), 김진애 의원(민), 김춘진 의원(민), 변재일 의원(민), 강창일 의원(민), 김재윤 의원(민), 유성엽 의원(무소속) 등 21명

- 민주노동당 : 권영길 원내대표
- 진보신당 : 김은주 부대표
- 교수노조 : 강남훈 부위원장 등
- 민주화를 전국교수회협의회 : 우희중 상임공동의장
-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 최백렬 사무총장
- 서울대법인화 반대 공대위 : 최갑수, 김세균 대표 등)
- ↳ 서울대민교협, 서울대총학생회(이지운 회장 등 100여명), 서울대공무원노조 (정용철), 대학노조 서울대지부(김연옥) 등
- 공무원노조 : 양성운 위원장, 회복투 동지 40여명, 공무원노조 6명 대학본부 정상 수석 부분부장 등 4명 등 50여명
- 대학노조 : 전태산 본부장 등 50여명
- 한 대련 등 10여명 총 300여명

규탄결의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국립대학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136-021)서울 성북구 성북1동 8번지 다우빌딩 4층 전화 : 02-765-6291 팩스 : 02-766-3962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담당 기자

발신 : 안민석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담당 비서관 / 010-2707-5907)

박병덕 국립대 공투위 상임대표(전북대 교수회 의장 / 016-9877-2726)

김일곤 공투위 집행위원장 (대학노조 정책실장 / 010-2732-9438)

제목 :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및 날치기 규탄대회

<결의문>

서울대법인화법 직권상정 박희태 국회의장 사퇴하라!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한나라당 해체하라!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이 공모해 12월8일 서울대법인화법을 불법으로 직권 상정 처리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이 법률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전국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어제 직권으로 상정한 서울대법인화법은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오후 5시36분 법안 상정에서 5시37분 투표결과 발표까지 1

분도 걸리지 않은 채 통과되고 말았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서울대법인화법은 국립대인 서울대를 사실상 사립대학화 하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서울대에 대한 독점적 지원으로 인한 지방대 몰락과 지역균형발전 저해, 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한 법이다.

서울대법인화법은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결과는 국립대학교 위의 국립대학교였던 서울대학교가 그간의 독점적인 지위와 권력을 유지한 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사실 교육기관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이다. 또한 6년전 국립대 법인화를 먼저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인화가 결국에는 대학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줄이고, 더 많은 국립대학을 설립, 재정확대를 통한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며 국민들과 함께 서울대법인화를 사회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즐기차게 반대해왔다. 서울대법인화법의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국회 교과위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즐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중단해온 것이다.

법안 자체가 우리 사회 공교육을 몰락시키는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어 폐기해야 마땅하기에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을 국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시킨 것은 정상적인 논의로는 도저히 법안 통과가 불가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부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 부의장, 이주호 교과부장관, 안상수 한나라당대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우리 사회의 공교육 몰락을 앞장선 ‘교육 6적’으로 선포한다. 이들은 공교육 확대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공교육을 몰락시킨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서울대법인화법의 폐기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교수·학생·직원·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대법인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의원에게 대해서는 2012년 총선에서 공교육 몰락의 주범으로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2011년 서울대총학생회, 법인화반대 서울대 공대위 등 서울대학교 구성원과 적극 연대해 서울대가 국립대학임을 포기하고 ‘법인화된 서울대학’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불법적으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를 뒤쫓아 다른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0. 12. 9.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야3당 및 무소속 의원 일동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II. 정책자료

1. 국립대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책연구팀

I. 자율적인 국립대학교의 전제조건

1. 국립대 자율성의 의의

국가공동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나 어떠한 사회세력 또는 경제세력도 좌지우지 못하는 지성의 개발이 필수불가결하다. 한 시점의 정치권력과 사회적·경제적 세력이 장래의 모든 지성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면, 더 이상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권력과 사회적·경제적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지성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비판정신과 혁신적 사고를 항상 재생산하는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존재는 사회의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이념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립과 기초학문의 보호에 있다. 89년 민주화 시대이후 고등교육의 주도자로서의 국립대학의 위상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취업위주의 교육, 대학운영의 상업화로 인해 크게 추락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등장은 시급한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자율적인 국립대학은 대학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시대비평적 기능을 유지하며 미래사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철학적 존재이유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에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 대학을 설립하여, 적어도 그 국립대학에서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은 한 시대의 정치권력과 사회적·경제적 세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대학운영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며, 목전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익과 무관하게 다양한 학문분야를 육성함으로써 문화국가의 百年之大計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적인 국립대의 다른 핵심적인 요소는 운영재정의 국가지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예산만이 특정한 권력이나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대학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에게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불가결하다. 자기 책임 하에 자신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때 비로소 그 자금지원의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국가의 학문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에 있어 필요한 자원의 사용목적이나 방법은 대학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전제조건

(1) 대학 학문연구의 자율성

대학은 학문연구를 위한 독립적 자율적 조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립대학은 상급기관인 교과부의 단순 하급행정기관들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교과부의 현재와 같은 포괄적 감독권은 사라지고 법에 분명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학행정에 간섭하여야 할 것이다. 법적 근거가 포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태도이다.

(2) 대학 인사 및 조직의 자율성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나 단과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경우 등에 있어 대학구성원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대학과 단과대의 장을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 내 주요 보직과 신임교수 선임에 있어서의 자율권은 대학 자율성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과거 관선총장에 의한 운영은 더 이상 미래 대학운영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국립대의 자율적인 인사권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

대학의 입학전형에 있어 국가의 간섭은 최소한에 그치고 입학전형의 기준과 심사를 대학에 위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이 특성화에 따른 다양한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성공은 재정주체성의 확보 여부에 직결되어 있다. 자율적인 국립대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은 국가로부터 예산과 국

유재산을 배정받는 측면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예산과 자체수입금을 지출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독립된 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대학의 재정은 학문 활동 그 자체는 아니지만 ‘학문의 자유’ 실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대학의 자율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대학의 재정주체성을 고등교육법상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국립대학교의 내용

1. 헌법상의 대학자치 이념

(1) 대학자치(자율성)의 개념과 기능

대학의 자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2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표현되어 있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대학의 자유’의 실현수단인 동시에 그 본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에 의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교육에 관한 기본권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또 한 번 명문으로 강조하는 것은 오늘의 전문화된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고급인력의 양성과 학문발전을 위해서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크기 때문이다.

대학자치는 전통적으로 학문연구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기본권과 제도보장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학문의 장인 대학이 자유롭고 창조적인 진리탐구를 위하여 외부의 공권력이나 대학의 설치관리자 등 사회적 세력에 의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 보장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은 우선 학문연구가 제한받게 되는 경우 자신의 조직 구조들에 대한 침해에 대해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대학의 자치는 방어권적 성격과 아울러 객관적 가치의 성격을 갖는다. 즉 국가는 대학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진흥하기 위한 적극적 입법의무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학문연구 자유의 객관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입법 의무는 입법자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국가보호의무의 최소한의 보장이 침해되는 경우에 한해 위헌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2) 대학 자치의 내용과 본질

(가) 대학 자치의 내용

대학의 자유는 대학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대학운영에 대한 국가의 간섭·조정·침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대학의 자주적인 결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자치의 영역은 대학인사·대학학사·대학질서·대학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학 자치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진흥과 문화창달을 위하여서는 적어도 대학에서는 교육의 자치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학의 자치라 함은 대학이 인사문제를 비롯하여 대학의 관리 및 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관하여 자주적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결 1992.10.1. 92헌마68).

대학운영에 관련된 중요 분야에서의 간섭 없는 자주적 결정권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자유는 기본권주체인 대학의 주관적 공권성에서 도출된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는 궁극적으로 학문연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학문연구의 범위 내에서의 자치를 의미하며 이를 벗어난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대학자치의 제도적 보장으로서 대학자치제도의 핵심요소보장, 대학자치보호를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대학자치제도의 핵심요소로서는 첫째, 대학 규칙의 제정, 둘째, 교수 및 직원 임용, 셋째, 대학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넷째, 대학 재정 운용, 다섯째, 교수 등 연구인력의 학술연구 및 사회봉사활동, 여섯째, 학생선발·교육·지도, 일곱째, 학내질서유지 등에 관한 자율적인 결정과 동 결정의 집행이 포함된다.

(나) 대학자치의 본질

대학의 자유에 내포되고 있는 제도적 보장은 학문 자유의 증대수단으로서의 제도적 보장이고, 그 헌법 이론적 근거는 학문의 자유에 내포되고 있는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 자치의 본질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학술활동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대학의 자유는 학문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대학 자치의 근거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대학자치의 한계

대학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의 내부기구로서 설치하는 각종 보직·위원회·교수회·학생회 등의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조종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대학기관들은 원래의 목적인 학문연구를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학문의 자유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직이어서 학문의 자유가 갖고 있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간섭배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대학의 인사·학사·재정·질서 등의 사항에 관한 학생회의 발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모든 대학 내의 기관구성에 있어 교수들과 동등한 비율로 참여해야한다는 주장은 올바른 대학자치의 이해와 어긋나는 것이다. 대학의 자치는 학문연구의 실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형태에 관한 민주주의원리를 대학 내에서 실험해 보기 위한 것은 아니다.

(4) 한국 대학자치의 현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상 대학의 자치에 대한 보호규정(제34조 제4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인 하위법률의 내용은 이와 매우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대학자치의 주요 분야인 대학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대부분 대학교원의 참여가 배제된 채 대학 총장의 전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등교육법 제6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대학에 있어서의 운영 중심자를 학교의 장 1인에 한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대학은 현재 전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직 대학의 장의 지도와 지휘에 의해 운영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학규칙의 제정에 구성원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위로부터의 하향식 의사전달 구조만을 지니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이 주로 행정적 감독(입학자격, 학위수여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대학의 자치를 손쉽게 행정권에 의해 제한되도록 한 것으로 헌법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고등교육법 제5조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행사로써 현행 법률은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제한의 한계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문제가 있는 규정이며, 행정 편의적 규정이라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상의 대학의 자율성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법체제는 구체화입법이 미비해 보인다. 특히 대학자치의 주체에 대한 규정, 대학자치의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 의사결정의 적법절차규정 등도 매우 미흡하여 제도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인다.

2. 대학자치의 성격과 범위

헌법이 부여한 대학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의 자율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의 자율을 의미하며,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대학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재결 1992.10.1. 92헌마68; 1998.7.16.96헌바33; 2003.2.27. 2000헌바26).

3. 현행 고등교육법의 문제점

(1)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 결여- 신설 필요

현행 고등교육법은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위상에 관한 개념규정 없이 규

정들을 두고 있어 헌법이 추구하는 자율적 국립대의 모습을 담고 있지 않다. 국립대학의 올바른 개념 정의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하부기관화 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들은 헌법상의 자율적인 국립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자치의 구현이 국립대학을 통해 모범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라는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기초학문을 보장하고 국민의 고등교육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자치권을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행사해야 할 것이다”는 의무조항도 필요하다.

(2) 대학자치를 위한 기본요소 결여- 신설 필요

대학 자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대학자치를 위하여 구성원 합의에 의한 총장선출,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대학자치기구 설치 근거는 두어야 하겠다.

대학자치기구는 대학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최소한 대학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및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식은 대학의 형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3) 교과부의 포괄적 감독권 철폐 필요

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해 모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대학의 자치 및 자율과 충돌된다. 교과부장관의 대학에 대한 포괄적 지배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학교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지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도 내지 사전지휘 권한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은 완전히 부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감독이라는 표현은 대학의 ‘재량’사항에 대해서도 감독할 수 있다는 포괄적 표현이어서 지나친 국가개입조항이다.

교과부장관의 감독권한이 전문성(재량)감독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이 갖는 전문성에 의거한 ‘대학의 자율성’은 완전히 부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대학자치에 대한 감독은 법령위반여부에 그쳐야 하겠다.

(4) 대학의 재정주체성 확립 필요

대학의 재정과 관련 국고금관리법은 국가기관의 수입에 대해 직접 기관이 사용하지 못하고 국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은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사업에서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는데, 사립대학은 그 수입을 학교 재단을 통해 대학의 운영에 직접 재투자할 수 있는 반면, 국립대학은 수입금 전체를 국고에 납입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배정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한편으로 국립대학에 있어 수익사업의 동기와 의욕이 저하되고, 다른 한편으로 수입금을 대학운영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편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하며, 다른 국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자율성을 지닌 국립대학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고등교육법 개정안

(1) 개정 목적과 취지

모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현재의 고등교육법의 일반조항으로 인해 헌법적 기본권인 대학자치가 보장되지 못하고, 대학행정이 교과부 중앙행정의 단순 집행작용으로 전락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고등교육법은 헌법을 침해하는 체계적 모순을 담고 있고, 교육자치의 시대적 상황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헌법의 학문연구와 대학자율 관련 명령은 고등교육법의 후진적 구조로 인해 무시되어 왔으며, 이는 국가 고등교육의 중책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대학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국립대학교에 올바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작업이야말로 고등교육법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무시되었던 국립대학의 위상을 바로 찾고, 대학자율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2) 개정내용

가. 제5조의 개정(학교의 자율성과 감독)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최대한 존중된다.

② 학교는 법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5조의 2 신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

고등교육법에 주요기관인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관한 언급이 없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이다.

② 국립대학은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국민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은 대학자치의 권한을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

다. 제5조의 3 신설(국립대학의 운영기관)

국립대학의 핵심 운영기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대학에 대학의 장 및 대학자치기구를 둔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학칙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학자치기구는 대학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대학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라. 제5조의 4 신설(국립대학재정운영의 기본원칙)

국립대학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규정한다.

“① 국가는 대학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의 의무를 가진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장은 매년 수입금의 발생원인과 그 지출용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의 개정

대학입학전형 관해서는 고등교육법 등 법률에는 전혀 구체적인 규정이 없

고, 시행령에 의해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백지위임식 규정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많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판정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헌법 규정인 제31조 제5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할 경우 고등교육을 위한 학생의 선발 방법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을 전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교육법의 해당규정을 개정하여 법률에 대학의 장의 대학입학계획 작성권을 부여하여 대학자치의 기능을 제고토록 하였다.

(3) 신구조문 대비표

	구조문	신조문
제5조	<p>(지도·감독)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p> <p>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u>제5조의 개정(학교의 자율성과 감독)</u></p> <p><u>① 학교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최대한 존중된다.</u></p> <p><u>② 학교는 법령위반 여부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다.</u></p> <p><u>③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2항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신설	<p><u>제5조의 2 신설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의무)</u></p> <p><u>① 국립대학은 국가기관인 동시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대학의 자율권에 의거하여 학사·연구·재정 등 대학운영에 관하여 독립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적 주체이다.</u></p> <p><u>② 국립대학은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국민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평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u></p> <p><u>③ 국립대학은 대학자치의 권한을 사회정의의 구현에 기여하도록 행사하여야 한다.</u></p>
	신설	<p><u>제5조의 3 신설(국립대학의 운영기관)</u></p> <p><u>① 대학에 대학의 장 및 대학자치기구를</u></p>

		<p>둔다.</p> <p>② 대학의 장은 대학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학칙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p> <p>③ 대학자치기구는 대학의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대학자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5조의 4 신설(국립대학재정운영의 기본원칙)</p> <p>① 국가는 대학자치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의 의무를 가진다.</p> <p>② 국고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 대학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장은 매년 수입금의 발생원인과 그 지출용도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4조</p>	<p>(학생의 선발방법)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은 선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학생의 선발방법)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할 학생은 선발한다.</p> <p>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의 방법,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p>

2.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관련 자료

- 충남대학교 교수회 정책위원회 제공

2010년 7월 1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립대학 법인화 후의 현상과 과제에 대하여(중간보고)”라는 자료(이하 「중간보고」)를 발표하였다. 「중간보고」는 법인화 추진 주체인 문부과학성이 법인화 6년 후의 참모습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이고, 공식적인 통계 및 조사 자료들을 풍부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충남대학교 교수회 (정책위원회)는 이 자료 외에도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교직원 보수”에 관한 자료, “고등교육 예산”에 관한 자료, 각 대학별 공시자료(홈피), 세계대학 랭킹 자료 등을 실증적인 근거로 삼아, 법인화 6년 후 일본 국립대학의 암울한 실상(實相)의 일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1. 국고지원금(운영비교부금)은 2004-9년 사이에 6% 정도 삭감되었다.

‘운영비교부금’으로 불리우는 국고지원금은 국립대학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예산 총액(86개 대학+4개 연구기구)은 2004년의 1조 2416억엔에서 2009년에는 1조 1695억엔으로 약 6%가 삭감되었다. 이 기간 중 약간이라도 지원금이 증가한 대학은 11개에 불과했고, 그 액수는 미미했다. 동경대학도 예외는 아닌데, 이 기간 중 926.4억엔에서 878.84억엔으로 5% 이상 삭감되었다. 부속병원이 있는 동경대는 운영비교부금의 비중이 약 42%로 낮은 편이며, 부속병원이 없는 대학들은 그 비중이 60% 이상으로, 전체 예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교부금의 삭감은 재정상태에, 특히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교직원의 수와 보수(인건비)가 줄어들었다.

교직원의 수도 (부속병원 소속을 제외하면) 줄어들었다. 교원의 경우, 주목되는 것은 학부 소속 교원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대학원 소속 교원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대학원 교원의 수가 늘었다는 것은 대학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1990년대의 대학원 증점화 정책으로 교원의 소속이 대학원으로 바뀐 10개 내외의 상위권대학(東京大·京都大를 비롯한 7개의 옛 제국대학 + 東京工大, 一橋大, 筑波大 + 고베대, 히로시마대 등)의 교원수가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학부 소속 교원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나머지 대학(75개 내외)의 교원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많은 대학에서 퇴임하는 교원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원수에서도 대학간 격차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상은 모두 상근교원인데, 이 기간 동안 상근교원은 줄어든 데 비해, 비상근교원의 수는 늘어났다.

직원의 경우, 의료계 직원의 수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기타 직원의 수는 모두 줄어들었다. 특히 기술기능계 직원의 수가 줄어들었다.

[표1] 교직원(상근) 수의 변화 (부속병원 제외)

(단위: 억엔)

연 도		2004	2007	2009	2009-2004
교원 (소속별)	학부	25,356	18,862	16,540	▲ 8,816
	대학원	23,136	28,775	30,101	6,965
	교양부	54	117	112	58
	부설연구소	3,038	3,202	3,176	138
	부속병원	5,509	5,685	5,881	372
	기타 (센터 등)	3,490	3,996	5,060	1,570
	합계	60,583	60,637	60,870	287
직원 (계열별)	사무계	23,991	23,853	23,948	▲ 43
	기술기능계	7,955	7,437	7,083	▲ 872
	의료계*	22,253	28,067	31,462	9,209
	교무계	761	446	508	▲ 253
	기타	585	402	427	▲ 158
	합계	55,545	60,205	63,428	7,883

* 의료계는 대부분 부속병원 소속 직원임

한편, 같은 기간 중 (부속병원 소속을 제외한) 교직원의 보수(총액)는 2%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숫자가 크게 늘어난 비상근교직원의 경우를 포함한 것이므로, 상근교직원의 보수(총액)는 훨씬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2] 교직원 인건비 총액의 추이 (부속병원 제외)

(단위: 억엔)

연 도		2004	2007	2009	2009-2004
교원	상근	6,816	6,606	6,486	▲ 330
	비상근	259	323	457	198
	소계	7,075	6,929	6,943	▲ 132
직원	상근	2,492	2,438	2,265	▲ 227
	비상근	434	464	594	160
	소계	2,926	2,902	2,859	▲ 67
합계	상근	9,308	9,044	8,751	▲ 557
	비상근	693	787	1,051	358
	소계	10,001	9,831	9,802	▲ 199

상근교원의 인건비(총액)는 이 기간 동안 약 5%,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약 10%가 줄어들었다. 교직원수가 늘어난 상위권대학(10여개)을 제외한다면, 중하위권 대학들의 인건비(총액) 삭감 정도는 훨씬 심각하다. 그 결과 이들 대학들은 교직원 개개인의 보수를 삭감할 뿐만 아니라, 퇴직자의 결원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수가 늘어난 상위권대학들도 개인의 보수와 인건비 총액은 계속 삭감되는 추세에 있다. 2007년과 2008년도 각 대학의 급여 수준과 삭감 추세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ldfile/2009/07/27/1282389_005.pdf (교원의 급여수준)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ldfile/2009/07/27/1282389

_003.pdf (직원의 급여수준)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dfile/2009/07/27/1282389

_006.pdf (급여, 보수등 지급총액)

3. 실질 연구비가 줄고, 학술논문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법인화 이후 예산 항목상의 “명목 연구비”는 경쟁적 자금(보조금)과 과학연구비, 수탁연구의 증가 등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학술논문의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학술논문의 수는 2004년 59,758편에서 2005년 63,066편으로 늘었다가, 2009년에는 56,735편으로 격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의 학술논문 국가랭킹도 2위에서 3위로 떨어졌다. 법인화 직후인 2005년에 늘어난 것은 법인화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후 논문이 줄어든 것은 법인화의 부정적 영향이라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법인화 이후 교육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다, 외부 자금 획득 노력에 시간이 많이 들고, 수탁연구는 학술논문의 생산으로는 잘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으로는 연구비 구조가 바뀌면서, “실질적인 연구비”는 줄어든 데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 국립대학 교수들은 교비(예산)로 배정되는 ‘기본연구비’가 상당히 많았고, 이 연구비로 학술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지만, 법인화 이후 이 액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연구비 획득 콘테스트 지옥”(*아래 책자)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줄어든 운영비교부금 중에서 교수들의 기본연구비는 크게 삭감되고, 총장의 “재량경비”는 크게 늘어났다. 경쟁의 강화만이 연구 성과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본의 전국대학교직원조합(全大教)이 펴낸 『대학과교: 국립대학에 미래는 있는가?』*(2009)는 이 암담한 실상을 여실히 그려내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조차도 「중간보고」에서 이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4. 법인화 이후 주요 대학의 세계랭킹도 하락하고 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두 가지 세계대학 랭킹 자료에서 일본의 주요 대학들의 랭킹은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대학 랭킹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Times 지의 세계대학랭킹에서 도호쿠대학과 나고야대학이 2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충격적이다.

[표3] 주요 대학의 세계대학 랭킹 변화

Times Higher Education Ranking			상해교통대학 세계대학 Ranking		
	2004년	2010년		2004년	2010년
도쿄대학	12	26	도쿄대학	14	20
교토대학	29	57	교토대학	21	24
동경공대	51	112	동경공대	(101-152)	(101-150)
오사카대학	69	130	오사카대학	54	75
도호쿠대학	153	200+	도호쿠대학	69	84
나고야대학	167	200+	나고야대학	97	79

앞에서 살펴본 학술논문의 감소 추세와 더불어 법인화로 인해 일본 국립대학의 연구경쟁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5. 안타까운 '수익사업'의 실태

법인화 이후 각 대학은 수익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책'이지만, 문부과학성의 독려로 인한 바도 크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은 현실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도쿄대와 교토대가 술을 만들어 팔고, 지방 대학에서는 개량미, 효모빵, 의료보조기, 진단시약, 하이브리드 목질의자, 화장품, 유도복 등을 대학 브랜드를 붙여 팔고 있지만(아래 사이트 제1장 "대학의 신상품" 참조), 이것이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 오겠는가? 수익사업은 법인 '수입'을 구성하는 항목 중 별도의 소항목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가져온 경우도 많다. 설사 이익이 나더라도, 기껏해야 대학이 중소기업의 '코 문은' 돈을 갚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도 거리가 먼 것임은 자명하다.

<http://www.kokudaikyo.gr.jp/active/txt6-2/200802jyo.pdf>

6. 마무리

이밖에도 법인화로 인해 일본의 국립대학이 겪고 있는 '암울한 실상'은 많지만, 지면 관계상 일단 이정도만 보고한다. 사실 문부과학성의 「중간보고」는 이런 부정적 결과들을 보고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기관의 속성상 오히려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이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간보고」 내용을 보면, 긍정적 변화로 거론하고 있는 부분조차도 여러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또는 의도한대로는 안 되고 있다)는 "자기고백적 진단"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대 법인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이런 부정적 효과에 유의하면서, 이를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충남대 법인화위원회도 이런 필수적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만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교수회가 "법인화의 성급한 추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끝>

III. 주요 수신·발신 공문

1. 수신공문



교수신문
The Professors Times

153-789 서울 금천구 가산동 470-5 에미스타크노타워10차 405호

405 AceTechnoTower 10th 470-5, Gasan-Dong, Kunchon-Ku, Seoul, Korea | Tel:3142-4111 | Fax:3142-4118 | www.kyosu.net | editor@kyosu.net

문서번호 : 교수광대 10 - 03 - 01

시행일자 : 2010. 03. 10

수 신 :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

참 조 : 사무국

제 목 : 교수신문「창간 18주년 기념 특집호」축하광고 의뢰 건

신			지	
결			서	
결	일자		결	
수	시간		재	
	번호		공	
	처리과		람	
	담당자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저희 '교수신문'은 지난 18년간 교육과 학문에 관한 심도 있는 보도와 해설, 그리고 학술비평을 통해 대학발전과 학문창달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대학과 교수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적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3. 2010년 4월 15일 교수신문이 창간 18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8주년의 의미는 지나온 발자취보다 앞으로 제2의 창간, 20주년을 준비하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교수신문의 18년은 귀 회의 교수사회의 성원과 질책이 있었기에 지성사회의 최고 권위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4. 오는 4월 12일 교수신문이 창간18주년을 맞아 발행하는「창간18주년 기념 특집호」에 귀 회와 회장님께 다시 한 번 성원을 요청 드립니다. 교수신문 창간 18주년의 다양한 행사에 배포될 특집호에 귀 회의 축하광고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교수신문의 성장을 축하해 주시고, 교수사회의 진정한 지성주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첨 부 : 축하광고 안내 및 회신용 양식

■ 문 의 : 기획실 02-3142-4111, 담당 / 최 광순 · 김 희정

교수신문사발행인



한국대학신문

152-801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8 한신IT타워 12층 TEL (02)2025-6050 / FAX (02)2025-6080
<http://www.unn.net>

문서번호 : 제20100927-01호

시행일자 : 2010. 9. 27 (월)

수 신 : 전국국공립대학연합회 회 장

참 조 : 홍보팀

제 목 : 「한국대학신문 창간 22주년 특집신문」
 축하 광고 참여 요청의 건

선			지	
결			시	
합	발		집	
	자			제
수	시		공	
	간		관	
	보		민	
	호		민	
	치			
	리			
	과			
	임			
	의			
	자			


1. 귀 회의日新月异을 기원합니다.

2. 1988년 10월 15일 創刊, 大學 社會와 300만 大學人의 言路를 모으며 大學專門 正統紙로 한 길을 걸어온 국내 최대의 凡大學 政策新聞 한국대학신문이 올해로 創刊 22주년을 맞았습니다.

3. 디지털사회를 열어가는 한국대학신문은 최근 지식 경보화 시대 大學의 중요한 역할을 재삼 認識하고 大學 政策 분야에 대한 집중 조영과 오피니언 리더그룹의 대목적 意見收斂 등을 통하여 大學 발전에 同聲, 情誼상부한 大學政策 代案紙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4. 그동안 보내 주신 많은 關心에 감사드리오며, 「한국대학신문 창간 21주년 특집신문」 축하 광고로 귀 회의 홍보와 본지에 대한 激勵·聲援 바랍니다.

* 분 청 : ● 창간 22주년 특집신문 축하 광고(회중 명함광고 및 일반광고) 안내.

회 장 이 인 원
 발 행 인 박 성 태 



대학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수신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장(박병덕 상임회장) 귀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전북대학교 진수당 365호)

(경유)

제목 대학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 : 국교련 10-057(2010.10.04)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등 교과부의 대학 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요청」

2. 위 관련호로 귀 연합회에서 요청하신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등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간담회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립대학 교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봉급이 상승하는 호봉제가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근무여건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별 성과와는 무관하게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동기를 유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 부는 교육·연구·봉사 등의 실적이 탁월하고, 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성안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 및 정부·여당간의 당정협의 등을 거쳤고, 현재는 관련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법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10.10.12-11.1.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 따라서, 이미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의견 제출 절차 외에 별도의 간담회를 재차 개최하는 것은 원활한 제도 도입과 대학별 운영준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아울러, 최근에 발표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경우에도 그 중요 내용들이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개별 대학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의 경우에는 개별 대학에 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제도 도입 여부를 재차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교육과학기술



주무관 류승의 행정사무관 신인섭 대학교원운영실 김두용 대학선진화교장 오태석
전화T/F영광
대학선진화정책
결과 10/13
이기봉
협조자 서기관 이주희
시행 대학선진화과-3900 (2010. 10. 13.)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선진화과 / www.nest.go.kr
전화 02-2100-8689 전승 02-2100-6340 / oscar99@nest.go.kr / 비공개(6)
Me First, 녹색은 생활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받으실 분 : 박병덕 귀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664-14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

5 6 1 - 7 5 6

대통령실 민원서류 접수안내

박병덕님께서 대통령실에 보내주신 민원서류를 심사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관사항으로 판단되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입니다.

박병덕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원 신청번호 : 1BA-1011-045493

2010년 11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 발신공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위원·사무총장(내정자), 정책위원장

제 목 2010년도 국교련 회장단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 일 시 : 2010년 3월 19일(금) 12시 30분
- ◇ 장 소 : 유성 만나식당
- ◇ 안 건 : 2010년 제1차 임시총회 준비
 -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 2010년 국교련 회의 정례화 일정
 - 선언문, 성명서 채택 문제
- ◇ 기 타 : 식당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여부를 2010년 3월 16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1. 국교련 회장단 및 고문·자문·사무총장(내정자), 정책위원장 명단

불임 2. 유성 만나식당 약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내정자)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1 (2010. 3. 1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년 3월 19일(금)에 2010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자료와 회의 결과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제1차 임시총회는 4월 9일(금)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일정과 개최장소는 협의 후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임시총회 자료 작성에 필요하오니, 회원교 명부에 임원진 변경이 있는 회원교는 변경 사항을 국교련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2010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자료

붙임 2. 2010년 제1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록 .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내정자)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2 (2010. 3. 21)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부산대학교 총장

참 조 부산대학교 교수회

제 목 2010년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참석 요청

1. 부산 대학교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 (1) 부산대학교 총장과 국교련 회장단, 고문, 자문과의 면담.
- (2) 부산대학교 총장의 국교련 총회에서 축사.

- 아 래 -

일시: 4월 9일(금) 오후 3시-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붙임 1. 2010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일정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내정자)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4 (2010. 3.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1차 국교련 임시총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4월 9일 부산대학교에서 국교련 제1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1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안건 토의 및 의결사항 중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교련의 추후 활동 계획과 관련하여, 국교련 회원교 전체 교수님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기로 한 성명서 초안은 정책위원장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마련하여 회원교에 보내겠습니다. 법률적 대응 방안, 교과부 공문 발송 및 항의 방문, 국교련 주최 토론회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그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 회비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총회에서 확정된 각 회원교 책정 회비 액수를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첨부1. 제1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2. 제1차 임시총회 회의록

첨부3. 2010년 회원교 책정 회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5 (2010. 4. 1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1. 2010년 4월 9일(금)에 개최된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2010년도 회원교 회비 책정액수가 첨부하는 회비 일람표와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2. 각 회원교에서는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고, 2010년도 회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예 금 주 : 박 병 덕(국교련 상임회장)
2. 은 행 명 : 국민은행
3. 계좌번호 : 274302-04-169681

붙임 : 1. 2010년도 국교련 회비 일람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6 (2010. 4. 13)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 요청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4월 9일(금) 부산대학에서 열린 국교련 2010년 제1차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국교련은 회원교 전체 교수님을 대상으로 “국립대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합니다.

4월 28일(수)까지 서명을 받으시고, 서명 명단을 1부 복사해 놓으시고 원본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자 명단은 취합하여 기자회견, 보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항의 방문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께서 많은 교수님들이 서명에 참여하시도록 적극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명단 송부 주소 -

우편번호: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교수회

박 병 덕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국교련 서명용지 재중)

첨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7 (2010. 4. 13)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국교련 회비 책정액 오류 정정 통보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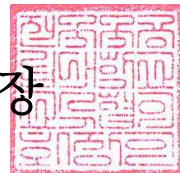
1. 회비를 납부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010년도 회원교 회비를 책정할 때 한국해양대학의 회비를 2,200,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 각 공동회장교는 500,000원씩을 더 납부하게 되어있는데 착오로 누락되었습니다. 500,000원을 더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 음 -

1. 예 금 주 : 박 병 덕(국교련 상임회장)
2. 은 행 명 : 국민은행
3. 계좌번호 : 274302-04-16968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9 (2010. 4. 1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교과부 주최 성과연봉제 관련 토론회 참석 요청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4월 9일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교과부 주최 성과연봉제 관련 토론회 또는 공청회가 열릴 경우 가능한 한 많은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자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교육대학 컨벤션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회원교당 최소 4인 이상의 교수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토론회 때 국교련에서 받고있는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현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28일까지 받은 회원교별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현황을 28일 오후 6시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성과연봉제 토론회 관련 교과부 공문.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0 (2010. 4. 21)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 개최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4월 30일(금) 이메일을 통해 계획을 알려드린 바대로 국교련 2010년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10년 5월 7일(금) 12시-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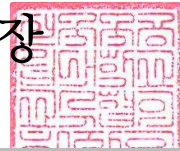
참석범위: 국교련 회장단 외 전체 회원교 회장/의장

안건: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첨부 1. 행사장 안내

첨부 2. 참석여부 통보 양식.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1 (2010. 5.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제 목 2010년도 제2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제2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5월 14일(금) 4시

◇ 장 소 : 공주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

◇ 안 건 : 1. 국교련 주최 토론회 계획

- 장소 : 국회의사당

- 개최일시와 발제자, 토론자 등에 대해 미리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2. 기타

◇ 기 타 : 식당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여부를 2010년 5월 11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3 (2010. 5. 7)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5월 7일 전북대학교에서 국교련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안건 토의 및 의결사항 중 2010년 5월 13일까지 서명 작업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회원교에서는 남은 며칠 동안 서명 교수 수를 최대한 늘이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 서명 결과는 2010년 5월 14일 오후 공주대학에서 있을 회장단회의에서 집계 할 것입니다.

첨부1.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자료

첨부2. 제1차 비상 확대 회장단 회의결과.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4 (2010. 5. 7)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제 2차 회장단 회의결과 송부 및 협조 요청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제2차 회장단회의가 5월 14일(금) 공주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3. 회의자료와 회의록,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각 회원교에서는 회장/의장이 총장을 면담하여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결과를 고지하고,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
 - (2) 국립대학 인사운영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에 회원교 교수님들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 첨부1. 국교련 제2차 회장단 회의자료
첨부2. 국교련 제2차 회장단 회의결과
첨부3. 한국교육행정학회 세미나 브로셔.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5 (2010. 5. 17)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종걸 의원)

참 조

제 목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간담회 요청

1. 국가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와 함께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합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반대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5월 18일 현재 8,78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5. 이에 국교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관련하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걸 의원님께 다음과 같이 간담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0년 월 일
2. 장소: 위임(가능하면 위원장 국회 사무실)
3. 내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4. 참가범위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15명 내외)

첨부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대학별 서명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6 (2010. 5. 1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안병만 장관)

참 조

제 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간담회 요청

1.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와 함께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합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반대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5월 18일 현재 8,78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5. 이에 국교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 성과연봉제에 관련하여 주무장관이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간담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0년 월 일
2. 장소: 위임(가능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3. 내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4. 참가범위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15명 내외)

첨부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대학별 서명현황>(서명명단은 간담회 때 제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7 (2010. 5. 1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한 송 강릉원주대 총장)

참 조

제 목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간담회 요청

1.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와 함께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합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반대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5월 18일 현재 8,78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5. 이에 국교련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교원 성과연봉제에 관련하여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신 한 송 총장님께 다음과 같이 면담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1. 일시: 2010년 월 일
2. 장소: 위임(가능하면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실)
3. 내용: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관련
4. 참가범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단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15명 내외)

첨부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대학별 서명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8 (2010. 5. 1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수신자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종걸 의원)

참 조

제 목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협조 요청

1.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당이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와 함께 국교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합니다. 이에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반대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5월 18일 현재 8,780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5. 의원님께서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도록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대학별 서명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19 (2010. 5. 1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참 조

제 목 2010년도 국교련 회비 납부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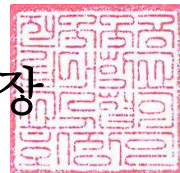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1. 2010년 4월 9일(금)에 개최된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2010년도 회원교 회비 책정액수가 의결되었습니다.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의 2010년도 국교련 회비는 2,000,000원입니다.
3. 회원교에서는 2010년도 회비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예 금 주 : 박 병 덕(국교련 상임회장)
2. 은 행 명 : 국민은행
3. 계좌번호 : 274302-04-16968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0 (2010. 5. 1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2차 국교련 임시총회 개최 알림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2010년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총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6월 11일(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6월18일(금) 오후 4시-

장소: 전남대학교 용지관 3층 광주은행홀

- 붙임 1. 2010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 일정표 및 토의 안건
붙임 2. 참석자 명단 (회신용)
붙임 3. 위임장 양식 (회신용)
붙임 4. 임시총회 개최장소 약도.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1 (2010. 5.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참 조

제 목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과의 간담회 참석 요청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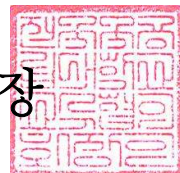
1.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과의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0년 6월 1일 (화요일) 오후 7시~

나) 장소 : 장원(한정식) <전화: 02-593-8449>

<서울 교대역 11번 출구 하이마트 뒤쪽>.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042 (2010. 5.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전남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2차 국교련 임시총회 참석 요청

1. 전남대학교와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2010년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사항

국교련 총회에서 축사

- 아 래 -

일시: 6월 18일(금) 오후 4시-

장소: 전남대학교 용지관

붙임 1. 2010년 제 2차 국교련 임시총회 일정표.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3 (2010. 5.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6월 18일 전남대학교에서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2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립대학 연합회 서명요청에 대하여 국교련 각 회원교 임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서명을 받으셔서 6월30일(수)까지 국교련 사무처 (063-270-2012)에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제2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2. 제2차 임시총회 회의록

첨부3.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기본계획(안) 안내자료<교과부>

첨부4. 사립대학 연합회 공문 및 서명지.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4 (2010. 6. 21)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조관홍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참 조 손홍열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사무총장

제 목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에 대한 사교련의 성명서 발표 요청의 건

1. 국가의 고등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관홍 이사장님과 사교련 산하 각 대학 회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교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국교련에서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8일 전남대학에서 개최된 2010년 제2차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이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사교련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기 때문입니다.

3. 잘 알고 계시듯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교련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1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국교련 서명문

첨부 2 : 성과연봉제 반대 국교련 서명 현황 (2010. 6. 20 현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5 (2010. 6. 25)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3차 국교련 임시총회 겸 하계워크숍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18일 전남대학에서 열린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2010년 국교련 제 3차 임시총회 겸 하계워크숍을 8월 23일~24일 제주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숙소 예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오니 회원교별 참석 예정자 명단을 7월 20일(화)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비(1인당 100,000)는 반드시 송금인 성명과 대학명을 기재하셔서 7월 28일(수)까지 다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민은행 274302-04-169681(예금주 박병덕)

붙임 1. 2010년 국교련 제 3차 임시총회 겸 하계워크숍 일정표.

붙임 2. 위임장 양식 (회신용)

붙임 3. 참석자 명단 (회신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7 (2010. 7. 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제 3차 회장단 회의결과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제3차 회장단회의가 7월 16일(금) 유성에서 있었습니다.
3.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0년 제 3차 국교련 임시총회 및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은 확정 되는 대로 각 회원교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첨부1.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자료

첨부2. 국교련 제3차 회장단 회의결과.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8 (2010. 7. 2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하계 세미나 및 제 3차 임시총회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 6월 18일 전남대학에서 열린 국교련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국교련 2010년 하계 세미나 및 제 3차 임시총회를 **8월 23일 오후 3시부터 제주대학 경상대학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일정이 원래 계획과 약간 달라진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3. 숙소 예약 등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하오니 회원교별 참석 예정자 명단을 7월 28일(수)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참가비(1인당 100,000)는 반드시 송금인 성명과 대학명을 기재하셔서 7월 28일(수)까지 다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민은행 274302-04-169681(예금주 박병덕)

붙임 1. 국교련 2010년 하계 세미나 및 제 3차 임시총회 일정표

붙임 2. 참석자 명단 (회신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49 (2010. 7. 2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자율형 국립대의 방향 제시 및 고등교육법 개정연구」 검토 요청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년 8월 23일 오후 3시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는 국교련 하계 세미나에서 「자율형 국립대의 방향제시 및 고등교육법 개정연구」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이 있으시면 **8월 11일(수)**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율형 국립대의 방향제시 및 고등교육법 개정 연구.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0 (2010. 7. 2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3차 국교련 임시총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8월 23일 제주대학교에서 국교련 세미나 및 제3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3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제3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2. 제3차 임시총회 회의록.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1 (2010. 8.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제 목 긴급 국교련 회장단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긴급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9월 10일(금) 오후 4시 30분

◇ 장 소 : 변재일 의원 사무실(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18-5 대운프라자 8층) 전화: 043-217-1111

◇ 안 건 : 1.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2.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2 (2010. 9.1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제 목 2010년도 제 4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2010년 제4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9월 17일(금) 12시

◇ 장 소 : 유성 만나식당

◇ 안 건 : 1. 성과연봉제 대응 방안
2. 교등교육법 개정(안)
3. 기타

◇ 기 타 : 식당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여부를 2010년 9월 14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성 만나식당 약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3 (2010. 9. 13)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국교련 2010년 제 4차 회장단 회의결과 송부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제4차 회장단회의가 9월 17일(금) 유성에서 있었습니다.
3.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교과부 장관에게 발송할 공문(안)에 대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10월 1일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한 회의 자료 가운데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부분(첨부 7)은 전체 교수님들에게 회람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강원대학에서 개최할 예정인 제4차 임시총회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관련 서명 운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첨부1.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자료

첨부2. 국교련 제4차 회장단 회의결과.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4 (2010. 9. 2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4차 국교련 임시총회 개최 알림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2010년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총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10월 8일(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10월15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국제회의실

- 붙임 1. 2010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 일정표 및 토의 안건
붙임 2. 위임장 명단 (회신용)
붙임 3. 참석자 양식 (회신용)
붙임 4.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자료
붙임 5. 임시총회 개최장소 약도.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5 (2010. 9. 2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0년 10월 8일(금) 12시

◇ 장 소 : 유성 만나식당

◇ 안 건 : 고등교육법 개정 활동 방향 및 일정

◇ 참석 범위: 국교련 회장단,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고문, 자문위원
최갑수 교수(서울대), 박정훈 교수(서울대), 명재진 교수(충남대), 채형복 교수(경북대)

◇ 기 타 : 식당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여부를 2010년 10월 5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성 만나식당 약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6 (2010. 9. 2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참 조

제 목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등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요청

1.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주최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에서 성과연봉제 찬성론자들조차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의 최종안에는 이런 지적조차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만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만약 교과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근본적인 급여체계의 변화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립대교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 행위입니다. 더구나 관련 법 규정이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된 것처럼 교과부가 실무자 차원의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와 함께 국교련은 교과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합니다.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

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8,927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6. 국교련은 교원 성과연봉제를 비롯하여 국립대 법인화 등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관련하여 주무장관이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 다음과 같이 간담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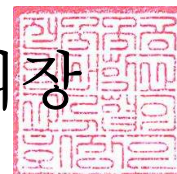
7.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시 : 위임 (2010년 10월 중)
- 2) 장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
- 3) 내용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 4) 참가범위 : 국교련 회장단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15명 내외)

첨부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과 <대학별 서명현황>
(서명 명단은 간담회 때 제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7 (2010.10. 4)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국교련 회장단

참 조 전체회원교

제 목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회의 안건추가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8일 유성에서 개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원래 안건인 고등교육법 개정 방향과 일정 외에 추가 안건으로 <국립대 선진화 방안> 대응책을 다룰 계획입니다.

국교련 정책위원장 김형래 교수님이 교수신문에 기고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글과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보도자료)

붙임 2.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붙임 3. 교수신문 기고문(김형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8 (2010. 10. 1)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0월 15일 강원대학교에서 국교련 제4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4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1. 제4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2. 제4차 임시총회 회의록
첨부3. 거점국립대_법인화반대_공동성명서
첨부4.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첨부5. 성과연봉제 행안부 의견 제출시 참고할 내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59 (2010. 10. 1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성과연봉제 입법예고 관련 행안부 항의 방문 참석요청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2시에 전체 회원교 회장/의장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 집결,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고, 국교련이 취합해 놓은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명단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3. 다음과 같이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간 : 2010년 10월 25일 오후 1시 50분
2. 장소 : 커피빈 정부종합청사점 (전화 : 02-737-3308)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60 (2010. 10. 1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충북대학교총장

참 조

제 목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1. 고등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공동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 전원이 10월 18일(월) 충남대학교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 총장님께서 「긴급제안」에 제시된 교수회장 일동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여러 정책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긴급제안」 외에 참고하시도록 당일 함께 발표된 「성명서」와 10월 15일 국교련 임시총회에서 발표된 「성명서」도 첨부합니다.

- 붙임 : 1.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2.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3. 국교련 제4차 임시총회 성명서 (10.15)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61 (2010. 10. 2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박병덕 국교련 상임회장, 김형래 정책위원장

참 조

제 목 서상기 의원 면담 참석요청

1. 다음과 같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시간 : 2010년 11월 1일(월) 오후 2시 30분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0 (2010. 10. 2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 청원 공문 검토

1.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대학과 교수(협의)회/평의(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과연봉제 저지와 관련하여 김형래 정책위원장과 함께 11월 1일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실의 비서관, 청와대 대통령실의 교육문화수석 행정관 등과 면담하였습니다.
3. 11월 4일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만나 국립대 법인화 및 성과연봉제 저지,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우리 국교련 회장단과의 간담회 요청을 거절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선진화 방안 취소를 청원하는 공문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5. 첨부파일로 보내는 공문을 검토하셔서 수정,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11월 8일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성과연봉제 발송 공문(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1 (2010. 11. 3)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위원·사무총장, 정책위원장(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 위원)

제 목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 및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국교련 제 5차 회장단 회의 및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 회의
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11월 19일(금) 12시-

(회장단 회의에 이어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장소: 유성 다다일식(전화: 042-823-5551)

- 안건: 1.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한 향후 대응 방안 및 일정
2. 고등교육법 개정 사업 일정
3. 기타

참석범위: 국교련 회장단, 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 위원.

기타: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님들께는 정책위원장께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성 다다일식 약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2 (2010.11. 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수신자 대한민국 대통령

참 조

제 목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취소 청원

1.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국민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국교련에서는 전국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들의 뜻을 받들어 국교련 소속 각 대학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대통령님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취소를 청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가 졸속하게 강행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대학과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의 관점에서 살펴보시어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이 취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첨부

1.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일동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취소에 대한 청원
2. 국교련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및 서명 명단>
3.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의 성명서
4.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010-9912-0613)

사무총장 최백렬

(011-579-3014)

상임회장 박병덕

(016-9877-2726)

시행 국교련 10-073 (2010.11. 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참 조

제 목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등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 관련 간담회 요청

1.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문화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문화수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교육문화수석실이 국민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졸속하게 강행하려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이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본적인 급여체계의 변화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제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개정 없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국립대교원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 행위입니다.

국공립대학 대부분 교수들은 교과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교련에서는 2010년 4월 12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을 시작하였고,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8,927명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4. 교원 성과연봉제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 등 현재 교과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국립대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교육문화수석님과 더불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5.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시 : 위임 (2010년 11월중)
- 2) 장소 : 위임 (교육문화수석실 또는 인근 회의실)
- 3) 내용 :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 관련
- 4) 참가범위
국교련: 회장단 및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고문, 자문위원 (15명 내외)

첨부

1.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과 대학별 서명현황
2.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3.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제출 의견
4.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교련 제4차 임시총회 성명서>
5.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010-9912-0613)

사무총장 최백렬
(011-579-3014)

상임회장 박병덕
(016-9877-2726)

시행 국교련 10-074 (2010.11.1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5차 국교련 긴급 임시총회 개최 알림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1월 19일(금) 제5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0년도 제5차 국교련 긴급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총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11월 24일(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총회 직후에 서울대 공대위와 국립대 공투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연합 집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11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대학교 다향만당 (붙임 참조)

붙임 1. 2010년 제5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붙임 2. 2010년 제5차 국교련 긴급 임시총회 일정표 및 토의 안

붙임 3. 위임장 명단 (회신용)

붙임 4. 참석자 양식 (회신용)

붙임 5. 임시총회 개최장소 약도.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3 (2010. 11.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성과연봉제 대응 관련 국교련 공문 시안 검토 요청

11월 19일(금) 유성에서 열린 제5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 다 음 -

1.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알리고,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소속 교수님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TFT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2.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님들이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각 대학의 성과평가지표(안)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각 대학 총장에게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3. 1과 2의 두 공문의 시안을 22일(월)에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이메일로 보내 의견을 묻고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1과 2의 두 공문의 시안을 붙임자료로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11월 2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4 (2010. 11.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붙임자료 1)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소속 교수 불참 요청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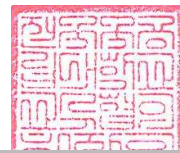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전체 회원교

참조

제목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소속 교수 불참 요청

1. 대학과 교수(협의)회/평의(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11월 19일(금) 유성에서 열린 국교련 제 5차 회장단 회의에서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국교련 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하시어 소속 교수님들이 성과연봉제 관련 TFT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010-9912-0613)

사무총장 최백렬
(011-579-3014)

상임회장 박병덕
(016-9877-2726)

시행 국교련 10-073 (2010.11. 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붙임자료 2)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전제로서의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 요청

수신자 **총장**

참조

제목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전제로서의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 요청

1. 고등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대학 구성원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11월 19일(금)에 열린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들의 뜻을 받들어 국교련 소속 전체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이름으로 각 대학 총장님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를 요청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4. 국교련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자료를 첨부하오니 총장님께서 대학과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바라는 교수님들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평가지표(안)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이 취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첨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010-9912-0613) (011-579-3014) (016-9877-2726)
시행 국교련 10-073 (2010.11. 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성과연봉제 대응 관련 국교련 공문 시안 검토 요청

11월 19일(금) 유성에서 열린 제5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 다 음 -

1.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알리고,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소속 교수님들은 성과연봉제 관련 TFT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2.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님들이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각 대학의 성과평가지표(안)을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각 대학 총장에게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3. 1과 2의 두 공문의 시안을 22일(월)에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에 이메일로 보내 의견을 묻고 회신 내용을 참조하여 수정·보완하여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1과 2의 두 공문의 시안을 붙임자료로 보내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수정·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11월 24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4 (2010. 11.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전체 회원교

참 조

제 목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소속 교수 불참 요청

1. 대학과 교수(협의)회/평의(원)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0년 11월 19일(금) 유성에서 열린 국교련 제 5차 회장단 회의에서 ‘대학본부가 주관하는 성과연봉제 관련 TFT에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각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는 국교련 회장단의 결정을 존중하시어 소속 교수님들이 성과연봉제 관련 TFT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5 (2010. 11.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강릉원주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전제로서의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
요청

1. 고등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대학 구성원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11월 19일(금)에 열린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들의 뜻을 받들어 국교련 소속 전체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이름으로 각 대학 총장님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를 요청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4. 국교련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자료를 첨부하오니 총장님께서 대학과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바라는 교수님들의 참 뜻을 헤아리셔서,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평가지표(안)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이 취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첨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076 (2010. 11.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충북대학교 총장

참 조

제 목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전제로서의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 요청

1. 고등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대학 구성원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전국 40개 국공립 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11월 19일(금)에 열린 국교련 제5차 회장단 회의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대다수 교수들의 뜻을 받들어 국교련 소속 전체 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이름으로 각 대학 총장님께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성과평가지표(안) 제출 거부를 요청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4. 국교련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자료를 첨부하오니 총장님께서 대학과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바라는 교수님들의 참 뜻을 헤아리셔서, 2011년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성과평가지표(안)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이 취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첨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문> 및 <대학별 서명 현황>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17 (2010. 11. 26)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5차 국교련 긴급 임시총회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교련 제5차 긴급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5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제5차 긴급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2. 제5차 긴급 임시총회 회의록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16 (2010. 11. 27)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제5차 국교련 긴급임시총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참고자료 송부

1. 귀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1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국교련 제5차 긴급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 5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첨부 4) 건은, 입금 구좌 번호, 최소 모금액 등을 회원교별로 교수님들께 통보하시기 바라며, 학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은 경북대 성명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국교련 제5차 긴급임시총회 회의록

첨부2. 국교련 제5차 긴급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3.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하며

첨부4.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하며

첨부5.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학장 임명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서 (경북대)

첨부6. 성과연봉제 철회 청원(대통령)에 대한 교과부의 회신

첨부7. 개정교과교육 및 수능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첨부8. 성과연봉제 관련 시뮬레이션 등 참고 자료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06(2010. 11. 29)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0년도 제 6차 국교련 임시총회 개최 알림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2010년도 제 6차 국교련 임시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임시총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12월 10일(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성회에 필요하오니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시: 12월 17일(금) 오후 3시 30분

장소: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진수당) 3층 회의실

붙임 1. 2010년 제4차 국교련 임시총회 일정표 및 토의 안건

붙임 2. 위임장 명단 (회신용)

붙임 3. 참석자 양식 (회신용)

붙임 4. 임시총회 개최장소 약도.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18 (2010. 12. 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제6차 국교련 임시총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결의문 송부

1. 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2월 17일 전북대학교에서 국교련 제6차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원교 회장/의장님과 여러 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3. 제 6차 임시총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결의문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성과연봉제, 단과대학 학장 총장 임명제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소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교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성과연봉제가 만약 도입될 경우 위헌소송 제기 등의 법적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이번 임시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전체 교수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다시 한 번 독려하는 내용을 담게 될 국교련 공문은,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회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전체 회원교에 발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문을 발송할 때, 전체 회원교에 공문 발송 기준 현재까지의 중간 상황보고(서명인원, 모금 참여 인원 및 모금액)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릴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국교련 제 6차 임시총회 회의록

첨부2. 국교련 제 6차 임시총회 회의자료

첨부3. 국교련 제 6차 임시총회 결의문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19 (2010. 12. 20)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거점 국립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 회장/의장 모임 개최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011년에는 거점 지방국립대학부터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월 8일 서울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되면서 특히 거점 지방국립대학의 경우 법인화 강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립대 법인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거점 국립대학 교수(협의)회/평의원회의 회장/의장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 여부를 2011년 1월 5일(수)까지 국교련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일시: 2011년 1월 11일(화) 오후 3시 - 1월 12일(수) 오후 1시

장소: 강원대학교 본관 4층 401호

안건: 국공립대학 법인화 대응 방안 논의.

참석 대상: 강원대 평의원회 의장, 경북대 교수회 회장, 경상대 교수회 회장, 부산대 교수회 회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전남대 평의원회 의장, 전북대 교수회 회장, 제주대 교수회 회장, 충남대 교수회 회장, 충북대 교수회 회장, 국교련 사무총장, 국교련 정책위원장(이상 12명).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20 (2010. 12.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수신자 행정안전부 장관

참 조 성과급여기획과장

제 목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간 연장 요청

1.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항상 국민이 원하는 바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펼치시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행정안전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단체입니다.

3. 귀 부는 2010년 12월 9일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353 호)를 하면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0년 12월 14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고하였습니다.

4. 위 일부개정령안은 금년 10월 12일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0 - 285 호)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입니다. 10월 12일 입법예고 때만 해도 의견제출 기간이 11월 1일까지 2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말을 빼면 의견제출 기간이 4일에 불과합니다. 국립대학 교원의 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의견 제시를 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순전히 요식적인 의견수렴에 불과한 이런 태도는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 20일 정도로 하여 위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전국의 국공립대학 교수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미명하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성과연봉제가 이대로 강행될 경우, 많은 교수님들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적하신

것처럼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함은 물론이려니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오히려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8,927명이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서명자 명단은 10월 25일 행정안전부 방문 시에 귀 부의 성과급여기획과에 제출하였습니다.)을 하였다는 사실은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랏일 못지않게 고등교육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라 생각합니다. 대학과 교수 사회를 황폐화할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졸속 강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016-9877-2726

시행 국교련 10-121 (2010.12.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서울대법인화법안 폐지를 위한 서울대 공대위 농성 격려 방문 참여 요청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대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서울대 구성원들이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법인화법안 폐지를 위해 12월 20일(월)부터 천막에서 농성을 벌이고 계십니다.

3. 12월 27일(월) 오후 5시에 서울대 대학본부 뒤 아크로광장에서 서울대 공대위 주최로 농성장 집들이 문화제가 열립니다. 문화제와 때를 같이하여 국교련에서는 서울대법인화법안 폐지를 위해 싸우는 서울대 공대위를 격려 방문하려고 합니다. 회장/의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0-122 (2010. 12. 2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및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 서명 운동 중간 상황 송부 요청

1. 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행정안전부가 2010년 12월에 재입법예고한 안대로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법적 투쟁과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을 위한 기금 모금 및 서명 운동에는 가능한 한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 국교련 전체 회원교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교련 회장단 회의(1월 21일 개최 예정)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그리고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의 중간 상황(서명인원, 모금 참여 인원 및 모금액)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1월 19일까지 사무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1-001(2011. 1. 12)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장단

참 조 고문·자문·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제 목 제 6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 개최

1. 귀 대학 발전과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제6차 국교련 회장단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1년 1월 21일(금) 2시

◇ 장 소 : 한국해양대학교(실습선 한바다호 회의실)

◇ 안 건 : 1. 서명운동 및 기금모금 중간상황 점검, 향후 일정 논의
2. 기타

◇ 기 타 : 식당예약에 필요하오니 참석여부를 2011년 1월 18일(화)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사장소 약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1-002 (2011. 1. 14)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제 6차 회장단 회의 결과 와 회의록 송부 및 법률자문교수단 추천(9개대학) 요청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11년 1월 21일(금)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국교련 제 6차 회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결과와 회의 자료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성과연봉제 법적 대응(추후에는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위해 법률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은 후에 변호사 선임 및 소송일자, 소송방식 등을 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서울대학교와 법전원이 설치된 8개 거점국립대(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회장/의장님께서는 국교련의 법률자문을 맡아주실 소속 대학의 법학(가능하면 헌법학) 전공 교수님 한 분을 2월 10일까지 국교련 사무처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국교련 제6차 회장단 회의자료

첨부2. 국교련 제6차 회장단 회의결과.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1-003 (2011. 1. 25)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서울대학교 법인화 관련 토론회 참석 요청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법인화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3. 서울대학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 본부 앞에서 한 달 넘게 천막 농성을 계속해오고 있는 서울대 공대위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4. 토론회 기획안 및 찬반 발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토론회 기획안

첨부2. 찬성 발제문

첨부3. 반대 발제문.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1-004 (2011. 1. 25.)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수신자 회원교 전체

참 조

제 목 2011년도 국교련 정기총회 개최 알림

1. 귀 대학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회장/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아래와 같이 2011년도 국교련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정기총회 준비에 필요하오니 참석자 명단을 **2월 11일(금)**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성회에 필요하오니 위임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숙소예약에 필요하오니 숙박하실 분은 국교련 사무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는 경북대 게스트하우스 (2인1실) 예정이며 숙박비는 국교련에서 지출합니다.

- 아 래 -

일시: 2011년 2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장소: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국제회의장

- 붙임 1. 2011년 국교련 정기총회 일정표 및 토의 안건
- 붙임 2. 위임장 명단 (회신용)
- 붙임 3. 참석자 양식 (회신용)
- 붙임 4. 정기총회 개최장소 약도. 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



담당자 전문위원 이은성

사무총장 최백렬

상임회장 박병덕

시행 국교련 11-005 (2011. 2. 8.)

접수

우)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북대학교 진수당 3층 365호

전화 (063)270-2011 전송 (063)270-2012 E-mail: nupa@jbnu.ac.kr / 공개

IV. 성명서/청원서/신문기고 등

*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서명문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교육과학기술부는 금년 2월 18일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2010년 6월까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절차를 초고속으로 마친 다음, 2010년 하반기 신입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부의 방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가 20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20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은 연구여건과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국립대 교원들의 보수 수준은 주요 사립대학들과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물가상승분조차 보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립대학 교수들은 이를 감내하며 교육·연구·봉사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교과부가 도입하려는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려는 커녕 보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아랫들을 빼서 윗들에 끼는 제로섬(zero-sum) 방식이다. 이런 방식의 성과연봉제는 오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에서조차도 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여 기피하고 있다.

현행 교수 급여 체계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물며 호봉 개념을 전면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연 대학 교수의 성과를 1년 단위로 계량화하여 평가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는가?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고 교수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을 불러일으키며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해 결국 국가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다.

교수 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 향상이 더 필요하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불공정한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상호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교 40개 대학 교수들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국립대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우리의 요구】

1.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성과연봉제의 졸속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절실하게 요구되는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실정에 맞는 생산적인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하라!

2010년 4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

무책임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국립대학 법인화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우리는 오래 전부터 정부와 입법부와 국민을 상대로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를 필두로 부산대, 경북대 등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인화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국가예산 감축을 이유로 전체 국립대학을 법인화한 일본의 대부분 대학에서 확인되는 부정적 결과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재삼 천명한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 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재정과 인사 등에 대해 대학에 일정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여러 간접적인 방식 또는 정부 추천 이사를 통한 방법 등으로 대학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허울일 뿐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게 될 신 관치정책이다.

넷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지역균등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다섯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인 대학의 진정한 경

쟁력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법인화 추진 방침을 즉각 포기하라!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맥을 함께 하는 재정회계법을 철회하고,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정부는 모든 국립대학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학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서라!

-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은 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립대학들이 자율성을 부여받는 가운데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

2010년 4월 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대,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9월 28일 발표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은 국립대학의 근간을 매우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무엇보다도 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대학 행정을 책임지는 총장이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수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교련은 이 ‘선진화 방안’이 국립대학 발전을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립대학을 “후진화”시킬 것이라 확신하면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거론된 지 20년이 넘었고, 2007년 6월 법률안까지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한 법인화가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립대학 모든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법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가 실현될 경우 정부의 책임은 상당 부분 대학에 떠넘기되 대학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립대 법인화의 강행은 대학 경쟁력 강화는커녕 소모적 논란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둘째, 정부가 법인화와 함께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장임명제, 교육대학 총장 간선제는 국립대학이 법인화될 경우 도입되는 총장간선제와 정확히 그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는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장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에 교육 당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온 통제 수단인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가 곁들여지면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꺾이기만 남을 것이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당장 내년 임용 교원부터 시작하여 3년 만에 모든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교련은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몰고 올 이 제도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60% 정도가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교수마다 학문 분야가 다르고 전공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국립대학 교원 신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제도의 도입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넷째, 교원 특채 활성화 역시 성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다. 교수의 공개채용제도는 교수임용 과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바로 교육부에 의해 적극 장려되고 각 대학이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 온 제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를 두고 ‘경직적 교원 임용방식’이니 특별채용을 활성화해야 국립대학의 역량이 제고된다는 ‘선진화 방안’의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결국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담고 있는 큰 맥락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내맡겨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교련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러한 흐름에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으며,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 당국은 대학 설립 인가의 남발과 학부제 및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강행 사례가 증명하듯이,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준 적이 없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국립대학 운영과 교원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될 정책을 수립하면서 그 명분과 기대효과를 장밋빛으로 포장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교과부)의 ‘통제 완화’란 명목을 내걸면서도 전례 없는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교과부의 자기 모순적 행태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진적’ 면모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립대학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대학을 황폐화 할 것이 분명한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와 맥을 함께 하는 재정회계법을 철회하고,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조장하게 될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 정부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모든 국공립대학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학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

2010년 10월 15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39개교>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 전반에 문제점이 많지만, 특히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전국의 거점 국립대학들을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는 그동안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설명도 하고 호소도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집요하게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거점대학 총장들마저 말뿐인 재정지원에 대한 과잉 기대를 갖고 이러한 정부 방침에 순응하거나 편승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전국의 거점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거듭 천명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선언이다.

셋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재정과 인사 등에 대해 대학에 약간의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정부 추천 이사 및 감사를 통한 직접적 방법과 성과 평가를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대학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허울일 뿐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게 될 신판관치(官治) 정책이다.

넷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지역균형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다섯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인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결국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내맡겨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교련에서는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에 실질적인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방향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의 국립대학 구성원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현재와 같은 법인화 추진 방침을 즉각 포기하라!
-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및 그것에 준하는 조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일부 국립대학 총장들은 그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립대학들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다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라!
- 정부는 모든 국립대학 관련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정한 국공립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라!

2010년 10월 18일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김세환, 경북대학교 교수회장 김형기,
경상대학교 교수회장 마대영,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정용하,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문 희,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박병덕,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고경표,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김필동,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오원태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

존경하는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님들께

우리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 일동은 현재 한국의 국립대학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최고지도자이자 각 대학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총장님들께서 국립대학의 자율성 회복과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장님들께 긴급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지난 9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교수를 비롯한 대학구성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엄청난 부작용이 분명하게 예견되는 잘못된 정책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교과부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화'와 정부의 '통제완화'라는 명목을 내걸면서도 전혀 없는 '행정통제'를 강화하는 교과부의 자기 모순적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방안'과 관련하여 총장님들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특히 '성과급적 연봉제', '국립대 법인화', '학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총장님들의 의견이 교과부에 얼마나, 또 어떤 형태로 전달·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이 '방안'이 발표된 이후 총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국립대 교원의 급여체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초래될 여러 문제점 때문에 전국 국립대학 교수 약 60%에 해당하는 9천여 명의 교수님들이 이미 반대 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총장님들은 대학 운영을 책임지고 있고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별로, 그리고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를 통하여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총장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 단순히 의견

을 내는 수준을 넘어서, 대다수 교수님들의 뜻에 따라 이제라도 교과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입니다. 현 정부는 ‘자율적 선택에 의한 법인화’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까지 제출되었지만, 수정된 정부안에 대해서는 서울대 안에서도 반발이 심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교과부는 서울대 법안의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국립대학의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부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법인화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 상실로 인해 대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정부 관료의 지배할 이사회를 통한 관치로 인해 대학 자율성이 더욱 침해되며, 대학재정의 악화로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따라서 대학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지원’이란 알팍한 당근책으로 거점 국립대학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교과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대하여 총장님들은 대다수 교수들의 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연히 대응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4. 교과부는 고등교육 선진국의 제도와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제도를 역사와 문화가 판이한 한국대학에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습니다. 졸업정원제와 학부제의 실패, 의학전문대학원과 입학사정관제의 시행착오 등이 비근한 예입니다. 지표주의적 평가제도나 그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 ‘법인화’의 조급하고 일방적인 시행, 학장임명제의 강제(지명제) 등도 이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들의 문제점은 제도의 도입 때문이라기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교과부가 이를 무리하게 강행·강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교과부에 ‘사고의 근본적인 전환’을 주문합니다. 총장님들도 대학의 수장으로 서, 교과부의 ‘관료적 통제에 따른 대학의 실패’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대학의 자율권’을 확립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교과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행재정적 지원’의 작은 유혹과 압력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교육과 연구 현장의 모든 교수들과 힘을 합쳐 ‘대학의 권위’를 살려내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5. 우리는 대학 안팎의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수들은 많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장님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교수들을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연구 현장의 목소리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함으로써, 교수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학사회의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 총장의 '도덕적 권위'로 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 개개인의 결단은 물론, 다른 총장님들과 공동으로 한국 고등교육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우리는 총장님들이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서, 특히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시행에 맞서, 각 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총장님들 공동의 의견을 결집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거점국립대학총장회의'를 열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나아가 총장님들이 우리 거점대학 교수회장단과 함께 만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그동안 우리 교수회장 개개인은 총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 왔지만, 이렇게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장 전원이 거점국립대학 총장님 전체를 상대로 부탁과 요청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례적인 고언(苦言)을 드리게 된 교수회장들의 '위기의식'을 십분 이해하시고, 향후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의 권위와 자율성을 지켜냄으로써, 한국 고등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 10월 18일

전국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장 일동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김세환, 경북대학교 교수회장 김형기,
경상대학교 교수회장 마대영,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정용하,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문 희,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박병덕,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고경표,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김필동,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오원태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 일동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취소에 대한 청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금년 2월 18일 <제2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대통령님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이후에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반대론자들은 물론이고 찬성론자들조차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설령 급여체계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는 오로지 교과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만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제시함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상실하였습니다.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 역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과부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원래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교수들은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국립대학 교수들은 어지간한 일에는 서명 등의 집단행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교원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8,927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졸속 추진은 교육·연구·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대학을 성과 중심의 경쟁 지상주의로 내모는 처사로서, 탁상공론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현재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한국이 선진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과 연구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전근대적인 출세우기식 성과 창출만을 요구하는 이같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대학교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시켜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키는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국립대학들은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 나아가 정책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을 취소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

원 드립니다.

교원 성과연봉제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추진하려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립대학 교수들은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교과부 장관에게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며 간담회 거부 의사를 밝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부처인 교과부가 소통을 거부하는 상황인지라 대통령님께 이렇게 번거로움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랏일 못지않게 고등교육 문제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중대사라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대학과 교수 사회를 황폐화할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우리 대학을 진정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해나가도록 대통령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거듭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일동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4수능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가의 교육 정책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전망과 교육 현장에 대한 세심한 통찰 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교육에 관여하는 여러 주체들과 요소들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2009개정교육과정(이하 개정교육과정)과 2014수능개편안(이하 수능개편안)은 이러한 전망과 통찰 및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개정교육과정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기조로, (1)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2) '창의적 체험 활동' 도입을 통한 폭넓은 인성교육 추구, (3) 고교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삼고 있다. 그리고 수능개편안은 (가) 수험생의 과도한 수험 부담 완화 및 사교육비 경감 도모, (나) 대입 여건 변화에 따른 수능 역할 재설정, (다) 개정교육과정 취지 반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 지향하는 목표를 위해 도입한 구체적인 정책들인 학기당 이수 과목수 축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도입, 수능 응시 과목수의 축소와 제한 등은 대부분 지향 목표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수능개편안이 개정교육과정 운용의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중등학교의 교과교육은 수능에서 비중이 큰 과목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균형 잡힌 교육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개정교육과정이 공교육의 파행을 내포하고 있다면, 수능개편안은 이 파행을 더욱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 과목수를 축소함으로써 이 영역의 교육 비중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이 영역의 교과 교육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제2외국어와 한문을 응시 과목에서 배제함으로써 다변화되어가는 세계화 시대에 역행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응시 과목수를 축소하면 수험 부담이 줄고 사교육비가 경감되리라는 교과부의 예측은 응시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에 대한 집중도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이 초래한 교과 교육의 양극화는 당장 교사 수급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국적인 예비조사 등에서 나타나는 예측으로는 영어와 수학 교과의 교사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교과 담당 교사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장차 수업을 맡지 못하게 될 현직 교사는 단기간의 재교육을 거쳐 다른 교과 담당교사로 재배치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예비교사로 양성 중인 전국의 사범대학 학생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우리 교

육의 국제적 경쟁력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
지망생들을 교육부가 앞장서서 내쫓는 일이 될 것이다.

교육과정의 개편 과정에서, 그리고 수능개편안 추진 과정에서 교과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일선 학교 교사들과 교원단체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이 거듭 예상되는 문제
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를 무시한 채 교과부가
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교과부가 개정교육과정과 수능개편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그렇잖아도 파행으로
점철되어 온 공교육은 더욱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전국 40개 대학
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교과부가 개정교육
과정 시행을 중단하고 수능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제부
터라도 교육 공동체와의 합의 하에 새로운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방법을 마련하라!

2010년 11월 29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
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
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
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
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

* 기금모금과 서명 작업 동참을 위한 호소문

성과연봉제 저지 및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님들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그동안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와 국립대학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진정으로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신입교수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겠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를 필두로 전국의 국공립대학을 법인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거나 고등교육법 개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데에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모든 국공립대학 교수님들의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부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이번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모금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고등교육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존경하는 전국 국립대학 교수님들께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소위 '국립대선진화방안'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모든 국립대학을 법인화라는 과정을 통해 정부 입맛대로 구조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그동안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단순한 반대를 넘어서 진정으로 국립대학이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해왔으며, 국립대학 법인화의 대안은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국립대학발전법'과 같은 별도 법률의 입법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 고등교육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운동이 좀 더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사, 인사, 조직, 재정 등에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 법인화 추진론자들이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이 국가기관이면서 동시에 독자적 법률주체가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대학에 대한 교과부의 지나친 통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함으로써,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학을 구현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어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지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전국 국립대 교수들의 폭 넓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개정 청원에 서명해 주실수록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모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2010년 11월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국교련 임시총회(12.17) 결의문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2월 17일(금) 전북대학교에서 2010년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법인화법안의 ‘날치기 처리’를 비롯한 대학정책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 서울대법인화법안의 내용과 그 처리 여부는 향후 다른 국립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서울대학교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법안의 처리가 단 한 차례의 실질 토론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1분만에 날치기 처리된 것은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내용은 물론,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된 서울대법인화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날치기 처리된 서울대법인화법안의 폐기 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입장과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서울대 구성원 및 모든 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서울대 본부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직후,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이 이를 환영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민족의 대학’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서울대학교와 ‘겨레의 큰 스승’으로 존경을 받아온 서울대 총장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말았다. 우리는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사명이나 대표대학으로서의 자존심보다는 법인화를 통해 얻게 될 물질적 혜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대학교가 이번 사태에 이르게 된 과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립대에 대해 압박·회유의 방법까지 동원하여 법인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 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이주호 장관은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모범적인 의견 수렴과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교육정책의 입안·입법에도 악영향을 끼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이주호 장관 스스로가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5.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외에도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국립대학 학장 지명제’를, 대학 구성원들의 명분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립대학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우리는 소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국립대학 ‘황폐화 방안’의 강행을 중단할 것을 교과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국회 교과위, 교과부, 국교련 및 기타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2010년 12월 17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0년 12월 8일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경악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국립 서울대학교의 근간을 바꾸는 지극히 중요한 법률을 그렇게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의 육성이라는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는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될 것이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대학 자치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함으로써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일본 국립대학들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대학의 위상과 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국립대학 법인화가 초래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서울대학 법인화를 필두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무리하게 졸속 추진하려는 교육과학기술부에 그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우리와 견해를 같이 하는 여러 야당 역시 법인화 정책의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하였던 까닭에 서울대법인화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법안을 이처럼 무도한 방식으로 밀어붙인 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판단된다. 국립대학을 극심한 경쟁 상태로 몰아가 비판정신을 마비시키고 통제를 더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의도가 아니라면 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행동을 저질렀겠는가. 우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공정사회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이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법률을 날치기 통과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일단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을 상실한 서울대법인화법을 스스로 폐기하기를 바란다. 스스로 폐기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는다면, 국격(國格)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서울대법인화법의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면서, 법안 통과와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만일 이번 폭거의 결과에 따라 서울대학교가 법인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그 일그러진 상흔을 낙인처럼 서울대학교와 한국 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이 땅에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분연히 나서줄 것과 총장 스스로가 법인화법 통과와 실효성을 부정하는 맹성(猛省)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정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앞으로 서울대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다른 국공립대학을 법인화하려는 그 어떤 기도에도 단호히 맞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에도 앞장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한국의 대표대학이자 형제 국립대학으로 여겨왔던 그동안의 우정과 존중의 자세를 철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개탄스러운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주역들과 그것에 편승한 부끄러운 조역들이 누구인지를 역사에 기록하여, 향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지도록 만들 것이다.

2010년 12월 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총 40개교>

보 도 자 료			
수 신	대학 담당 기자님		발신일 자
			2010년 12월 20일
문의처	부서명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연락처
			박병덕 회장 ☎016-9877-2726
제 목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시총회 결의문		

[보도자료] 제목 : 국교련 임시총회(2010. 12. 17) 결의문 (요약)

전국 40개 국공립대학이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는 12월 17일(금) 전북대학교에서 2010년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법인화법안의 ‘날치기 처리’ 등 대학정책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1. 다른 모든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의 실질 토론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안의 폐기 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3. 서울대법인화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직후 이를 환영한 서울대 본부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서울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함께 발전할 수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및 학문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입증하였으므로 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5.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 방안의 마련을 위하여, 국회 교과위,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보 도 자 료

수 신	박은하 기자님		발신일 자	2010년 12월 13일
문의처	부서명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연락처	박병덕 상임회장 ☎016-9877-2726
제 목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 “날치기 통과 서울대법인화 법안 폐기 촉구”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 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이하 국교련)가 12월 8일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목도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서울대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률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고 “또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법인화에 실패한 일본 국립대들과 같이 위상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해 예산안과 전혀 다른 성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서울대법인화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이 없는 서울대법인화법을 스스로 폐기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공정사회 실현의 모범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서울대가 법인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일그러진 상흔을 한국 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며 법안 통과에 불인정 운동”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교련은 서울대 법인화와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 요구 및 학장임명제 반대 성명서(2011. 01. 31)

교과부는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하고 학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2월 대통령에게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에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성과연봉제 찬성론자들조차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그런데 교과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면서도 교수 사회가 제기하는 성과연봉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예 눈 감아버리고 지엽적인 부분만을 수정하여 최종안을 확정짓고 말했다. 그러고는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2011년 3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겠다고 한다.

성과연봉제의 졸속 추진은 교육·연구·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과 연구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인데, 시대착오적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대학교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결과를 우려해서 국공립대학 전체교수의 약 60%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 서명을 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특정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 더구나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

우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하며 그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앞으로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다른 한편 정부가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장임명제는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물론 크고 작은 폐단이 있다. 하지만 직선제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하였듯이 임명제든 간선제든 어떤 제도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학장을 총장이 임명할 경우 직선제보다 오히려 더 큰 갈등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창출 조직인 대학조직을 대학인들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개별 국공립대학이 학장을 단과대학 교수들의 직선으로 뽑을지 간선으로 뽑을지, 아니면 총장이 학장을 직접 임명할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다. 정부가 학장 임명의 방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 행위이다. 세계의 어느 정부가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으로 학장의 임명을 규제한 단 말인가! 우리는 현 정부가 법이라는 강제 장치를 동원하여 학장 임명제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우리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개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립대학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때에 교과부는 대학과 교수 사회를 황폐화할 성과연봉제나 학장임명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대학을 진정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31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진주산업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총 40개교>

보 도 자 료

수 신		발신일자	2011년 1월 31일
문의처	부서명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연락처	박병덕 상임회장 ☎016-9877-2726
제 목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성명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 및 학장 임명제 시도 중단 촉구”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가 2011년 1월 31일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 및 학장 임명제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과연봉제의 졸속 추진은 교육·연구·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의 전형”이며 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특정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직접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하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헌법소원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또한 교과부가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장임명제 시도에 대해서도 법이라는 강제 장치를 동원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 창출 조직인 대학사회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 사교련 연대 성명서

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의 실시는 신중하게 고려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의 실시 이전에 정부는 국립대학 교수들의 교육환경과 연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제도의 실시를 서두를 경우 교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교수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마저 떨어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지방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 교수들에 비해 다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이를 감내해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교과부는 연구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미명하에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악덕기업 조차도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물며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에게 매년 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어떻게 교수들의 업적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또한 전공에 따라 1년에 한 편의 논문도 발표할 수 없는 교수도 있고, 반대로 실험위주의 학과의 교수는 10편의 논문도 발표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연구업적의 가치와 효용성은 양보다 질에 두어야 할 것인데, 이 제도를 잘못 적용하면 질보다 양에 치중하여 교수 상호간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학문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의 경쟁력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려되는 것은 교수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 때문에 교수의 업적평가가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강행하기 보다는 대학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를 먼저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가 이 제도에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리사학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교수들의 보수를 낮출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교수들을 대학사회에서 추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이다. 교수의 질은 짧은 안목과 단기적 성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부는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려 하지 말고 교수들의 연구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수사회 스스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업적이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교련은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먼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 정부는 검증도 되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에 대한 욕망을 좌절시키지 말고 신중하게 숙고하도록 하라!!

2010년 7월 8일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원교 발표 성명서

* 부산대(2010. 03. 23)

본부의 일방적인 <부산대학교 법인화 추진> 종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산대학교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최근 수년간 끊임없이 국립대학 법인화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가가 고등교육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며, 현재 국립대학의 여건상 법인으로 전환하면 대학의 존립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장 역시 부산대학교의 법인화는 학내 구성원들이 동의할 때 논의할 것이며, 단지 법인화가 불가피해질 경우에 대비하여 부산대학교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역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다만 그 준비는 '법인화가 부산대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총장은 그동안 견지해온 법인화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학내 의견수렴절차를 배제한 채 <부산대학교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들어서고 있다. 3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는 보도가 난 지 일주일만에 <부산대학교 법인화법(안)> 작성을 위한 워크숍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온 교수, 직원, 학생들을 대표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본부의 부산대학교 법인화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추진을 반대한다.

1. 본부는 워크숍 추진 배경을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정책에 따른 전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으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법인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 등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계획은 최근 교과부에서 밝혔듯이 대학의 통합과 연합을 거쳐 최소 3~5년간의 기간을 두고 있어 지금 당장 부산대학교가 서둘러 법인화를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 특히, 부산대학교의 여건이 서울대학교와 다른 것을 감안하면, 서울대학처럼 단독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며 이러한 부산대학교 법인화 추진은 Captainitis의 결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법인화 '연구위원회'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인터뷰기사에서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바 있고, 또한 본부는 '연구위원회'임을 강조하고 있지만(3월 22일 대학평의원회) 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면 단순한 연구위원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한 여건 점검 등의 연구 수준을 넘어서 **'부산대학교 법인화 모형 제시', '국립대학법인 부산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작성'**까지 위원회의 역할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법인화 전환 필요여부와 부산대학교의 현 여건을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인화 전환을 전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진행하는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의 인적구성이나 구성시기, 목적, 유지기간 등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바가 전혀 없다. 부산대학교의 정체성을 흔드는 법인화에 대한 대응이, 총장에 의해 임명된 소수의 교수와 직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중대 사안

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둔다.

3. **'부산대학교 법인화'라는, 부산대학교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에 대한 워크숍을 비공개적으로 경주까지 가서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본부 스스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염려하는 것이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긴축재정이라는 원칙하에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비공개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 본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화의 실체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단 한 번의 의견수렴 없이, 아니 단 한 번의 전체 공지조차 없이 진행하는 것이 진정 '부산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것인가? 법인화는 누구의 필요에 의해 이렇게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진의는 무엇인가?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이번 본부의 <부산대학교 법인화 추진(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첫째, 현재 구성된 법인화 관련 '위원회'의 인적구성과 구성 시기, 목적, 유지기간 등 위원회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 실상을 전면 공개하라.
- 둘째, 현 총장은 남은 임기 안에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다급한 욕구를 자제하고, 법인화의 필요여부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여건 점검 등 기본적인 연구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 바란다.
- 셋째, 위원회의 활동을 '연구활동'에 국한시키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교수회 및 대학평의원회와 협의하여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 넷째, 본부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법인화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공개하고, 이후에도 비공개로 어떠한 사안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부산대학교의 법인화는 대학의 미래를 결정짓는 대학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사안이므로 어느 개인에 선호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비록 대학을 대표하는 총장이라 할지라도 대학의 미래를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결정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총장이 대학 내에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일방적인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순리에 맞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또한, 법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법인화' 자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방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모델-이미 교수회가 제시하였던 가치 '자치형 국립대학(안)(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되 자율적인 대학운영)-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의 가능성도 연구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0. 3. 23

부산대학교 교수회/대학평의원회

* 서울대(2010. 04. 14)

성명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그 동안 법인화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아울러 학교 측이 제안한 법인화 방안에 대해 2009년 7월 2일에 평의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입법예고된 교육과학기술부안에 대해서는 2009년 9월 22일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좌우하는 중대사인 만큼 실제적 적실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다.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과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우리 교수협의회는 여전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법안은 우리 교수협의회가 비판해 온 교육과학기술부의 입법예고안 보다도 훨씬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법안은 상근 감사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정부 통제를 더욱 강화한 반면 국유재산의 무산 양여의 범위, 재정지원의 확대 가능성 등을 상당히 제약 내지 위축시키고 있다. 왜 법인화를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할 정도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인화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키워 세계 10 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그 야심찬 의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는 문자 그대로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지금까지 실사구시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법인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식·비공식적으로 학교 당국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어 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법안을 보면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재정적 기반 확충을 추구하려는 법인화의 본령에 턱없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으로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재정은 극심한 불안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고, 자율성과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사회 중심의 학교 운영은 그 동안 대학의 주인임을 자부하면서 교육과 연구를 통해 대학 발전에 이바지해 온 교수들의 자긍심을 짓밟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교수협의회는 법인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됨을 거듭 천명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 틀의 변화와 법인화 법안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0. 4. 14.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국립대선진화방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무릇 21세기에 고등교육 분야에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의 존재 의의는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있고, 이러한 역할을 못하거나 하지 않으려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는 교육 당국은 오히려 고등교육에 해만 끼치는 존재가 되기가 쉽다. 이제까지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는 낮부끄럽기만한 수준에 그쳤으면서 온갖 통제와 간섭만을 일삼아왔다. 우리 서울대 교수들은 이제까지 정부의 이러한 반지성적, 반학문적 작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내하면서 묵묵히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여 왔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를 통한 지배구조의 선진화, 성과급적 누적연봉제의 도입, 국고회계와 기성회계의 통합 운영, 경영정보공시제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시각으로는 국립대학이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와 비효율적 운영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 경쟁체제 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동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에서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우리 교수협의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의 문제점 인식과 이에 따른 선진화 정책 방향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립대학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은 도대체 국립대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국립대학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의 경우 총 운영경비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 지원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도대체 무엇을 어찌겠다는 것인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경영성과’ ‘경영효율’ 등의 개념이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주성은 실종되고 말았다. 이러한 중차대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학의 주인인 교수와 학생을 배제하고 교과부 공무원인 국립대학 사무국장들과 협의하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더라도 이는 대학 선진화가 아니라 대학 황폐화 방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선진화방안은 장기적으로 법인화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한다. 서울대법인화법안에서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는 종래 그 규정의 실효성을 의심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대학에 대한 국가지원을 문제 삼음으로써 이 규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는 마각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학장 직선제는 어떠한 법규에도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관행일 뿐이다. 학장 직선제 뿐만 아니라 총장 직선제도 문제가 있는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서 스스로 이를 폐지할 것인데, 정부가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년센스이고,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작태이다.

인사·보수체제와 관련하여 선진화방안은 ‘성과급적 누적연봉제’를 도입하여 교육·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기본급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를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 개정안은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의 근간이 호봉제를 철폐하고 성과연봉제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교원의 지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사립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온 국립대 교수들을 무위도식하는 철밥통으로 매도하면서 동료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발상이 교육을 책임진 당국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연봉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도 몇 배 차이가 나도록 격차를 벌려 놓았다. 실적이 좋은 교수에게 더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예산 조치도 없이 실적이 적은 교수의 보수를 줄여서 실적이 많은 교수에게 없어 줌으로써 성과를 올리겠다는 것은 우리 대학교수를 조삼모사에 일희일비하는 존재로 취급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정한 연봉 하한선인 2천만원은 계약직 7급 공무원의 연봉에도 미달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성을 대표하는 국립대 교수들에게 모멸감을 안기겠다는 의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재정 회계와 관련하여 선진화방안은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함으로써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는 우리도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하려는 점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기성회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몫’을 학부모에게 한시적으로 전가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현재 그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선진화방안은 이 기성회비를 국고에 귀속시킬 것을 전제로 일반회계와 통합을 시도하는데, 이러한 숫자놀음으로는 대학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이 OECD 국가의 평균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화방안은 대학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뿐더러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선진화 방안은 그 자체로 학문공동체를 말살하고 모처럼 조성된 학문 간의 벽 허물거나 융합, 통섭의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행태이다. 또한 경쟁력이라는 미명 하에 대학을 불신하는 정도를 넘어 연구와 교육에 헌신하는 교수들을 능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으로 중등교육을 망쳐놓고 이제는 대학까지 황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회광반조하여 깨우치고 즉각 시정하기를 촉구한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이런 식의 반학문적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학문 연구와 교육 발전을 돕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또한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학교 총장들은 대학의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 10. 2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 충북대(2010. 10. 27)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8일, 거점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학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포함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10월중에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대학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공무원보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교과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기도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들은 지난 봄 전체 국립대 재직교수의 60%에 달하는 8,800여명의 서명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제시하였고, 충북대 교수들 역시 재직자의 83%에 달하는 604명의 서명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교수들 절대다수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정부는 시장 주의적인 성과연봉제 실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다. 이 교육, 연구활동의 성과를 획일적인 양적 척도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 더욱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한다. 재 국립대학 교수의 보수 수준은 비교대상이 될 만한 다른 전문직종의 보수보다 현저히 낮고 주요 사립대학에 비해서도 크게 낮으며 국영기업체나 공사 직원들보다 높지 않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교과부는 보수총액은 그대로 둔 채 평가결과 하위 50%에 해당하는 교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상위 50%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넘겨주고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봉을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제로섬(zero-sum) 방식, 더욱이 전년도 연봉 차이의 일정부분을 차기년도에 누적시키는 방식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한정된 보수총액을 재분배하고 또 그 보수 차이를 매년 늘려가는 이러한 방식은 교육 및 연구에 대한 교수의 의욕과 자발성을 저하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영리기업 직원의 경우와 달리 교수의 교육, 연구의 성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1년 단위의 초단기 정량 평가에 입각한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을 반학문적인 논문 편수 경쟁으로 몰아넣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연구계획 하에 필생의 업적을 이루려는 학자적 의지를 꺾을 것이다. 성과연봉제는 결과적으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문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또한 교육 성과 평가는 실질적으로 변별력을 갖기 어렵기에 성과연봉제는 교수들로 하여금 연구 이상으로 중요한 교육을 등한시하게 만들어 대학의 근본 기능을 훼손할 것이다. 교수들의 학생지도와 학내외 봉사에서도 성과평가와 연계된 이기적 타산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라는 보수체계 개편 방식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려 한다면 이는 연목구

어이다. 국립대 교수들은 이미 계약제 임용, 강화된 승진심사, 강의평가, 성과급 차등배분, 연구비 수주와 평가 등으로 충분히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국립대학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수수준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의 성과를 능가하는 연구성과를 거두어 왔음이 각종 통계자료로 확인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길은 교수들에게 맹목적, 이기적인 무한경쟁을 강박하는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족한 고등교육 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열악한 교육여건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교수의 보수수준을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교수들의 충의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의 질 저하, 교육의 질 저하, 교수사회 분열, 대학경쟁력 저하 등 심대한 피해만을 초래할 성과연봉제 도입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1. 총장은 교수들의 충의를 수용하여 정부에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라.
1. 정부는 국립대학의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개선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10년 10월 27일

충 북 대 학 교 교 수 회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8일, 거점국립대학 법인화, 국립대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중에서도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교과부는 이미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대학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종료하는 등 제도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기도에 대하여 경상대학교 교수의 80%에 해당하는 578 명을 포함하여 전체 국립대 교수 8,900여 명이 서명으로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이러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뜻은 전국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를 통하여 교과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이미 전달한 바가 있다. 그러나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국립대학 교수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적인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대학교수의 책무인 교육 및 연구 그리고 봉사활동의 성과는 본질적으로 정량적인 평가가 될 수 없다. 대학교수들의 전공분야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다. 서로 다른 전공분야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수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 활동의 성과를 획일적인 양적 척도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모든 국립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적 성과급제와는 그 틀을 달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성과급적 연봉제’는 결코 교수의 보수를 결정하는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체계’로서 기능할 수 없으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된 헌법 제31조 6항을 위반하는 위법적 행위이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하위 50% 교원의 보수를 삭감하여 상위 50%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수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수자를 징벌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성과급제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교수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좌절하게 하는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클 것이 자명한 제도이다. 국립대학 교수의 분열과 좌절은 궁극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각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교육 수요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는 단기적 성과지상주의에 경도된 일부 관료들의 단견에 의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인 국립대학에서 수행하는 교육과 연구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대학사회를 황폐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위태롭게 하는 자가당착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염원하는 경상대학교 교수들은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거부를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1. 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수사회의 분열, 그리고 대학의 황폐화를 가져올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1. 행정안전부는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 1. 총장은 절대 다수 교수들이 거부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 현재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의 중단을 선언하고 국립대학 총장들과 연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이 제도의 도입 철회를 즉시 요청하라!
- 1. 정부는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

2010년 11월 3일
경상대학교 교수회

* 부경대(2010. 11. 17)

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28일 국립대학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10월 12일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기도에 대하여 국립대학 교수들은 지난 봄 전체 국립대 재적교수의 60%에 달하는 8,800여명의 서명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경제효율과 시장만능주의에 기초하여 성과급적 연봉제 실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교과부와 정부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은 **교수업적평가에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에 의해 움직이는 동태적인 생명체**이다.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량화될 수가 없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도자체의 모순과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첫째, 교수업적평가에 포함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은 교수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학생들의 취업지도, 특강, 학생상담, 각종 보직 등은 교수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고 이는 명백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양적 평가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연구업적평가는 연구의 질을 무시하게 만들고, 양적 위주의 논문들을 양산하여 학문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것이다. 현 성과급제도 하에서도 이러한 현상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셋째, 교수업적평가는 기본적으로 학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순수기초학문의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단기 성과주의는 장기적 연구결과물을 기대하는 기초학문 및 순수학문의 경시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넷째, 한해의 평가결과가 미래의 연봉에 영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점, 초창기 평가결과가 미래년도의 평가결과보다 압도적으로 영향력이 높다는 점, 호봉수준에 따른 불공정 게임이라는 점 등 제도 자체의 수많은 모순과 비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호봉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호봉제도는 자녀 교육 및 양육이라는 사회적 책무가 감안된 합리적 제도이므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한번 시행되면 제도의 특성상 다시 되돌리기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내외 여건의 구비 등 사전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은 불확실한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함으로써 정책실패의 쓰라린 좌초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 정책실패의 폐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경대학교 교수회 평의회는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고, 극심한 교수사회의 분열, 대학경쟁력 저하 등 심대한 폐해를 초래할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3. 총장은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학내 교수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여 정부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라.

2010. 11. 11

부경대학교 교수회 평의회

* 충남대(2010. 11. 17)

송용호 총장의 망동(妄動)을 규탄한다

현재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용호 충남대학교 총장은 거점국립대 총장들에게 문건을 보내, ①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를 지지하고, ②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국회에 청원하는 공동성명서를 내자고 종용하는 일을 하고 있다. 11월 18일 열리는 전국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획책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 문건에서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송총장은 이를 충남대를 비롯한 거점국립대학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주지하듯이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와 거점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추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28일 발표한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따라서 송총장의 이런 움직임이 단독 플레이라기보다는 교과부와의 일정한 교감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자명하다. 송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위한 ‘첨병’ 또는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송용호 총장은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 이는 송총장이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충남대학교의 법인화가 교수회와 대학노조, 학생들, 그리고 전직 학무위원들까지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치고, 대전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한 탈출구로 오로지 서울대 법인화법안의 통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성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도, 어떻게든 교과부의 환심을 사보려는 비상식적인 ‘소영웅주의’와 헛된 욕망에 송총장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송총장의 종용에 대해 다른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일단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대학 총장 1명 정도가 적극적인 편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그러나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안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은 한국사회 민주화의 산물인 총장 직선제에 따라, 해당 대학 교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수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 교과부의 요구와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일만큼은 송총장의 종용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믿고자 한다.

그러나 송총장의 행동은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그 자체가 아연할 수밖에 없는 이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내부에서도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회에서 법안의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대해, 아니 이런 일이 없더라도 남의 대학의 일에, 충남대학교의 총장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것인데, 하물며 이를 지지·촉구한다? 그것도 다른 국립대학 총장들을 종용하면서까지? 게다가 본부는 지난 주 법인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로 발표한 문건에서 충남대 총장이 ‘법인화의 전도사’가 아니며, 그럴 권한도 영향력도 없다고 하면서, 충남대의 현재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송총장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입장 표

명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송총장이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송총장이 다른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자신의 터무니없는 제안을 따라줄 것을 종용하는 행동은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대학 교수님들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한 송총장의 행동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을 배반하는 것인 동시에 충남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망동으로,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다른 거점국립 대학 교수회와 함께 이러한 송총장의 망동을 저지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송용호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총장은 다른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문건을 공개하고, 충남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라.
2. 송총장은 즉각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커다란 불편과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다른 거점국립대학 총장님들께 사과하라.
3. 송총장은 충남대 구성원들의 의견은 도외시하는 가운데, 교과부의 하수인이 되어 다른 대학의 일에 과도하게 간섭함으로써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망동을 한 데 대해 학내 구성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4. 송총장은 이번 일로 인해, 더 이상 충남대학교 법인화를 추진할 명분도, 자격도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였다. 따라서 송총장은 즉각 충남대학교 법인화 추진 작업의 중단을 선언하라.

만일 송총장이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송총장은 충남대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충남대학교 교수회는 이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교수님들을 비롯한 충남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와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0년 11월 17일

충남대학교 교수회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

교과부에서 국립대 교원의 급여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국의 국립대 교수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교수들도 이 제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명운동을 통해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 일동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대학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지만 현재도 이미 우리 대학사회는 충분히 경쟁적인 환경에 놓여 있고, 실질적인 연봉 역시 업적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격차가 벌어진 상태이다. 그런데 주요 사립대에 비해 상당히 적은 국립대 교수들의 연봉 수준 개선은 도외시한 채, 기존의 성과급 예산을 상대평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로섬 방식의 제도를 통해 국립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교수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부의 단견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른바 '첼밥통'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다. 무릇 21세기 대학이 추구하는 경쟁력은 자율성과 창의성에 토대할진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 대학사회는 교수 상호간 원자적 경쟁으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 자명하다. 사제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 교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지표로 작용할 때, 학자에게 금지의 원천이 되는 연구업적이 동료교수보다 더 많은 보수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때, 지성인으로서 대학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 그 순수성을 상실할 때 교과부는 우리 국립대학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가? 고도의 지식창출 활동을 하는 대학교수의 업적을 계량화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 해도 성과연봉제는 대학가에 단기 성과주의를 조장하여 대학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게다가 그간 다른 분야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성공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 대학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즉각 철회하라!
- 성과연봉제와 법인화를 포함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에 관해서 교과부 장관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하라!
-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그간 국립대학들이 기여해 온 역할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끼는 가운데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전념하라!
-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는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고, 정책 입안자는 추후 정책의 실패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지도록 하라!

2010년 11월 18일

경북대학교 교수회

* 경북대: 11월 일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학장 임명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학장을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도록 하려는 입법예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학장 직선제는 1987년 이후 진전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그것에 기초한 대학자치의 상징이다. 학장 직선제의 도입은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1987년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 아래 관료화되고 경직화된 대학사회를 민주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사회 각 영역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조직만은 여전히 과학교육기술부가 정점에 있는 상명하달식 관료제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대학교수들은 총·학장의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하여 대학을 창조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대학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총장이든 학장이든 임기가 끝나면 평교수로 돌아가는 평등 조직이다. 그것은 최고의 지성이 모인 대학이 바로 권위주의적인 관료제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을 구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시도하는 학장 임명제는 대학인들의 이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써 국가가 위로부터 대학 내 관료제를 강화해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책략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에게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조직을 대학인들의 자유와 자율에 맡길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 교과부는 학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학장 직선제가 대학 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항상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체계를 비롯하여 현대 사회에서 구성원이 조직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선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선거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조직에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해 전체를 통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학장이 정해질 경우, 오히려 대학사회에는 새로운 더 큰 갈등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학장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다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어찌 선진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 대학 교수들은 대학의 자치를 후퇴시키는 학장 임명제가 국립대학을 선진화하는 방안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 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후진화시키는 방안임을 밝힌다.

3. 1987년 이후 대학에서 관례로 정착된 학장 직선제에 대해 정부가 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라는 입법예고 조치는 대학의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개별 국립대학이 학장을 직선으로 뽑아 임명할지 간선으로 뽑아 임명할지, 아니면 총장이 직접 임명할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학장 임명의 방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세계의 대학들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여 왔다. 세계의 어느 정부가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으로 학장의 임명을 규제한다 말인가! 우리 대학 교수들은 현 정부가 법이라는 강제 장치를 동원하여 학장 임명제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북대학교 교수회와 각 단과대학 교수회는 학장을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11월 일

경북대학교 교수회

* 전복대: 12월 1일

학장 직선제 폐지 기도를 중단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학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장 직선제를 금지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교과부는 학장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학장 직선제가 대학 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물론 크고 작은 폐단이 있다. 직선제뿐만 아니라 이미 경험하였듯이 임명제든 간선제든 어떤 제도든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다. 특히 학장을 총장이 임명할 경우 직선제보다 오히려 더 큰 갈등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학장 직선제는 총장 직선제와 더불어 1987년 이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 아래 관료화되고 경직화된 대학사회를 민주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비록 단기적으로는 조직에 갈등을 발생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해 전체를 통합시키는 계기를 부여하는 직선제의 장점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진행된 사회 각 영역의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조직만은 여전히 교과부가 정점에 있는 상명하달식 관료제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총·학장의 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확대하여 대학을 창조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대학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일반 행정조직과 달리 총장이든 학장이든 임기가 끝나면 평교수로 돌아가는 평등 조직이다. 그것은 최고의 지성이 모인 대학이 바로 권위주의적인 관료제를 배격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을 구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조직을 대학인들의 자유와 자율에 맡길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개별 국공립대학이 학장을 단과대학 교수들의 직선으로 뽑을지 간선으로 뽑을지, 아니면 총장이 학장을 직접 임명할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정부가 학장 임명의 방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개입행위이다. 세계의 어느 정부가 국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법으로 학장의 임명을 규제한단 말인가! 우리 대학 교수들은 현 정부가 법이라는 강제 장치를 동원하여 학장 임명제를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는 바이다.

우리 전복대학교 교수회는 학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개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1일

전복대학교 교수회

* 전북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성명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금년 2월 18일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수차례의 토론회와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수들은 교과부가 시행하려는 성과연봉제 방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하면서 수정·보완을 요구해왔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우선 국립대학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설령 급여체계 때문에 경쟁력이 낮다 하더라도 성과연봉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오로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입장만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제시함으로써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상실했다.

교수들도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교과부가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를 원래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학과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교원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것이다. 교원 성과연봉제에 대해 국공립대학 전체교수 약 15,000명(장기 출장자 제외) 중 8,927명이 반대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은 국공립대 교수들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과부의 성과급적 연봉제의 졸속 추진은 교육·연구·봉사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대학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저지르는 탁상공론식 행정의 전형이다. 우리나라가 선진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교육과 연구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인데, 시대착오적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대학교수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말살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은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때에 교과부는 대학과 교수 사회를 황폐화할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 대학을 진정으로 선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책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10년 12월 1일
전북대학교 교수회

* 충북대 12월 2일:

대학의 자율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학장임명제 반대한다

1. 대학은 자유로운 지성과 비판적 사유의 전당이다. 자율, 자치, 민주주의 없이 대학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대학 자치는 헌법적 이념이다.

2. 단과대학장 직선제는 총장 직선제와 함께 대학 자치라는 헌법의 이념, 자유와 진리라는 대학의 이념 실현을 위한 보루이다. 지난 20년간 완전히 정착된 학장직선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 아래 관료화되고 경직화되어 있던 대학을 민주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지대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교수들은 학장 직선을 통하여 대학 행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왔고, 대학 본연의 기능이 권력의 간섭과 통제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으며, 대학 발전을 위해 교수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해 왔다.

3.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장 임명제 도입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대학 자치 이념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그 동안 진척되어 온 대학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려는 폭거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에서 학장 임명제 도입 제안이유로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를 들고 있다. 교과부와 정부에 대하여 전혀 자율적일 수 없는 총장이 학장을 임명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제고’라니, 이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이다. 대학은 군대나 관료조직 또는 영리기업조직과는 다른 고등교육과 학문 추구를 위한 전당이다. 학장 직선을 통한 대학 행정에 대한 교수들의 능동적 참여, 이를 통한 민주적,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사고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통할 법한 사고이다. 학장 임명제를 도입하려는 실제 이유가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통제 강화에 있음은 명백하다.

4.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장 직선제가 대학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무시, 대학과 교수사회의 현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갈등을 수반하는 것이 정상이며, 갈등의 합리적인 조절과 해결을 통하여 사회가 발전한다. 학장 직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라기보다 생산적인 것이며, 교수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가지고 있다. 교수들에 의한 학장 직선제가 아니라 오히려 총장에 의한 학장 임명제가 대학과 교수사회에 저급한 이해타산과 비생산적인 갈등,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폐해들을 유발할 것이다.

5. 학장 직선제는 어떠한 법령에 의해 실행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실행해 온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제도이다. 교수들은 대학의 자율자율적으로 실행을 가꾸어갈 능력을 지니고 있다. 국가가 교수들의 기본 양식과 시민적 역량을 부정하고 교수들을 단지 관료적 계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학장 직선제를 법령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국가 권력의 남용이며 선거를 통한 직접 실행해 온실현이라는 명제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립대학의 학장 임명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금 대학에 필요한 것은 타율과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 강화가 아니라 더 많은 자율 자율더 많은 실행해유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충북대학교 교수회는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010년 12월 2일

충 북 대 학 교 교 수 회

* 부산대 12월 8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교육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에 기초한 그 임용령에서 규정된 총장의 학장 임명권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은...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고 변경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교과부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식하면서 그 개정에 대하여 반대한다.

1. 현재 학장 선출 방식은 각 대학에서 직선을 통하여 선출된 교수를 총장이 학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학장 임명방식은 지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 임명총장이 학장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에 대하여 취해진 역사적 산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장 지명권을 총장이 행사하도록 <시행령>으로 강제하는 것은 대학에 자율성을 준다는 빌미로 교과부가 정하는 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2. 학장 직선제가 전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점은 교수들도 인정하는 바다. 각 대학들은 학장 직선제를 더욱 개선하여 대학의 현실에 맞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정당성을 감안하여 직선제를 유지하거나 단과대학 교수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에게 추천하는 등 단과대학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보완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각 대학들이 학장임명제에 대하여 대학 스스로 보완하여 대학의 여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부가 학장 직선제의 폐단만을 부각시켜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고 시행령 개정을 강제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간섭을 넘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은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비롯한 외부의 권력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헌법 제 31조) 이념으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조치이다.

4. 이번 학장임명방식의 개정에 있어서 학장임명이 직선에 의한 임명이나 총장 지명제이냐가 그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장임명제의 개정과 관련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한 핵심은 학장 임명제 개정이 아닌 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있다. 학장이 자율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5.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국가기관이고 총장만이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이다. 학장이 직선 이든지 지명이든지간에 현재와 같이 인사, 재정 등에서 학장의 권한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장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학장이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은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국립대학의 성격을 ‘국가기관임과 동시에 법적 주체’로 규정하면 그 구성단위인 단과대학(학장)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 근거에 따라 단과대학(학장)도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장임용방식의 개정보다 학장에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즉 고등교육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0. 12. 8
부산대학교 교수회

* 전남대 12월 9일

총장의 학장 직접임명에 대한 반대 성명서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해 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호히 반대한다.

다 음

1. 전남대학교는 1987년 이래 많은 노력에 의해 안정적으로 정착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장선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현재 단과대학장은 ‘교수회의에서 교수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임하고, 총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총장이 직접임명하는 방식, 총장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교수회의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단과대학의 특수성과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2.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자유로운 사고와 비판정신의 거의 유일한 산실이자 마지막 보루이다. 대학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와 자율을 포기하고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제도에 갇힌다면 이는 곧 대학이념의 상실을 의미한다.
3. 현재 국립대학에서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의 의결권은 오직 총장 1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매우 위험하고도 불합리한 것으로, 오히려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켜 대학운영의 합리성과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것인가이다.
4. 총장에 의한 학장 직접임명제는 대학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과도한 간섭이며 대학을 관료제의 틀 안에 가두어서 위로부터의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려는 군사독재 시대 망령의 부활에 지나지 않는다.

2010년 12월 9일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

* 제주대 12월 10일/12월 15일

국립대 학장직선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반대 의견

총장의 직접 지명에 의한 단과대학장 임용방식의 법제화에 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4’ (“대학의 장은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를 신설하여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용하게 하려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직접 지명하여 보”하게 함으로써 단과대학교수들의 단과대학장임용후보추천권을 다시 박탈하려는 교과부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제1항)와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제4항)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다.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2005헌마857, 1998. 7. 16. 96헌바33 등 참고.)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한 이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8헌마1119.)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대학의 자율성’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은 물론 단과대학장의 임용을 포함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1998. 7. 16. 96헌바33 등.)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과 1년여 뒤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은 뒤늦게나마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바로 이 헌법 정신을 살려서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비록 관행으로나마 총/학장 직선제가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 교과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로 이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

2.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이 자유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인 단과대학장 직선제와 관련된 문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개별 대학에 맡겨야 한다.

단과대학장 직선제에 따르는 각종 폐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노력이 이미 구체적인 논의의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24일 제주대학교교수회는 ‘총회 겸 현안토론회’에서 ‘단과대학장 임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직선제에 따른 폐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는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지식창출 조직인 대학을 대학인들의 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자율성 제고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학장이나 총장에 임용되었던 사람이라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동료가 되는 대학사회는 지극히 평등한 사회이기에 대학의 자율성은 더더욱 그렇다.

3. 교과부가 「교육공무원법」의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대학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직선제 폐지는 오히려 대학후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어, 뒤늦게나마 헌법 정신을 살려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0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을 1980년대 말에 본격화한 민주화 이전의 단계로 후진화하는 조치이다.

교과부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는 직선제가 대학 사회를 정치화하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다수가 참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모든 선거에는 크고 작은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에는 항상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조직의 대표를 직접 뽑는 직선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선거가 비록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표의 정통성을 확보해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 있다. 만약 총장이 “직접 지명하여 보”하는 방식으로 학장이 정해질 경우에는, 대학사회에 더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단과대학 차원에, 그것도 소수의 교수들에 한정될 수 있는 학장 직선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다 오히려 대학교수 전체에 파급될 수도 있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면 이를 어찌 선진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

2010년 12월 10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작성자 : 제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양길현) (인)

*주 소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효담 교수회관 203호

*연락처 : 064)754-2088, 010-3698-8725

학장지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회의 성명서

총장이 학장을 직접 지명하는 학장지명제 추진을 중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9월 대학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총장이 직접 학장을 지명하는 학장지명제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급기야는 11월 24일 그것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학장지명제 추진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일 뿐, 대학의 선진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후진화 방안이다. 이에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학장직선제가 지난 20년 동안 제도적 정착을 통해 대학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학장지명제는 마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그것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화되어 온 학장직선제는 총장직선제와 더불어 대학 사회에 민주적 의사소통의 공간을 여는 두 개의 축이다. 실제 학장직선제는 단과대학 수준에서 참여와 자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함은 물론이고 직급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직적 구조를 완화시킴으로써 대학사회의 소통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등 순기능을 해 오고 있다. 더욱이 교수들이 직접 선출한 학장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자긍심을 배경으로 학무회의 등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대학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적극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물론 학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과정에서 교수들 간에 인간관계의 불편함이 야기되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장 지명을 통해 일사불란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효율성 논리는 근시안적인 사고일 뿐이다. 왜냐하면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효율은 대학 현장의 생동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들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많이 확보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총장이 직접 학장을 지명하게 되면 총장 선거과정의 과열과 줄서기로 대학사회의 탈선은 더욱 커질 공산이다. 이 점에서 보면 교과부의 대학선진화 방안이란 제왕적 총장을 통해 대학사회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이는 단과대학의 역사와 특수성을 무시하고 불통과 획일 그리고 불합리만 낳는 후진적 제도일 뿐이다.

자율과 민주적 책임이라는 가치에서 볼 때 학장직선제가 학장지명제보다 훨씬 더 나은 제도이다. 대학행정의 효율성도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수립된 바람직한 목적·목표·방향에 의해 인도되어야 더욱 실효적이다. 이에 제주대학교 교수회는 교과부와 총장이 대학을 지배하게 되는 비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막고 또 저급한 이해관계의 결탁으로 인해 더 많은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학장지명제 도입을 반대하며, 자치와 자율 그리고 민주적 효율과 통합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학장직선제의 관행이 존중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

2010년 12월 15일
제주대학교 교수회

* 서울대

서울대법인화법안 제정에 대한 서울대 교수협회의 입장

1. 지난 8일 국회는 느닷없이 서울대법인화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직권 상정하여 단 1분 만에 통과시키고 말았다. 당초에 해당 상임위에서 의안으로 상정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한 온갖 논의나 의견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는 서울대가 수정을 요구한 사항도 묵살한 채 정부 제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서울대법인화가 다른 안건에 끼워 팔기 식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의 발로이고, 더구나 예산안처럼 시한에 ?기는 안건도 아닌데 모든 의견을 다 무시한 채 정부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이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

2. 원래 서울대학교 교수협회는 서울대학교가 정부의 기관으로 남아 있는 것이 결코 대학의 발전과 연구 및 교수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가 서울대의 법인화를 추진할 때 커다란 기대를 걸었었다.

그 기대는 서울대의 법인화가 잘만 되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었다. 정부의 대학에 대한 투자는 학문 연구와 교육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통제를 위한 당근으로 사용된 예가 허다하였다. 서울대의 법인화를 계기로 정부는 환골탈태하여 대학에 본격적인 지원을 하여 헌법의 정신에 따라 진정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종전의 고등교육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정부는 적어도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법인화할 것으로 기대했었다.

3.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대법인화법안은 극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 법인이 된 서울대가 국가기관의 지위를 벗어났으면서 여전히 정부의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오히려 재정적으로 법인화 이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러한 모습은 수많은 정부 출연기관의 현재 모습을 보더라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대학 재정을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법인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대학의 자치를 보장할 수 없다. 그나마 당초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정부의 기금 출연을 통한 지원까지도 정부 법안에서는 삭제하여 더욱 부실한 법인으로 몰아갔다. 제안 이유에 보면 서울대를 세계적인 명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그것은 허황된 과대포장에 불과하였다.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것은 대학법인의 지배구조이다. 법인화를 한다고 대학의 모든 조직을 통째로 법인에 몰아 넣어서 대학 전체가 이사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사회의 지배를 받도록 하였다. 그로써 마치 회사의 직원처럼 대학에서 교수의 지위가 법인에 고용된 단순 근로자로 전락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까지 대학의 주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박봉에도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오던 교수가 더 이상 학문연구와 교육의 주체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밖에도 이사회의 구성, 감사의 선임 등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독소조항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서울대에서도 국회에 수정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다.

4.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년 전에 수행한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의 단계적 기금 출연 보장과 법인과 대학조직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독자적 법인화법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법안이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동안 법안을 상정하지도 않고 썩히고 있었던 야당도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기회로 문제점에 대한 검토나 토론도 없이 해당 상임위에 불과 서너 시간을 주고 안건을 처리하라고 통지하고 나서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아무런 검토도 없이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훼손한 처사이고, 실질적으로는 국회법 제85조가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다.

5. 그에 따라 우리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작업을 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졸속처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2010. 12. 10.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 전남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존립을 뿌리째 흔드는 정책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전국의 국립대학교가 교수회연합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및 국민을 상대로 하여 각종 방법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12월8일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상임위원회 검토도 없이 국회본회의 통과되었고 최근 우리 전남대학교도 “**법인화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에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립대학교 법인화는 아래와 같이 망국적인 정책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첫째, 법인화는 모든 국민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법인화는 OECD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여 등록금의 인상을 초래하게 됨으로 지방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교육공공성 파괴 정책**이다.

셋째, 법인화는 재정과 인사 등에 대해 대학에 일정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여러 간접적인 방식 또는 정부 추천 이사를 통하여 대학을 통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허울일 뿐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게 될 **신관치 정책**이다.

넷째, 법인화는 지역균등 발전과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다섯째, 법인화는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다양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인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과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이에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국립대 법인화를 결사반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계속 추진하면 뜻을 같이 하는 국공립대학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총장과 대학본부에게도 법인화 반대 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12.9.

전남대학교 교수협의회

* 전북대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9월 28일 발표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방안’은 국립대학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어 놓을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 대학 행정을 책임지는 총장이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교수 단체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 선진화추진단」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다는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의 경우,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법인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가 실현될 경우 대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국립대 법인화의 강행은 대학 경쟁력 강화는커녕 소모적 논란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둘째, 정부가 법인화와 함께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학장임명제는 국립대학이 법인화될 경우 도입되는 총장간선제와 정확히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는 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총장들은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기에 교육 당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통제 수단인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가 곁들여지면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꺾이기만 남을 것이다.

셋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당장 내년 임용 교원부터 시작하여 3년 만에 모든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들의 60% 정도가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을 몰고 올 이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했다. 교수마다 학문 분야가 다르고 전공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적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군다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국립대학 교원 신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제도의 도입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결국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담고 있는 큰 맥락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교육을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논리에 내맡겨버리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원한다면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러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10년 12월 1일
전북대학교 교수회

* 교수신문(2010. 03.02) 인터뷰 / 김유정 기자

국립대 법인화 저지 ... 강력한 방안 모색할 것”
인터뷰_ 박병덕 국교련 신임 회장(전북대)

국립대가 대학 구조조정의 진앙지가 된 것일까. 법인화, 교수 성과연봉제 등 최근 국립대를 둘러싸고 굵직한 이슈가 줄을 잇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이다.

박병덕 전북대 교수(58세, 독어교육과·사진)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박 교수는 최근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신임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를 들었다. “국공립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법인화가 아니라 국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립대를 법인화하지 않고서도 대학에 지금보다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 법인화 핵심이 오히려 국가재정지원 축소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통한 정부의 대학지배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교련은 올해에도 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수, 교직원, 학생이 연대한 ‘국립대학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는 동시에 지방 국공립대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계획이다.”

서울대 법인화가 본격 추진되자 일부 국립대는 내부적으로 법인화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국교련은 법인화를 당연시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화 이후의 대안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패배주의적 입장을 갖지 않겠다”며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법인화를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근 국립대는 성과연봉제를 두고 또 한번 들쭉였다. 교과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대 신임교수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해 2015년 안에 정교수까지 전면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수사회 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박 회장은 “교수집단이 제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 할 경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면서도 교과부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근본원인이 현재의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 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도대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교련은 곧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안, 활동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교수사회 특성을 감안하지 않으면 성과연봉제는 원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먼저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총장직선제도 국교련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다. “총장직선제와 관련해 대학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총장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대학 의사결정체제에 대한 몇 가지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해 총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국교련이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각종 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박 회장은 “대학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면 교수들이 대학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반성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현실을 냉철히 판단해 책임의식을 갖고 대응해 나가자는 주문이다. 박 회장은 “현실 여건상 교수들이 대학 외부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단체의 활동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요논단>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돼야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해 결국 대학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병덕 (전북대 교수. 전국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월 18일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국립대학의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호봉제의 토대 위에 부분적으로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현행 국립대학 교원 급여체계를 폐지하고, 기본연봉에 성과를 매년 누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원 간에 상당한 보수격차가 발생할 성과연봉제로 개편을 추진하며, 이 제도를 '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모든 신입교원, '11년 이후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모든 재계약교원, '15년에는 모든 교원에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은 향후 국립대학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의 질적인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교수 집단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경우 개혁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혁은 무조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원칙과 당위성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그 전에, 만약 우리 대학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약 갖추지 못했다면 그 근본 원인이 현행 교수 급여체계에 있는지, 아니면 열악한 교육여건 등 다른 데 있는지 그 원인부터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나는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만약 약하다 할지라도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열악한 교육여건과 형편없이 부족한 교육재정에 있지 결코 급여체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고등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고작 0.4%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백번을 양보하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이 급여체계에 있다고 하자. 설령 그렇더라도 성과연봉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튼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과연 교과부의 장밋빛 전망대로 사태

가 진행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대학은 인간·사회·자연의 본질과 구조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이자, 전공지식과 기술, 일반교양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양성하고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일 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인 집단이기도 하다.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단기적, 부분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지식인 집단으로서 대학이 지니는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대학 사회를 황폐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현행 교수 급여 체계의 경우에도 성과급적 요소가 상당 부분 있고,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적지 않다. 교수 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교수 개인의 원자화된 경쟁력보다는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의 경쟁력이 더 필요하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 교수 상호간에 불공정한 무한 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부는 이제라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임을 인식하고, 대학을 황폐화시킬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 한국대학신문 칼럼(2010-04-19)**

국립대 법인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

박병덕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대학의 질적 발전 없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이 제 기능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개혁에의 요청은 당연하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법인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학 자율권을 확보하고 재정을 확충해 획기적으로 교육·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란 게다. 하지만 국립대 법인화의 실제 내용은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개혁 방향과는 너무 다르다.

첫째, 국립대 법인화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다. 국립대의 본질과 존립 이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둘째, 국립대 법인화는 OECD 최하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기는커녕 재정 운용의 책임을 개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셋째,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과 인사 등에서 개별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추천 이사를 비롯한 여러 간접적 방식으로 대학을 통제하게 돼 있다. 대학에 대한 자율성 부여는 허울일 뿐, 정부가 여전히 대학을 지배하게 될 신(新)관치정책이다.

넷째, 국립대 법인화는 지역균등 발전과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를 고사시키는 정책인 셈이다.

다섯째,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정신과 창의성, 다양성을 파괴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의 전제인 대학의 진정한 경쟁력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대학 개혁의 방향은 어떤 것일까.

우리 대학들이 교육·연구·봉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근본적 원인의 하나로 열악한 교육 여건을 들 수 있다. 국내총생산의 1% 이상을 고등교육 예산에 투자하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으로 0.4%의 예산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국가의 안정적 재정 지원이야말로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학운영의 의사결정구조가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공공성·민주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대학 의사결정체제의 기본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진정 대학의 경쟁력을 바란다면 정부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대학에 최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지식 생산 △비판적 지성 함양 △창조적·능동적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미래 개척을 위한 토대 구실을 하는 공적 기관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오직 취업을 위해 도구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현재의 교육 풍토를 일신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인지해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고, 나아가 인간성과 협동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다양한 개성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교수 상호간 불공정한 무한경쟁 체제의 도입이 아니라,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경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기적·가시적 성과를 제시해야만 하는 정치적 시각으로 교육 문제에 접근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구성원들을 비롯한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아야 할 때다.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기초학문과 응용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고, 우리 학문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대학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 연합뉴스(2010.04.09)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법인화 즉각 중단해야"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전국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이하 국교련)는 9일 부산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은 모든 계층에게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학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 등에게 전가해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정부가 법인화 시행으로 대학의 자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추천 인사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대학을 통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재의 대학 서열을 공고히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법인화"라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이어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를 비롯해 동시에 추진되는 재정회계법과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의 도입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wink@yna.co.kr

* 교수신문 기고

국립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

오길영 (충남대 교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나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

첫째, 성과연봉제가 대학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

교과부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동기 유발은 물론, 국립대 교수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가 조성되어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현재 국립대가 처한 어려움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볼 때 턱없이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그에 따른 교육 및 연구여건의 미비에 기인한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고등교육 예산에서 최하위에 속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48% 수준(2005년 기준)이며, OECD 회원국 평균은 1.1%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들은 "전 세계 교수·연구자들이 평가한 학계 평가(peer review)와 논문당 인용 수(citation per paper) 등에서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들보다 앞섰다."([조선일보] 기사참조) 지금 시급한 것은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재정을 늘리고 이미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국립대에 필요한 교육과 연구여건을 확충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부의 안은 시장주의, 성과주의, 경쟁주의를 조장한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교수간의 상호경쟁을 조장하면 대학경쟁력이 생긴다는 잘못된 가정에 기반 한다. 이제는 그 유효성이 의심받는 시장주의와 무한경쟁주의에 뿌리를 둔 성과연봉제가 강행될 때 그나마 남아 있던 국립대의 자율성과 공동체 정신은 파괴될 것이다.

셋째, 성과연봉제는 제로 섬(zero sum) 게임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기존의 성과급 예산을 성과연봉제 재원으로 전환하여 재정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은 플러스 섬(plus sum) 방안이 아니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제로 섬'에 불과하다. 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우수한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플러스 섬 안이 되어야 한다.

넷째, 사립대보다 국립대에서 먼저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무리이다.

교과부는 성과연봉제의 실시 사례로 미국의 상위권 대학과 일부 국내 사립대를 언급한다. 그러나 국립대가 처한 여건은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에 미치지 못한다. 미국만큼의 교육, 연구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근시안적 발상이다. 국립대에 비해 교수급여책정의 재량권이 많고 연봉이 국립대보다 훨씬 높은 사립대에서도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평가의 객관성과 줄속추진이 문제이다.

교과부는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에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들어 교수들에게도 같은 제도를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국립대의 특성을 무시한 판단이다. 예컨대 내가 속한 영문과의 경

우만 하더라도 교수들의 세부전공은 매우 다르며 손쉬운 비교평가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서둘러 시행할 때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가 생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학사회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사전논의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견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경쟁력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성과연봉제인가, 아니면 국립대가 처한 열악한 교육 및 연구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인가. 물론 이런 과제들을 동시추진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성과연봉제처럼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를 졸속 도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교과부가 좀 더 신중하게 성과연봉제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을 제안하며 글을 맺는다. <끝>

* 교수신문 창간 18주년 국교련 상임회장 축사(2010년 4월 12일자)

박병덕 (전북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교수신문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신문은 국교련과 사교련, 민교협 등 3개단체가 모여 ‘한국 지성의 정론지’를 표방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힘을 쏟은 결과물입니다. 창간 이래 힘든 상황을 울곧게 버티면서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해 온 교수신문은 시장주의가 만연한 작금의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대학에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국가재정지원 축소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통한 정부의 대학지배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를 2010년 하반기 신입교수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조건 변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당위만으로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근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 이해당사자에 대한 설득 작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연봉제 시행은 대학의 생산적인 비판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대학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성 부여입니다. 교수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한국대학신문 창간 22주년 축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길

박병덕 (전북대 교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나라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에는 대학 관련 전문 매체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 한국대학신문은 대학 문화 창달과 소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부에 의해 자주 왜곡 되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법인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등 전국 국립대학의 교수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구성원이 반대하는 정책을 총망라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립대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화 될 것입니다.

한국대학신문은 <국립대 선진화 방안>으로 표출된 정부의 교육정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론으로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의 경륜을 바탕으로, 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창간 22주년을 맞아 한국대학신문이 비약적인 전기를 마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경향신문(2010-10-05): 국립대 교수들 '선진화 방안' 반발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 법인화·성과 연봉제 맞서 대체법안 입법청원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선 대학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순차적 국립대 법인화, 교원 성과급 연봉제 조기 도입 등을 담은 정부 안은 "공교육의 책임을 망각한 채 시장주의자들의 '철밥통론'을 동원해 대학을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공립대교수연합회(국교련)는 정부 안과는 다른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교련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를 대신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완성했으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국교련이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립대를 현재 교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지위에서 자율권을 지닌 행위주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중앙부처의 감독은 받되 운영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은 무력화된다.

김형기 국교련 공동회장(경북대 교수회 회장)은 "개별 국립대를 일일이 법인화해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현행 고등교육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면서 "자율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 주도로 연봉제와 지방 국립대 통폐합 작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교련은 오는 8일 대전에서 최종 회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성과급 연봉제'에 대해서도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다.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학문별로 체계가 다른 현실에서 연구 성과를 제대로 비교·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지방 국립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재정확충 계획은 없이 경쟁만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교련은 현재 서울대 등 40개 회원대학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봉제에 반대하는 서명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지난달 30일 국교련과는 별도로 이번주 중 성명서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 연합뉴스 (2010/10/18)

거점 국립대 교수회 "법인화 전면 거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인화와 성과급적 연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공립대 교수들의 공동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 9개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회장단은 18일 오전 11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추진 강행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국립대 총장에게 전하는 긴급제안문을 발표했다.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를 필두로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법인화하겠다는 계획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의 법인화를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인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기는 커녕 재정운용의 책임을 대학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회장단은 특히 "법인화는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대학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지방 국립대학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이날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 ▲'대학의 자율권'을 확립하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거점 국립대학 총장회의를 열어 공동의 의견을 결집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거점 국립대 총장님들께 드리는 긴급제안'도 공개했다.

김필동 충남대교수회장은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학과 좀 더 논의를 해서 만들어야 할 정책을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며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대학의 자율화인데, 대학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가 지시를 통해서 자율화를 만들어주겠다는 기저가 깔렸다. 이렇게 되면 대학은 정부의 머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강원대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교수회 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연합회가 지난 15일 강원대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임시총회를 열고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등 교수사회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kjunho@yna.co.kr

* 강원일보(11. 16자)

강원포럼: 국립대 교수와 성과연봉제 **왕명현(강원대 교수)**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제가 2013년 전면 시행된다고 한다. 2015년부터 실시한다던 약속을 2년이나 앞당겨서 말이다. 교수들의 생계와 활동에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서둘러 도입한다니 과연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된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성과연봉제의 기초가 될 공정한 교수업적 평가 안이 제시될 것인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다.

먼저, 대학 구성원의 소득 총액은 없이 전과 같고 구성원 소득이 차별 적용됨으로써 소득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점이다. KT 등 일반 기업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을 때는 당사자의 현 소득을 기본 삼았지만 현재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현 소득 총액을 한데 모아 업적 평가 과정을 거쳐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언론, 대학 그리고 교수들의 시선이 주로 성과연봉제의 타당성, 평가와 분배 과정 등에 집중되면서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체에 적합한 정책이지 교육, 인성 개발, 연구,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다. 이것을 일반 기업체와 똑같이 적용한다면 대학의 사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다.

국립대 성과연봉제는 학교 전체로는 더 받는 것이 없이 학교 구성원 가운데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가 상당수 생겨나고, 전과 동일한 양의 일을 하면서도 긴장과 피로로 구성원 상호 간의 위화감만 높아져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최상의 능력을 끌어내는 선진 경영 기법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과도한 경쟁,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교수 개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장기간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만 못하다.

교수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연구 성과를 내는 환경을 조성할 때

경영자로서는 더 경제적인 효율성을 거둘 수 있다. 대부분의 국립대 교수는 일반 기업체 근무자 및 주요 사립대 교수들에 비해 적게는 10%에서 배 가까이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몇 배 이상 차이가 난다. 현재도 생활비 외에 노후 대비를 하기에는 빠듯한 수준인데, 성과연봉제가 조기 도입될 경우 다수 교수가 당장 겪게 될 소득 감소 및 경제적 타격, 그리고 더 나아가 퇴직 후 생계 대책 부실 등의 문제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연소득 감소는 연금액 적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0여년 이상 연금을 적립해온 사람이 최근 몇 년 동안의 저조한 성과 때문에 그동안 쌓은 연금마저 축소된다면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연금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후 보루이다. 최소한 시중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처럼 성과연봉제 기준 시점의 연금은 어떤 경우라도 확보해주고 플러스 요인만 적용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차별 지급되는 연·월소득과는 상관없이 학교에서 교직원 모두에게 똑같이 '개인연금보험' 같은 것을 가입시키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립대 성과연봉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교수 개인의 업적 평가와는 별도로 사립 대학교나 일반 기업체 수준의 퇴직금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업적 평가는 교내에서 수행되는 어느 업무보다 중요하다. 정교하면서도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 양적으로 확실적으로 적용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대학, 학과, 학부, 학문 분야의 특수성을 확인하여 세분화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해야 한다면 위에서 말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 현 소득을 기본으로 계획을 짜야 하며, 또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거쳐 시행착오와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성급히 실시하기보다는 시기를 늦추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한 일간신문 설문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좌우할 화두로 국민 38%가 '복지국가'를 꼽았다. 대학 교수도 '복지'에 대한 갈증이 크지만 대부분 사회적 체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라도 교수, 교직원 모두 우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서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대 교수의 성과연봉제를 연구 분석하는 지혜를 모아야겠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부산일보(11.11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신중해야 정해룡(부경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최근에 국립대 교수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드문 일인데, 벌써 전국의 국공립대 절반 이상의 교수가 성과급적 연봉제 반대 서명에 동참한 것을 보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틀림없다. 문제의 발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0월 11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안은 간단히 말해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적 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과연 성과 연봉제로 대학의 경쟁력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교수들은 회의적이다. 이는 경쟁을 회피하려는 교수집단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수사회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현재 대학은 종합적 교원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와 교육서비스 질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는 성과급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8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최고-최저 등급 간에 평균 707만 원의 격차가 있고, 최대 1천80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성과급 제도만으로도 교수사회에 충분한 자극을 주어 경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이를 기본연봉에까지 연동시키려는 것은 교수들의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인센티브를 통해 총액을 늘리려는 커녕 보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제로성(zero-sum) 방식이다. 이걸 바로 '꼬시래기 제 살 뜯기'와 다를 바 없다. 대학에서의 연봉제는 업적향상이나 교수들의 경쟁력

강화와는 무관하다는 방대한 연구결과가 있다. 필자가 파악하기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식의 연봉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그 취지와는 달리 대학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그야말로 교수들은 연구의 질보다는 단순한 양적 업적 쌓기와 평가 기준치를 채우기 위한 점수따기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실적과 무관한 업무는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실적에 비중을 두게 되며, 자연히 교육, 학생지도, 취업상담 등은 소홀해지게 마련이다. 단기 성과주의는 장기적 연구결과물을 기대하는 기초학문 및 순수학문의 경시를 더욱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정부가 대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도 학문별, 전공별로 다양해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더 보완해야만 할 시점인데, 이런 불완전한 평가시스템을 기본급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 보완하든지 다시 제 자리로 찾아가면 된다. 예컨대 학부제는 다시 학과제로 돌아가고, 의학전문대학원은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국립대학 교원 신분제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한 번 시행되면 제도의 특성상 다시 원점으로 회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수들끼리 경쟁시키려다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대외적인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모르나 교수들은 사기저하와 의욕상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원하는 창조적 지식인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한겨레(2010. 11. 17자) : 오길영 충남대 영문과 교수(국교련 정책위원)**

국립대 성과연봉제, 철밥통과 개싸움 오길영 충남대 영문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국립대 성과연봉제’를 일방 추진 중이다.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인 성과연봉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국립대학 교수 처우는 사립대학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립대 교수들은 상당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연구지표가 이를 입증한다. 성과연봉제는 미흡한 재정은 늘리지 않은 채 하위 50%에 해당하는 교원의 보수를 상위 교원에게 떼어주는 상대평가식 제로성 방식이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조차도 부작용을 우려하여 기피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이다.

이 제도를 다양한 학문이 공존하는 대학에 졸속 도입한다면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게 뻔하다.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면 재원을 대폭 확충해, 현행 급여체계를 유지하면서 우수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플러스섬’(plus-sum) 방식이 돼야 한다. 단기적 성과평가를 갖고 교수의 급여체계를 뒤튼드는 이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의 법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든다.

시장주의와 무한경쟁주의에 기반한 이 제도는 대학 공동체를 파괴할 것이다. 교수들을 획일적 기준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동료 교수의 급여를 빼앗는 조악한 경쟁시스템은 대학 사회에 극심한 분열과 질서, 의욕상실 등을 가져온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피해를 봐야 하는 상대평가식 연봉제는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이다.

성과연봉제는 제한된 먹이를 두고 다투는 ‘개싸움’의 논리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논리는 한물갔다. 지금은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한 ‘윈윈’ 전략의 시대이다. 성과연봉제는 교수들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단기 연구성과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장기연구, 협동연구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교수들은 평가점수를 딸 수 있는 일들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교육은 소홀히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과부가 성과연봉제의 목표로 내세운 대학 경쟁력의 기반이 사라진다.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공정성도 문제다. 대학에는 다양한 학문이 존재한다. 같은 학과 안에도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다. 어떤 객관적 기준으로 교수들을 평가할 것인가. 교과부는 세부 평가기준은 대학에 맡긴다고 한다. 교과부가 납득할 만한 평가지표를 만들 수 없기에 대학에 책임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대학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지표를 먼저 제시하고 연봉제를 시행해야 한다.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의견수렴과 정책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이 문제이다. 60%가 넘는 국립대 교수가 반대 서명을 했다. 교수들의 몇 번에 걸친 대화 요청조차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이 제도는 '불통' 교육행정의 전형이다. 교과부와 행정안전부 관료들은 행안부 누리집에 교수들이 올린 수많은 의견을 숙독해 주길 당부한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논리로 예의 '첼밥통'을 내세운다. 대학이라고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경쟁 이데올로기는 대학에 세심하게 적용해야 한다. 만약 교과부의 지적대로 (특히 정년 보장 후) 연구를 등한시하는 교수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책을 세우면 된다. 정년 보장 뒤에도 지금처럼 자동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승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과연봉제는 대학의 부분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한 잘못된 대응책이다.

끝으로 한마디. '개싸움'식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교과부, 행안부 등 모든 부처 직원과 장관들부터 먼저 시행해서 선례를 보여주면 좋겠다. 개싸움을 열심히 해서 옆 동료의 월급을 빼앗아 오면 조직 경쟁력이 높아지는지 실험해 보라. 결과가 좋다면 성과연봉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간곡히 당부한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지키게 좀 해 달라.

*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국립대 첼밥통 깬다’ 성과연봉제 3월 시행

<국립대 교수간 성과연봉 확 벌어진다>"공무원 보수, 동결 3년만에 5.1% 인상"국립대교수 협, 청와대에 '성과연봉제 취소' 청원국립대교수 성과연봉 도입...하위 10% 동결

(종합)<국립대 성과연봉제 교수반발 뚫고 연착륙할까>

전면도입 시기 늦추고 격차 줄여...개혁후퇴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국립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단, 교수 사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전면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등급별 성과연봉의 격차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신입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처음 시행에 들어간다.

이어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에게 적용되고 2015년에는 정년 교원까지 포함한 전체 교원이 대상자가 된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 가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속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에 적잖은 차이가 생긴다.

성과 등급은 S, A, B, C 네 가지로 S등급 중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줄 수 있다.

등급별 인원은 20%(S), 30%(A), 40%(B), 10%(C)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각각의 등급에서 ±5%를 적용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 S등급은 1.5~2배, 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아예 받지 못해 다음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성과평가의 단위,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전면 시행하려던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는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2년 앞당겼으나 이번에 다시 2015년으로 되돌렸다.

등급간 성과연봉 격차도 입법예고안에서는 SS등급 2.5배 이상, S등급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으로 정했으나 격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이를 두고 결국 교수 사회의 집단적인 반발에 밀려 교과부의 국립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했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y@yna.co.kr

한겨레 (2010. 11.01)

부산대 교수들, 국립대 법인화 집단반발

사범대·인문대 교수 180여명 반대 성명 발표

“객관적 평가기준 없고, 고등교육 근간 훼손”

김광수 기자

정부의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국립대 법인화 시행 방침과 관련해 부산대 교수들이 단과대학 단위로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지난 18일 전국 거점국립대교수회장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 개별 국립대 교수들이 자발적인 논의를 거쳐 조직적으로 나선 것이어서 부산대는 물론이고 전국 국립대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 사범대 교수 100여명은 27일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 평가 기준 설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불공정성 때문에 대학의 학문적 발전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대학이 평가 제일주의로 내몰리게 되면 공동 연구나 학제적 연구를 통한 통섭적 연구가 불가능하게 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며, 경쟁 원리에 몰입하게 되면 대학의 학문적 교육적 존재감이 말살된다”고 덧붙였다.

사범대는 이날 학과장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태도를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국내에 있는 교수 모두가 의견서 발표에 참여했다.

이 대학 인문대 교수 81명도 이날 성명을 내 “국립대 법인화는 고등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대학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저하시키고, 대학 내 분열을 조장하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계획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통제를 철회해 대학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며 “단과대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방식은 대학 민주화를 저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대 교수회장 정용하 교수(정치외교)는 “대학 교원들의 수업이나 연구는 일반 행정기관처럼 정량화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새로 예산을 늘려 차등 지급하는 플러스 방식의 성과급은 받아들이는 것을 검토하겠지만 기본생계비 성격인 기존의 연구비를 두고 교원끼리 경쟁을 벌여 차등을 두는 제로성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 교수신문 기고: 김형래 (경북대 교수, 국교원 정책위원장)**

정부가 발표한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월 28일 소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이미 발표되었거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대부분이며, 국립대학들을 진정으로 선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국립대학들을 “후진화”시키지나 않을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도 없지 않다. 선진화 방안이라고 열거하고 있는 내용들 모두를 살펴보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므로 우선은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대학 법인화는 거론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넘었으며, 2007년 6월 법률안까지 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개별 대학 차원의 법인화 추진으로 방향이 선회되었고, 매년 관련당사자들 사이 소모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일본에서 전면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한 결과가 과히 성공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대와 인천대 법인화 법률안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가 실현될 경우 정부의 책임은 상당 부분 대학에 떠넘기되 대학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유지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 구성원들이 이러한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으로 법인화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학장임명제, 교육대학 총장 간선제는 법인 국립대학의 핵심 사항인 총장 간선제와 정확히 그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대학 자치와 대학 민주주의의 상징인 직선제를 일부 폐단이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간선제 또는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결과적으로 대학을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선진화 방안’ 자료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듯이 교육 당국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통제 수단인 ‘행·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가 결들여지면 국립대학의 자율성은 꺾이기만 남은 가능성이 높다.

둘째, ‘성과급적 연봉제’는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년 임용 교원부터 시작하여 3년만에 모든 국립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미 지난 봄부터 모든 경로를 통하여 이 제도의 실시 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전국 국립대 교수들의 60% 정도의 반대 서명까지 받은 바 있다. 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기존의 호봉승급 예산과 성과급 예산만을 가지고 1년 단위의 평가에 따라 연봉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며, 차등의 일부가 다음 해 연봉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과 비교하여 크게 나아지는 점도 없는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이를 통해 국립대 교원들의 성과를 ‘일부 상위 사립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단견이요 하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수마다 학문 분야가 다르고 전공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에 의해 무조건 하위 10%의 교수의 연봉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더군다나 법률로 보장되어 있는 국립대학 교원 신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제도의 도입을 시행령의 개정만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당장 위헌 소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교원 특채 활성화 역시 성급히 추진할 일이 아니다. 최근 모 장관 자녀 특채 파동이나 각계각층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사례들을 감안하면 자칫 논란거리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공정한 절차를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각종 탈법이나 비리가 절차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결국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이 담고 있는 큰 맥락은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사립대와 근접시켜 나가는 일종의 ‘민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이러한 흐름에 일관되게 반대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립대학에 대폭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등교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질책하지만 그러한 세계적인 대학들과 대등한 예산과 인력을 전제로 비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강압적으로 학부제를 도입

했다가 유야무야되었던 사례에서 경험했던 바와 같이 교육 당국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결국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정책의 기대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지는 모습은 본 기억이 없다. 모든 정책과 제도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정부에서 국립대 운영과 교원 신분에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될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명분과 기대효과를 무조건 장밋빛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수반될 부작용과 각종 비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신중히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 (서울=연합뉴스)**

<국감현장> '서울대 법인화' 집중 질타

교육 공공성 훼손...부익부 빈익빈 심화"

황철환 기자

=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법인화의 타당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운찬 전 총리도 서울대 총장 시절 법인화에 대해 '사립대,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며 "법인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의 연구비 수주액이 충북대 등 타 국립대의 10배가 넘는 상황에서 법인화 하면 결과는 뻔하다"며 서울대가 법인화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서울대 법인화는 국립대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법인화 도미노 현상을 부를 것이며, 결국 국립대 해체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은 법인화를 통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겠다면서도 재정 지원은 오히려 늘려 달라는 서울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립대 법인화의 근본 취지는 정부로부터 자립해 자율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재정독립은 커녕 오히려 국가의 재정 지원을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역시 "자율성을 달라면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한 데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면 법인화하겠다는데 이걸 학문의 공공성 따위가 아니라 그냥 탐욕스러운 거다. 정부와 법인화 여부를 두고 거래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서울대 총장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사회가 총장을 뽑는 간선제가 되면 오히려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직선제의 폐해와 정부의 인사전형을 막을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과급 돈잔치 의혹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올해 2월 전임교원 1천819명에게 40억6천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이중 393명은 연구비 수주 실적이 없는, 즉 연구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서울대 교수 22%가 겸직을 하면서 사례금과 교통비, 연구비 등으로 월평균 330만원씩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사외이사를 3곳씩 겸직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있지만 학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wangch@yna.co.kr

*** 조선일보(12.9)**

국립서울대, 2012년부터 '法人 서울대'로

안석배 기자 sbahn@chosun.com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 교수초빙·성과급제 등 대학 자율 크게 높아질 듯

"기초학문 枯死 위험" 반대도

'국립' 서울대학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조직이던 '국립 서울대'가 2012년 3월부터 '학교법인 서울대'로 새로 출범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지 1년 동안 야당 반대로 교과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법안을 여당이 단독 통과시킨 것이다. 서울대측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ㄱ(국립)ㅅ(서울)ㄷ(대학)'을 이미지한 학교 배지와 교문(校門)은 전통을 존중해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법인화가 지방 국립대까지 확산되면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지방대와 기초학문을 고사(枯死)시키고 대학을 무한경쟁 체제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서울대 법인화'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를 밀어붙였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대학경쟁에서 서울대가 경쟁하려면 규제가 많은 현행 국립대 체제로는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국제 경쟁력이 상승 추세인 다른 대학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S의 '세계대학평가'에서 최근 3년(2008~2010년)간 포스텍은 76단계, 연세대 61단계, 고려대가 45단계나 뛰어오른 반면 서울대는 세계 47~50위에 머물러 상승폭이 낮았다는 것이다.

교과부 이기봉 교육선진화정책관은 "법인으로 바뀌면 서울대는 외국인 교수 초빙이 쉬워지며, 교직원 성과급제 전면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며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총장 선출도 교직원들이 선출하는 직선(直選)에서 총장선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間選)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총장 직선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들은 선거 때마다 캠퍼스가 선거관으로 바뀌고, 총장들이 표(票)를 의식해 대학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직원으로 바뀐다.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일부에선 서울대 법인화로 정부 지원이 줄어들 경우 향후 등록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 등록금은 그동안 정부지원을 받아 사립대의 60%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남익현 기획처장은 "등록금 상한제가 있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갑자기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2010. 12.10) 지방 국립대도 '법인화 검토' 착수**

■ 서울대 법인화법 통과 여진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열린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통과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국회에서 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되

자 서울대는 ‘법인 서울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대는 9일 오연천 총장 등이 모인 가운데 회의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장은 오 총장이 맡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대학 정관과 학칙 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 총학생회와 공무원노조 등에서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법인화법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호문혁 교수협의회장은 “법인화에는 찬성하지만 법인화가 돼도 서울대가 정부에 예산을 구걸할 수밖에 없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직원들은 신분 변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공무원노조 정용철 위원장은 “교직원들의 신분 등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데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법인화하면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법인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교직원의 신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대 내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의 한 직원은 “법인화가 되면 기성회직원 등 신분이 불안한 직원들이 서울대 공무원직원과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총학생회는 9일 교내에서 법인화 반대 집회를 열고 “법인화 반대 여론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300여 명도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른 국립대들도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대는 2013년까지 전환한다는 계획 아래 연구안을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용하 교수회장은 “기부금 등이 부족하고 채권을 자체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인화하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는 곧 법인화 추진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지만 교수회는 법인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충남대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교수회의 반대가 변수다. 전남대도 지난달 법인화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체제와 조직, 교육연구 등 5개 분야를 연구한 뒤 내년 상반기에 법인화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대, 전북대, 충북대는 아직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이지만 서울대와 다른 국립대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평화방송 인터뷰(2010. 12. 13)

서울대법인화법 폐지하라

국공립대 투쟁위 "서울대법인화법 철회 투쟁"

박병덕 교수 "대학 자율성 약화되고 예산 구걸할 상황...여당, 정치적 부담 느낄 것"

이화경 기자 | 2010-12-13

지난 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국공립대 교수들이 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법안 철회 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상임회장이자 공동투쟁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원 교과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여당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지금 지방국립대의 경우에는 교수 뿐만 아니라 직원, 학생까지 포함해서 아주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총장 직선제가 거의 정착돼가고 있는 단계에서 법인화로 총장 간선제가 도입되면 교과부와 정부에 감독과 통제권이 강화되고 대학 자율성은 약화된"다며 "예산마저도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인화가 되면 대학이 수익사업을 하기 쉬워진다는 주장에는 "현재도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대학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빼고 그 자체만 본다면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그만큼 재정 지원을 앓았다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특히 국립대 법인화가 가져올 등록금 인상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지방 경제 자체가 열악한 상황에서 국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기하고 대학에서도 특별한 수익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이 쉽지 않을 경우 결국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등교육법의 일부 조항만 수정 보완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대학 자율성 확보라든지 대학 경쟁력 강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대학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교수와 학생, 시민단체, 관련 교육단체 쪽의 충분히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한겨레(12.)

단과대 '학장 직선제' 폐지 반발

교육부 '총장지명제' 입법 예고... "제왕적 총장 탄생할 것"

김광수 기자 구대선 기자 (한겨레)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4일 국립대 단과대학 학장을 총장이 지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수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대 인문대 교수 81명 모두는 7일 성명을 내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는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얻은 산물로 총장 임명제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제도"라며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설혹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직선제든 간선제든 각 대학 단과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일인데도 현 정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대학교수들을 자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장의 일방적인 대학 운영에 그나마 견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가 단과대학 학장과 교수회인데 총장이 직접 학장을 임명하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제왕적 총장'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경북대학교수회와 인문대, 사회과학대 등 18개 단과대학 교수회도 성명을 내 “교과부가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 폐지를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이지만, 단과대학 학장 임명제 법제화는 선진화가 아닌 대학 후진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단과대학 학장 임명의 방식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일이자 부당한 개입이며, 대학 자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경북대학교수회는 “국립대 교수연합회 등 교수단체와 함께 법제화 반대 이의신청,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의 방법으로 단과대학 학장 임명제 법제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구대선 기자

* 경향신문(2010-12-13)

심혜리 기자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안되면 정권 퇴진운동”

· 국공립교수회연합회 성명

서울대 법인화에 국립대 교수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하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8일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해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이번 서울대법인화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국립대 법인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제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국립대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연합회는 “국립대가 법인화하면 모든 계층에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기초학문을 육성한다는 국립대학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법인화가 학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국립대 법인화로 총장 직선제가 없어지면 대학 민주주의가 퇴보되고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판 정신과 창의성, 다양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 회장인 전북대 박병덕 교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통과된 서울대법인화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전체 국립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뒤 구체적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 머니투데이(2010. 12. 13) 국·공립교수協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머니투데이 배준희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연합회)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

문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가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대의 법인화는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 불균형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 정당성을 상실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라며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에게 향후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12. 13)

국립대교수협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하라"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성을 되찾아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할 것이며,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이들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doin100@yna.co.kr

E 대학저널(12.13)

국교련 "서울대법인화 법안 폐기" 성명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이하 국교련)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교련은 13일 성명을 통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서울대법인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목도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상징인 국립 서울대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률을 날치기로 처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대가 법인화 되면 모든 계층에 대한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과 기초학문 육성이라는 국립대 본연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대학과 학부모 등에 전가될 것"이라면서 "또한 대학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법인화에 실패한 일본 국립대들과 같이 위상과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아울러 서울대 구성원들에게도 법안 통과에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길 촉구했다.

국교련은 "서울대 구성원 스스로가 이번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를 부끄러워하며 법안 통과에 불인정 운동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만일 서울대가 법인으로 이행하게 된다면 일그러진 상흔을 한국 대학의 역사에 영원히 각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대법인화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국립대 법인화 시도에 맞서 대응할 뿐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이런 개탄스런 방식으로 고등교육의 근간을 뒤흔든 주역과 조역들이 누구인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평의(원)회로 구성돼 있다.

한용수 기자 hys@dhnews.co.kr

* 한겨레(12.) 이유진 기자

정부인사로 이사회 구성총장 간선 ‘관치’ 우려

지방국립대도 법인화 뻘해

생존 위기 몰릴 가능성 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서울대 법인화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조직이던 서울대는 2012년 3월1일 독립 법인체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문제는 법인화가 서울대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다수 지방 국립대 구성원들은 “다른 국립대들도 차례로 법인화를 강요받게 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을 보면, 우선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어,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심의·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평의회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법인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겉은 자율화, 속은 관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직원 신분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뒤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새로 꾸려질 평의회·학사위원회·재경위원회가 학교 운영, 연구, 재무경영을 각각 심의한다.

그러나 평의회에는 교직원만 들어갈 수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가 관리해온 국·공유 재산은 모두 법인으로 무상양도된다. 수익사업을 하기도 쉬워지고, 예산도 정부가 정해준 대로 지출하지 않고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국립대들은 ‘지방대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를 계기로 법인화가 잇따라 추진될 경우 지방대 몰락, 등록금 폭등, 기초학문 고사, 학내 민주화 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게 뻘하다는 것이다. 박병덕 국립대 공동투쟁위원회 상임대표(전북대 교수)는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받는 ‘특별계약’인 셈이고, 지금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국립대들은 재정지원 감소와 대학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훼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인화 반대 서울대 공동대책위원회’ 최갑수 교수는 “공교육의 근간인 국립대 체제를 무너뜨리고 기초학문 사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대학이 기업화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KBS 뉴스(2010.12. 09)

서울대교수協 “법인화안 날치기, 법적 대응 검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일 국회가 '서울대 법인화 법률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날치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이 법률을 졸속 처리한 것은 헌정 질서와 국회를 위반한 조처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협은 국회 본 회의 당일 아침에 촉박한 시간을 주면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일방 통

지한 건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교수협은 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서울대의 정부 예산 의존을 심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 내용 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협은 법인화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 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부산=연합뉴스)(2010. 12.11)

부산대 교수회 "학장 임명제 반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대 교수회(회장 정용하)는 11일 대학 총장이 단과대학 학장을 임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회는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총장이 학장 지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에 대한 간섭을 넘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방향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수회는 또 "지금처럼 학장이 인사와 재정 등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학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oungkyu@yna.co.kr

* 레프트 21 (2010 .12. 23)

등록금 인상, 직원 구조조정, 돈벌이 경쟁, 민주주의 파괴 ...

서울대 법인화 법 폐기하라

정선영 기사

역대 정부가 1995년부터 추진해 온 국공립대 법인화가 결국 첫 삽을 떴다. 12월 8일 예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날치기 통과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법인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학을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맡겨서 이윤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서울대 자산 소유 권리와 재정·인사 등 각종 운영 권리가 국가에서 법인 이사회로 넘어간다. 서울대가 채권을 발행하고 자유롭게 수익 사업을 하는 방안도 열렸다.

△12월 17일 서울대 법인화 반대 집회 눈이 오는 날씨에서 2백여 명이 모여 “대학을 기업화하는 법인화 반대”를 주장했다. ©사진 정선영

법인화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법인화 때문에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시행하기 시작한 총장 직선제는 폐지된다. 대신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고 서울대를 좌지우지하게 됐다.

“이사회 15명 중에 학내 구성원은 4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과부 차관 들어오고 기재부 차관 들어오고 ... 나머지는 보나마나 기업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죠.”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 말이다. 대학 운영이 정부와 기업의 입김에 더한층 종속되는 것이

다.

정부가 강화하려는 “대학 경쟁력”도 교육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경쟁력이다.

별써부터 일부 교수들은 “어떻게 하면 고추장, 된장을 상품화를 할까” 고민하고 있다고 대학노조 김연옥 서울대지부장이 말했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서울대도 중앙대처럼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육성하고 비인기 학과는 구조조정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등록금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서울대는 이미 등록금이 연간 6백8만 원으로 국공립대 중 최고다. 그런데도 “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서울대 본부는 노골적으로 ‘대학 재정 어려우면 지금의 등록금 유지 못한다. … 전문대학원이 반발이 없으니까 거기부터 올리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

비용을 줄인다는 논리로 직원 구조조정도 벌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국공립대를 법인화하면서 대학 직원 10만 명 정도가 해고됐다.

법인화가 지방대학으로 확대되면 학벌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대학은 살아남는다 해도 지방대학들은 운영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 양극화, 서열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다.

날치기

서울대를 선두로 인천대, 충남대, 부산대 등 다른 국공립 대학들도 법인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교수·학생·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 공대위는 “법인화 법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7일 학내 집회를 하고, 20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방학 때 농성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알리고, 내년 3월에는 3천 인 선언을 해서 최대한 반대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지윤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단 연석회의도 기자회견을 하고 1월 29일 법인화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는 긴 안목을 갖고 끈질기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1946년에 미군정이 미국의 주립대학을 본따서 서울대에 법인 이사회를 두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막지 못했지만 계속 투쟁한 결과 3년 후에 성공을 거둬 1949년에 결국 서울대는 국립으로 탄생했습니다.”

당시 법인화를 폐기시킬 때 57개 학교에서 4만 명이 동맹휴업을 하며 강력히 투쟁했다.

2009년 9월 실시한 총투표에서 서울대 학생 80퍼센트 이상이 법인화를 반대했다. 법인화를 막으려면 이런 여론을 모아 학생들의 동맹휴업과 교직원들의 파업 같은 강력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연합뉴스(2010. 12.21)

국.공립대 발전방안 마련 위한 '대토론회' 제안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전국 40개 국공립대학교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가 21일 전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한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임시총회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다른 모든 국립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토론회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인 정당성마저 결여하고 있으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의 폐기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법안 처리 후 환영 입장을 밝힌 서울대 본부는 이를 깊이 성찰하면서 법인화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학교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어 "서울대법인화법안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에 끼워 넣어 함께 처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입증됐으므로 장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법인화법' 반대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인턴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대법인화법' 반대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0.12.9 doobigi@yna.co.kr

이와 함께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와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대토론회'나 '연석회의' 개최를 교과부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에 정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신문> 국공립대교수회, 서울대 법인화 적극 대처 결의**

【전주=뉴시스】 권철암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 박병덕 전북대 교수회장)가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비난과 함께 강도 높은 대처를 결정했다.

21일 국교련은 "최근 전북대에서 2010년도 제6차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대법인화법안의 즉각적 폐기 요구와 함께 모든 사회세력과 연대해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모든 국립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단 한 차례 토론회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적 폐기를 촉구했다.

국교련은 특히 "법안을 예산안 날치기 처리에 끼워 처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교육 및 학문 정책의 입안·관리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입증했으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교련은 또 "현재 국립대학이 처한 혼란을 극복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교과위, 교과부, 국교련 및 고등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참가하는 '대토론회' 및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교과부와 국회 교과위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이어 "법안의 국회 날치기 처리 후 이를 환영한 서울대 본부는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면서 "(서울대는) 법안을 폐기하고 다른 국립대와 발전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밖에 "법안 폐기 운동에 들어간 서울대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국교련은 서울대와 전국 거점국립대 등을 포함한 40개 국·공립대학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겨레신문>(2011. 1. 19)

지방국립대 “국고지원 줄면 위태…등록금 올려야 하나”

사업비 지원도 경쟁형태로 바뀌면 상황 악화

작년 기부금, 서울대 530억>지방대 5곳 402억

“값싼 학비 장점 없어져 지역인재 유출 우려”

김명진 기자

<사진> »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 소속 교수와 학생·교직원들이 18일 낮 서울 관악구 서울대 교정을 돌며 서울대 법인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국립대 법인화 추진 파장] 거세지는 반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거점대학 등 여건을 갖춘 국립대는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방 국립대 구성원들은 “지방대가 법인화로 받는 타격은 서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고 지원 축소다. 일본은 2004년 국립대 86곳과 국책연구기관 4곳을 법인화한 뒤, 운영비 교부금을 2004년 1조2416억엔에서 2009년 1조1695억엔으로 5년 새 약 6% 삭감했다. 지방 국립대들은 일본 사례를 들어 법인화 추진 배경에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해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관계자는 “일본은 인건비나 운영비 등에 쓰이는 경상경비를 삭감했지만, 우리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법인화 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했다”며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안’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고등교육재정 확대 방안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민간 연구·개발 자금 수입 △기부금 유치 등 대학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교과부의 직접 지원 예산은 그다지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교과부는 국립대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온 사업비 지원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김진수 교과부 대학재정총괄팀장은 “국립대에 의무적으로 주던 사업비는 앞으로 공개경쟁 형태로 바뀌 연구자가 자체 역량으로 따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교과부가 전국 대학에 지원한 사업비 현황을 보면, 사업비를 많이 지급받은 상위 50개 대학 가운데 국립대는 35곳(70%)이었다. 그러나 지원 방식이 바뀌면 서울대를 뺀 지방 국립대 몫이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회 회장은 “이처럼 국립대에 대한 국고 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이미

진행중”이라며 “법인화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고 지원이 줄면 등록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국고 지원이 전체 대학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58.5%에서 2008년 47.6%로 10.9%포인트 줄어든 반면 등록금 수입은 33.6%에서 39.9%로 6.3%포인트 늘었다.

교과부는 법인화로 인해 수익사업이 가능해지고 기부금 모금이 활발해지면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서울대를 뺀 나머지 지방 국립대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2009년 전국 39개 4년제 국립대 가운데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서울대(530억209만원)는 2~6위를 차지한 5개 지역거점 국립대(전남대, 부산대,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의 기부금을 합한 액수(402억7113만원)보다 130억원을 더 모았다.

정용하 부산대 교수회 회장은 “지금도 특허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투자자는 안 들어온다”며 “기부금도 서울대는 최첨단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기업이 줄을 섰지만 부산대만 해도 건물 하나 올리는 데 투자할 기업 찾기도 쉽지 않아 등록금 인상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기 회장도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방 국립대의 장점이 사라져 지역 인재들이 서울권 사립대로 빠져나가고 가난한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이라며 “이는 지역 학생들이 값싼 등록금으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국립대의 설립 목적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 MBC 방송: 날치기 ‘서울대법인화법’, MBC 비판 목소리 전해

8일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직권상정되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서울대법인화법’에 서울대 구성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대가 법인이 되면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고, 총장선출도 현행 교수 직선제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으로 바뀐다. 또 교직원들의 신분도 공무원이 아닌 법인직원으로 전환되고, 채권발행이나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국가기관 지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에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포함되는 것이 자율성 강화로 볼 수 없고, 여전히 정부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정권눈치보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검토나 토론도 없이 해당 상임위에 불과 서너 시간을 주고 안건 처리를 통지하고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 것은 국회법 제 85조 위반”이라면서 “예산안처럼 시한에 쫓기는 것도 아닌데 정부와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해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9일 MBC는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우려와 반발을 전했다.

MBC <‘국립’ 서울대 사라진다>(양윤경 기자)는 “어제 국회에서는 난장판 속에 예

산안과 함께 서울대 법인화법이 통과됐다”면서 “2012년부터 국립대의 지위를 잃는 대신 독립법인으로서 학교채를 발행하고 수익사업을 해 이 돈을 정부의 제약 없이 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교직원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뀌고, 교수 성과급제 도입, 외국인 교수 채용도 학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며 “기업식 효율성을 도입해 올해 세계 109위 등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서울대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등 교육의 중심인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다른 지방 국립대학들의 법인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반발, 교수들 천막농성 나서(2010-12-26)

목정민·이서화 기자 loveeach@kyunghyang.com

정부 눈치보기 심해져... 대학 자율성 훼손 뻔해”

· 기초학문 지원 감소도 우려... 학생·교직원들도 농성 동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사흘째 맹위를 떨친 26일 오전 서울대 행정관 앞. 농경제사회학부 최영찬 교수가 농성장인 천막을 찾았을 때는 전날 사다놓은 굴이 모두 팡팡 열어 있었다. 오렌지주스 등의 음료수 페트병도 열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였다.

혹한에... 서울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왼쪽)와 최영찬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26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혹한에... 서울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왼쪽)와 최영찬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26일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스티로폼을 바닥에 깔고 전기장판까지 가져왔지만 바닥은 차디찼다. 내복을 겹겹이 끼입고 두꺼운 파카까지 덧입어도 한기는 여전했다. 2평 남짓한 천막은 강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말을 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다. 침낭으로 몸을 감싼 최영찬 교수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법인화 저지를 위해 버텨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막에는 ‘근조 국립서울대’ ‘근조 민주주의’라는 검은색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 20일 시작된 천막농성이 26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서울대 교수들이 천막농성에 나선 것은 2005년 미대 김민수 교수의 복직투쟁 이후 5년 만이다. 당시엔 교수 한 명의 투쟁이었다. 교직원, 총학생회, 교수가 연대해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것은 개교 이후 처음이다.

교수와 학생들이 밤샘농성을 하다가 한파경보가 내려진 지난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교수들이 나와 농성을 하고 있다. 최영찬 교수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장)는 성탄 연휴를 반납한 채 천막 지키기를 자원했다. 서너 명의 교수들도 천막에 들러 격려했다.

법인화는 ‘민영화’의 전 단계이며 결국 문·사·철 등 비인기학과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들어 대학이 담당해야 할 기초학문 연구가 소홀해질 것이라는 게 공동대책위의 판단이다. 이들은 자율을 명분으로 대학이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면 등록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최영찬 교수는 “서울대 법인화법에 따르면, 총장을 선출하는 이사회에 교육과학기술부·기획



재정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며 “자율성이 강화되기는커녕 ‘정부 눈치보기’가 훨씬 심해질 것이 뻔하고, 결국은 연구와 교육의 자율성도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될 경우 대학의 자율성과 지식인의 주체성은 망가질 위험이 크다”고도 했다.

서울대 법안허법은 관련 상임위원 교육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날치기 통과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의 화살을 겨눈다. 당사자인 서울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대 법안허법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나타나는 정권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의 또 다른 상징이라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28일부터 매주 화요일 천막에서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학, 보편적 복지 등에 대한 강의를 연다. 이 강의를 통해 대학의 사명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법안허에 대한

*** 한겨레(2011. 01. 18) [사설]**

날치기 ‘서울대 법안허법’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지난달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에 묻어 통과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법’(서울대 법안허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한달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대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서울대법안허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농성을 계속한 뒤 3월에는 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사태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서울대 법안허는 정부 간섭을

줄이고 대학 자율을 확대해 연구·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실제 통과된 법은 이런 목표와 사뭇 거리가 멀다.

이 법은 우선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했다.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은커녕 제대로 된 국회 심의도 없었다. 서울대 쪽이 내놓은 수정안이 있었지만 국회는 그나마도 검토하지 않았다. 또 교수와 총장의 임면 등 대학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는 이사회에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2명의 감사 가운데 1명은 교과부의 추천을 받게 해 정부가 대학에 간섭할 길을 열어줬다. ‘겉은 자율화, 속은 관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이사 선임권을 갖는 평의회에는 교직원만 들어가게 해 학생들의 의견 반영도 어렵게 만들었다.

또다른 문제는 서울대 재정에서 산학협력과 발전기금 모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늘린 점이다. 서울대가 이런 돈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국립대로 갈 몫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도 자원과 인재를 독식하고 있는 서울대로 집중이 더욱 심해지고 지방 국립대는 고사할 우려가 있다. 모금이 제대로 안 되면 이를 메우기 위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야 하는 사태도 빚을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인화 그 자체에 있다. 우리보다 먼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의 경우,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낳는 응용학문에 자원이 집중됨에 따라 기초학문 분야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면서 학문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은 기업화하고, 진리를 사유하는 비판 지성을 길러내는 대학 본연의 기능은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도 심각하게 제기된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드러난 국립대 법인화를 뒤따라갈 이유는 없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별첨자료

【별첨자료 1】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대학별 서명 현황 및 서명교수 명단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현황

대학	서명자수
강릉원주대	128
강원대	509
경북대	613
경상대	581
경인교대	106
공주교대	23
공주대	336
광주교대	64
군산대	115
금오공대	113
대구교대	70
목포대	236
목포해양대	74
부경대	345
부산교대	63
부산대	624
서울교대	34
서울대	58
서울산업대	97
서울시립대	211
순천대	224
안동대	207
인천대	97
전남대	634
전북대	674
전주교대	48
제주대	258
진주교대	61
진주산업대	129
창원대	226
청주교대	54
춘천교대	57
충남대	460
충북대	604
충주대	229
한경대	82
한국교원대	81
한국방송통신대	27
한국해양대	163
한밭대	212
계	8,927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 교수 명단

강릉원주대학교

박노민	이철	민경대	구자혁	박선섭	김현경	박창래	김태완	박홍식	김천영
신준	송성재	김봉석	김일병	양문규	김무립	최병우	박영주	주경식	이상훈
강효진	김창진	정경숙	김홍길	구학서	이성주	김태영	박경수	최재식	김백현
이현모	이호근	강철웅	김성일	유구종	김은심	최혜진	손영민	최창섭	김득관
이창기	함석중	최웅	정의선	김월호	김민재	손월	윤경호	임동일	김근중
박찬익	황윤신	강영갑	김병곤	정일웅	이재규	김홍철	김병도	이영훈	이순귀
안주선	이상호	정동빈	김동기	최충현	유재선	안동완	이성철	김재화	전상일
경영수	정은희	정인학	김상무	신일식	유상권	정동화	손영창	진형주	주성수
김길중	김학기	김화영	윤영록	김병섭	김중식	김태경	한갑수	박용진	조태동
최재호	민석홍	김성준	엄소희	강숙녀	우현리	이영숙	김백기	박동영	현광민
김환석	정연만	박성곤	양길모	최재홍	조성국	최명복	이재현	전병국	김재호
한문석	지선수	김철수	최복록	오익수	이종철	박영진	박철원	김영태	이종석
홍진선	윤명곤	최덕기	박찬일	김상경	이형원	권기태	김영태	(128)	

강원대학교

석명진	송영준	이성룡	석한길	김운채	정영진	이승철	우성천	권인규	이시영
이해평	전병희	전계원	백민호	신원철	김학수	오명기	이종희	양재용	주미진
이재철	장기효	김미현	서정희	김동열	채경덕	심병민	정연두	황영탁	유인섭
홍총성	한찬호	조석수	승삼선	이현창	박우철	문성준	양협	강훈	김용일
최장순	김진원	김경남	신순기	김원덕	박현	김주영	노무근	안중국	장득열
박정보	김진남	김효준	박명호	장운호	성일용	이상은	전일우	김병희	황윤세
문은식	김남희	권승준	안면길	최종인	박철우	문창열	이학용	박종현	김승수
정호영	변형기	황성호	이규영	김남용	김상춘	김명철	오형술	장영관	문성동
박준석	권재혁	허우명	민선홍	박영구	김승호	정란	유희경	최승교	황득영
임상규	조망현	정구용	김형기	박재호	이재윤	박종국	이상교	박하용	배인수
심재선	장순희	김성희	김초식	엄운섭	정정화	신윤창	임해진	임덕규	박용희
이제훈	남시병	성원기	김정국	김덕남	홍상희	박일수	김동규	김중섭	김정호
유원근	정은희	신동수	손재영	신혜숙	허중욱	박인기	이명희	양서윤	전기순
김상훈	원일안	임혜숙	김성진	박경희	김홍백	윤상문	백진호	손원일	박수행
김정중	유연봉	이준락	남기택	김성근	배재홍	차장섭	정미애	조현국	노효련
김성중	남궁승	이영미	소운영	최영동	신기돈	허곤	정명근	손은화	임정대
문태영	김지희	조병준	박병호	신랑호	최기	이봉섭	이진	최신형	정도영
김경호	허문영	김현표	권용수	박상규	안상열	안종태	오태현	최용운	최선심
안철	조재열	왕명현	한상섭	이재선	전근우	이명중	박완근	최용의	김인수
김유동	오용록	김한택	박태현	최상욱	한만주	신동룡	윤태우	최희수	김학성
김진현	김용석	이현길	최황규	정충교	최창열	장재학	신길호	이경남	김중화
정찬순	박성민	강원희	강호민	강화석	신범수	김상헌	김대현	이귀현	조세열
최장경	정근	김상규	이종성	전태보	김상균	손권익	김성수	박지형	박영철
김종국	이종규	이상용	류승렬	박기복	이명호	한동건	유승호	고종태	신효중
신해식	이종인	이용규	조병욱	조준형	이명구	원종명	최한규	이봉학	양인태
유남재	이철웅	윤경구	송종걸	이철주	임창진	김병철	이희봉	김성완	허권
유창연	이주경	이윤수	김명조	장철성	홍민식	백인학	신중섭	김교환	이애희
박이순	황소연	남기택	이대범	한길	김용구	정급천	최홍열	이경수	인교진
이광래	권오신	최복규	유재춘	남의현	강지원	김진영	박인옥	강용오	이종렬
김해성	이동석	안종화	이우근	임재명	김준현	남언탁	김송희	소명기	이성만
안성환	정구환	김용은	정승옥	김종로	김인자	노희영	이상민	김진호	정영준
최형진	문양세	최미정	김재동	민경원	오석문	이재령	서백수	백환근	최성용

홍익기	이근익	이신영	허 원	신원철	최신건	박유철	장보안	조인기	이훈열
박용희	김기영	김영화	권진현	김남훈	홍순일	황병호	전수경	김종대	오덕환
윤원병	김명동	채영찬	현혜진	이혜경	이동숙	이용미	남은숙	임학태	조동하
박철호	박용철	홍순만	유능수	김석현	김신유	김병희	장인배	이정완	서영호
백인수	송홍규	정연숙	진창덕	유기억	김경훈	김준철	류승우	정유진	김근철
이한수	한경자	신혜숙	유옥재	김경희	백영대	조현길	박봉우	이관규	윤영환
전옥하	최인화	우종준	차두송	이정수	최정기	김준순	오수일	문병용	김세환
홍석표	노성규	박기동	황향희	김승재	임명화	허남욱	안재순	이경규	이보경
윤수영	이연주	송윤미	김희경	황 훈	정영미	이창희	이찬규	황현석	이필호
표동진	권찬호	박용광	정원양	김홍래	김진호	유재영	김경열	김남국	오경심
이용희	김송희	김종미	백낙승	윤진구	신성균	조세연	김경수	이 유	변혜영
최종윤	변우현	이세원	김평현	전계택	김남수	서동완	서수련	황병준	이관열
김혁건	문영기	장희순	김세건	김민정	한건수	장노순	임의영	홍형득	김대건
최충익	박대순	김준호	김재훈	전태국	김원동	정성호	이인혜	홍숙기	감기택
강은주	홍성열	심응철	박사명	김기석	이선향	나정원	진창철	이영경	이승수
유영호	이상호	김동희	김기택	최양호	남부희	김일환	이은송	김 두	정희태
윤병일	홍종해	우홍명	한정희	지해명	손병암	정기문	이윤복	이종민	남순권
최대선	신철하	한명희	박정애	조은하	홍효정	차상훈	김미경	(498명)	

경북대학교

박종희	김강욱	강순주	배건성	이균경	최태호	박종태	홍재근	송재원	최두현
이동호	유상대	박길흠	김덕규	송규익	조유재	김채영	정연배	문병인	태홍식
이동의	김순자	최준팀	최병근	권우현	홍순복	진성임	박경로	정태훈	황 욱
나원준	정기호	김희호	이정우	하인봉	최정규	심승진	손병해	김석진	박천식
하성호	김성환	이홍우	권철우	김재진	권순창	김형기	진익렬	김사열	이동건
서영배	김종국	이창희	김영호	이재열	박 완	이형락	조상규	이일수	전창진
김한순	강범식	이현식	김유영	권오신	이유미	이영섭	배영석	이광복	이영희
윤태석	박명구	김경익	이규원	황재찬	이상규	김인수	박용복	하지홍	정선요
류재웅	이동석	이원하	황길태	이강호	이상학	이효선	이혜진	김성환	정종화
곽영우	김창민	정성화	조창우	백승민	박찬녕	서영진	정일봉	김은섭	배용주
김용국	김성권	토미르네	제센	김필수	최재유	조길호	손중권	최진갑	박병구 송재기
김달호	조교영	이경은	김영규	박은규	김교원	장태우	장윤득	이성주	유인창
천선영	진수미	김규원	이채문	조주은	노진철	하세현	이재하	황성일	조현미
엄정섭	전병운	Ethan R.Yorgason	이철우	이창수	최재황	이성신	남권희	김희섭	전영선
박영신	조현춘	황성동	신성자	배성우	전혜숙	성희자	문순영	김환준	조성호
남재일	박진훈	김광태	최홍순	조찬섭	이인수	김상현	김형표	김진규	박영호
이광우	박옥미	송정아	허정선	오상룡	조태식	이 호	정명섭	이근택	김철환
황정하	이승우	차원섭	조영제	이원영	박준희	박모라	김귀영	강우원	박필숙
정맹준	박재경	이영세	최현국	김문갑	최중섭	명병수	김재열	김진현	김태욱
김영섭	이영재	오세욱	윤일로	김재수	황하웅	김정봉	이용주	정구범	이희태
송치양	서정훈	장무수	심창석	최정우	최윤영	현길수	박상식	김지식	김인정
박병덕	오상엽	이형일	반갑수	이광호	김재덕	전종영	최재우	신봉섭	채동욱
김중호	최상훈	김성훈	김유경	장윤옥	조현주	장현숙	윤일희	강용희	김형수
정원우	김경식	이명자	김진숙	박균섭	손원숙	현영섭	박종렬	강현석	신상명
김성희	서종문	이상태	김문리	이주형	임지룡	박용찬	이문규	김혜정	박재열
이예식	배종연	최성목	최인철	배정옥	손성호	채연숙	류시웅	변학수	정동현
조진근	김병욱	김형래	이문기	홍성구	김중탁	우인수	임대회	조철기	이광률
김감영	김광기	유명철	오영수	정위석	이은영	손철성	문성학	김용수	김영하
이영경	배한동	김영호	정주희	박진석	이동원	임석훈	유윤재	주영구	이상법
최호명	손상호	박종석	류재정	송극범	민길식	이무상	이광필	이우봉	임수원

강호율	채원식	박현권	이안수	김정자	오동섭	김진구	이효천	채권석	권덕기
이영호	이개석	한기문	윤재섭	임병도	전현수	김유경	임승택	김영기	황보영조
임종진	문정수	김제철	김운동	왕태웅	이준섭	채수도	고도	이자호	이덕형
김미연	최승수	김창우	박상욱	이흥진	이세동	이치수	이우철	김미정	장태원
정인숙	박현수	정우탁	김기현	김주현	김재석	이지하	김덕호	백두현	김성택
이은영	이경의	우무상	박지구	이필수	정병호	황위주	박영호	이구의	박천수
이덕성	김춘동	손형숙	한재환	최재현	손광탁	김노주	임성출	박연옥	김영덕
김규종	이기웅	이대우	김정일	윤영순	박승춘	이만휘	오태호	이근우	권오덕
권영삼	정규식	김태환	곽동미	이영주	장광호	김태완	이성준	박상준	김승준
진희경	조길재	이위환	임영심	양절도	여윤기	권태동	이정래	류승필	황주환
이상무	장호식	최경성	오중열	김경민	서상재	강인규	강상재	김창길	김영섭
김병오	이동운	원재수	최용화	박규환	김진호	김관기	배관호	김동조	이동섭
남주옥	임충규	김정호	한중술	김연	권오걸	박정기	김두식	신봉기	이동식
김문재	임상규	문무기	김재범	최형복	최민용	장저환	김성권	배대권	Troy...
박진원	정하명	전귀연	권기영	구양숙	최정화	김희은	이신희	이혜성	김미나
이연경	임지영	김미예	최연희	권소희	정주례	송영숙	박상연	최은숙	김경임
김호정	이은숙	유소영	임현식	진영민	정옥희	심송학	박남희	노운병	양승경
주영위	윤병천	이동복	정해임	권기덕	홍순상	조철희	이경용	김성년	이기철
임현락	최명룡	류재하	이정은	고관호	윤수영	신원식	임호진	추광호	조완호
김영주	윤남식	지병화	배진석	김태경	오태진	김성훈	김한로	최재홍	김동현
여상도	박중곤	송동익	김정주	박병옥	이준형	김진호	김남경	손호상	이호성
허남호	조찬식	이상연	최홍진	박영철	백낙훈	김황수	김태한	류진춘	김태균
여준호	장우환	김총심	김봉용	이원희	박병태	엄태진	이현택	정성환	박인환
김학렬	임진규	박영식	김정상	여영근	강남주	박만	조래광	김장역	이상만
이정동	송종태	배도규	한명세	노시갑	엄인철	주성현	윤태명	최철	강영화
서전규	김병수	이상한	정신교	권중균	최종욱	문광덕	박희동	문재덕	박영식
이세희	김동훈	김홍근	최종우	서보혁	박세광	원동일	김창호	조용근	채성철
김도원	고철우	서정주	서정규	성주경	최병호	이종명	김항미	이택후	박일형
박연득	김신울	경희수	김재철	이동운	서인수	손윤경	배한익	박태인	윤길숙
김건엽	감신	박재용	이더희	이성국	최희경	이광석	박종화	권오상	김구진
김승호	박순용	유기영	김항준	이상조	유관우	김동균	박천우	이덕성	김춘동
이희준	유명기	(613)							

경상대학교

황병순	임규홍	유재천	최용수	장시광	정영훈	최현식	이재인	이재술	신용민
김유동	이영석	이규식	정경택	조원호	엄홍석	김명순	김완	김남향	김석근
서연선	강호신	정진주	정현재	조영제	이원근	강길중	김상환	정재훈	윤경진
김승렬	박창현	석종환	김두식	오세량	안상국	백승진	이광호	정헌철	한상덕
김정필	권호중	류왕표	배석원	오이환	이성환	권오민	허권수	이상필	윤호진
최석기	장원철	황의열	임수정	안주경	강인숙	김상대	장상환	송기호	강욱모
배화옥	이신용	서미경	심창학	강수택	박재홍	최태룡	김중섭	이민규	김정남
윤문숙	양난미	서양중	심홍수	백종국	황인원	박재영	민병익	명성준	이시원
배병룡	유낙근	김영기	김광동	강신민	김선정	이선홍	김광일	김재원	노현수
유지윤	이현숙	이창원	정영문	신용철	김명옥	허남웅	오윤식	이성호	서숙재
정명기	전용기	김기일	하석운	문용호	김경훈	박재홍	김용기	조성현	배종민
김상복	강현석	김현수	정기수	최수경	김진호	남상탁	정미윤	정순영	정완상
윤용진	정종화	서무룡	최명룡	김재상	김인수	문수경	성낙주	김석영	김성희
이주희	정보영	박미연	허민수	정복남	추미선	성희원	임지영	이정숙	박중양
서의훈	안성진	이계민	김수택	임동훈	조현구	김순오	김우한	김영호	손영관
김홍길	송석훈	정찬용	김학수	장형유	정기한	최병국	윤한성	김의동	허재창

신건훈 최근배 광근재 안창모 장봉규 최진현 전태영 이창수 박상규 전만수
 이석순 윤일중 정희택 박태조 김형범 김수진 배명환 서정세 송철기 박영욱
 김진학 이기창 박종만 안인섭 조권구 남태현 허보영 김기원 안효준 임수근
 김상식 황규홍 이성갑 김철진 신동우 강은태 배원태 심영재 배성문 한관희
 이민호 이상천 차춘남 조형래 임상규 최상현 전차수 마대영 김상현 신흥교
 이순영 신휘범 최재석 김태형 이건기 김영일 정상배 한석봉 임동민 이문수
 고진환 박기철 조재경 김정규 양영일 탁영봉 강석근 이정훈 김태웅 김갑순
 박종조 정세교 이정훈 윤석현 이병호 윤정배 김환용 이상정 고영훈 고성룡
 최만진 유방근 김동진 문태현 유환희 김종오 김경환 김 영 안재락 안정근
 박영철 서양곤 김성배 김창준 안주현 최주홍 강인석 안기원 배종순 정희효
 권민호 함께운 강철기 마호섭 김중갑 김의경 김형호 문현식 최명석 변희섭
 김철환 박한민 이지영 문선옥 김진석 김윤식 이영만 김성용 김석현 김경문
 김민철 정종일 심상인 최충국 이병현 이성실 민영봉 허무룡 김영복 송대빈 김현태
 나우정 허호진 최성길 조성환 심기환 정병룡 허무룡 강남준 김주현 강성모
 황승재 박정규 김희규 김진우 추호렬 손대영 송유한 이증주 윤용철 유 찬
 장민원 김영주 이정규 양한솔 주선태 공일근 장홍희 김삼철 전진태 최양호
 박기훈 양민석 허종수 하영래 김필주 강대성 강기홍 이영만 김성용 김석현 김경도
 권기훈 광상진 황경환 김기진 전 옥 김중희 서정향 이종갑 정찬기 오 문승한
 송도선 강재태 김남순 문선모 김용주 김지홍 안동준 한귀은 황갑진 손병욱 홍석영
 김용석 조규태 광동훈 이광국 김지홍 김지홍 권오현 김덕현 김명주 안병곤 권해주 이종호
 박종철 박종현 김해영 김준형 서용득 송 무 이성원 손정우 배광성 김정곤 오경환 김근도
 이 전 김은정 장상옥 최선영 박종근 한인기 박원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유태영 최정혜 장상옥 최선영 박종근 한인기 박원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김봉곤 박기민 양기열 박종근 한인기 박원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권영인 이상근 윤대원 조열제 김양준 방효선 박원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김한선 하중규 박현곤 김양준 방효선 박원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강진흥 정소봉 정선태 권선옥 이영희 정성호 김정완 김 석 김현수 구인선
 김주현 이후장 정동인 이희천 정태성 안황란 김은심 강영실 김원철 오세경 정용길 정면속
 고필옥 조규완 조재현 김형진 정순억 권중현 허동수 김우수 이동호 이명규 김무찬 최광수
 은 영 권인수 최소영 김봉익 최병대 이우재 박연식 강동훈 이우곤 백승철 이곤호 강형련 김연웅
 박원조 허선철 정한식 김봉익 최병대 이우재 박연식 강동훈 이우곤 백승철 이곤호 강형련 김연웅
 이종수 김정균 최병대 이우재 박연식 강동훈 이우곤 백승철 이곤호 강형련 김연웅
 지용상 문성주 전성근 이우재 박연식 강동훈 이우곤 백승철 이곤호 강형련 김연웅
 안영수 김용해 박병수 이우재 박연식 강동훈 이우곤 백승철 이곤호 강형련 김연웅
 김기범 정우건 광우석 김남길 조명제 김진평 정순택 정백근 김장락 강윤식 이은신 노구섭
 김충원 김덕룡 손운목 나병국 김진평 정순택 정백근 김장락 강윤식 이은신 노구섭
 정영균 박종문 고경혁 한창덕 현재석 박재용 권오영 장세호 주영태 서한극 장인석 송준경
 맹국영 손진욱 이정희 강기련 박은실 우향옥 박철수 김봉조 정인영 임병훈 함종렬 정재훈
 박찬후 최준영 이옥재 박인성 화정석 최낙천 김봉조 정인영 임병훈 함종렬 정재훈
 최상경 배인규 손주태 허상택 김종우 윤철호 이원섭 이상호 나재범 조재민 전경애
 이종덕 김현정 유재욱 배경수 박순태 김준식 안성기 강정훈 이철희 홍성근 한재희
 최대섭 유재욱 배경수 박순태 김준식 안성기 강정훈 이철희 홍성근 한재희
 조경제 (581)

경인교육대학교

조한무 유생열 이대형 이강순 이승범 김재운 이재용 이재행 유미희 이대석
 여태철 이학주 김혜숙 김용식 최일선 장영숙 황병훈 석문주 김혜정 조관성
 김항인 임상수 장준호 이경민 김 호 신옥순 허 숙 최 옥 김수연 김평국
 박철희 황매향 한기철 박기화 김혜련 박선호 박약우 고경식 이명규 권덕원
 조운정 서승미 김용희 구정화 한진수 정문성 박교식 임재훈 김수미 권석일

김민규	주길홍	김창원	박인기	문광영	정혜승	김정자	김용찬	전중환	박영석
강선주	이동원	송상현	강운봉	정영옥	김영희	이춘식	송현순	김재호	노석구
강호감	박재근	홍석인	오필석	박종학	류 훈	이주연	김정희	김선형	정 일
김진석	안금희	김해경	정현선	최영환	이창덕	심창용	이동환	최희경	이재희
부경순	허 경	이재호	손원성	이수정	한선관	김영기	고대혁	김종국	김철호
여상인	신명경	임희준	권난주	최선영	이윤정	(106)			

공주교육대학교

구권환	조봉환	박태호	김승호	한승희	우상도	이창학	김영하	문경숙	함희주
이광무	임문규	서수현	박숙자	권오중	정용재	이양희	민미란	박정원	강병륜
한만규	김한제	문제민	(23)						

공주대학교

윤용혁	지수걸	김창석	정하현	최성길	최원희	박지훈	류주현	김철영	김중헌
김희수	서은경	김여상	박상태	정기주	육근철	이회복	김준태	최기영	류해일
김창석	정종인	김의정	강신천	김현섭	조이연	심규철	장창기	신호상	정민결
이진현	이재영	김덕수	임경수	최기성	김영길	윤희수	김종인	김정수	박인규
조동길	김영미	송재일	송홍규	유병환	김성수	구중희	임병빈	강용구	민수정
송해성	강문구	최홍순	이효범	이병희	김경숙	백원철	송석준	김일환	권정안
이동재	정영란	이종호	이광호	이덕호	박달원	김은환	노영순	전대열	안재만
이영재	한승록	이달우	양병찬	이병승	백기현	김성수	조성보	최 선	박경숙
김신일	정환영	조기호	김연승	우상균	김현효	김인표	최종욱	이명우	김동진
허근배	진종화	이종화	남수중	최호규	정강원	위오기	강창수	유기준	박창수
정춘희	박영순	이광희	송관용	원성수	배용수	이정만	김왕식	한종희	박치형
권형돈	우세나	정 규	손수진	원형식	홍성재	백옥현	이재완	강희숙	모성희
박문우	심숙이	김문원	류지옥	홍사용	김영옥	송정훈	김용기	성열욱	서창호
김찬수	한근희	문형태	김광훈	조삼래	윤의수	유영한	김송자	서광수	구민호
신동복	김형래	김영석	신흥렬	곽종흠	소선섭	김맹기	서명석	황호영	김용진
김학수	고연화	이기환	서정호	김규호	조남철	이찬희	전병환	김황래	박구락
이상용	이부형	채의근	소선섭	김동근	고성범	이윤열	공헌택	김치수	이종집
박균영	고영수	엄명현	김동선	이철호	전종기	최재환	황의환	김진현	김형준
강태원	조정호	이윤섭	최복일	유정봉	이종인	박현상	권석두	현창호	김효성
이종석	윤덕용	김성현	송창빈	김남철	정운진	강용목	구자명	김경식	이태행
서봉수	홍익표	노승환	김창봉	윤명호	고인룡	동재욱	이화룡	김우범	김길희
김준태	김봉주	류수훈	최병관	이호정	오형석	이창용	오세천	이종원	이상민
강대수	유시영	이현창	권기영	기장근	조종호	이동석	박태영	유창국	김석환
조미연	류장렬	김승환	김원호	이종호	김승겸	오범석	박성두	이은종	류교선
김우태	김남훈	최계광	김영춘	강서익	전성식	김우기	박상흡	박홍태	박영석
김병수	김상기	정지윤	박병권	윤영일	이영진	윤충원	이찬호	이무현	안승원
채수천	정재훈	강희경	김영철	김계웅	김건중	이종완	이일연	이기형	한 혁
강홍구	윤혜려	황성만	이승기	김 용	한재웅	이경진	조용현	김광동	정용문
신윤철	배성의	이양순	김명희	최미경	박원중	이효구	류기형	오남순	신동일
김성민	구한모	김창호	박용진	정락채	허무열	김종욱	박승기	엄성훈	정남수
박찬기	이충우	김정호	김명태	김중서	노혜신	김원석	김경진	김성민	최윤정
김건수	박승철	이광호	김미림	백준기	민준일	정광호	김 준	이재형	문선순
홍성애	곽명순	김영배	이경열	최은숙	경병표	이완복	유석호	이성욱	김희경
신연순	조순자	안정선	이성란	김갑영	김선효	(336)			

광주교육대학교

강성률	노희정	조강모	문병도	임성규	염창권	김재봉	천경록	서수현	선주원
-----	-----	-----	-----	-----	-----	-----	-----	-----	-----

김용조	손정신	홍기대	김인식	이광성	이대현	이정재	김용태	안병곤	임해경
한광대	최도성	김해경	문병찬	김영균	김성곤	이동우	조필환	김인수	김창현
강호영	정희자	김성국	주대창	홍승연	손연식	박정환	김성숙	정희남	정인수
박행모	방기혁	김용익	이성숙	박광렬	오익수	양은주	황윤한	이정선	정환금
허승준	이미자	박연호	박한숙	김인숙	이정선	김재혁	선규수	김영현	조초희
박선주	김정량	마대성	김 철	(64)					

군산대학교

이일수	배석찬	박경일	박권산	문철수	류상문	최상훈	신문섭	이종길	윤상선
권오신	윤병인	황재정	오길용	전형원	박혜숙	박태섭	이신영	김종연	구수연
이종인	정동구	김변근	최동수	황영보	국보선	김명수	황성원	신영화	김용태
이근우	김병우	백태현	심희옥	임춘희	김백운	이연규	김태림	이정식	김석준
김건호	최강득	조주필	오종철	김길태	신성운	박창규	박영례	양희정	이연식
오임춘	박희석	유경숙	이현영	이재완	양현호	영덕준	박학래	박계성	김정숙
서정희	공미란	장영철	표세만	이주봉	임용택	유경현	이상민	고현정	원유경
정기문	남이숙	김동희	김종수	유선재	조수근	이점숙	조영배	이상철	이연석
박시균	박재필	김병호	윤창선	차덕근	송석기	이지수	고대영	박경세	안진경
홍경선	정성은	윤성현	김진영	강영숙	정현채	이지숙	이혜자	이명순	정연희
임옥희	장명철	김현철	김영철	정현술	송용호	강상기	조현철	이민아	신호섭
강동희	박영철	엄경배	김수관	정태진	(115명)				

금오공과대학교

김영태	노승훈	박창용	김경훈	박중윤	강용구	한철호	방중철	이태원	이종찬
홍성욱	고형중	김기만	김인수	김영식	박상희	박경석	윤성호	권현규	최성대
정영관	한수식	박준영	김준식	박재우	이영순	이상재	채 석	하천수	오영석
전홍우	권상근	박의준	채창현	신경욱	임재권	김명식	김상희	박원우	최한고
김학성	송성해	성명휘	고지환	안희욱	김 영	김동성	이용환	정훈주	공인엽
장춘서	오길호	김병만	한규필	김시관	황준하	최태영	김성영	이이섭	이현아
윤현주	이해연	김선명	송재호	장기태	이재준	정연구	박제철	신현익	곽윤근
김석만	김경모	박일현	최이준	김인수	이도경	최병호	정순욱	장성호	박노진
조경식	이상우	이동구	정인희	김석환	양비룡	이철경	박용일	이세재	노재승
이종환	전윤환	황홍택	박성욱	최낙렬	김홍구	조민형	최대규	유원석	이태동
추한태	김규욱	이재원	김호태	류성룡	이선규	이용환	이승희	김석배	박성식
송창호	조현걸	하종범	(113)						

대구교육대학교

김병희	배상식	박세원	최신일	양선규	류덕제	이강엽	황미향	윤준채	진선희
이수진	김상규	배한극	박순호	이종일	박인현	주용영	송언근	송인주	류성림
김상룡	최재호	남승민	최창우	권성기	김중욱	임청환	김동욱	송남희	김동렬
송명섭	박정화	강영수	이종목	남석희	김만의	박은규	박순이	박기섭	고선미
최미영	황정복	이인수	정동철	홍원기	임남숙	김동철	이은적	정진현	손장호
정남용	김유정	정미경	민천식	정종진	정재걸	이원희	성용구	주현준	홍종관
조현희	김영숙	김영민	최억주	손중선	도명기	박판우	문교식	배영권	(70)

목포대학교

이기갑	허형만	고광모	나승만	이 훈	조용호	김선태	이경엽	정갑철	김재준
한정원	박승재	김경님	배 현	강석주	홍재현	이광보	신정호	허 석	이형재
양경모	박찬기	김선화	이광복	안미현	최연식	박혁순	유원적	김영목	최성락
이영문	김건수	이현중	윤형숙	박정석	조경만	이동신	조준범	이종화	김정민
임이택	신순호	최승영	성연동	박민호	김영태	임경택	박찬표	하상복	김신규

문기호	홍석한	김병록	손귀원	양승주	공병천	김인룡	이수애	진혜경	권구영
김영란	박민서	정양준	양순철	이응원	김창대	박혁렬	한동설	이상좌	오세웅
이용훈	남상호	송태곤	김재만	김종욱	오정균	유용권	곽수년	이공주	김병운
장진호	조영길	박찬선	임현식	김관수	김동욱	류동영	김 휘	엄미란	김은경
박형빈	김형국	유기조	김영철	진범자	변경석	윤복현	윤한용	최영도	박창언
전철균	이상찬	임종환	김인철	박양균	강성국	김정목	최경호	안동순	박경우
오수열	정민아	최종명	조성의	이영호	오명호	김태희	김용석	정해덕	이진현
김창선	문채주	소순열	박계춘	강주환	임종석	김대근	이재빈	이성로	정일현
이상득	송재준	나춘기	이만승	이충효	전성용	이성희	고형대	이상돈	윤숙
최한석	양기철	장봉석	김농오	정석원	김민수	최 일	김지민	오양기	김태훈
노태학	유창균	김정규	황혜주	나철훈	강성준	김경호	이연우	장영학	김성환
박장현	정형배	나승수	염재선	곽영기	조두연	김우진	유재훈	박대석	이창대
조현상	윤철호	이진형	문병률	이정갑	홍동문	김형모	최남용	박관석	최동오
박석호	유병욱	강경훈	모수원	이상림	이재복	조영석	박송춘	정홍영	양후열
조광문	이석인	조혜정	이정연	백지숙	박정희	안소영	김동한	정현영	최세웅
김현아	심규남	박미령	김상률	김창세	홍순모	김천일	조은정	고창훈	김태종
박윤서	손영환	신문용	이건실	김신영	배상철	김농학	심두석	김철웅	박행숙
길애령	박철수	전호문	김용영	박동철	장주혁	장경빈	박고훈	김혜은	강일국
김학근	김승현	김남준	정탁준	김상채	김종오	(236)			

목포해양대학교

최주열	이돈출	노영오	박영산	봉태근	임채현	신상현	박찬수	최민선	남정길
최부흥	김준효	한민수	유영훈	조대환	박중순	김선종	김현수	김수겸	백신영
양창조	김갑기	이성렬	정종면	곽재민	최조천	박천관	최병하	김건웅	한상국
이계희	이경선	고재용	김우항	윤순동	김병일	김도희	주기세	박성현	금중수
김광수	노창균	박성일	기희원	성유창	정재용	박계각	김우숙	양원재	최명식
이미라	김치연	김현종	이창희	정대득	김형근	정건명	장석기	한원희	남택근
오병주	배철오	오대균	김용진	최익창	이경우	장용채	조성채	이준곤	강장희
심문식	한송희	김상훈	조혜성	(74)					

부경대학교

윤 일	손동주	박영숙	최건식	장상언	최연희	김진기	김상규	신종대	사토노리코
하봉규	류태건	이대희	이성봉	이경화	이회영	황희숙	허용훈	서재호	이찬구
양기용	김창수	정건섭	이재원	박양근	김은일	조윤경	정해룡	박순혁	배재덕
박종원	오준일	권영희	전춘배	윤희수	박원용	조세현	이근우	신명호	강인욱
박화진	고주몽	최명구	배영길	고명식	김선복	지규철	김선화	김명수	유상욱
김철수	장칭건	홍동식	오희선	정현숙	이명희	조문희	김정미	김영환	김용호
오창호	한혜경	이상기	정혜조	김창경	리 단	James	이중희	노리코	사토 황호선
권오혁	장병기	서석홍	박철형	윤형모	곽진석	최호석	조동구	고순희	김군도
이훈구	이명숙	송영찬	김진상	김경호	김영태	김도상	정진문	신준용	박진한
조성진	표용수	심효섭	조낙은	김태화	송현중	문선호	지삼엽	신군수	김용재
이태웅	박형하	박용범	이성백	노맹석	윤 민	장대홍	김 돈	심현관	김영일
이동재	문성두	박선주	김주창	변상용	김세권	강용철	이형기	최연욱	변기식
김남호	황용연	김만고	안영주	이경창	강대하	조봉관	배종일	박한석	김영학
노의철	장윤석	권성열	우경일	박창현	이용욱	이운식	구평희	박병무	김영진
옥영석	김민수	안예찬	오정환	하덕호	이원창	주문갑	류지열	박규철	권태하
최혁환	강근택	임창현	류지구	정신일	김종진	문광석	이동욱	국승규	김수한
장희석	김명식	정두희	이영대	조경연	김영봉	이경현	우중호	조우현	여정모
윤성대	정순호	박승섭	정목동	박홍복	서경룡	김성빈	이상남	구철희	손세모
윤종태	안석출	남수용	문명준	이근대	오대희	박성수	김창규	정병호	강창룡

김현주	김성규	이병우	권혜웅	김부안	정해용	안용석	안병현	문창권	서원찬
이길근	박흥일	김우열	임권택	정연태	허 훈	김지홍	오정수	정용석	조병권
이내우	권오현	최재욱	신성우	오창보	박외철	민성기	박찬영	박상보	이 봉
이원기	김주현	이석희	홍성수	임준혁	유 준	주창식	이경범	우희철	문덕홍
김시영	고성위	양주호	한규일	고대권	홍성민	박천석	신용재	정근주	이재용
송대호	이수용	임영빈	이병근	최홍석	최순권	이춘수	조찬혁	오대형	김기수
최영봉	김은채	박영병	윤영삼	김태용	한재호	김진항	김영조	이유태	김하균
김창완	최태영	허원무	유일성	류태모	이주희	이대재	홍철훈	이춘우	정창익
신현옥	김형석	임석원	류홍수	변대석	김형락	류은순	남택정	유명숙	남기완
김수암	백혜자	오철웅	김현우	김진구	정준기	김병호	표희동	송정현	조영제
김선봉	전병수	양지영	안동현	이양봉	김영목	장영진	김종명	김동수	남윤권
김영섭	최철웅	윤홍주	배상훈	서용철	한경수	이양원	변희룡	정형빈	오재호
권병혁	김재진	성기준	최창근	강대석	정용현	김동명	김희준	공영세	최장찬
백인성	정상용	강태섭	박계현	송용선	이민희	김용직	배동병	배성용	신상묵
구자삼	김동준	김인철	강용균	김석윤	이재철	허성희	문창호	김헌태	류연선
윤길수	류청로	나원배	김운태	김정태	(345)				

부산교육대학교

권선영	심성보	김창근	이미식	이상익	심상교	임천택	박수자	이기복	김용진
황홍섭	하윤수	오인택	한춘희	강신포	홍갑주	김관수	김성준	이형철	유병길
이용섭	김용권	배진호	소금현	이석희	문규진	김문규	공기화	오세복	이종완
손준구	박종태	배승택	김서경	신애정	김길수	양종모	정은경	허정임	전광수
정안수	이형구	정원일	정영한	이시원	이경애	정지윤	문대영	성병창	손 미
박상완	박채형	이광현	허승희	김기홍	권영환	이동한	조경숙	김동규	이재무
이미화	김현배	송의성	(63)						

부산대학교

이호열	정일두	강동중	안득만	손 권	황인성	이태호	이성행	김진만	홍순현
이경근	강남현	박익민	권영안	최영규	박준호	정상화	김정구	유영환	염근혁
장택수	조대승	최정열	김 석	황규석	김원호	송성수	이재득	한동욱	이동윤
정명영	민영성	주지홍	박성호	송우진	정영근	이상원	안경식	홍창남	이병준
한대동	김석우	유순화	김희용	심혜숙	정인모	이상금	조진형	김지나	정일경
송태성	한준철	윤웅진	강재원	유제분	한홍식	곽한영	안홍배	윤성효	이희열
문성배	도정윤	노지현	이근섭	강성철	박근태	곽춘중	김진섭	조영복	김동일
노철화	이은섭	이한성	최세현	김주만	최원식	김형식	박종희	송권준	강미리
채희완	곽임수	박순규	박영철	이상돈	박규현	이원석	문태용	황인경	김선희
김성장	이민기	허 정	한군택	배수경	이은엽	고현철	이현홍	허영재	유인권
장익수	이창환	김영철	한창길	황정식	문용환	김희수	조홍래	이상율	허 찬
양경희	손 문	황진연	이장천	김병주	주명수	황민우	구성태	김병주	김승태
김동희	김명희	김영혜	박형숙	서지민	전성숙	정인숙	하주영	황선경	김영수
김용태	박강근	박성수	박창배	서치상	안영철	우신구	유재우	윤성환	윤승현
이경희	이동언	이상호	이인희	허영기	김경천	박상후	박원규	배원병	송주현
윤순현	이동근	장영준	전충환	정용호	정지환	정철웅	최재원	김종구	이성호
장 옥	정주철	정현영	최 열	문일경	김환성	박수민	송기원	안승국	이문철
조현후	강정윤	류봉기	박익민	박홍채	신현철	윤석영	이희수	정원섭	조영래
후 이	김석찬	김유신	김장목	김재창	김형남	김형순	김희제	남기곤	박관수
백광렬	손경식	엄일규	이문석	이장명	이해준	이호준	최준영	김경석	김길용
김민환	양세양	우 균	이기준	이도훈	이정태	조환구	차의영	김남식	김인태
박수완	박용명	이선구	최영선	현 규	류지호	이상호	이양수	김태규	이재범
조 현	강혜성	윤수중	황윤희	황승구	강대섭	계승균	고대철	권 혁	김명길

김상영	김승대	김이수	문준영	문채규	박경재	박용석	박찬호	배기석	서희석
손태우	송우진	안원하	오정진	윤석찬	이기춘	이정원	이정표	임재호	정대근
차정인	박현	윤현식	이인원	강명창	권세훈	이형우	민병욱	안창수	유동석
임주탁	전은주	김종기	서명숙	이성재	백승충	송문현	양정현	윤용출	이세희
장동표	김은주	임부연	임재택	정계숙	조희숙	황해익	양삼석	이남원	이왕주
장현오	김석준	이진석	구동희	김기혁	정인철	김태은	백영호	오덕자	윤양진
이근모	이현수	조송현	조원민	표내숙	강영심	김자경	박재국	안성욱	황순영
설문원	송정숙	이수상	이용재	이제환	장덕현	류기형	이기영	이성은	최송식
항보람	김문겸	김성국	김영	김희재	신원철	안정옥	윤일성	박재진	박홍원
조항제	채백	김비아	서수균	정영숙	홍창희	김진영	이철순	전홍찬	정용하
차창훈	강재호	김인	김행범	박광주	황아란	문병근	윤영득	한현옥	황한식
강한석	김선구	신택순	이홍구	조병욱	조성근	권혁승	김병철	김선종	김영인
신범주	이완직	허석렬	정영진	황대연	김근기	김용균	박현철	손홍주	이상봉
김선태	김성만	김용철	이충렬	최인수	김한수	성종환	이영근	강점순	박영훈
손병구	이용재	최영환	김동진	백재봉	이유직	조재우	최송현	김영식	서정민
이병인	장성호	홍성철	류호경	송영옥	이희섭	조은주	한지숙	김경연	김득성
김희화	안정신	권미정	이정관	이진화	장정대	장정아	박수빈	조성희	권오륜
박정준	서국은	신상근	양점홍	황영성	김영미	문형룡	이복률	정연진	김성계
김철기	손원준	윤기현	이태구	이화세	김문규	김양목	이민한	최수화	문관규
서대정	채희완	이진오	권혜령	김영희	김지령	민상순	박성완	박용실	박을미
이민환	조영수	한명희	김성연	남궁경	손귀주	안순주	오현성	원주안	배수경
우재석	김관희	김봉선	김윤진	김해규	남수봉	배순식	배영태	백선용	손한철
송근암	신용범	윤식	이상엽	최수종	신경철	양은경	임상택	권경근	김려실
박선자	박소영	이재봉	임종찬	조태흠	최규수	한태문	양민종	최동규	김종수
김대성	박정환	인성기	박형섭	윤애선	진광호	채숙희	곽차섭	김기섭	김동철
서영건	우상훈	유재건	이수훈	이종봉	채상식	최덕경	최원규	권순복	김인택
천연진	김용규	박기성	배만호	윤일환	이상도	전지현	정병언	김옥영	김임숙
김창규	노선숙	류민화	조광희	강석직	김새환	김혜준	남덕현	류명희	서정희
김용환	김준수	문성원	박정심	박준건	손영삼	이영철	정해왕	주광순	최우원
강명관	김성진	김승룡	이준규	정충현	김유근	김철희	안중배	이화운	이남철
홍낙형	배형석	오정일	이상훈	이재동	장경립	차재호	강호성	김애희	김영진
김영희	박범준	유미애	이춘환	임문기	김병기	신태수	윤부현	이근섭	정영미
주기재	최은상	홍정희	김준교	김현민	임영호	김동희	김충락	손건태	정광모
정윤식	조영석	최용석	홍창곤	김석만	김태규	박강현	박영상	박장수	심윤보
이상국	이종건	임만호	정기호	현명호	고명연	안용우	정성희	신상훈	정연화
조봉혜	김옥규	김신	정태성	박수병	박정길	김현철	전영찬	정창모	강정숙
곽현호	권용훈	김규천	김진범	김형일	박봉수	박혜련	배문경	설효정	유미현
장혜옥	정진	감성조	최점일	권영규	신상우	백진웅	임병목	이장천	권정남
김기봉	김재규	신미숙	신병철	양기영	윤영진	윤영주	이병렬	이인	홍진우
채한	(621명)								

서울교육대학교

홍영식	최예종	류재만	신춘호	신항균	정수현	변순용	오영열	권치순	황정현
엄해영	조주연	양태식	유한구	김방출	성기훈	김성식	지준호	박일우	전인호
이상원	박지숙	김인	문성환	이인재	남호엽	김유미	임기환	남경희	이동남
한태상	노경희	홍선호	이동규	(34)					

서울대학교

최갑수	장승일	김진형	마응천	이동수	이장희	김세균	김용익	양형철	이성현
강창우	유두선	장미숙	정병설	심봉섭	홍재성	박찬구	김윤준	문병로	정원재

손상희 이근우 정창무 김수환 홍성욱 임홍배 신호철 박배균 이미나 권숙인
 정재원 김민수 이변우 백남천 고희종 권순철 허경희 이삼선 허민석 이원진
 황금택 호문혁 황인규 이철수 김장주 정창무 정성은 백정화 서영배 오명석
 조병훈 우희종 김홍희 노상하 이주형 권숙인 김보형 김춘수 섬베르메르스(59명)

서울산업대학교

손기상 이근오 이영섭 이영순 김찬오 박달재 권영국 권오열 이태진 김 철
 김원필 기성태 박종혁 함정도 이영한 장현승 김영일 장극관 정광섭 옥종호
 이윤수 문수근 편정민 오영재 나성숙 전양덕 김선민 남기현 정혜진 김상묵
 이상욱 이현숙 양영균 윤홍근 김달영 권영식 김종현 이명아 최병건 이정석
 박창용 맹희영 김동환 허남수 김성환 이귀형 류도형 김영석 장병만 정성용
 김우제 신태현 김자희 홍정식 이명호 김진현 신기훈 김홍석 김정한 임충혁
 이상중 석상기 김창현 김현수 최병욱 이종현 안재경 안효진 최중운 오승탁
 현창용 이태근 강계명 류민영 김종형 김한상 이수룡 최병욱 박민기 정태호
 도현락 황지홍 이상훈 한석우 강성태 이수구 배재근 김래현 최고열 노인섭
 류기운 유계상 박진원 이종훈 윤길원 박세혁 양재근 (97)

서울시립대학교

김대환 문상덕 경 건 차진아 최창귀 이창위 원용수 강정혜 홍기원 문영식
 권기범 최은희 노상현 전민기 김호기 구재환 김재문 김학동 김용한 김철한
 강상혁 최중호 문용삼 김영길 이준하 김인철 김창민 김한준 안승구 이동훈
 구자용 한인섭 박영권 김현욱 권영주 금재덕 김 혁 김영우 허순임 박용찬
 김대진 임성순 정희영 이수근 전갑배 유재춘 박성룡 김성곤 정진우 정상근
 박철수 권기혁 신범석 김성홍 김소라 배형민 이선영 최상기 이충기 송민호
 김형준 류영균 문영인 홍수민 전인한 임자연 임종성 목정수 조세형 박기영
 김영욱 이동하 백광준 강병규 이승훈 이영희 전기홍 남덕순 이인학 김영준
 이소연 권재훈 송준호 이난이 조윤희 신동호 김하원 송인석 이준영 정혜숙
 이상일 김상주 이수일 강인혜 김태현 조성길 고준환 전철민 정형섭 이지영
 최윤수 심이성 김완순 이계훈 김진원 김선광 이부영 우수영 안수한 박창이
 정병철 김성곤 이용희 한상문 오동훈 김태영 남황우 김일태 권원용 정희영
 최근희 송석휘 박현열 김 석 이윤석 양재환 정창영 표민찬 김충영 홍사능
 DuncanJackson 강형철 박종찬 김경태 임석식 황유섭 엄경식 이춘우 안성제 정재만
 이성호 장남식 장금주 장광필 송지희 최영준 박광훈 이현정 김설향 신재휴
 오유성 황선환 제세영 이영한 박 훈 김완석 전병욱 이상신 최원석 이진원
 이의태 배우성 박희현 김종섭 이익주 박경완 홍완식 석중현 김정현 정철수
 조성일 차민환 정연수 김의용 이두환 김 효 장재언 안상현 이병정 이동희
 김성환 김민호 유하진 홍의경 최 혁 김원중 송오성 권명석 정재필 김정식
 김용훈 손의영 김영찬 이승재 이청원 박동주 김도경 이수범 최재성 이성백
 이종원 서도석 김상배 차건희 광태운 황의서 원용결 안두손 배영수 신성휘
 이근식 (211)

순천대학교

박문수 박인협 김준선 조계중 이성춘 이상석 양철주 조성균 박광욱 서재신
 신수철 천지연 나의식 배창휴 정현채 김용두 천종은 임상규 남기창 배인휴
 김 훈 김정호 조남훈 김병무 이상호 이기웅 송경환 현규환 신동영 임요섭
 국용인 조주식 정용화 송원섭 강종구 최정민 박금주 박서기 홍지형 김재영
 서강석 장영인 박진성 임성호 김재필 정종환 이진희 최성욱 공옥희 장승태
 류경민 박정로 박석규 송 은 윤경원 신동원 이미경 전순실 최성규 박종철
 박기영 한원동 성치남 조현욱 정영철 최상기 정재성 이성태 박청호 김길수
 장철문 안광진 강성호 조원래 홍영기 최인선 조윤철 최은성 이주환 손영호

강영의	김선화	양숙향	이옥희	임성운	이상구	김용찬	송복승	최현주	오성호
장상수	손병선	이상석	한상옥	이윤호	이도진	문승태	김민배	강형일	김현우
강의성	허희옥	이형옥	장동식	조정민	양원옥	이화자	양선기	조홍근	양기열
송영무	김권옥	권순걸	임경희	이병환	손승남	박오복	최춘태	이충일	송대엽
김정빈	유평열	하동수	오원균	유시영	이광배	김창곤	조현우	노춘섭	김명수
이경근	유 일	박종호	박병희	신정신	박홍균	박경량	박형달	양재선	이병운
전성희	한귀현	이금옥	박영목	김인선	최용석	공인숙	김성희	김소라	이신숙
이희남	정진오	진재현	최종옥	이기만	정희범	김성초	김용우	주재우	정재성
한상호	이경동	이효성	이석배	박일민	신형준	남호현	이재홍	반봉찬	이호종
심춘보	김종호	이성근	박상현	문용선	이권연	조병모	조병록	박규남	송명현
소지영	김재현	정동화	박장우	조용운	조경룡	박동국	조성언	여 현	신창선
정정조	라덕관	박성훈	정상철	박상숙	안호근	문일식	정민철	우명우	박권필
고진광	장문석	김원중	김도연	오재철	김응곤	정창남	김명렬	나재운	장미경
최대옥	장효원	송재희	김은아	신현석	한병곤	정동보	최종천	노희천	황미경
허정화	이하자	김광수	박윤호	(224)					

안동대학교

이진갑	우상구	정숙희	김복희	김옥암	최성관	윤재형	류수열	강오한	송희현
김병순	강원석	권보섭	김종성	이혁수	김청월	김성득	이영태	배용환	강명기
유주식	오동준	정영진	이상무	권기윤	이윤동	송환아	금중기	이덕승	곽종태
김상기	안중은	김상효	이장창	장봉춘	이기용	김시주	김의철	이용완	유병훈
김동근	이대희	안영석	이창희	김중수	이철희	김윤호	이은서	차영욱	심재창
정진영	이윤화	임세권	안상준	이현균	서정흠	신영재	황희윤	한정상	오수경
이종호	김남기	신두환	전수연	이오석	고성운	최식영	최종하	홍용표	유건상
임우택	김태동	전지홍	이효걸	이은주	유동환	김석환	윤지홍	윤석수	김종영
권성덕	신기량	현은민	박응임	박주희	손병희	이화진	서보월	김용하	전재강
김영훈	차영준	이재만	고정환	배수호	신사철	정 수	백승철	제갈돈	김병문
이성로	문태현	남치호	이병갑	김희숙	정운선	최영욱	박광숙	전대근	정기영
이기동	황상구	강지훈	정교철	김정진	이동진	손장익	배병택	박원택	권태환
반혜정	김태희	박경봉	하정수	백용균	정태주	오경식	이혁재	서태원	김영찬
신기홍	손영갑	양철호	김호찬	정중수	이준원	정해재	김석규	정정학	황재문
권순태	전익조	정인창	손호용	손건호	권인숙	이혜상	권정숙	정구민	박윤문
이종화	김태완	서균석	김정태	박동진	김태형	김상우	송준협	정규영	정형진
김건우	권기석	박우열	유영찬	정연상	김영철	이예경	박창근	김성룡	김수연
유광목	이광순	김진호	김종찬	가보서	김승심	고재성	조대제	김현기	김희선
임한규	윤천근	신상형	안병걸	이혜영	정화영	장원영	전영록	김복래	박세현
노석호	박세훈	이정환	이형주	노태환	이의열	박영배	김영식	안중호	이상용
이기안	손진상	김홍식	이순구	김용균	정철의	임언택	(207)		

인천대학교

김정태	유혜배	김화순	박진한	이건상	조사옥	황미옥	정정권	이지은	이노은
김용민	전인갑	안치영	신용권	서종국	신종화	박주문	이창길	김필중	양성환
서동연	허병이	민병수	권춘안	곽동화	박미진	정종태	여운호	박찬진	김진한
박창화	이용창	전찬기	백승화	이명수	윤병조	박승신	김기용	신은철	최병길
조양희	조인구	윤세원	고민석	민홍기	이종길	최승국	강현철	이기영	우요섭
김익수	박정훈	최규남	이한영	채진석	박문주	홍윤식	최진섭	이충훈	이호명
하관식	김규완	김재곤	남호기	김배연	박보용	김철홍	황명환	양창호	김준우
오원선	박종돈	김선호	김중훈	홍기용	김태호	유태준	송다영	최 현	양미혜
함남우	김인현	황인호	최성음	이영희	강준희	장영록	정병서	조한국	최은미
김강우	임경환	최재순	장인우	임 순	박은경	안춘순	(97)		

전남대학교

박혁로 원용관 박성모 백성준 강대욱 김수형 황부현 이배호 김철성 임형석
 김재정 김병기 이귀상 최덕재 양형정 최수일 김동국 정태진 나승유 김철홍
 문희 양재호 김진환 강성주 서곤 허양일 유봉열 채규호 임균택 김수경
 김성민 류동일 김선우 주석중 천득엽 오세규 송진규 고성석 황재승 이효원
 유우상 이강석 한승훈 김형진 박혜령 강신영 김택현 이종일 김중호 김도형
 이완진 박현수 김광현 임영철 류경우 여인선 구할본 최준호 남해곤 김유곤
 정재택 강기주 강보선 김영배 전인수 최병철 오일권 이동원 박석호 정우남
 기창두 임명택 오병수 윤희석 박형구 설승윤 이종운 윤왕중 양형식 이경훈
 박연수 이무성 한은미 하준석 김진봉 박정훈 이용운 정선용 박승식 김승재
 조성용 김광준 신현식 김천석 배영철 김대현 문봉호 김대익 정금호 김현태
 박기원 김민용 임현수 최중갑 최보길 이익수 조원제 이광열 최현진 강복윤
 이무열 임동구 임영준 오인준 성충기 박행순 이용복 김권섭 김관섭 오상진 임옥빈
 김창수 강형식 이귀숙 최홍식 김도만 박돈희 박희세 배동규 정영희 선우창신
 유민수 이영철 박병주 고정태 김선현 옥승호 김옥준 최홍란 송호준 이태훈
 강인철 김민석 김원재 현철 박상원 최남기 김재형 강병철 윤숙자 조진형
 황현식 방몽숙 국민석 양홍서 정현주 김옥수 최충호 황인남 김선미 정지연
 이은주 이시은 박영준 백일흠 정관식 김종규 이문옥 송지훈 윤양호 추효상
 이연규 최상덕 왕우경 서정주 양정규 서호영 정성주 오명주 강소영 최명수
 방호삼 제재영 신태선 정복미 안창범 김선재 김홍윤 박달현 이상권 이왕근
 손창국 이종백 신보미 임인택 오희균 윤석태 고영구 김종희 이계윤 박종률
 최동욱 강순자 홍성식 김현태 김용구 김인수 정영근 신효식 위은하 정난희
 유형빈 황원영 오규동 주동기 김인수 윤이중 박종원 박양호 서상준 나경수
 노철 박철웅 송진한 진경숙 박경환 엄철주 이홍수 유희석 안병규 김경숙
 최미숙 윤희면 전형택 김당택 이영효 박만규 선학태 김기현 노영란 김지수
 성승현 송오식 이현재 이승우 조상균 민병로 정병석 김정완 김재윤 문기석
 최환주 신창선 정훈 정현수 문현옥 신수경 황성규 강숙자 김광복 안희봉
 신경호 백일 이구용 정금희 김철우 남호정 선정근 김대길 최규철 장석원
 김창현 백종욱 이철 김길성 정경수 한순희 정희덕 김일권 박승봉 김준옥 윤민석
 조혁현 이준석 박정선 김경수 주형관 광민규 김동수 조종택 신병춘 김준옥 정청주
 문병일 김선부 변창호 안승호 김정욱 배종성 조완현 백장선 김민수 황인각
 임복희 정영복 권도용 조은진 정창섭 우정주 노한진 이강석 강기천 이형종
 임기건 노홍렬 박내웅 조은진 정창섭 우정주 노한진 이강석 강기천 이형종
 주경광 방윤국 이순기 우희권 최용국 최충길 배석 임형탁 허민 전승수
 이황희 황성진 김응석 김근중 황백 이병권 차성식 홍윤호 전우진 허영란
 김용준 여인옥 신동훈 김주용 김미희 전덕영 신말식 배수정 도월희 이정화
 신윤숙 김은정 홍은실 김미희 김주연 김경신 임현숙 이영숙 최자윤 박오장 김수진
 이숙 정명선 조복희 이영숙 홍미순 오상은 최자윤 소향숙 최순희 장금성
 김정선 정향인 박인혜 류재한 임채광 김태훈 김정욱 김순임 심을식 하영동 조영훈
 이은숙 강혜영 박인혜 류재한 임채광 김태훈 김정욱 김순임 심을식 하영동 조영훈
 정혜숙 이철 강성영 송경안 김용대 김홍섭 김순임 조자경 조길예 김동중
 김형국 김태완 노승희 나희경 성길호 민태운 이경순 신해진 김동수 이강래
 김봉중 임종명 박상철 이성원 김병인 김상봉 표인주 최영태 윤평현 김동근
 장일구 이미란 백현미 송하진 이종표 정미라 최대우 위상복 이강서 노양진
 조윤호 김양현 안기섭 오만종 김대성 이덕배 정승운 김정례 김용의 양채열
 홍덕기 박성수 홍성우 최석신 심덕섭 나주몽 위준복 최성호 정진필 이채연
 조인선 정봉현 김용철 박의경 임채완 김재기 오경태 국민호 나간채 윤수중
 노안영 김문수 사공복 회 김정현 장우권 홍현진 김원태 이오현 송정민 주정민
 김영기 이의정 이현옥 조승현 서준교 이영철 임두택 송충근 복문수 신원형

황태익	김월수	조백호	김영철	양하열	김철수	한태호	이정현	강훈승	한연숙
김한용	오광인	박승찬	이계한	이형우	소원택	서성철	백지성	최영수	유수남
서상룡	윤광식	백원진	최우정	백명기	이성진	홍석환	정우양	이재원	서국현
오기석	손창호	조경오	박수현	한호재	신동호	안태호	김성호	강정수	신성식
김태중	류수방	박광성	강택원	양동욱	신종희	신명근	박인규	신희영	정상영
김동의	김태선	서보라	김수한	오종석	이현철	류필열	신부안	나병식	정용기
안성자	이삼규	최인성	이기영	안봉환	정영도	이승록	김형석	조경아	박종태
송호천	최석용	김명규	박만석	김병채	황태주	마재숙	최영륜	우영종	국 훈
김찬종	김영옥	김성진	원영호	정상수	이민철	최 찬	이지신	이재혁	남종희
김재하	김경근	김낙성	임영채	김종근	국 현	박성식	김백윤	배춘상	안규윤
남광일	강형근	박진균	김재규	김운현	윤 응	김상형	나국주	민용일	허 덕
정한성	박종성	박사훈	국 호	문경섭	정 신	류성엽	윤정한	윤택림	송은규
박경순	마성권	김주한	백희조	이제중	안성자	나병식	임회순	배우균	안재숙
류종선	강삼석	정경운	박기현	이경숙	변동명	장창수	류재홍	이 범	강성준
정양희	김경민	김 훈	양희천	김정엽	문봉호	박경조	조길환	정주성	한동엽
정 만	고광일	이삼노	이익호	(634)					

전북대학교

정팔진	원찬희	이영동	양고수	정태섭	김종국	이명하	강정희	정승희	서인선
김현옥	김현경	정석회	최일림	김현숙	장태연	김형석	양오봉	신희식	김기주
최수형	한윤봉	이대수	민지호	이수형	김종수	김 필	김성종	정봉우	김종석
이연식	임연호	최성만	송윤섭	유기호	신의섭	강승희	노태수	이철로	설경원
김진수	유연태	이인환	최병영	최대규	권현한	배주성	김유성	권순덕	조기성
황규남	권대규	김정자	유문호	김동욱	양윤석	윤석범	김철생	강영준	김연직
김민수	강희용	박찬우	임익태	임재규	문상돈	최낙정	조기환	오일석	김용성
권오봉	이말례	이효종	편기현	이경순	김종익	김성찬	이준환	양재동	이용석
송영수	김승곤	윤평관	손정민	조상호	김현중	이병수	김복희	안병국	손인전
이기태	안행근	정성종	김영철	장재우	소경영	신정훈	이정휴	유철중	노도환
반재경	서용석	최석우	고영호	강용철	양성채	나창운	유일수	이명훈	이중희
정광운	윤재영	김선규	강성준	정재연	김태영	오재윤	양성모	유범상	홍동표
오성훈	김대석	유효선	백병준	이지근	송규근	소양섭	진 정	정대엽	남해경
소승영	김영문	민상충	유기표	김태형	김송민	이우춘	방준호	송제호	유인호
소병문	김형진	이장춘	이병석	양승현	박영기	김환철	길명섭	김동원	정병호
배준수	하재원	양재경	이태한	백장현	고홍석	김재영	최진규	손재권	이재영
장재우	소순열	정안성	양병우	백승우	김세천	이명우	안득수	김정문	백동훈
박강희	윤 창	나종삼	최호성	강진하	오승원	이남호	이양수	이종진	김형무
황창연	이왕휴	주호종	윤세억	정용섭	김영수	김용석	김광표	서병수	이창현
박종민	이상현	한상섭	박승제	김명호	김철수	김대철	이강수	윤성중	정남진
추병길	전재철	이진호	박홍석	허삼남	이부웅	류경선	황인호	김종국	최낙진
정영선	백종인	김원기	이준영	배정생	송기춘	서용현	조성규	이호근	남준희
박준석	홍춘희	김성자	김학기	양효령	김동근	김영문	김민중	신양균	최동배
한상국	이은영	정재길	박수영	유진식	최용철	이중호	장 호	백영기	이강원
조규성	문병권	강종구	김달우	윤정수	박병기	임은미	노상우	나동진	소동호
반상진	왕경수	이영식	신동로	김찬기	황성수	박경화	구자춘	김연형	박연희
손홍찬	이상철	조용환	이희철	이종민	박재영	정병화	강봉근	한창훈	전정구
문영진	이정애	이희환	송정수	최종민	정태석	김경근	한상욱	김은주	최종범
최재민	송규정	박병덕	이신규	김승수	김승수	이상훈	최용준	권혁남	김영숙
최옥채	김신열	이상록	김순규	김승수	조순구	박세영	강혜자	권철철	박창호
강준만	김창희	송기돈	최성권	송기도	조순구	황인섭	김승운	황호영	이경선
이영순	이상만	이왕돈	이현상						

박경수 한규식 홍성훈 박태식 최창곤 송영남 원용찬 이남순 안 진 천도정
 최우종 김구배 한길석 심갑용 양규혁 임태균 오용규 김은미 김민호 최백렬
 최낙일 최용재 하현수 변재권 이전숙 이효진 김용숙 염혜정 이영환 정혜정
 이진숙 박희준 정인수 박선희 최병숙 강형섭 유명조 김원일 김법석 이종화
 강창원 안동춘 박병용 장형관 김민수 김진상 조정곤 유일정 이기창 손윤숙
 김 원 이경호 이화석 윤화중 이화동 김원선 홍찬석 조광수 조동인 정현도
 임승택 이철량 계낙영 박인현 이상찬 이상조 신영식 이준복 이종록 김선옥
 박제현 박승수 신상호 최세종 임석태 손명희 김동욱 이준모 이주홍 이광복
 권형철 김정수 김기원 권영배 채한정 최복희 채수완 서만옥 김영현 신병수
 이황호 정경민 최삼임 김달식 이혜수 이동근 강명재 문우성 정명자 박호성
 정영주 류철희 오병찬 이정현 김중현 조성남 이 호 김 호 김대기 구자홍
 조중구 최종범 김민호 김부길 진영호 이재백 정태오 한의혁 송창호 김형태
 채옥희 권삼현 양운수 고대하 염정호 권근상 이주형 김성주 박우현 김수미
 안 민 주찬웅 황평한 김정수 김중석 박진우 고재기 김원호 채제건 이경석
 이상록 윤석권 고명환 박성희 서정환 김재천 김종훈 정연준 김찬영 양두현
 윤현조 김형진 정영범 김영곤 김명기 박종관 김종수 한영민 이상용 이정덕
 김승옥 김진명 강신옥 안정근 이복기 장성수 이종주 이태영 임명진 김익두
 구종남 양병호 양희찬 이월영 고동호 윤석민 양우탁 고규진 서충남 여종문
 진상범 김관우 서소영 정동섭 최낙원 김종옥 조한경 김명관 김길훈 이양재
 서진원 최상기 한상기 백훈승 김요한 정대환 박준호 김의수 최영찬 김상득
 최병운 이경구 임지환 하태규 장준갑 송미령 김성규 강길원 하우봉 한문중
 이한창 유상희 허인순 박창기 신충균 임경택 설근수 최남규 김은희 최영준
 박용진 진명호 정원지 서운석 이숙연 박순철 김철주 김무열 김환규 엄태봉
 김경식 박종영 여읍동 박기인 박문국 정국현 장광엽 김재연 양계모 임기영
 윤창주 최철중 김대경 한경수 최병철 이인재 박희갑 노희석 이용인 소동섭
 심혜련 정 원 김중일 정광수 김근배 이문규 이종덕 이정후 조봉곤 정재일
 오창환 이영엽 김현수 김중진 마인숙 서경식 김양곤 김인수 이대웅 박화신
 조용도 이종표 소재업 이용훈 이상종 김무영 정경희 김재철 한동욱 전재규
 장기완 고광준 김경아 한성규 박수정 지은정 이호근 조남표 조성대 유미경
 이광원 김정기 전영미 이정채 서봉직 송광엽 박주미 임대호 고승오 신효근
 이준례 조의식 박병건 배태성 이민호 김형섭 장문택 장영남 오일수 김창환
 박율진 명 현 김신기 송춘호 조가옥 신영철 이귀재 오병택 박승문 윤봉식
 채종찬 이용훈 이상명 송근섭 유문희 조좌형 이문준 김범태 심동복 한원열
 한상언 이중열 정봉수 권인탁 이종민 유제호 김영정 김혜경 최우영 송정기
 남춘호 최동근 광성희 송상섭 정향근 백흥기 함운철 조성익 임재중 김정무
 박재병 박동선 카말라칸(Kamala Kannan) 슈타틀러 (674)

전주교육대학교

이용주 김용재 유광찬 최순만 이종영 신기철 유현주 서관석 황순자 이경한
 박승배 이 인 강민수 이창근 고한중 강석진 권순희 이종화 정윤경 임미경
 부재울 서유미 장동호 박진희 이상규 한혜명 이용배 최병연 박종필 천호성
 김성식 박상선 박상준 홍기천 최홍규 홍광식 최경희 이용숙 은혁기 김우영
 강민석 박병춘 김영태 유정수 김태규 김주성 최경은 오마리아 (48)

제주대학교

이용완 문원석 황정봉 고경표 김영춘 김두경 김근형 이동철 조치노 홍주희
 이주섭 윤치부 전제응 양성기 김상진 김남형 이동욱 오재환 임춘배 김범희
 최태희 한남익 이창익 진은숙 김성태 김난희 김승한 권인혁 박찬문 진영일
 김동전 문혜경 정창원 송성희 박여성 김종태 김맹하 김희열 은수용 유은숙
 강희경 홍성철 현진원 이근화 고영상 김정숙 김봉애 김혜연 김혜숙 김인중

김재훈	강동일	현공남	고성보	안기중	김도현	김장형	이상준	송왕철	변영철
강봉수	양방주	허정훈	고성준	양길현	이용학	문건	임재윤	김홍수	양두영
강진식	좌정우	좌종근	이개명	김호찬	김일환	류연철	양영훈	정동기	강민수
고성택	도양회	고석준	김경연	김경식	강민제	문영만	손영수	전성수	김기필
안재철	이영호	조성식	조홍선	임동춘	김병택	강영봉	허춘	허남춘	김동윤
한석지	염미경	정진현	지영훈	임윤규	손원근	신태균	박현정	이경갑	강대영
정종태	이주명	신동범	채인숙	고양숙	양양한	오재환	임춘배	김희필	김영용
김범희	최태희	한남익	홍경선	김익상	최현	이상철	조성윤	정대연	김진영
김석준	김방희	박성진	강민석	곽정명	손일삼	최원철	고필수	송창길	김동순
강영길	전용철	박은옥	이은주	송효정	현미열	최근배	김해규	현종익	박진원
양성호	고봉두	김도현	정덕상	김덕수	변종철	황규계	송관정	소인성	한상현
강훈	조영열	조일형	배진호	팽동국	정순여	김길훈	이상봉	고성효	김봉현
고동우	장명훈	서일교	양경주	고경환	변명석	이기석	권영근	김옥수	김선희
정승달	송석준	윤용식	유상욱	진형성	양영오	방은숙	현남규	김주철	고정대
김용주	우종관	최치규	한삼인	김여선	김창균	김상찬	고봉진	표명환	강주영
박규용	김성욱	김현수	윤동호	오창수	김부찬	권영호	박철민	박정근	이용규
김태일	박경란	김재원	이예안	김중섭	송현선	김원보	변종민	허윤덕	송일상
오덕철	김문홍	이화자	고석찬	김세재	이선령	김명숙	양영웅	김현돈	윤용택
류현중	정광중	고대만	변종현	장승희	조문수	서용건	홍성화	장성수	송재호
정동원	권기린	박윤철	김귀식	현명택	허종철	황용철	강동식	강영봉	김영표
오만원	김성찬	류재청	이세형	남사용	양명환	임상용	이창준	(258)	

진주교육대학교

이영만	김인용	김도현	정용석	유길한	박경목	김종미	홍영기	홍상환	조태호
박강은	공영태	백남권	김경수	박종호	김성규	박기용	박정수	류성기	이지호
정용주	임상봉	황규완	김정숙	박희현	강후동	원명옥	정은실	장혜원	박중서
강홍재	김선유	노은환	이경원	조기제	최문성	박홍규	김명표	구영수	권태욱
이쌍재	김정선	박천호	강종표	조운주	김현주	정연옥	이재현	정호범	박용조
이호도	정도상	김영범	정우식	송미숙	정상원	임종은	한병래	문외식	설문규
이재인	(61)								

진주산업대학교

안미정	신용욱	전현식	조영손	김진우	이철호	이신우	안현철	조현서	추갑철
김춘식	박재현	이총규	강호종	안상열	채윤석	윤재길	이상우	최경옥	홍점규
김유미	주옥수	서원택	최진상	최상도	강성수	김완규	김창근	송진국	김봉기
김홍준	김현주	김근성	양금석	안은희	이선영	임서형	유석형	김창학	오홍섭
이원홍	김기홍	이형래	신영철	문홍득	김태규	허남수	김명규	김인환	정대상
김유영	곽태수	탁한호	추연규	김현덕	이광석	이병로	전중창	김형갑	이춘식
서현효	전기일	박현건	정재우	박정호	김사익	조종수	윤승락	노정관	나종범
김동귀	최길동	이태환	박진현	오석규	배강열	배준경	최태완	조용운	김홍출
갈상완	이상원	김철호	민계식	조수정	안국찬	김남경	이치우	심한섭	김봉환
양영준	김해지	김현옥	고경필	이용호	조덕래	박동철	김규	박종현	허익구
홍효석	김동훈	이원기	하환호	손성문	권진택	윤창술	김철호	이운복	문범두
나희라	심갑식	박익렬	정장용	손시환	문여황	박희성	장인석	김중희	오석두
이춘석	류남형	강호철	임의제	윤한욱	이석영	이봉환	안병길	배대권	(129)

창원대학교

서정운	김태형	장덕준	신재경	박희창	신양우	허순영	김정기	이태근	송광태
김동완	김진규	김영재	배영민	이경	이수오	서홍원	윤익영	강숙자	김해동
백순공	김영섭	강인숙	박혜원	배현숙	류은정	김여숙	박진아	한창준	이덕상

김경수	한세준	김홍규	서정근	홍성근	정승화	윤수현	안호균	김규탁	박영근
추교완	심정택	조효래	김지화	이성철	김원정	한창희	장기완	이호섭	유동선
김봉수	김일곤	이수정	이범홍	이수원	박성호	하상식	이호영	문경희	김명호
구본흔	신평우	이찬규	허성강	이재현	신기삼	여준청	정유영	김향금	배귀영
김한기	이광민	유영성	김도기	김창순	이경혜	노상규	문혜경	차용준	허진
김인숙	이건혁	박현구	강기정	김명용	박남규	오창석	최용기	김현태	장민
김신미	백도현	조용권	강대옥	하권철	조치룡	신중호	유근중	최훈기	이천우
권선주	박일근	정종수	구광수	이강현	김정태	임인수	김병로	김기민	정대영
한경임	신진숙	권요한	구산우	남재우	도진순	전형권	이윤상	이영석	공덕암
백자옥	김홍기	정정현	정귀화	이치한	이주형	김윤정	정차근	엄정석	김안현
권태인	김석찬	손무영	이수철	김영호	우경수	원태진	이민주	신동수	안철진
김수태	신병로	정윤교	김재실	김인택	조운행	신병식	정선우	최해범	하문식
전외술	조종주	김선옥	강용수	송신근	권광현	김형국	정영애	김병채	박종흡
양병한	전지형	최중경	최평석	김영희	박무훈	박승엽	고봉진	하관봉	진교홍
은재정	정영철	노명현	서영환	최해영	김수정	이지훈	이성용	문덕희	이춘식
정종윤	김진욱	김상부	김지관	조중선	권성하	김재형	송의호	정은태	조철우
민궁기	장성진	장정덕	허철구	윤애경	황화상	남경완	민병기	이현우	장홍규
김선희	최태규	동성식	윤세홍	김철영	박용일	이수현	우용태	박동규	석종원
강창순	어윤	이훈	김은경	류경희	김현주	최혜영	이강주	정성문	조형규
유진상	류한국	최정민	임형철	성활경	윤건식	(226)			

청주교육대학교

심영택	양갑렬	권영필	조용훈	이영석	한경철	류미해	신현우	선우현	김재식
허영식	권혁순	오세규	정정인	심승희	이선경	김현진	김미혜	정규영	이강섭
염은열	서예원	나귀수	김동호	엄훈	박영희	권혁일	황연주	민덕기	이용택
박평식	임진영	강성우	김태복	한정혜	이종범	박상우	이혁규	양창모	김용
이승민	임병욱	정병훈	한대회	박윤경	엄태동	임용우	조미현	남현욱	이연경
이은주	박성희	김남균	김배철	(54)					

춘천교육대학교

이재봉	차미란	이영문	조민환	조은숙	김상욱	이상신	이성영	리의도	이도영
송양섭	심우엽	신내옥	이환기	이한중	이주한	김은주	추연구	고정화	서동엽
신준식	박문환	이대형	윤혜경	강훈식	이면우	박현우	김남일	정경아	이기철
양정혜	윤지현	신혜영	조순이	임효선	곽현규	정진원	박기범	최순규	박동진
김혜숙	구봉진	서재복	황명자	이기청	김기봉	이형준	배성제	박미애	김광수
김인옥	이승복	김홍래	정인기	최형신	임병춘	김왕근	(57)		

충남대학교

황인덕	김정태	이형권	송기섭	홍혜원	홍성심	김명주	백미현	박영원	박종성
최동오	조현관	민경택	정양수	오길영	박은경	박광자	안문영	강창구	오예욱
유시택	이화영	김미연	이건수	우준호	엄귀덕	김명학	강혜근	박영종	이묘희
금종애	차상철	김응중	장인성	차전환	정순모	박윤덕	송양섭	허종	송영진
정연홍	황의동	이종성	양해림	김방룡	최정목	이향천	이상직	김선진	박재묵
박노영	김필동	전광희	이용봉	곽승진	김성원	서창원	차재영	손병우	양은경
김재영	강근복	윤영채	박수경	이계희	신진	박재정	강병수	오정수	최해경
정연택	류진석	박재명	최성규	정세영	부덕훈	오세권	박종서	오세영	강병련
구남집	안재현	김학만	이상훈	박석윤	이낙영	박래현	이석훈	김주한	김홍기
배종호	이민구	이호연	이해심	구현모	오병성	임국형	심경무	정양수	오은순
전민용	송종현	김용하	조정연	한병희	박균하	부봉현	박윤봉	박창문	김건철
염을균	허정석	김정권	박일현	권태익	김균언	허성호	이찬용	최준식	이태원

박수철	김기현	노영재	박철	박문진	최만식	권영옥	전종귀	김동건	이종길
이왕록	이상기	조윤라	허수열	박진도	권택성	양영식	홍성표	이기훈	이병채
송계충	김능진	한인수	정상철	정용길	윤평식	정범구	권택호	김형준	최병천
김홍식	이동규	염성수	노준화	최수미	구종순	오근엽	이영덕	박재기	오덕성
박찬규	이정수	김영석	류주희	최준성	이진숙	윤현도	김규용	장준목	임희대
이진옥	정관수	윤희천	임남형	박형춘	김윤용	이민재	류정인	박종호	이영호
이동주	원중호	민택기	우호길	송오섭	홍준희	오동호	유상석	이영신	유성연
장이석	조택동	김재훈	고성호	박상호	박영우	원문철	고윤호	이창섭	이승준
류재문	이재환	김형태	이현엽	노인식	안병권	이승원	이홍로	이갑호	홍순익
이종현	김길무	서동수	임영언	김도진	김효진	김철기	홍순구	김의태	정종율
류주환	김영진	배기서	주창환	백두현	박원호	이승구	손영아	김형일	김동표
이범재	한규승	김영호	이영석	송승완	박소진	김인호	이영우	박동철	백정기
염경환	우중명	홍성용	이재현	성세진	이재용	은창수	성태경	안재민	김병철
권영미	이공주	오왕록	유관중	강지훈	류재철	최훈	김영국	김형식	장경선
이영석	김형신	김경섭	박정희	장상식	서영범	이종신	성용주	유승현	최광열
김홍기	윤영남	유용만	이인덕	상병찬	박종수	남명수	도창희	김태철	성찬용
이달원	노재경	김대식	김만수	허윤근	장동일	조병관	정선옥	정덕영	임치환
윤민호	김선주	김재홍	권용대	김은순	홍승지	김성훈	김봉희	명평근	정상현
박경래	김영호	황성주	정혜광	김상겸	조정원	박정숙	이정원	이준호	김순미
박길순	이영선	홍경희	최윤미	김한나	김영대	김석우	김상근	조성환	김덕환
김명철	류시윤	신상태	김철중	김현수	박배근	이영원	손화영	서상희	신현진
박성준	송근호	정성목	최호정	이종수	정원수	김두정	임선희	한상훈	이창섭
이정훈	오정환	현광석	이주옥	이승민	신준국	김소연	소희영	김달숙	김태숙
송라운	안숙희	방재옥	이명철	안광국	김승범	임상순	육소영	박홍식	최인호
정웅기	이영호	김수일	전병화	박진봉	이상도	김현우	황병두	임규	박승길
권기량	박종일	강대영	서광선	송규상	김진만	석정호	허강민	이충재	홍장희
이동배	조영채	남해성	이현영	김주옥	조덕연	강성욱	윤환중	박희선	장일성
노승무	설지영	송인상	김지연	안문상	김제룡	이재호	이건수	길홍량	장미영
김재영	이준규	황득수	신현대	안재성	양준영	김영모	김경천	남상윤	이윤이
이기환	이민아	왕성근	지익성	김정란	김창식	조영준	김정열	이정은	신용섭
윤석화	김윤희	조준식	김종철	송창준	김진환	신경숙	신병석	염진영	고현송
김선환	최승원	임승평	유재현	서영준	이영	설종구	나용길	송기학	임재성
이애영	강낙현	오상하	나기상	구분석	박용호	김봉욱	손민균	조강희	박종우
구선희	권계철	김은석	김재진	임현수	유인술	유승	김성민	김종성	김철희 (460명)

충북대학교

이익성	김성기	한석수	박연호	정효구	이호승	권정우	강창석	노경희	최병덕
김인경	배병균	배득렬	이선옥	김영남	김성욱	구연철	한기선	임용목	제금희
박인규	황효식	정재현	이정희	최도규	류종경	김경석	고봉만	안영현	이은미
조만수	윤광흠	김용화	백용식	김원한	김문황	안상현	최세만	정호영	유초하
박기순	오광호	박결순	이석린	김춘실	윤우학	김준근	진익송	류경원	김재홍
이기수	심복섭	오송규	김정희	강희경	서관모	남재봉	민경희	허석열	임성문
박광배	이봉건	이순철	황순택	이승복	유성은	정우현	김혜리	김수현	강형기
권일찬	이기주	최영출	이재은	한승연	이민규	김도태	홍성후	안성호	장공자
정태일	김일수	박홍영	김성기	이연호	배영목	김상환	이동수	임병인	이훈희
지운식	오원태	이석종	최대호	김영희	이승운	윤재현	정대현	김태호	이성덕
나종화	조중재	김주성	김명원	이해원	강병원	김동현	연규황	이원식	김용은
오석근	한승기	유성초	강희재	최중범	임기수	정진수	김천희	이용삼	정장해
서경원	이대영	안중호	김지수	최상훈	서용석	이철우	강한영	이효원	김남준
권수한	강영기	김영조	김종원	이남수	유희수	박외숙	정용석	신재섭	이준영

김영환	최수영	이영남	김영창	이성근	노동현	임재윤	이동훈	이찬희	조대주
정용제	이영희	하현정	정학용	조남정	장수익	박종진	옥 광	김창범	김현준
변재경	장봉우	최종환	주영진	김지대	이태민	정재권	이장희	김주엽	강성룡
박유식	김병기	곽병관	박한순	김찬중	백대기	김성홍	배기수	박상언	전달영
서옥석	송영옥	조강필	이형택	이사영	정진섭	이현종	김영기	권순동	김상옥
고석하	조완섭	이봉희	이종대	김대수	나병기	이기라	이동규	정노희	류상옥
박수길	신응수	김용연	정규원	조혜용	이계복	이세균	이응석	이석호	김옥현
이충구	한규영	최유종	이강훈	심규영	이상훈	이준표	김경표	신창섭	박재학
이병곤	임현교	정국삼	김두현	김광렬	이상일	전항배	김재용	정세웅	조영철
김학성	김경호	한상훈	전민우	김성보	홍기남	최석근	이효상	안광국	황진하
정경섭	이재석	정근채	홍주화	김기호	김성수	최재하	이광호	이만형	황재훈
박찬수	곽순섭	조재훈	서상교	김옥규	김관석	김내수	조성구	정정수	최양일
홍순달	김영기	사동민	경기성	정근욱	한광현	오명민	박봉주	김대일	이철희
차재순	차병진	김광엽	한남수	이준수	김태집	정현상	장금일	이철원	김홍식
조용구	우선희	신원섭	박재인	김재수	신창섭	김동준	구창덕	윤성수	박종화
리신호	맹승진	송창섭	김진수	이문순	임홍빈	이 이	이학수	석영선	정찬문
노수영	노현권	조한근	한충수	한규성	김병로	박원규	최태호	박종문	박종섭
윤병삼	이준배	유진채	송양훈	서상택	이은희	이비안	김광록	류화신	최선웅
장석천	김수갑	김재중	김건호	이영진	윤남순	신병동	김원태	오지용	정현수
윤종민	에드워드	장 이 재	태룡 박	강우 허	전 신	혜은 문	일호 이	재목 이	경재 노
허경조	이종연	서영현	서범종	김영철	김광민	정영수	변호승	박재승	김혜숙
박노균	김승환	김진식	이미순	정충권	유인호	황철암	윤기호	유 범	강승만
나경희	윤홍섭	전순동	양기석	이성재	최병수	차용걸	신호철	한주성	강창숙
강철성	류연택	주자문	이춘수	이재권	오연주	김대용	조태훈	권혁길	조일수
김연숙	조완영	김정심	금상호	정환엽	김원규	윤주한	김창석	권효식	성은모
김대재	이재권	이준상	양동석	이희정	김익균	오원근	형 식	이창진	국동식
이종연	류관희	황인재	이재성	이옥화	김운주	김기남	김향숙	현대선	이영은
주지형	김영희	윤혜미	한세영	최은영	신나리	김지영	김은영	권수애	박경옥
최윤정	김미경	이희숙	유현정	모인필	강신영	김일화	나기정	허강준	안병우
성연희	강종구	현상환	김근형	최경철	장동우	이완규	이범준	남상윤	김윤배
김대중	최석화	강현구	유환수	홍진태	문동철	오기완	정재경	황방연	이용문
이희순	박일영	한상배	이미경	이명구	이수재	김영수	임성실	윤여표	이은영
김승렬	김형규	윤석중	김원태	윤세진	채회복	배장환	박연진	정혜원	김원동
류동희	손현준	이동근	김경원	이의태	윤효영	김동호	이상익	신철진	차은종
김경아	홍종면	민경수	박우윤	손정우	임병철	이성현	최미영	김동운	신경섭
심우섭	강 훈	이동욱	조명찬	이기형	이경무	신시욱	김웅국	김동수	김상태
최의성	김영규	김원재	한윤수	손보라	박선미	이지연	정은환	신동익	김학순
방희제	이상수	홍승화	김원섭	서제훈	손현철	하태선	김양미	김지윤	이상진
김시욱	이은영	이기만	김석용	최강현	이상철	김용준	신은영	이무섭	지일운
최영석	형성민	김찬형	이상전	구용숙	배일현	한현석	궁성수	송영진	안희열
박중기	김현식	이용희	최중국	최 용	박경진	차상훈	김시호	권오민	배현덕
윤남식	김재언	김성수	이기영	유홍균	박병우	조태원	서재원	권오욱	김진훈
이재봉	김남수	박근형	송기용	최호용	김영석	양병도	박찬식	김영철	박태형
이형규	서보석	전명근	황인관	김경석	이인성	최성곤	유재수	김영주	박재형
안재형	신병철	안병철	조경록	김 남	정두영	전중남	이건명	홍장의	이상호
윤은일	최경주	이충세	김명준	김석일	류근호	조용환	전병민	오창석	김성진
박성훈	김미혜	서영훈	Phan the Long	(604)					

충주대학교

전창덕 정광석 장성운 박성준 박상근 안태환 조희찬 안대식 오형우 정성엽

송동업	박진영	홍기배	장광진	최원호	황규동	김정배	황용하	전문수	이용화
유지철	김광수	배영주	정순석	홍정의	최덕현	안형환	이성일	배덕권	임종국
박정철	허문희	김병석	백종배	방명석	김일호	류성립	이영근	이정일	박상찬
전태성	장인수	이호식	이병찬	연익준	이성희	이준호	강병옥	이경원	김인식
이영우	곽광수	이기백	이용규	박성영	인인식	이지훈	김성룡	임정혁	김홍경
민병각	황준	신철수	이홍서	김지학	이홍길	성기대	신계종	신진환	김경진
이봉직	이원호	이승용	홍창우	엄대용	장창래	진장원	류상규	권일	이상규
신동인	류현기	윤승조	서수연	김재엽	정유근	노상태	박석현	손태진	성기문
오준걸	이명재	김홍규	이진국	김일송	지평식	한운동	강형구	정영호	문종필
양계준	오남진	김홍오	김명중	임승우	임병국	황유섭	박준훈	서정태	이재경
박영환	고균병	김학원	문철	정창규	박동희	권희훈	유강희	연규호	박광현
김영길	조병규	이성옥	윤현식	김진한	이대훈	이상문	오염덕	류기한	원충상
최영규	곽윤식	성백균	구본근	송석일	강정원	조남호	진명희	박병주	조형목
조홍섭	오상룡	이철호	송정미	양희익	권혁석	이철원	김진호	윤현숙	박영록
한원균	한종구	노창선	김미숙	이강희	서윤진	전인근	고성식	유건성	정세순
남중웅	변종화	이도형	박홍윤	임동욱	김태진	김태은	홍민기	전재호	최남희
김용범	김재봉	이윤구	나준희	이주성	전순영	김승용	정기만	김경일	김광현
문미숙	정동신	한혜숙	박종숙	김희자	이미현	이효정	박영한	김현주	강순희
김영민	신동민	이인수	탁양주	류인덕	이용수	조재민	민윤식	황중현	유광원
이경행	최원석	정경환	문기성	박정석	연윤모	안윤애	우성희	김봉근	김용승
이광	지옥정	이정희	조운주	허정무	한규량	김현숙	김선숙	홍성규	김경호
백종오	박병준	김승연	김병무	송호신	김현주	김형찬	이주운	김소희	(229)

한경대학교

박재희	이강우	백신원	류희정	안태진	박병욱	김영희	이혜자	김창현	김완섭
김한중	최용수	김기호	천만영	윤종택	이명숙	김대익	민관식	유윤섭	전병태
이득환	이창희	황수연	홍성구	강권규	김영호	태범석	유재하	김경섭	김수찬
김혜정	이경석	남세용	박연미	강희완	이규진	이인석	오호택	이창호	김종현
이현자	이현주	정윤경	최덕경	황한철	정하열	박장우	김현정	김동연	홍종호
유지현	김한웅	정명숙	황성연	유현재	김경애	이을규	안재근	구자갑	강창동
조규성	김영기	강기용	남기용	공홍식	김운학	최정호	유혁상	황인화	이상선
안승홍	김학범	박상돈	강철	김삼근	이창훈	손종연	안재호	류호열	최정선
현혜경	조홍수	(82)							

한국교원대학교

이병희	강성수	송호정	강태호	김진근	남운	김은숙	송기상	한상우	김경철
김정률	김영훈	송기형	손준동	김태현	김왕규	전경준	이두곤	김한중	조일영
김미숙	임영무	김영식	주명덕	이철화	조순목	박종률	정구인	전미영	성기련
민경훈	장수명	박주영	손병노	김범주	김지경	박선용	신헌래	김희숙	한정길
박두현	임수만	권순희	이상기	박정원	김주휘	박성수	김지경	김종우	정진우
이길재	박용남	김성식	김진수	신인선	이재학	장세중	경제복	김범기	윤종국
이광호	김현주	김원경	천재순	위수민	김학성	양도원	박현선	(6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종성	이용철	이호권	안승신	고성환	이애숙	이경수	강상규	문상원	한상준
류수노	서정기	이기재	박지호	이은택	김희태	신종렬	이상진	장종수	김종오
이석호	박승률	홍순정	이동국	김성영	이동주	김진호	(27)		

한국해양대학교

이상태	윤종휘	이은방	이재현	김종호	길병래	국승기	김정렬	박상갑	김시화
-----	-----	-----	-----	-----	-----	-----	-----	-----	-----

남청도	정기룡	예병덕	정병건	오인호	지상원	조권희	박진수	오철	설동일
최재성	최재혁	윤석훈	김유택	장지연	임태우	김명환	공길영	소명옥	유희한
김종수	윤용섭	최정호	최석윤	배병덕	오세진	이상득	이진욱	이형기	정은석
이윤석	정진아	윤귀호	김종성	조효제	손경호	박주용	박석주	남종호	이상갑
박명규	임선영	서영완	안종용	이경은	강효진	노일	최철영	도근영	이한석
박수용	신성렬	임종세	유경근	장원일	해해동	장신범	이재형	조우정	김종화
정형호	김재훈	박찬근	양규식	박휴찬	김동혁	박권하	최형식	왕지석	정재현
김의간	윤상국	김도삼	경갑수	이중우	김태형	김명진	고성철	김인수	이성근
장낙원	전태인	길경석	최일동	이병우	안형수	이삼녕	양민	장길웅	홍정희
허태영	김재환	배재국	이서정	손주영	유영호	류길수	조석제	하윤수	신옥근
황승욱	이장세	신창훈	김환성	곽규석	남기찬	신재영	박진희	민경식	윤영
강인호	김기만	조형래	심준환	손경락	박동국	김기문	이상배	유일선	하세봉
강은숙	강운호	조성철	노종진	정대	오용식	장명희	유성진	김철수	정영석
김인유	김재봉	김종석	나호수	최중수	최홍배	최성일	차경자	김상구	박상희
최성두	장세은	류미림	이건수	홍옥숙	케빈페어	어런트	김정하	구모룡	정진성
정문수	최은순	김용일	김경화	(163)					

한밭대학교

명태식	윤린	안병옥	이소영	류봉조	남윤의	박성환	강형모	권병철	정의식
신광복	임경민	임채옥	이춘재	이충곤	우승한	홍성욱	노용영	박성하	최근호
여상엽	김용주	이용민	이봉호	김상헌	박장우	전종한	김창섭	최병욱	고장면
김하영	신봉문	이의길	조덕호	박경태	오용준	이승윤	박덕용	김정민	안현만
홍원표	이효진	조병선	김선정	차동진	류덕위	조복현	조영탁	민경세	남기곤
이창석	박현주	박종권	정혁구	정의림	권영도	이연승	류광기	이충호	김은기
김언곤	염기수	길성호	송복섭	김덕수	박상현	최병길	김웅준	윤충섭	김윤기
박준식	임재학	정화영	이호갑	권기정	박성환	송우용	허황희	윤행순	송만익
조남성	윤재석	박혜성	송하영	김태수	김승훈	진경일	이용택	이상수	윤종호
김진용	신용순	홍미희	노황우	김용철	김성덕	류근관	이상래	김성찬	최윤석
김찬규	김명녕	남기완	김혜경	오영식	김진곤	이종민	김난미	진영택	김차중
김영찬	안기홍	이은주	김종찬	황경호	김정호	이재홍	김승연	고복수	김진수
강진규	이동형	임준목	서재준	민병찬	배성민	류태범	장철현	오세은	방기웅
김철규	엄태인	윤오섭	류병로	전두선	한은수	정하성	이한성	구상	김장석
홍성호	심정보	공석구	김선호	김상길	김남균	김성호	배수현	최원오	성희제
정해두	이순주	김성환	김덕현	김호경	이혁	김종섭	연기석	박천보	임윤택
도명식	김명수	이상호	이규영	소상균	강필순	김광수	정연호	김동화	도태용
임무길	장석구	이원규	심재명	이중호	김윤현	김영달	최원석	김기찬	김도완
김유식	김영목	이형준	박희성	정태화	최병호	이정호	이종석	이상호	김선태
구본급	이병영	박인용	이종원	나사균	이택영	이시웅	이우섭	김진수	최해철
최상규	안은영	권희상	오호진	이학문	김연만	김양순	김진욱	박준병	김응규
심상오	전철호	(212)							

【별첨자료 2】 국교련 회원교 총장선거 (교원 외 지분) 자료

국교련 회원교 교원 외 구성원 선거지분

대학	선거일	교수	직원	1차			2차			3차		
				교수 대비	환산	직원 대비	교수 대비	환산	직원 대비	교수 대비	환산	직원 대비
강릉원주	07.05	353	200	11%	38.83	19.42	11%	38.83	19.42	11%	38.83	19.42
강원	08.05	940	438	12%	112.8	25.75	11%	103.4	23.61	11%	103.4	23.61
경북	06.06			12%			10%	8.3+1.7		직원: (조교 포함)		
	10.06	1100	713	12%	10+2		12%			학생 1.7%		
경상	07.05	944	577	13%	122.72	21.27	12%	113.28	19.63	10%	94.4	16.36
공주	06.02	491	260	12%	58.92	22.66	11%	54.01	20.77	10%	49.1	18.88
	10.02	534	261	13.13%	70.1142	26.86	13.13%	70.1142	26.86	13.13%	70.1142	26.86
군산	09.12	320	231	16%	51.2	22.16	13%	41.6	18.01	10%	32	13.85
목포	10.01	304	160	11.5%	35.01	21.88	11.5%	35.01	21.88	11.5%	35.01	21.88
부경	08.05	567	389	12%	68.04 학생17	17.49	11%	62.37	16.03	10%	56.7	14.58
		536	369									
부산	07.06			10%			10%			9%		
서울	10.05					10			10			10
서울산업	X			%			%			%		
순천	06.06	293	177	14%			11%	32.23	18.21			
	10.06	291	177	14%	40.74	23.02	11%	32.01	18.09	X	X	X
안동	07.03			11%			11%			10%		
전남	08.05	1147	593	10%	114.7	19.34	10%	114.7	19.34	10%	114.7	19.34
전북	06.06	854	389	11%	93.94	24.15	9%	76.86	19.76	X	X	X
	10.09	984	404	12%	118.08	29.23	10%	98.4	24.36	X	X	X
제주	09.09			11%			11%			10%		
제주산업	X			%			%			%		
창원	07.02			12+2			13+1			13+0		
춘천교대		68	53	12.8%	8.704	16.42						
충남	07.11	864	363	12%	103.68	28.56	10%	86.4	23.8	10%	86.4	23.8
충북	10.02	675	321	13.5%	91.125	28.39	13%	87.75	27.34	13%	87.75	27.34
충주	08.12			16.81			17.61			18.31		
한국방통	10.07	136	481		직원20			직원14			직원14	
한국해양	08			12			13%			13%	직원조 교학생	
한밭	06.05	237	138	13.5%	31.995	23.18	13%	30.81	22.33	11%	26.07	18.89
	10.05	223	135	16%	35.68	26.43	16%	35.68	26.43	15.4%	34.34	25.44

【별첨자료 3】 국회 교과위 소속 의원 및 보좌관/비서 명단 및 이메일 주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위원회 의원 및 보좌관 명단/ 이메일 주소

법안심사소위원회(9인)

의원	이메일	보좌관	비서관
서상기(徐相箕)	sks@assembly.go.kr	류길호, 장오성	강태용, 박종욱
권영진(權泳臻)	kyj@assembly.go.kr	김춘식, 황신용	권영달, 노재국
임해규(林亥圭)	limhk@na.go.kr	곽내경	천현숙, 최유강
조전혁(趙全赫)	jhcho100@hanmail.net	박종우, 이평기	이성세, 최상경
황우여(黃祐呂)	hwangwygrace@hotmail.com	박광익, 박성호	한상섭
김춘진(金椿鎭)	kimcj@assembly.go.kr	김성렬, 유경선	신연석, 안종선
안민석(安敏錫)	ams@osan21.or.kr	문영근, 양승신	곽민욱, 김준수
권영길(權永吉)	kwondlp@hanmail.net	문명학, 이성립	박해선, 정용상
이상민(李相珉)	smlee@assembly.go.kr	김동섭, 박창수	이승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9인)

김선동(金善東)	likecorea@naver.com	이길호, 이춘호	고경래, 서정섭
김세연(金世淵)	kim.se.yeon@na.go.kr	백한웅, 심중선	박성분, 손현우
박보환(朴普煥)	gorpak@hanmail.net	이창성, 장영철	박성주, 신성용
정두언(鄭斗彦)	dooun4u@assembly.go.kr	이승기, 정양근	위경수, 주관성
주광덕(朱光德)	duk3377@assembly.go.kr	김기천, 김영식	김완, 차승훈
안민석(安敏錫)			
김상희(金相姬)	shk@assembly.go.kr	김종석, 김태수	박갑식, 유희종
김유정(金裕貞)	kyj207@assembly.go.kr	김종무, 최용길	김완원, 박형민
유성엽(柳成葉)	yousuoy@hanmail.net	김창환, 이승엽	고상진, 장훈민

청원심사소위원회(7인)

권영진(權泳臻)			
김선동(金善東)			
임해규(林亥圭)			
주광덕(朱光德)			
김춘진(金椿鎭)			
김영진(金泳鎭)	yjkim1117@naver.com	김행석, 정원철	권오재, 정문성
권영길(權永吉)			

과학기술소위원회(7인)

박영아(朴英娥)	ypark@na.go.kr	김영구, 박정호	권은실, 허동혁
김세연(金世淵)			
배은희(裴恩姬)	behappy@behappy.or.kr	김재형, 임진규	김혜진, 신미정
서상기(徐相箕)			
김상희(金相姬)			
유성엽(柳成葉)			
이상민(李相珉)			

교과위 소속 보좌관(또는 비서) 이메일 주소

의원	보좌관(비서)	이메일 주소
변재일	신동주보좌관	djs1017@assembly.go.kr
권영진	황신용 보좌관	goldcredit@hanmail.net
김선동	이춘호 보좌관	juno1307@hanmail.net
김세연	백한웅 보좌관	berby@na.go.kr
박보환	홍영은 정책비서	hong0461@naver.com
박영아	권은실 비서관	kes96@na.go.kr
배은희	김재형 보좌관	together123@na.go.kr
서상기	장오성 보좌관	osjang@assembly.go.kr
임해규	곽내경 보좌관	9745001@hanamail.net
정두언	주관성 비서관	joojoo75@hanmail.net
주광덕	김정수 보좌관	kimjungsoo@assembly.go.kr
황우여	양은주 정책비서	yang@na.go.kr
김상희	배은혜 정책비서	grace_bae@naver.com
김영진	보좌관 조민환	ratcho@naver.com
김유정	김종무 보좌관	kjm69@assembly.go.kr
김춘진	유경선 보좌관	yooks50418@naver.com
안민석	양승신 보좌관	108flower@gmail.com
권영길	정용상 비서관	divideme@naver.com
유성엽	이성엽 보좌관	leesy888@assembly.go.kr

【별첨자료 4】 국교련 회칙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약칭 '국교련')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립·공립대학교수(협의)회가 연대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대학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연구·교육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립·공립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는 전국의 국립·공립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상임회장교에 둔다.

제5조(상임회장과 공동회장)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을 둔다.

1. 상임회장 1인.
2. 공동회장 7~10인. 다만 권역별 대학에 5~8인, 산업대학에 1인, 교육대학에 1인을 안분한다.

제6조(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선출)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제1호의 표결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표결을 통해 제5조 각호의 정수 내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한다.
3. 회원교의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1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회장(의장)의 대리권자는 선거권만을 가진다.**

제7조(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회장이 사퇴 또는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이 아니게 된 사유 등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임기가 3월 이상이면 총회에서 재선출하고 3월 미만이면 공동 회장이 직무대리를 호선한다.
3. 공동회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회원교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4. 제2호의 재선출 등에 의한 상임회장 또는 그 직무대리와 제3호의 승계에 의한 공동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8조(상임회장과 공동회장의 직무)

1. 상임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장단이 처리한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2. 공동회장은 상임회장의 직무를 권역별 또는 직능별로 분장한다.

제9조(회장단)

1. 상임회장과 공동회장으로 회장단을 구성한다.
2. 회장단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3. 상임회장은 회장단회의의 의장을, 사무총장은 회장단회의의 서기를 각각 겸한다.
4. 감사,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1. 본회는 감사 2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퇴 등에 따라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 제2호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사무처)

1. 본회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전문위원 및 간사 약간 인을 둔다.
3. 사무총장은 상임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회장단의 직무를 보좌한다.
4. 전문위원과 간사는 상임회장이 적의 임면하며, 상임회장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12조(고문, 자문위원)

상임회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전임 상임회장을 고문으로, 회원교 전임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을 자문위원으로 각각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1. 총회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인 이상의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 상임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장(의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원교 교수(협의)회 회장(의장)은 불참시 총회의 권리를 소속대학의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정책위원회)

1. 본회의 정책활동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회장단을 보좌하는 정책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의 선임은 회장단에 일임한다.
2. 위원(장)은 총회 및 회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본 회에 회장단회의의 결정으로 회장단을 보좌하는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재정)

1. 회원교는 총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연회비와 사업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7조(개정)

이 회칙은 회원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을 1994년 4월 1일 총회에서 의결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개정된 규정은 1997년 4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본 개정된 규정은 1999년 4월 7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0년 3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2년 2월 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개정된 규정은 2004년 4월 23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8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5년 3월 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5년 4월 1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7년 4월 25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8년 3월 29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09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본 개정된 회칙은 2010년 2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도 국교련 회장단

구 분	소 속	성 명	휴 대 폰	비 고	
			이 메 일		
상임회장	전북대학교	박병덕	016-9877-2726		
			parkbd@jbnu.ac.kr		
공동회장	강원대학교	김세환	011-362-0030		
			phykim@kangwon.ac.kr		
	경북대학교	김형기	010-8566-5413		
			hkim@knu.ac.kr		
	공주대학교	(전)송재일	010-7602-7053		
		최복길	010-5456-7958		
			bgchoi@kongju.ac.kr		
	전남대학교	문 희	010-2681-1877		
			hmoon@jnu.ac.kr		
	제주대학교	(전)고경표	010-3696-2700		
			양길현		011-698-8725
					yangh@jejunu.ac.kr
	창원대학교	정차근	010-3896-8347		
			jungchgo@changwon.ac.kr		
	한국해양대학교	이상태	010-2595-4284		
			sangtae@hhu.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계명	011-831-5940	산교련 회장		
		littbird@snut.ac.kr			
목포대학교	조현상	011-9600-0132	지교련 회장		
		buscho@mokpo.ac.kr			
광주교육대학교	김용조	010-7602-7053	교협연 회장		
		yjkim@gnue.ac.kr			
감사	서울대학교	호문혁	010-6227-7583		
			hoomoon@snu.ac.kr		
감사	충남대학교	김필동	010-7477-9180		
			pdkim@cnu.ac.kr		

【별첨자료 6】 2010년도 국교련 고문·자문위원, 사무처, 정책위원회 명단

2010년 국교련 고문 · 자문위원

고문	부산대학교	정용하	010-4041-2116 chairman@pusan.ac.kr	전 국교련 상임회장
	충북대학교	김광렬	010-5462-7956 kykim@chungbuk.ac.kr	전 국교련 상임회장
자문위원	경상대학교	이시원	010-4872-5790 swlee@gnu.ac.kr	전 국교련 공동회장
	안동대학교	이준원	011-437-5225 leejw@andong.ac.kr	전 국교련 공동회장

2010년 국교련 사무처

사무총장	전북대학교	최백렬	011-579-3014	
			brchoi@jbnu.ac.kr	
전문위원	전북대학교	이은성	010-9912-0613	
			nupa@jbnu.ac.kr	
간사	전북대학교	안상옥	010-4628-9562	
			faculty@jbnu.ac.kr	

2010년 국교련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장	경북대	김형래	010-8779-3907	국립대 법인화 대안
			kimhr@knu.ac.kr	
정책위원	충남대	오길영	011-743-7961	성과연봉제 대응논리
정책위원	창원대	백자욱	011-9302-9332	교원후생복지
			jwbaek@changwon.ac.kr	

【별첨자료 7】 2010년도 국교련 회원교 회장/의장 명단

국교련 회원교 회장/의장

대학	성명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ac.kr)
강릉원주대학교	박 찬 일	033-760-8723	011-9953-2392	pci@gwnu.
강원대학교	김 세 환	033-250-6786	011-362-0030	phykim@kangwon.
경북대학교	김 형 기	053-950-5413	010-8566-5413	hkim@knu.
경상대학교	마 대 영	055-751-5343	011-9530-5341	tyma@gnu.
경인교육대학교	김 창 원	032-540-1218	010-6533-1218	cwkim@ginue.
공주교육대학교	임 문 규	041-850-1651	011-275-1651	lmk@gjue.
공주대학교	최 복 길	041-521-9152	010-5456-7958	bgchoi@kongju.
광주교육대학교	김 용 조	062-520-4136	010-7602-7053	yjkim@gnue.
군산대학교	전 형 원	063-469-4464	019-652-1143	hwjun@kunsan.
금오공과대학교	박 중 윤	054-478-7343	011-820-0863	jypark@kumoh.
대구교육대학교	양 선 규	053-620-1316	010-5109-6857	sgyang@dnue.
목포대학교	조 현 상	061-450-2618	011-9600-0132	buscho@mokpo.
목포해양대학교	최 주 열	061-240-7206	010-2247-8023	jychoi@mmu.
부경대학교	최 연 옥	051-629-6326	019-618-1633	wook@pknu.
부산교육대학교	김 판 수	051-500-7235	010-8578-7235	pskim@bnue.
부산대학교	정 용 하	051-510-2116	010-4041-2116	chairman@pusan.
서울교육대학교	변 순 용	02-3475-2414	010-5351-7258	bsyethos@snue.
서울대학교	호 문 혁	02-880-7583	010-6227-7583	hmoon@snu.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 서울산업대학)	강 계 명	02-970-6629	011-831-5940	littbird@snut.
서울시립대학교	정 병 호	02-2210-2635	010-6296-8855	servius@uos.
순천대학교	박 오 복	061-750-3325	010-5791-3325	ob@sunchon.
안동대학교	김 시 주	054-820-5543	010-3845-3869	sjkim@andong.
인천대학교	김 성 중	032-835-8295	010-5322-4451	seongkim@incheon.
전남대학교	문 희	062-530-1877	010-2681-1877	hmoon@jnu.
전북대학교	박 병 덕	063-270-2726	016-9877-2726	parkbd@jbnu.
전주교육대학교	이 용 주	063-281-7148	016-601-7148	yjlee@jnu.
제주대학교	고 경 표	064-754-3153	010-3696-2700	kpkoh716@jejunu.
진주교육대학교	황 규 완	055-740-1315	010-2549-1315	wany@cue.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구: 진주산업대학교)	권진택	055-751-3661	010-3552-3425	kwonjt@jinju.
창원대학교	정 차 근	055-213-3261	010-3896-8347	jungchgo @changwon.
청주교육대학교	심 영 택	043-299-0724	010-2213-3356	shimyt@cje.
춘천교육대학교	신 준 식	033-260-6454	011-9914-3485	joonsik@cnue.
충남대학교	김 필 동	042-821-6338	010-7477-9180	pdkim@cnu.
충북대학교	오 원 태	043-261-2245	011-492-2245	wntoh@chungbuk.
충주대학교	권 일	043-841-5413	010-8953-5413	ikwon@cju.
한경대학교	태 범 석		011-343-8901	gaia@hknu.
한국교원대학교	이 민 부	3630	010-3413-3242	minblee@knue.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류 수 노	02-3668-4631	010-4229-2161	ryusn@knu.
한국해양대학교	이 상 태	051-410-4284	010-2595-4284	sangtae@hhu.
한밭대학교	이 종 원	042-821-1252	010-9790-6859	jwlee@hanbat.

【별첨자료 8】 국교련 회원교 임원 명부 (2011. 2. 9 현재 확인)

국교련 회원교 임원 (가나다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주 소	(210-70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학로 120번지 강릉캠퍼스 (220-711)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901번지 원주캠퍼스				
전 화	033-640-2749	E-mail	knupa@gwnu.ac.kr	Fax	033-640-274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박 찬 일	033-760-8723	011-9953-2392	pci@gwnu.ac.kr	
수석부회장	구 자 혁	033-640-2118	010-9068-3417	jhkoo@gwnu.ac.kr	
부회장	김 백 기	033-760-8802	010-9424-6353	bkkim@gwnu.ac.kr	

강원대학교 교수평의원회

주 소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전 화	033-250-7000	E-mail	ocouncil@kangwon.ac.kr	Fax	033-251-954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김 세 환	033-250-6786	011-362-0030	phykim@kangwon.ac.kr	
부의장	임 학 태		010-5367-5423		
부의장	남 시 병	033-570-6353	016-9722-3214	sbnam@kangwon.ac.kr	
사무총장	박인철		010-2601-4174		
사무총장	신기동		011-813-7802		

경북대학교 교수회

주 소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				
전 화	053-950-5015 053-957-1900	E-mail	prfa@knu.ac.kr	Fax	053-959-5266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장	김형기	053-950-5413	010-8566-5413	hkim@knu.ac.kr	
부의장	김형래	053-950-5845	011-9779-3907	kimhr@knu.ac.kr	
부의장	이광호	054-530-1404	016-9543-5404	khl@knu.ac.kr	
사무처장	전현수	053-950-5137	010-3539-5137	jeonhs@knu.ac.kr	
사무부처장	조현미	053-950-5228	010-9058-5865	hmjo@knu.ac.kr	
사무부처장	이원하	053-950-5388	010-4530-7914	whl@knu.ac.kr	
사무부처장	정하명	053-950-7250	010-2785-1497	hmjeong@knu.ac.kr	

경상대학교 교수회

주 소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전 화	055-751-5196	E-mail	faculty@gnu.ac.kr	Fax	055-751-6130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마 대 영	055-751-5343	011-9530-5341	tyma@gnu.ac.kr	
부회장	차 영 길	055-751-5609	011-597-6911	istori@gnu.ac.kr	
부회장	김 연 웅	055-751-8752	016-508-7568	ywkim@gnu.ac.kr	
부회장	김 정 균	055-640-3112	011-9058-4112	kimjg@gaechuk.gnu.ac.kr	
정책국장	최 근 배	055-751-5755	010-8810-7581	kbchoi@gnu.ac.kr	
사무국장	차 춘 남	055-751-5341	010-9800-5341	cncha@gnu.ac.kr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인천 계양구 교대길45 경인교육대학교(인천캠퍼스)/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인교대길 353(경기)				
전 화	032-540-1210	E-mail	korean@gin.ac.kr	Fax	032-553-2055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김 창 원	032-540-1218	010-6533-1218	cwkim@ginue.ac.kr	
부회장	김 선 형	032-540-1277	010-9399-9371	shkim@ginue.ac.kr	
부회장	이 명 규	031-470-6261	010-3301-7197	divalee@ginue.ac.kr	
총 무	주 길 훈	031-470-6294	016-407-7194	khjoo@ginue.ac.kr	
총 무	임 희 준	032-540-1245	010-6462-3414	limhj@ginue.ac.kr	
간 사	김 미 경	032-540-1210	010-7141-6870	korean@ginue.ac.kr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314-711) 충남 공주시 봉황동 376 공주교육대학교				
전 화	041-850-1650	E-mail	lmk@gjue.ac.kr	Fax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임 문 규	041-850-1651	011-275-1651	lmk@gjue.ac.kr	
부회장	이 광 무	041-850-1677	010-3856-9602	lkm1677@gjue.ac.kr	
총 무	조 영 미	041-850-1657	010-5221-8006	ymcho@gjue.ac.kr	

공주대학교 교수회

주 소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				
전 화	041-850-8760	E-mail	prof@kongju.ac.kr	Fax	041-850-8761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최 복 길	041-521-9152	010-5456-7958	bgchoi@kongju.ac.kr	
부회장	박 호	041-521-9285	010-8610-0373	tigerpark@kongju.ac.kr	
부회장	이 주 경	041-850-8319	010-5439-8319	jklee@kongju.ac.kr	
부회장	김 병 수	041-330-1523	010-3678-9256	bskim@kongju.ac.kr	
사무국장	김 영 길	041-850-8309	010-6474-3982	ygtkim@kongju.ac.kr	
행정간사	이 재 규	041-850-8196	010-8700-8420	blackmiror@kongju.ac.kr	
재정간사	홍 성 애	041-580-0326	010-4422-0777	has@kongju.ac.kr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500-703)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1 광주교육대학교				
전 화	062-520-4136	E-mail	yjkim@gnue.ac.kr	Fax	062-520-4137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김 용 조	062-520-4136	010-7602-7053	yjkim@gnue.ac.kr	
부회장	김 인 수	062-520-4167	010-9554-4877	kis@gnue.ac.kr	
간 사	주 대 창	062-520-4172	016-356-8930	dcju@chol.com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주 소	(573-701)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68 군산대학교				
전 화	063-469-4278	E-mail	faculty@kunsan.ac.kr	Fax	063-469-427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전 형 원	063-469-4464	019-652-1143	hwjun@kunsan.ac.kr	
부회장	김 동 희	063-469-4576	011-9614-9388	dhkim@kunsan.ac.kr	
부회장	김 중 수	063-469-4376	010-5409-4376	kimjs@kunsan.ac.kr	
간 사					
총 무	오 길 용	063-469-4364	010-6679-6879	kroh@kunsan.ac.kr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730-701) 경북 구미시 양호동 1번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부				
전 화	(054) 478-7343	E-mail	jypark@kumoh.ac.kr	Fax	(054) 478-731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박 종 윤	(054)478-7343	(011)820-0863	jypark@kumoh.ac.kr	
감 사	박 원 우	(054)478-7429	(019)540-4381	wwpark@kumoh.ac.kr	
감 사	이 경 희	(054)478-7713	(010)9884-7718	k.lee@kumoh.ac.kr	
부회장	임 은 기	(054)478-7543	(010)3209-1261	eklim@kumoh.ac.kr	
부회장	조 경 식	(054)478-7737	(011)539-6178	kscho@kumoh.ac.kr	
부회장	류 성 룡	(054)478-7777	(010)2525-4308	sryu@kumoh.ac.kr	
부회장	장 성 호	(054)478-7655	(011)535-7319	changsh@kumoh.ac.kr	
재 무	김 태 오	(054)478-7634	(010)3527-7634	tokim@kumoh.ac.kr	
총 무	이 용 환	(054)478-7845	(010)4948-8788	leeyh@kumoh.ac.kr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797-6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전 화	053-620-1316	E-mail	sgyang@dnue.ac.kr	Fax	053-620-152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회장	양선규	053-620-1316	010-5109-6857	sgyang@dnue.ac.kr	
부회장	최재호	053-620-1333	016-9563-3335	choijh@dnue.ac.kr	
부회장	정미경	053-620-1391	011-9589-2897	cmk@dnue.ac.kr	
총무간사	배영권	053-620-1435	010-5054-4093	bae@dnue.ac.kr	
회계간사	진선희	053-620-1311	017-535-3021	shjin@dnue.ac.kr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주 소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번지				
전 화	061-450-2961	E-mail	pyung@mokpo.ac.kr	Fax	061-450-2974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조 현 상	061-450-2618	011-9600-0132	buscho@mokpo.ac.kr	
부의장	전 철 균	061-450-2413	010-4755-2413	ckchun@mokpo.ac.kr	
사무국장	김 병 록	061-450-2246	010-8833-6689	brkim@mokpo.ac.kr	
편집위원장	이 경 업	061-450-2107	010-9558-6559	lky3528@hanmail.net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주 소	(530-729) 전남 목포시 죽교동 571-2번지 목포해양대학교				
전 화	061-240-7114	E-mail	proforg@mmu.ac.kr	Fax	061-242-5176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최 주 열	061-240-7206	010-2247-8023	jychoi@mmu.ac.kr	
부의장	김 갑 기	061-240-7257	011-9666-8528	microkim@mmu.ac.kr	
총무간사	김 현 수	061-240-7222	011-9604-2034	blue@mmu.ac.kr	
감 사	최 익 창	061-240-7309	011-9642-1841	ichoi@mmu.ac.kr	
감 사	김 광 수	061-240-7165	011-620-8071	kgs@mmu.ac.kr	

부경대학교 교수회

주 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599-1				
전 화	051-629-7321	E-mail	faculty@pknu.ac.kr	Fax	051-629-732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최 연 옥	051-629-6326	019-618-1633	wook@pknu.ac.kr	
부 회 장	김 영 일	051-629-5588	010-2580-6376	ykim@pknu.ac.kr	
부 회 장	박 종 운	051-629-5971	010-5207-0854	pjun9017@pknu.ac.kr	
총무이사	최 순 권	051-629-5761	010-7287-5761	sgchoi@pknu.ac.kr	
기획이사	김 창 수	051-629-5457	010-2724-3659	csookim@pknu.ac.kr	
재무이사	김 주 현	051-629-6452	010-5184-4103	jkim@pknu.ac.kr	
복지이사	조 윤 경	051-629-5384	010-3214-6564	ykcho@pknu.ac.kr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263번지				
전 화	051-500-7335	E-mail	pskim@bnue.ac.kr	Fax	051-500-7301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대폰	E-mail	
회장	김 판 수	051-500-7235	010-8578-7235	pskim@bnue.ac.kr	
부회장	정 지 윤	051-500-7286	010-2817-0100	jyjung@bnue.ac.kr	
간 사	김 기 흥	051-500-7521	010-5572-6671	koelnkim@bnue.ac.kr	

부산대학교 교수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번지(609-735)			
전 화	051-510-1224~5 051-510-7449	E-mail	chairman@pusan.ac.kr	Fax 051-515-2236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정 용 하	051-510-2116	010-4041-2116	chairman@pusan.ac.kr
부회장	강 정 윤	051-510-2428	010-8329-8429	kangcy@pusan.ac.kr
부회장	김 윤 진	051-240-7832	010-7597-7832	yujkim@pusan.ac.kr
부회장	송 정 숙	051-510-2140	010-4455-2140	songjs@pusan.ac.kr
총무기획간사	문 채 규	051-510-3722	010-4520-5402	cgmoon@pusan.ac.kr
학술연구간사	김 희 재	051-510-2129	010-6657-2087	khjjh@pusan.ac.kr
국제정보간사	김 한 성	051-510-2409	019-471-2409	hanseongkim@pusan.ac.kr
문화홍보간사	이 민 한	051-510-2925	011-599-3553	paruu@hanmail.net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회

주 소	(137-7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번지			
전 화	02-3475-2484	E-mail	bsyethos@snue.ac.kr	Fax 02-581-7711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변순용	02-3475-2484	010-5351-7258	bsyethos@snue.ac.kr
부회장	류재만	02-3475-2492	018-277-6758	jm320@snue.ac.kr
부회장	장용규	02-3475-2472	011-9703-2564	ykchang@snue.ac.kr
총 무	홍영식	02-3475-2466	016-372-1951	njyshong@snue.ac.kr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본부 2층 /010-4477-2402				
전 화	02-880-5195	E-mail	faculty@snu.ac.kr	Fax	02-883-6315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회 장	호 문 혁	02-880-7583	010-6227-7583	hoomoon@snu.ac.kr	
부회장	윤 원 철	02-880-6238	011-9192-7069	yunwc@snu.ac.kr	
부회장	홍 두 승	02-880-6414	010-3265-6414	dshong@snu.ac.kr	
부회장	김 도 한	02-880-6548	010-7131-8995	dhkim@snu.ac.kr	
부회장	옥 선 화	02-880-6823	011-305-7881	swok5481@snu.ac.kr	
부회장	고 상 근	02-880-7115	010-9784-7115	kauh@snu.ac.kr	
부회장	현 정 오	02-880-4753	018-381-2248	junghyun@sun.ac.kr	
부회장	양 현 권	02-880-7680	010-4722-6295	yhkeun@snu.ac.kr	
부회장	이 성 철	02-2072-3636	010-7190-0697	leesc@plaza.sun.ac.kr	
부회장	김 병 섭	02-880-8533	016-276-4669	bskimn@snu.ac.kr	
감 사	최 갑 수	02-880-6206	011-9713-3684	kchoi7@snu.ac.kr	
감 사	최 순 철	02-2072-2622	016-393-3498	raychoi@snu.ac.kr	
총무이사	황 인 규	02-880-4676	010-5214-6507	ingyu@sun.ac.kr	
기획이사	이 철 수	02-880-7552	010-7755-3463	charles2@snu.ac.kr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구: 서울산업대학교) 교수회

주 소	(139-743)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서울산업대학교 본관 207호				
전 화	02-970-6026	E-mail	faculty@snut.ac.kr	Fax	02-972-638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강계명	02-970-6629	011-831-5940	littbird@snut.ac.kr	
부회장	이동훈	02-970-6331	010-6733-6331	ldh@snut.ac.kr	
부회장	김선민	02-970-6497	010-2735-6497	skim@snut.ac.kr	
부회장	오영재	02-970-6553	010-2224-7081	ohyj@snut.ac.kr	
부회장	오상근	02-970-6559	010-5238-2955	ohsang@snut.ac.kr	
총무이사	이수룡	02-970-6346	011-9017-6705	srlee@snut.ac.kr	
총무이사	류민영	02-970-6391	011-9750-4019	mylyu@snut.ac.kr	
재무이사	노인섭	02-970-6603	019-284-8739	insup@snut.ac.kr	
감사	최창규	02-970-6410	011-797-6410	choick@snut.ac.kr	
감사	손기상	02-970-6388	016-9877-2433	ksson@snut.ac.kr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90 *담당자: 010-6265-2876				
전 화	02-2210-2700	E-mail	faculty@uos.ac.kr	Fax	02-2210-5555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정 병 호	02-2210-2635	010-6296-8855	servius@uos.ac.kr	
부회장	동 종 인	02-2210-2532	010-5418-4935	jidadong@uos.ac.kr	
부회장	정 혜 숙	02-2210-5694	010-2528-3144	hschong@uos.ac.kr	
총 무	홍 기 원	02-2210-5129	010-5012-5665	legalhistory@uos.ac.kr	
감 사	김 경 태	02-2210-5723	010-2419-3909	ktkim@uos.ac.kr	
감 사	이 선 영	02-2210-2633		syrieh@uos.ac.kr	

순천대학교 교수회

주 소	(540-742)전남 순천시 중앙로 413번지				
전 화	061-750-3990-3	E-mail	faculty@sunchon.ac.kr	Fax	061-750-3998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의 장	박 오 복	061-750-3325	010-5791-3325	ob@sunchon.ac.kr	
부의장	박 병 희	061-750-3464	010-4750-3464	parkbh@sunchon.ac.kr	
사무처장	최 용 석	061-750-5115	017-554-8763	drasto@sunchon.ac.kr	

안동대학교 교수 평의원회

주 소	경북 안동시 송천동 388번지 (760-749)				
전 화	054-820-7200	E-mail	faculty@andong.ac.kr	Fax	054-820-720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의 장	김시주	054-820-5543	010-3845-3869	sjkim@andong.ac.kr	
부의장	노석호	054-820-5569	010-3055-5569	shnoh@andong.ac.kr	
부의장	이화진	054-820-5356	010-9167-8645	ihwajin@andong.ac.kr	
사무국장	윤재형	054-820-5415	016-313-6776	jhy@andong.ac.kr	
정책국장	김석규	054-820-5163	011-430-0277	sgkion@andong.ac.kr	
감사	전영록	054-820-5741	010-6555-5741	jeon@andong.ac.kr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담당자: 010-6742-9778				
전 화	032-835-8583	E-mail	jhong@incheon.ac.kr	Fax	032-835-078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김 성 중	032-835-8295	010-5322-4451	seongkim@incheon.ac.kr	
부회장	박 창 화	032-835-8774	010-4356-9888	pcwgreen@ "	
총 무	홍 진 배	032-835-8583	010-6742-9778	jhong@ "	
총 무	이 은 주	032-835-8621	010-6306-7100	eunj55@ "	
감 사	-	-	-	-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번지 (500-757) *담당자: 김선남				
전 화	062-530-5000	E-mail	wltn1165@chonnam.ac.kr	Fax	062-530-500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문 희	062-530-1877	010-2681-1877	hmoon@jnu.ac.kr	
부회장	전 덕 영	062-530-1335	010-3130-4953	dyjhon@jnu.ac.kr	
부회장	오 상 은	062-220-4354	010-3954-5408	seoh@jnu.ac.kr	
기획간사	최 영 수	062-530-2157	010-3622-2157	y-choi@jnu.ac.kr	
서기간사	양 형 식	062-530-1724	011-623-6375	hsyang@jnu.ac.kr	
총무간사	양 채 열	062-530-1443	010-7221-1443	cyyang@jnu.ac.kr	

전북대학교 교수회

주 소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 화	063-270-2011 063-270-4727	E-mail	faculty@jbnu.ac.kr	Fax	063-270-201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박 병 덕	063-270-2726	016-9877-2726	parkbd@jbnu.ac.kr	
부회장	김 현 속	063-270-4053	010-3654-4053	khs4053@jbnu.ac.kr	
부회장	박 병 건	063-270-4044	016-603-4044	bkpark@jbnu.ac.kr	
감 사	양 규 혁	063-270-3031	011-9648-3031	khyang@jbnu.ac.kr	
감 사	박 강 희	063-270-2608	010-2680-2608	ghp@jbnu.ac.kr	
사무처장	정 동 섭	063-270-3281	016-630-3281	dsjung@jbnu.ac.kr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560-757)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 전주교육대학교				
전 화	063-281-7148	E-mail	yjlee@jnue.kr	Fax	063-281-0102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이 용 주	063-281-7148	016-601-7148	yjlee@jnue.kr	
부회장	권 순 희	063-281-7132	011-9798-2163	shkwon@jnue.kr	
총무	박 상 준	063-281-7138	011-9034-1968	psj68@jnue.kr	

제주대학교 교수회

주 소	(690-756)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전 화	064-754-2088	E-mail	hyeraaaa@jejunu.ac.kr	Fax	064-754-208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회 장	양 길 현	064-754-3267	011-698-8725	yangh@jejunu.ac.kr	
수석 부회장	송 성 희	064-75402743	010-6607-6038	hoe2743@cheju.ac.kr	
부회장	박 경 란	064-754-2434	010-3299-2261	krpark@jejunu.ac.kr	
총 무	고 대 만	064-754-4802	010-7660-5964	kodm@jejunu.ac.kr	
총 무	김 한 일	064-754-3291	011-8280-3291	hikim@cheju.ac.kr	
감사	윤 용 택	064-754-2753	010-9977-2178	sumsaram@cheju.ac.kr	
감사	홍 경 선	064-754-4903	010-2651-6777	hongks@jejunu.ac.kr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660-756) 경남 진주시 신안동 380번지				
전 화	055-740-1315 055-740-1319	E-mail	cheonghb@cue.ac.kr	Fax	055-740-1310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 - mail	
회 장	정 호 범	055-740-1227	011-559-1058	cheonghb@cue.ac.kr	
부회장	박 기 용				
총무위원	정 연 옥	055-740-1281	016-585-6263	chongyo@cue.ac.kr	
홍보위원	김 도 현				
연구위원	박 용 조				
감 사	임 종 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학교) 교수회

주 소	(660-758) 경남 진주시 칠암동 150번지				
전 화	055-751-3708	E-mail	faculty@jinju.ac.kr	Fax	055-751-370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권 진 택	055-751-3661	010-3552-3425	kwonjt@jinju.ac.kr	
부위원장	주 옥 수	055-751-3273	010-4589-7167	osjoo@jinju.ac.kr	
사무국장	이 석 배	055-751-3298	018-232-6364	sblee@jinju.ac.kr	
간 사	김 병 철	055-751-3336	010-4906-3336	bckim@jinju.ac.kr	

창원대학교 교수회

주 소	(647-773)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전 화	055-213-4704	E-mail	kyosu@changwon.ac.kr	Fax	055-213-4706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의 장	정 차 근	055-213-3261	010-3896-8347	jungchgo@changwon.ac.kr	
부위원장	김 창 순	055-213-3512	010-3535-8409	cskim@changwon.ac.kr	
부위원장	이 수 현	055-213-3816	010-9025-3856	suhyun@changwon.ac.kr	
사무국장	안 철 진	055-213-3438		cjahn@changwon.ac.kr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361-712)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330번지				
전 화	043-299-0724	E-mail	shimyt@cje.ac.kr	Fax	043-299-0797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심 영 택	043-299-0724	010-2213-3356	shimyt@cje.ac.kr	
부회장	양 창 모	043-299-0851	010-3429-4206	cmyang@cje.ac.kr	
총 무	심 승 희	043-299-0731	011-9006-9407	geossh@cje.ac.kr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200-703)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5				
전 화	033-260-6454	E-mail	joonsik@cnue.ac.kr	Fax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신 준 식	033-260-6454	011-9914-3485	joonsik@cnue.ac.kr	
부회장	이 성 영	033-260-6417	011-318-8128	lsy@cnue.ac.kr	
총 무	박 미 애	033-260-6524	011-9977-3450	pmiae@cnue.ac.kr	

충남대학교 교수회

주 소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번지 충남대학교 경상대학(E6) 101호 교수회사무실				
전 화	042-821-5090,1	E-mail	prof@cnu.ac.kr	Fax	042-822-9637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김 필 동	042-821-6338/5090	010-7477-9180	pdkim@cnu.ac.kr	
부회장	장 인 성	042-821-6523	010-8311-6523	changis@cnu.ac.kr	
부회장	허 환 일	042-821-6687	010-9596-0995	hwanil@cnu.ac.kr	
감 사	김 기 대	042-821-6716	017-404-6716	kdkim@cnu.ac.kr	
감 사	정 태 원	042-821-5653	010-3441-9127	twjeong@cnu.ac.kr	
상임운영위원(정책)	윤 석 진	042-821-5328	010-3208-6487	drama@cnu.ac.kr	
상임운영위원(사업)	송 라 윤	042-580-8331	010-3069-2214	songry@cnu.ac.kr	
상임운영위원(기획)	김 승 범	042-821-6412	016-458-4619	sbk01@cnu.ac.kr	
상임운영위원(조직)	이 왕 록	042-821-6458	010-4582-4560	leewl@cnu.ac.kr	

충북대학교 교수회

주 소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개신동 12번지)				
전 화	043-261-3087	E-mail	kyousu@chungbuk.ac.kr	Fax	043-276-8314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오 원 태	043-261-2245	011-492-2245	wntoh@chungbuk.ac.kr	
부회장	서 관 모	043-261-2184	011-9800-6736	soguan@chungbuk.ac.kr	
부회장	윤 혜 미	043-261-2794	011-9639-2794	hmyoon@chungbuk.ac.kr	
간사장	김 영 석	043-261-3137	010-9408-3731	kimys@chungbuk.ac.kr	
기획간사	모 인 필	043-261-1693	010-9330-5602	molp@chungbuk.ac.kr	
총무간사	김 남 준	043-261-2281	010-9423-2281	namjkim@chungbuk.ac.kr	

충주대학교 교수회

주 소	380-702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전 화	043-841-5047~8	E-mail	cjp@cju.ac.kr	Fax	043-841-5049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권 일	043-841-5413	010-8953-5413	ikwon@cju.ac.kr	
수석부회장	이 병 찬	043-841-5358	019-315-4571	bclee@	
부 회 장	조 운 주	043-820-5274	010-6413-4165	wjcho@	
사 무 처 장	박 상 근	043-841-5122	011-223-3448	skpark@	
감 사				@	
감 사				@	

한경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467-749)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67				
전 화	031-670-5478	E-mail	maro@hknu.ac.kr	Fax	031-673-2704
직 책	성 명	연 구 실	휴 대 폰	E-mail	
회 장	태 범 석		011-343-8901	gaia@hknu.ac.kr	
부회장	김 경 섭	031-670-5174	010-9123-4695	kskim@hknu.ac.kr	
부회장	강 권 규	031-670-5104	010-3927-6538	kykang@hknu.ac.kr	
부회장	박 연 미	031-670-5314	010-5234-3085	ympark@hknu.ac.kr	
총 무	박 재 희	031-670-5283	010-3159-5283	maro@hknu.ac.kr	
감 사	구 자 갑	031-670-5146	011-787-7351	jkkoo@hknu.ac.kr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한국교원대학교				
전 화	043-230-3630	E-mail	minblee@knue.ac.kr	Fax	043-232-7175
직 책	성 명	연구실(043-230-)	휴 대 폰	E-mail (id@knue.ac.kr)	
의장	이민부	3630	010-3413-3242	minblee	
부의장	조민식	3756	010-8776-3756	mscho	
사무총장	김종우	3647	010-5663-8581	hermesos	
대의원	장수명	3446	010-4936-4549	smjang	
대의원	김도기	3413	010-4708-0174	kogoldax	
대의원	최지연	3439	011-303-1955	jychoi	
대의원	김왕규	3546	011-269-4265	wind63	
대의원	박병기	3642	011-296-7124	bkpak15	
대의원	문윤섭	3769	010-9323-4117	ysmoon	
대의원	김현주	3766	010-9320-8950	hjkim21	
대의원	고영신	3473	010-9334-6271	ysgo820	
대의원	박종률	3486	011-459-5265	pjl070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주 소	서울 종로구 동숭동 169번지 (110-791)				
전 화	02-3668-4684	E-mail	byhan@knou.ac.kr	Fax	02-3668-4185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폰	E-mail	
회장	한복연	02-3668-4684	010-6366-4684	byhan@knou.ac.kr	
부회장	이용철	02-3668-4585	010-7350-8803	yongchul@knou.ac.kr	
부회장	노형규	02-3668-4617	010-7510-4105	nohg704@knou.ac.kr	
부회장	이기재	02-3668-4694	011-9650-9470	kjee@knou.ac.kr	
부회장	이해주	02-3668-4667	010-6213-9568	haejoole@knou.ac.kr	
감사	안병국	02-3668-4575	010-3344-7159	bkahn@knou.ac.kr	
감사	김희태	02-3668-4673	010-2717-1794	kht@knou.ac.kr	
예결심의위원장	전용오	02-3668-4665	010-6249-5291	yojun@knou.ac.kr	
정책위원장	권수열	02-3668-4705	010-7132-4899	sykwon@knou.ac.kr	
권익위원장	이영음	02-3668-4713	010-9895-5499	yesunny@knou.ac.kr	
총무	김종오	02-3668-4624	010-6233-4333	jokim@knou.ac.kr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주 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본부동 5층 (606-791)				
전 화	051-410-4200 051-405-4201	E-mail	kyohyup@hhu.ac.kr	Fax	051-405-4201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폰	E-mail	
회장	이상태	051-410-4284	010-2595-4284	sangtae@hhu.ac.kr	
부회장	손주영	051-410-4575	010-7488-4575	mmlab@hhu.ac.kr	
감사	안종웅	051-410-4754	010-5432-4684	jwahn@hhu.ac.kr	
감사	이서정	051-410-4578	011-217-4190	sjlee@hhu.ac.kr	
사무처장	정대	051-410-4392	010-2767-4102	ichung@hhu.ac.kr	
기획간사	설동일	051-410-4271	010-7298-0727	seol@hhu.ac.kr	
홍보간사	이경은	051-410-4759	010-5871-5114	kyung@hhu.ac.kr	
예결특별위원장	오용식	051-410-4401	010-9815-0305	ysoh@hhu.ac.kr	
행정특별위원장	정진아	051-410-5084	010-9767-1676	jina@hhu.ac.kr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주 소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산 16-1번지				
전 화	042-821-1466	E-mail	kyopyung@hanbat.ac.kr	Fax	042-821-1895
직책	성명	연구실	휴대폰	E-mail	
의장	이종원	042-821-1252	010-9790-6859	jwlee@hanbat.ac.kr	
부의장	진영택	042-821-1210	010-3469-3797	ytjin@hanbat.ac.kr	
부의장	박덕용	042-821-1278	011-205-3554	dypark@hanbat.ac.kr	
사무처장	우승환	042-821-1537	010-5577-5597	shwoo@hanbat.ac.kr	

【별첨자료 9】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기획보고서>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2010. 8. 3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차 례>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요약문]

- I. 문제의 제기 1
- II. 국립대학 교원의 헌법적 지위 2
 - 1.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2
 - 2.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 3
 - 3. 직업공무원제도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보호 4
 - (1)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 보장 4
 - (2)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신분 보장 4
 - 1) 의의 4
 - 2)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신분 보장의 범위 5
 - 3)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대한 제한 가능성 및 그 한계 5
- III.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 개관 7
 - 1. 도입 7
 - 2. 근거 법령의 체계 7
 - (1) 헌법 7
 - (2) 법률 8
 - (3) 대통령령 9
 - (4) 시행규칙 10
 - (5) 소결 10
 - 3. 공무원 보수제도의 구체적 내용 10
 - (1) 공무원 보수제도 개관 10
 - (2) 봉급제도 11
 - (3) 수당제도 12
 - (3) 여비제도 12
 - (5) 소결 12
 - 4. 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보수체계 13
 - (1) 도입 13
 - (2) 공무원의 구분과 보수체계 14
 - (3) 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보수체계 15

IV. 성과연봉제 도입의 정책적 문제점	18
1. 문제 상황	18
2. 성과평가의 객관성 문제	18
(1) 문제의 소재	18
(2) 평가지표의 문제	19
(3) 평가자 주관 개입으로 인한 교원지위의 독립성 저해	19
3. 보수총액 동결로 인한 문제점	20
4. 소결	21
V.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	22
1. 성과연봉제 도입의 헌법적 문제점	22
(1)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침해	22
1) 교육직무의 특수성	22
2) 소결	23
(2)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위반	24
1)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의의	24
2) 성과연봉제와 법률유보법칙	24
3) 교과부 시안의 문제점	25
4) 소결	25
2. 교과부 시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25
(1)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인한 평등원칙 · 대학의 자율성 침해	25
1) 문제 상황	25
2) 검토	26
3) 소결	27
(2) 실질적 연봉 삭감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지위 저해	28
VI. 통제수단	29
1. 개관	29
2.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형식	29
(1)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29
(2) 개정 예정 조항	30
3. 사전적 통제수단	31
(1) 도입	31
(2) 대통령령의 개정 과정	32
(3) 행정상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33
(4) 소결	34

4. 사후적 통제수단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34
(1) 항고소송의 제기 가능성	34
1) 문제의 제기	34
2) 대통령령의 처분성 유무	35
3) 원고적격 유무	36
4) 청구기간의 문제	37
(2)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38
1) 도입	38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유무	38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유무	39
4) 청구기간의 문제	40
(3) 양자의 관계	41
5. 소결	41
VII. 결 론	42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목 차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요약문]	V.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
I. 문제의 제기	1. 성과연봉제 도입의 헌법적 문제점 (1)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침해 (2)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위반
II. 국립대학 교원의 헌법적 지위	2. 교과부 시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1)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인한 평등 원칙 · 대학의 자율성 침해 (2) 실질적 연봉 삭감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지위 저해
1.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2.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 3. 직업공무원제도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보호	VI. 통제수단
III.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 개관	1. 개관 2.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형식 3. 사전적 통제수단 4. 사후적 통제수단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5. 소결
1. 도입 2. 근거 법령의 체계 3. 공무원 보수제도의 구체적 내용 4. 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보수체계	VII. 결론
IV. 성과연봉제 도입의 정책적 문제점	
1. 문제 상황 2. 성과평가의 객관성 문제 3. 보수총액 동결로 인한 문제점 4. 소결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법적 문제점 연구 [요약문]

2010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원의 연봉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교원의 인사체계에 적극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의 현행 헌법 및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이 제도가 과연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적·정책적 논증을 통하여 위 두 가지 쟁점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며, 도입하는 경우 당초 예정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본질적으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정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

2. 교과부 안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바,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

3. 객관적 평가지표의 결여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율적·창조적 연구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총액을 동결하고 재분배하는 방식은 실질적 연봉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발적 동기를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대내외적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들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전체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강행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교원으로서 행정상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항고소송 및 헌법소원의 제기를 통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I. 문제의 제기

(1) 2010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 교원의 연봉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호봉제를 배제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을 누적시킴으로써 교원의 인사체계가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 조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교원의 보수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 교원도 기본적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나,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나아가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체계는 교원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3)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 논증을 위하여 우선 헌법적 관점에서 교원 지위의 특수성에 대하여 살펴본 후, 교원지위의 물적 기반으로서 공무원 보수체계가 현행법상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개관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가지는 문제점을 특히 헌법적 관점에 주목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강행되는 경우 교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국립대학 교원의 헌법적 지위

1. 학문의 자유의 주체성

모든 국민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진리탐구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교수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¹⁾ 이러한 점에서 학문의 연구·활동과 교수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 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²⁾

이와 같은 대학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국가원리, 민주주의원리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학 본연의 기능은 자유로운 연구와 교육을 통한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陶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문연구결과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 되는 한편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헌법이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대학 교수의 학문의 자유는 개인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사회 질서 형성 등과도 긴밀히 연결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실효성 있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외부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난 독립된 자유로운 학문 탐구 및 활동의 자유의 보장을 필수적

1) 헌법재판소 2008. 4. 24. 2005헌마857, 1998. 7. 16. 96헌바33 등 참고.

2)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8헌마1119.

3)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참고.

전제로 하므로 그 실효적인 담보 장치로서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이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2.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등). 또한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⁴⁾

다만 헌법은 자율성의 주체를 “대학”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개개의 대학 교원도 자율성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 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따라서 특정한 법령의 수범자가 직접적으로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이 근본적으로 교수들이나 교수회가 기본권을 제약하여 직접적인 침해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이들도 독자적인 지위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4)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1998. 7. 16. 96헌바33 등.

3. 직업공무원제도 및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보호

(1)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 보장

국립대학 교원은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한다. 따라서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에 의한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신분 보장을 받는다.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헌법 제7조 제1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조항들의 취지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관계 법률은 정무직 등의 특별한 공무원이 아닌 한 공무원의 신분을 정권교체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끔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2)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신분 보장

1) 의의

대학 교원은 앞서 살펴 본 일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특별한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 기반으로 가장 중요한 교원의 모든 지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뜻은 넓은 의미에서 교원의 지위를 포함한 교육제도는 한 시대와 국가·사회 공동체의 이념 및 윤리와 조화되는 가운데서 형성·발전되어야 할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변경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그 시대의 구체적인 사회적 여건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⁵⁾ 이는 특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지식 내지 인식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⁶⁾

2)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한 신분 보장의 범위

교원지위법정주의에서 의미하는 “교원의 지위”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⁷⁾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교원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기본권보장 내지 지위보장을 위한 규정도 반드시 함께 담겨 있어야 하며, 특히 신분 보장의 범위는 사회적 지위의 보아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적 지위까지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미친다고 해석해야 한다.⁸⁾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에 비하여 그 지위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즉,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편 별도로 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 공무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에서 자격요건, 복무 등에 있어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3) 교원지위법정주위에 대한 제한 가능성 및 그 한계

그러나 이처럼 강화된 내용의 지위 보장이 헌법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특별한 보호가

5)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6)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7)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1991. 7. 22, 89헌가106 등.

8) 헌법재판소 2008. 11. 27, 2005헌가21, 1991. 7. 22, 89헌가106 등 참고

곧 무조건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본연의 목적에 의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도 가능하다. 보수 등 물적 급부와 관련하여서는 국가 재정 등에 의한 현실적 한계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교원 지위의 보장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재정 내지 시대적 상황 등에 의한 사실상의 한계나 그 근본 목적에 의한 합헌적 제한의 정도를 벗어나 교원 자신의 기본권이나 헌법적 제도 보장의 기본 취지를 잠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제한은 이미 기본권의 “제한”이 아닌 “침해”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Ⅲ. 현행 공무원 보수체계 개관

1. 도입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헌법 제7조 제2항의 취지에 따라 공무원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임면 등 그 지위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보수에 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보수는 공무원 지위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를 통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결코 공무원 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정도의 지위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국립대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보수체계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시에 교원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 논증을 위한 전제로서 우선 국립대 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체계가 현행법상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근거 법령의 체계

(1) 헌법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그 기본 취지만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그 구체적 내용이 입법자에 의해 설계된 법률의 내용에 의하여 형성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사회적·시대적·재정적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자유재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

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위임에 따라 주어진 것이므로, 직업공무원제도가 갖는 헌법적 의의를 존중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본질적 한계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법률

공무원은 크게 국가에 의하여 임명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는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며, 각각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1) 국가공무원

우선 국가공무원의 인사 행정에 대한 일반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한 후, 그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제47조).⁹⁾ 교육공무원법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들도 마찬가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국가공무원의 전반적인 보수체계는 다음에서 살펴 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등 대통령령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2) 지방공무원

9)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상여 김)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의 인사 행정에 대한 일반법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있는데, 동법 제45조에서도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후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¹¹⁾

(3) 대통령령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 있다. 그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다.¹²⁾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은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공무원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제74조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 지방공무원법 제 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공무원보수규정 제2조 (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정된 대통령령으로는 우선 통칙적 규정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들 수 있다. 그 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정들과 대동소이하다.

(4) 시행규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93호)이 있다.

(5) 소결

앞서 살펴 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근거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
국가 공무 원	헌법 §7②	일반법 특별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교육공무원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전투경찰대설치법	공무원여비규정	
			소방공무원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군인보수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지방 공무 원	上同	지방공무원법		지방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3. 공무원 보수제도의 구체적 내용

(1) 공무원보수제도 개관

공무원 보수제도는 크게 봉급제도, 수당제도, 여비제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¹³⁾

(2) 봉급제도

공무원의 봉급제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된다.

1) 호봉제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 외에 약49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연봉제

우리나라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①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고정급적연봉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다.

13)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이원화되어 별도로 규율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은 그 임용주체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연유하는 특수성 외에는 대체로 그 내용이 국가공무원에 대한 그것과 대동소이하거나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전반적인 공무원 보수 체계 개편은 궁극적으로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논증의 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규정의 세부적 차이점에 대한 검토는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이하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행정안전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을 참고하였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복수직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연봉은 계급별로 설정된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 연봉외의 급여로는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이 지급된다.

③ 직무성과급적연봉제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되며, 기본 골격은 성과급적연봉제와 같다.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성과급적연봉제와 다르다.

(3) 수당제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14종), 초과근무수당 등(4종), 실비변상 등(종)이 지급되고 있다.

(4) 여비제도

여비는 공무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운임, 일비·숙박비 및 식비, 이전비·가족여비, 여행 중 퇴직자·사망자 등에 대한 여비 등이 지급되고 있다.

(5) 소결

앞서 살펴 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분류	세부내용		
봉급제도	호봉제	봉급(기본급)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 상승 12개 직종별 설계
		성과상여금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 그 외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지급
	연봉제	고정급적연봉제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등 개별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 책정 그 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 지급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적용 기본 골격은 성과급연봉제와 동일. 다만, 기본연봉이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분되며 성과급 비중이 더 높음.
	수당제도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14종)			
초과근무수당 등(4종)			
실비변상 등(6종)			
여비제도	운임		
	일비·숙박비 및 식비		
	이전비·가족여비		
	여행 중 퇴직자·사망자 등에 대한 여비 등		

4. 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보수체계

(1) 도입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크게 봉급, 수당, 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보수가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 보수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다. 이는 각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른 개별적·합리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¹⁴⁾ 이하에서는 공무원의 구분에

다른 보수체계의 현황과 그 의의를 개관한 후,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여 일반직 또는 별정직과 구분되는 보수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주목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공무원의 구분과 보수체계

공무원은 임명주체 등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대별되고, 이들은 각각 다시 일반직·특정직·기능직으로 세분되는 경력직공무원과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으로 세분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참조).

그리고 이들의 보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 제1문에서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각각의 직에 따른 보수의 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도 공무원의 종류에 따라 그 보수체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그 종류에 따라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종류		보수체계		기타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4급 미만	호봉제 +각종 수당 등	군무원은 제외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만 해당함
		4급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각종 수당	
	특정직 공무원	원칙	호봉제 +각종 수당 등	각 별표 규정에 따라 직종별로 달리 규율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경우	각 특례 규정에 따름	예)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기능직 공무원	호봉제 +각종 수당 등			
특수	정무직 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 및	

14)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1192 참고.

경력직 공무원			+각종 수당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4급상당 미만	호봉제 +각종 수당 등	
		4급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각종 수당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은 제외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만 해당함
	계약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각종 수당	
	고용직공무원		호봉제 +각종 수당 등	
	기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¹⁵⁾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각종 수당

(3)교육공무원의 특성과 보수체계

국립대학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과 구분되는 특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인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그 업무의 성격상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직무의 독립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등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 신분 및 근로조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무원(법관, 검사, 군인, 군무원, 경찰·소방·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 내지 중립성

15) 고위공무원단의 범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참조.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특별한 보호의 요청은 보수체계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현되어야 한다. 보수는 공무원 지위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직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70호),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및 동시행령) 등을 들 수 있다.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과 구분되는 특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교육이 가지는 공공성 등 그 직무의 특수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립대 교원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 본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교원 지위 법정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¹⁶⁾ 따라서 국립대 교원의 보수체계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교원의 헌법적 지위 및 교육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별정직과 구분되는 특정직으로 한 이유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교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고유한 보수체계가 있어야 하며 일반적인 공무원보수체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규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보수체계의 도입은 국립대교원을 특정직으로 구분한 근본추지에 반하며 나아가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국립대 교원의 보수 체계에 대하여 그 타당성이 검증된 바는 없으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과 같이 직종의 특성상 계급구분이

16)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0헌바26 참고. “...교육은...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교육은...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우리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제6항) 한 것이다. ...이 점은 특히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기존의 지식 내지 인식의 결과를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검증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인식을 모색하는 학문연구와 교수활동을 과제로 하는 대학교원에 있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존재하지 않아 근속연수에 따른 업무숙련도 등을 반영하여 단일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계급기준에 있어도 근속연수별 경력가치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 것이 상당”함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1192 참고).

IV. 성과연봉제 도입의 정책적 문제점

1. 문제 상황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국립대학 교원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시안 2010. 4.자]에 의하면 성과연봉제의 기대효과로 우선 교원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 보상을 통해 교원의 자발적 동기를 유발하여 교육·사회봉사 기능 활성화를 들고 있고, 대학 측면에서 정제된 국립대학 교원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양질의 교육과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강화 및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필수적인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인상에 관해서는 국민정서상 곤란, 국립대 교원의 경우 공무원신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체 국가공무원 보수체계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음 등의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결국 지금 교과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는 현재 국립대학 교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총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를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그 골자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대상 성과연봉제는 법정책적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 성과평가의 객관성의 문제

(1) 문제의 소재

교과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는 성과평가의 지표 및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과부의 성과연봉제안은 성과 평가에 관해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마치 교과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타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수의 연구활동은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인 행정업무수행과는 달리 대단히 전문적이고 각 영역별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특화된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들 연구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교수들의 연구활동의 성과는 학문 담론의 장에서 동료 교수들의 평가와 토론 등을 통해서 학문적인 방법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수연구활동의 성과를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해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2) 평가지표의 문제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교원성과의 평가가 논문의 편수와 같이 수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지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게 될 위험이 있다. 연구의 질에 대한 평가가 아닌 논문 발표의 수량에 의해 교원들의 성과가 평가되는 것의 위험은 굳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심각한 것이다.

(3) 평가자 주관 개입으로 인한 교원지위의 독립성 저해

또한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는 단위의 행정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 사람

(일반적으로는 학장, 학부장)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각 교원들의 성과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앞에서 검토한 수량적·계량적 평가가 아닌 방법으로 각 교원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원성과 연봉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평가단위의 장이 사실상 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결정의 전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각 교원들로 하여금 그 평가의 권한을 가진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 역시 학문의 장인 대학에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학문연구의 자유와 학문의 주체로서 대학교원 및 대학의 지위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3. 보수총액 동결로 인한 문제점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법정책적 문제점은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총액을 동결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그 제도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교원의 보수가 현재의 보수수준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대폭 인상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그 인상되는 보수의 증가분이 이미 지급되고 있던 다른 교원들의 보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은 성공한 다른 직업군의 그것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국립대학의 교원 중에서 보수와 같은 경제적인 보상 때문에 교수의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대단히 낮다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높지 않은 보수의 총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성과평가의 지표를 기준으로 1년마다 차등을 두어서 교원들 사이에 재분배하는 것은 교과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교원들 사이의 발전적인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낮은 보수수준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학문적 즐거움 및 국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부

심으로 연구 및 강의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수들에게 치명적인 모멸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4. 소 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 지표가 마련되고, 실질적인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대폭적인 교원보수의 인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교과부의 검토안과 같은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많은 문제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V.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문제점

1. 성과연봉제 도입의 헌법적 문제점

(1)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 침해

1) 교원직무의 특수성

교원이 제공하는 근로는 성질상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직무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며 교원의 신분은 강력하게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어 인력의 배분이 비탄력적이다. 또한 성질상 교원에게 배분될 이윤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도 아니한다.¹⁷⁾ 따라서 교육에 경쟁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성과연봉제는 성질상 적합하지 않다.

교육은 살아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은 해당분야에 대한 최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식견과 정보뿐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발달, 행동심리, 정신건강과 위생, 학생의 욕구에 관한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신적 활동으로서 본질적으로 일률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¹⁸⁾ 이런 이유로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측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명백한 직무유기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교원 스스로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학생 지도와 교육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교원의 교육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특히 대학에서의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반하는 것이다.

대학교원의 연구활동 또한 단순한 지식의 습득 및 그 전달이 아닌 이를 토대로 창조적인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관적·창조적 진리탐구는 다른 목적

17)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18) 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참고.

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 물론 산학협력을 통하여 실제적 성과가 비교적 뚜렷이 드러나는 학문 분야도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술적 성과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연구 활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통하여 일정한 제품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또는 평가자의 주관적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시각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 등을 기준으로 한 정량평가, 또는 특정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체가 일정한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점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 하기 어렵다.

2)소결

결국 성과연봉제를 통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특정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경우 대학교원에게 평가자 또는 그 기준결정권자의 관점을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비록 평가가 대학사회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육과 연구활동에 대한 평가는 같은 분야의 학문공동체내에서 비판과 반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졸업생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대학교원 직무의 본질적 성질과 평가의 공정성 등의 문제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정하고 있는 일정한 관점과 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교육과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이 교육과 연구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바로 이와 같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보

장하는 것만이 진정한 교육과 학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위반

1) 헌법상 교원법정주의의 의의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교원의 지위에는 교원의 근무조건·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이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¹⁹⁾ 특히 규율대상이 헌법적,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내지 상충하는 이익간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증대된다.

2) 성과연봉제와 법률유보원칙

성과연봉제는 근본적으로 정량적, 정상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시장경제원리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 영역에 일률적 서열주의 및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들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교육제도는 공동체의 장래와 국민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 근간을 이루는 부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간의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이와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 보수와 성과의

19) 헌법재판소 1996. 10. 31, 93헌바14.

합리적인 연관관계 등에 의하면 관련 당사자들의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합의가 없이는 시행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적어도 법률에서 그 도입 가능성이 적용 대상, 평가의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3) 교과부 시안의 문제점

교육기술부안에 의하면 성과연봉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며, 그 근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으로 본다. 따라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관하여 법률상 어떠한 명시적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법률규정의 해석상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달리 그와 같이 해석해야 할 어떠한 필연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4) 소결

결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교과부 시안의 구체적 내용 검토

(1) 획일적인 상대평가로 인한 평등원칙 · 대학의 자율성 침해

1) 문제 상황

성과연봉제는 대상인원을 기본적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의 비율을 획

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S등급은 $20\pm 5\%$, A등급은 $30\pm 5\%$, B등급은 $40\pm 5\%$, C등급은 10% 이상이다. 그리고 예외등급으로 SS등급과 D등급을 두는데, S등급 중 일부에 대하여 SS등급을, C등급 중 일부에 대하여 D등급을 배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비율은 정하지 않는다. 각 등급 사이의 차이를 보면, 성과연봉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 S등급은 평균액의 2배 이상, A등급은 평균액 이상, B등급은 성과연봉기준액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액, C등급은 평균액의 1/4 이하를 지급한다. 예외등급에 우 SS등급은 평균액의 4배 이상이며, D등급은 성과연봉이 없다.

위와 같이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의 방식을 취하여, 객관적으로 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느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비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간 차이도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인 상대평가는 대학교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 검토

첫째, 등급 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구나 수공할 수 있는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은 기본등급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최대 8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

둘째, 등급 간의 차이가 고정되어 있어 성과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현재의 안에 따르면 각 등급 사이마다 성과연봉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각 등급 사이의 실제 성과의 차이가 2배가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성과의 차이에 따라 등급간 차이를 두는 것이 평등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셋째, 각 등급의 최대 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성과가 유사한 교원들이 비율 때문에 서로 다른 등급에 배정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럼 등급간의 차이가 2배 이상이어서 이러한 불공정성이 증폭된다. 실제 성과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한 등수 차이로 서로 다른 등급에 배정되면서 성과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최하등급인 C 등급을 10% 이상 배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우수교원 유치에 장애가 될 것이다. 능력과 경력이 우수한 교원이 상대적으로 국립대학에 많이 재직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우수한 교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등급평가에 불리하므로 지원을 꺼릴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3) 소결

결국 위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교과부가 상대평가를 강제하고, 그 비율과 등급간의 차이도 획일적으로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교과부는 최소기준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학이 자율 운영하도록 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성과평가의 기준 문제만 각 대학에 맡겨 놓고, 가장 핵심을 이루는 등급 설정의 문제는 대학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사전에 고정시켜 놓아 버린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 등급별 비율 설정, 등급간 격차 설정 등도 기본적으로 대학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놓고 그에 상응하게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간 격차를 두어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요컨대 등급 비율과 격차를 사전에 고정해 놓은 현행 성과연봉제는 평등원칙에 반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2) 실질적 연봉 삭감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지위 저해

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수의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보수가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성과연봉제에 따르면 연봉의 인상은, 지난 해 성과연봉 중 일정 비율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산입 비율의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산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 될 경우 연봉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게 되고 실질적으로 연봉을 삭감당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나아가 D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연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다음해에는 기본연봉이 동결되고 실질적으로 연봉은 삭감된다. 교과부는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더라도 연봉이 삭감되는 교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교과부가 성과연봉제의 성공사례로 소개하는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의 경우를 보더라도 ‘균분급’이라고 하여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모든 교수에게 지급되는 급여 인상급”을 지급하고 있다. 국립대학 교원의 지위 보장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I. 통제수단

1. 개관

앞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가지는 법적 문제점을 특히 헌법적 관점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강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받게 되는 교원으로서 그와 같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 권리 보호 수단은 침해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능한 구제수단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침해의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지은 후 그에 따라 주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구제수단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위해 우선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형식에 주목하여 - 살펴본 후, 그에 따라 현행법상 활용될 수 있는 여러 구제수단을 사전적 통제방안과 사후적 통제방안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적 형식

(1)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제47조)과 교육공무원법(제34조)은 교육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 조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²⁰⁾

이와 같이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는 당사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으로는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지에 논의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령은 통상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추상적인 행정입법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소제기의 가능성, 즉 재판절차를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개정 예정 조항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4.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시안)」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개정이 예정된 조항으로는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 제33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제49조, 제50조 등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및 개정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만, 해당 조문의 내용은 교육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해당 조문	현행규정	개정(안)	기타
제33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교육공무원 제외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에 교육공무원 포함	[별표31]에 교육공무원 내용 신설
제36조 (신규채용 시의 연봉 책정)	교육공무원은 해당사항 없음	제36조의2 (교육공무원의 연봉 책정 등) 신설	기존 교원의 연봉은 연봉제 적용 직전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책정(부칙 제3조)
제39조 (성과연봉의 지급)	上同	제39조의2 (교육공무원의	

20)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 4.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시안)」 p.19, [붙임3] 등 참고. 그러나 위와 같이 관련 대통령령의 내용만을 개정하는 방식으로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 (1) 우선, 해당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이 (국립대학 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까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성과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를 결여한 기본권 제한으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한다.
- (2) 설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 속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해도, 그러한 경우에는 다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의 위배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3) 더 나아가 법률에서 직접 성과연봉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 해도, 이로 인해 국립대학 교수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교원지위법정주위가 침해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헌적 법률의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성과연봉 지급) 신설	
제40조 (연봉의 조정)	上同	제2항 신설	교육공무원에 대한 연봉조정시 협의의무
제4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上同	제2항에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 된 교육공무원의 연 봉지급 관련 내용 추 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제50조(연봉제 시행세칙)	上同	단서 신설	교육공무원에 대한 시행 세칙은 교과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협의하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총 6개 조문이 개정될 예정이나, 그 중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에 국립대학 교수를 포함시키도록 한 제33조와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의 지급방식을 정하는 제39조의2로 볼 수 있다. 제33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조문이며, 제39조의2는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본원칙(평가기준·각 등급의 비율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주로 위의 두 조문에 주목하여 그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을 판단된다.

3. 사전적 통제수단

(1) 도입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 고유한 권한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헌법 제 75조). 그러나 이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고 상위법과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한 한계가 준수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합헌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 즉 그 제정 한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 있는 대통령령의 제정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행정부 내부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국민에 의한 통제 가능성이 열려 있음도 물론이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이미 개정·공포된 후 사후적으로 이를 다투게 하는 경우 불필요한 혼란과 회복 불가능한 권리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효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통령령의 개정 과정을 개관하고, 각 단계에서의 국민에 의한 사전적 통제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대통령령의 개정 과정

이를 간단히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요도	취지 및 내용	근거 조문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 추진시기의 검토·조정, 법적기반의 적기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입법계획 관리	「법제업무운영규정」 §5~10,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4
법령안의 입안	정책결정과정에서 검토·정리한 결과를 객관적 언어로 구체화·규범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의 사전 조정	「법제업무운영규정」 §7①,②, §11, 같은 영 시행규칙 §5, 8
당정협의	행정부 정책 방향을 여당 입장과 조화시킴으로써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추진 도모	「당정협의업무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506호)」
입법예고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시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	행정절차법 §41이하, 법제업무운영규정 §14 이하
규제심사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시 미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함.	「행정규제기본법」 §7 및 같은 법 시행령 §6
법제처 심사	법령안의 지구·체계 등 형식적 사항뿐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과 위반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하여 사전적 규범통제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정부조직법 §20, 법제업무운영규정 §21 이하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긴급한 경우 차관회의 생략 가능	「차관회의규정」,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 재가 및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대통령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헌법」 §82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공포	법제처에서 공포번호를 부여한 후 행정안전부에 공포를 위한 관보게재의뢰를 하여 공포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에 제출		국회법 §98조의2

(3) 행정상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위의 각 단계에서 국민은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단, 의견 제출이 법률에 의한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행정상 입법예고의 단계에서 예고와 함께 미리 공고된 의견제출기간에 한함에 주의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제18조)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의 개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입법안을 예고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43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당해 입법안을 예고할 때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4조). 행정절차법 제44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기회의 부여를 필수적 절차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결과통지 의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령의 개정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의견제출시 그 결과를 통지를 받을 권리라 국민 개개인에게 부여된 절차적 권리로 인정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적법한 의견 제출이 있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해당 법령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공무원 보수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이를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예고 및 그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립대 교원은 입법예고의 단계에서 정해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또는 결과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위법을 이유로 대통령령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

4. 사후적 통제수단 - 항고소송과 헌법소원

(1) 항고소송의 제기 가능성

1) 문제의 제기

사전 절차에서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강행되는 경우, 개정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직접 권익을 침해당하게 되는 국립대 교원은 그 위법을 이유로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① 공무원 보수규정 해당 조문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② 단체적으로 그 적용 대상을 확장시

켜 나가도록 한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이 일시 유예된 교원의 경우에도 ‘현재’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²¹⁾

2) 대통령령의 처분성 유무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정의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따라서 항고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의해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의미하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닌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대통령령을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일반·추상성을 가지는 행정법규라 하더라도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 때에는 행정처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0. 9, 2003무23, 1996. 9. 20, 95누8003등).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관련 조항들 역시 그 자체로 직접 국립대 교원의 보수를 받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처분성이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부칙상 단계적인 적용 확대를 예정하고

21) 다만,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2010. 4.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 기본계획(시안)』에 따르면 그 적용 범위를 3단계로 나누어 201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010. 6.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 교원 성과연봉제 기본계획[안] 안내자료』에 의하면 소관부처와의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전면 시행시기를 2013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그 정확한 시행안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시행 시기가 언제로 정해지든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라는 기본 원칙이 유지되는 한 일시 그 적용 유예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권리침해의 현재성’ 문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 의견 조율 과정에서 단계적 실시의 원칙이 철회되고 모든 교원에 대하여 일정 시점에 획일적으로 시행 적용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될 것인바 굳이 현재성 유무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 침해의 현재성이 긍정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교과부 시안을 전제로 할 때 그 실익이 있음을 부연해 둔다.

있기는 하나,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수범자에게 어떠한 재량 내지 선택의 여지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대통령령 조항은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원고적격 유무

단계적 적용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일시 그 적용이 유예된 교원의 원고적격이 문제될 수 있다. 아직 문제된 법령의 현실적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가 소제기를 통하여 구제받을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12조, 35조).

그러나 적용 유예된 교원이 현재로서는 부칙상 적용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동시에 같은 부칙 조항에 따라 일정 시점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전면적 적용 대상으로 포괄될 것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차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있다. 그러한 경우 장래에 확실히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제때에 해소하지 못하고 향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 구제의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 적용 유예 대상이 되는 교원의 경우에도 장래 전면 시행의 대상이 되는 한 항고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긍정될 수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교원에게 원고적격이 긍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교원을 원고로 포함시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간의 유예 없이 개정법 시행시부터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대하여는 애초에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4) 청구기간의 문제

구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고소송으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 확인소송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조). 무효등 확인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불변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그 기산점이 되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령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과는 달리 개별적 통지절차가 수반되지 않고, 관보에의 게재라는 공포절차를 통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구체적으로 공포되어 국민에게 알려진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처분등이 있는 날”은 효력발생일을 의미하는데, 대통령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므로(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포 후 20일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리 구제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사유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태로는)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일단 법령이 공포된 이상 국민에게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이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2)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

1) 도입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즉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하여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 자에 의해 제기되어야 한다는 등의 일정한 제한 요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안에서는 ① 대통령령의 개정을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야기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② 부칙상 적용 유예를 받는 교원이 ‘현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자의 문제는 교과부 시안 내용대로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전제로 한 논의이지만,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유무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은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된다 해도 개정된 시행 후 성과연봉의 현실적 지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이상 그 집행행위로 인해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의 개정만으로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주장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규범 자체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11.12. 선고 91헌마192). 나아가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라면 그 법규범에는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고 한다(헌법재판소 199. 7. 16. 97헌마38). 특히 집행행위자에게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지 않는 기속적 규정의 경우 청구인의 권리관계는 구체적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법령에 의하여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확정되므로, 법령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마1281).

위 판결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도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재량이나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교원에게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어야 함을 정하는 기속적 규정으로, 그 자체로 직접 국립대 교원의 보수를 받을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고, 그로 인해 해당자의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교원지위법 정주의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유무

개정 법령 시행시 부칙 규정을 두어 일정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그 적용을 유예하는 경우 그 적용 유예자에게 현재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비록 장래의 불이익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그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4. 12. 29. 94헌마201,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병합) 참조).

위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부칙상 적용이 일시 유예되는 교원이라 하더라도 같은 부칙 조항에 따라 장차 그 개정 내용대로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임이 확실히 예정되고 있는 이상 장래 불이익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긍정된다.

다만, 그러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교원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부터 성과연봉제의 적용 대상에 포괄되는 교원에 대하여는 애초에 위와 같은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4) 청구기간의 문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그 청구기간은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새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0. 10. 10, 2000헌마613). 다만, 법령에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인지 확정짓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경과규정의 경우 이미 법령의 시행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된 기본권의 제한을 수규자의 입장에서 완화하고, 수규자에게 변화한 법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법령의 시행 당시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지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유예기간의 경과 유무에 관계없이 법규정의 시행 당시에 이미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마516, 1996. 3. 28, 93헌마198 참조).

따라서 교과부 시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부칙상 그 적용을

유예 받는 교원의 경우에도 개정된 대통령령이 시행도니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권리 구제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대통령령이 공포된 후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두 사유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과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일단 법령이 공포된 이상 국민에게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이 진행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3) 양자의 관계

앞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의 제기가 모두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 및 실정법 해석상 이론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현재 실무상 두 가지의 수단을 병존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긍정되고 있으므로, 권리 구제의 실효성·안정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두 개의 소를 모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앞서 살펴 본 통제수단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기간
사전적 통제수단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미리 공고된 의견제출 기간 내
사후적 통제수단	항고소송의 제기	대통령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대통령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공포 후 20일)부터 1년 이내
		가급적 대통령령 공포 후 90일 내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헌법소원의 제기	대통령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급적 대통령령 공포 후 90일 내에 소송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두 개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		

VII. 결 론

2010년 2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도입방안’은 국립대 교원의 연봉체계를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교원의 인사체계에 적극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관점에서,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현행 헌법 및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이 제도가 과연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적·정책적 논증을 통하여 위 두 가지 쟁점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성과연봉제의 도입은 현행 헌법 및 법률상 허용될 수 없으며, 도입하는 경우 당초 예정된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본질적으로 정량적·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없는 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특정 잣대에 의하여 평가하여 서열화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 나아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반한다.
2. 교과부 안과 같이 공무원보수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바,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한다.
3. 객관적 평가지표의 결여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율적·창조적 연구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오히려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 총액을 동결하고 재분배하는 방식은 실질적 연봉 삭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발적 동기를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대내외적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적·정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한 영향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교원들 뿐 아니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학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국민전체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교육제도가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의 도입이 강행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교원으로서의 행정상 입법예고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항고소송 및 헌법소원의 제기를 통하여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별첨자료 10】 안건 토의 관련 자료

안건 1. 성과연봉제, 학장임명제 등 국립대 선진화 방안대응책

- 기금 모금 시한, 위헌소송 제기 시점, 소송주체, 성과연봉제, 학장임명제 별도 또는 병합 여부 등 결정

기금 모금 및 입법 청원 서명 중간 상황 (2011.1.20 현재)

대학	서명인원	모금참여인원	모금액	비고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189	156	1,690,000	
강원대학교 교수평의회	439	288	4,020,000	
경북대학교 교수회	283	162	4,500,000	
경상대학교 교수회	466	458	9,030,000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770,000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공주대학교 교수회	309	267	1,760,000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부경대학교 교수회	414	327	5,060,000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700,000	
부산대학교 교수회				
서울교육대학교 교수회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협의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협의회			1,468,000	
순천대학교 교수회	142		2,820,000	
안동대학교 교수 평의회		87	1,375,012	
인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전남대학교 평의회				
전북대학교 교수회	72		1,060,000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제주대학교 교수회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61	60	600,000	
진주산업대학교 교수회				
창원대학교 교수회	173	141	1,600,000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59	590,000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교수회				
충북대학교 교수회				
충주대학교 교수회				
환경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		183	1,830,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협의회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한밭대학교 교수평의회			1,000,000	
합계	2,548	2,188	39,873,012	

국립대학 단과대학장 임용의 현황과 개선방안

장지상(경북대학교)

1. 머리말: 논의의 기본시각

- 대학의 총·학장 선출 방식은 대학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며, 국립대학의 지배구조는 대학내부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양식에 관한 제 활동과 관련한 제도화되고 관행화된 관리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현재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뿐 아니라, 대학운영 및 학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장회(그 명칭은 학장회의, 교무회, 교무위원회 등 학교에 따라 다양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임용과 관련한 문제, 즉 단과대학장을 누가 어떻게 선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는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 속에서 차지하는 단과대학장의 역할과 권한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
 - 현행 고등교육법 체제에서 국립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법정 또는 비법정의 의사결정기관은 총장, 학장회, 교수회 및 기타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을 차례로 일별하면 다음과 같음.
 - 총장
 - 국립학교 설치령 제 5조 2항에 의하면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독임제(獨任制)기관임.
 - 이와 같이 현행법 하에서는 대학운영에서 총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므로, 총장 임용제도는 대학의 의사결정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음.
 - 교육공무원법 제 24조에 의하면 총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당해 대학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총장추천임용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직접 선정하거나 당해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모든 국립대학에서는 교직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총장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음.
 - 학장회(교무회, 교무회의, 학장회의 등 대학에 따라 명칭의 차이가 있음)

- 학장회는 법령이 아니라 각 대학의 학칙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며, 일반적으로 총장이 의장이 되고 단과대학장 및 처·실장 등 총장보좌기관으로 구성되며, 대학운영 및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 학장회 구성원은 독임제 관청인 총장의 의사를 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임용권을 총장이 가지고 있으므로, 학장회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 총장의 결정을 자문하는 기구의 성격이 강함.

○ 교수회

- 현행법상 교수회는 비법정 임의기구로서 학치기재사항에 불과
-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대학이 교수회를 심의·의결기구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수회 의장을 자체 규정에 따라 교수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있음.

■ 단과대학장 임용과 관련한 법률적 규정

○ 단과대학장의 자격과 임무

- 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3항에 의하면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며,
-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여야 함(국립학교 설치령 제6조 4항).

○ 단과대학장의 임용

- 국립대학 단과대학장은 교육공무원법 제27조 1항에 따라 총장의 제청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3조 2항에 의거 그 임용권한을 총장에 위임함으로써 국립대학 단과대학장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으며,
- 다만 총장은 그 임용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27조 2항에 따라 대학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단과대학장 임용의 실상

○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립대학에 소속 단과대학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단과대학장을 선출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국립대학에서 단과대학 교수회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학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는데,
- 이 때 후보자가 입후보를 하거나 아니면 입후보자 없이 교황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두 경우가 있는데, 입후보를 한 후 투표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학이 압도적으로 많음.
- 총장은 선출된 학장 후보자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총장이 임용하고 있음.

○ 예외

- 목포대학의 경우 전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임용하고 있는데, 이 대학의 경우 90년대 중반이후 모든 단과대학을 폐지하고 학부제를 채택해오던 체제에서 최근 단과대학을 다시 부활하면서 단과대학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였음.
- 전남대학교의 경우 대학교 차원에서 단과대학장 선출에 관해, ① 교수 직접선거, ② 총장임명, ③ 총장 1인 지명 후 단과대 교수의 가부동의, ④ 총장 2인 지명 후, 단과

대 교수에 의한 선출, ⑤ 단과대 교수의 직접선거를 통한 2인 추천 후, 총장의 1인 지명 등 5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남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소속 교수 수가 적어 총장이 순번제로 학장을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총장이 임명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전남대 법과대학의 경우 2007년 직선에서 위 ③의 방식으로 변경하여 두 번에 걸쳐 학장을 선출한 바 있으나, 이후 총장이 지명한 학장이 모두 임기 중에 사퇴하는 경험이 있어 다시 ①의 교수직선 방식으로 회귀하였음.
- 2010년 5월 현재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의 경우 단과대학장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장선출제도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음.
- 부산대학교의 경우 기존의 상과대학을 분리하여 2010년 9월부터 경영대학과 경제통상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계기로 이 두 단과대학의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제를 채택하기로 결정
- 강원대학교의 경우 동물생명과학대학장과 바이오산업공학대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하고 있는데, 이 두 대학은 당초 농과대학에서 수의과대학과 함께 분리하여 신설된 대학으로서, 바이오산업공학부는 분리·신설된 당초부터 총장임명제를 채택하였고 동물생명과학대학은 소속 교수 수가 적어 순번제로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임명제를 채택.

2) 문제점

■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의사결정체계의 혼선

○ 단과대학장의 법적 권한 및 선출방식의 괴리로 인한 혼선

- 현행법과 학칙에 규정된 단과대학장의 권한과 역할은 독립제 의사결정기관인 총장의 명을 받아 학사운영을 집행하고 학장회의 일원으로 총장의 의사결정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따라서 의사결정구조만으로 판단하면 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그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총장의 선출과는 달리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단지 총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단과대학장이 선출되고 있는 바,
- 결과적으로 그 선출과정에서 총장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학장이 총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고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이나 집행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교수회의 법적 권한과 실제 운용의 괴리

- 교수회의 경우 학칙 상으로는 임의기구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총장과 보좌기구의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교수회 의장을 교수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음.
- 그러나 법적인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아 교수회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교수들의 교수회에 대한 인식도 그 역할과 위상에 비해 낮아 교수회의 실제의 권한에 비해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 학장회와 교수회의 상대적 위상의 문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학장회의 결정과 교수회의 결정이 상충될 경우, 현행법과 실제의 운용 현실을 감안하면 학장회는 심의기구인 반면 교수회는 의결기구이므로, 당연히 교수회의 결정이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이나,
- 학장회를 구성하는 많은 단과대학장이 실제로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무성 등에서는 학장회가 현실적으로 보다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장회의 결정에 보다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 단과대학장 선출에 관한 법적 기반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 법적 기반의 미비로 인한 행정의 합법성 확보 미흡
 - 극히 예외적으로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경우에도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속 교수의 수가 적어 순번대로 임명하는 것을 전제로 총장이 임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거의 모든 국립대학의 단과대학장은 교수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함.
 -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단과대학장 선출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선출된 학장 후보자의 추천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으로 행정절차의 합법성 확보에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단과대학장 선출과 관련한 법적 기반 미비로 인한 법률적 균형의 상실
 -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 기재사항에 불과한 단과대 교수회규정에 의거 단과대학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선출된 학장의 추천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실정
 - 대학의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구조에서 단과대학장이 차지하는 현실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총장에 대해서는 선출에 관한 조항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법률적 균형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됨.

■ 대학 전체 차원의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부작용 발생

- 단과대학장의 직선으로 인한 단과대학 이기주의의 추구
 - 단과대학장은 학장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학 전체의 발전비전과 방향의 설정,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정책수립에 참여하고, 수립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학사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
 - 따라서 단과대학장은 기본적으로 대학 전체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우선하고 이를 토대로 단과대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시각을 가져야 하나,
 - 단과대학장을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함에 따라 간혹 단과대학장이 자신의 단과대학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정체성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총장의 책임행정 구현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
- 현행 단과대학의 틀을 넘어서는 구조개혁이 어려움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는 한편, 기술과 지식의 발전이 급속해지는 등 지식생산 및 유통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과나 학부 그리고 단과대학의 구성 등 대학의 지식생산 및 유통 체제도 환경변화에 적합하도록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과대학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현재의 관행은 기존의 단과대학 구성을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현행 단과대학의 틀을 넘어서는 구조개혁이 어렵게 될 수 있음.

■ 단과대학장의 직선으로 인한 교육 및 연구 분위기 저해

○ 대학사회의 분열

- 단과대학장에 뜻을 둔 교수가 득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을 동원하면서 파벌이 형성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파벌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을 지닐 경우 대학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다양한 전공분야 교수들의 상호 협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처럼 대학사회가 분열될 경우 합리적인 교육과정의 설계와 운용이 어려울 것임. 또한 공동연구 등을 위한 분위기도 저해할 것임.

○ 지나친 선거운동으로 인한 대학사회 고유의 분위기 훼손

- 모든 선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과열되어 선거운동이 지나칠 경우, 교수사회가 지녀야 할 고유의 합리적 지성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
- 이렇게 될 경우 소속 교수들이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을 잃을 뿐 아니라 대학사회에 대한 신뢰까지도 상실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1) 개선방안 도출의 원칙

- 교수참여의 보장을 통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의 확보
- 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와의 연관성 확보
- 법과 현실의 일치를 통한 의사결정체계의 혼선 방지
- 권한과 책임을 반영한 학장 선출 및 임용에 대한 법적 기반의 확보

2) 개선방안

■ 방안 I: 집권형 의사결정 체계

○ 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

- 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총장에게 집중시키는 구조로서, 총장을 독임제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정하는 현행과 유사한 구조
- 총장이 의장이 되고 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되는 학장회는 총장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심의기구로서 역할

○ 단과대학장의 역할과 임용

- 집권형 의사결정체계에서는 단과대학장은 총장의 결정사항을 단과대학 차원에서 집행하고, 총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단과대학의 현실 등을 감안하여 조언을 하는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
- 이에 따라 단과대학장은 총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총장이 임명하되 단과대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간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다양한 선출방법을 명문화하여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단과대학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수회

- 독립제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총장의 전횡과 잘못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교수회가 대학의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그 위상에 합당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체제가 구축되어야 함.
- 나아가 교수회의 대표는 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되어야 할 것임.

○ 장·단점 분석

- 장점으로 ① 총장의 책임 운영과 의사결정의 신속성 확보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 ② 단과대학별 혹은 학과(부)별 시각을 넘어서는 운영체제 확립으로 학문과 교육의 융·복합 추세에 부응, ③ 현행법의 소폭 개정으로 실현이 가능
- 단점으로 ① 교수들의 참여 부족으로 교수들의 자발적 노력 유도 어려움, ② 총장의 전횡으로 인한 대학 구성원간의 마찰과 불화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③ 총장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 존재

■ 방안 II: 분권형 의사결정 체계

○ 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체계

- 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총장을 독립제 의사결정기관으로 설정하는 현행과는 달리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의사결정이 단과대학 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분권형 의사결정구조로 변경함.
- 총장이 의장이 되고 처장 및 단과대학장으로 구성되는 학장회는 대학전체의 운영방향을 결정하고 단과대학의 의사결정을 대학전체 차원에서 상호 협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되어야 함.
- 사례: 법인화 이전의 일본의 국립대학 운영체제

○ 단과대학 교수회와 단과대학장의 임용

- 분권형 의사결정체계에서는 단과대학 단위로 교무와 학사에 관한 주요 사항이 결정되므로 단과대학장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커지고 중요해 짐.
- 교수들의 교무 및 학사운영에 대한 참여는 단과대학 교수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단과대학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견제도 단과대학 교수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단과대학 교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은 단과대 교수들의 직선이나 다양한 방식의 간선을 통해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다양한 선출방법을 명문화하여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단과대학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단점 분석

- 장점으로 ① 교수의 참여와 자율이 극대화, ② 단과대학별로 자신의 여건에 맞는 교육과 연구프로그램을 채택, ③ 현장의 변화를 단과대학별로 수시로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에 유리
- 단점으로는 ① 단과대학별 혹은 학과(부)별 이기주의로 대학전체의 방향성 상실 가능성 존재, ② 총장 권한의 왜소화로 대학전체 차원의 의사결정이 느려져 고등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경쟁력이 저하, ③ 현행의 법률을 대폭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

4. 맺음말: 정책 제언

■ 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지금까지 국립대학 운영과 관련한 일관된 정책기조는 대학의 자율화이며, 특히 운영시스템에 있어서는 법인화 추진을 별도로 하면 총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기조를 감안할 경우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구조는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개선방안 중 집권형 체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분권형 체제의 경우 정부의 정책기조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 법인화 이전의 일본 국립대학의 체제와 거의 동일한 체제로서, 고등교육의 대중화(massification), 시장화(marketization), 글로벌화(globalization) 등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을 감안하여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국립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체제를 집권형 체제로 설정할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정이 필요함.

- 단과대학장의 경우 총장이 직접 임명하거나 해당 대학 소속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간선제를 실시하되, 동 선출규정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²²⁾

22) 이 때 간선의 방식에 대해서도 법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데,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① 총장이 2인 이상의 학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총장이 1인을 추천하고 해당 단과대학 교수들이 찬반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포함)하는 하향식 간선제와 ② 단과대학 교수들이 직접투표를 통해 복수의 학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장이 그중 1명을 임용하는 상향식 간선제 등이 있을 수 있음.

안건 2.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추진

고등교육법 개정 운동 추진 계획

고등교육법개정추진위원회
(김 형기 고등교육법 개정 실행위원장 설명)

1. 추진 목표

-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 홍보
- 2011년내 국립대학 자율화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완료

2. 추진 주체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위원회
: 위원장(상임회장), 실행위원장, 위원(공동회장), 법률자문교수

3. 추진 일정

- 고등교육법 개정안 지지 서명 완료: 2월말
- 법률자문교수단 구성 완료: 2월말
- 고등교육법 개정안 최종 검토 및 추진전략 수립: 3월중 법률자문교수단 회의 개최
- 현행 고등교육법 위헌 소송 제기 검토: 3월중
- 홍보 리플렛 작성: 3월말
- “국립대학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방향”: 고등교육정책포럼 개최 3월 임시 총회시(교과부 장관 혹은 국회 교과위원장 초청)
- 권역별 설명회 및 기자회견 개최: 4월중
- 언론기관과의 협력(기사화, 프로그램화): 4월중
- 의원입법 대표발의 국회의원 확정: 5월중
- 국회공청회 개최: 5월중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정: 6월 이후